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267-10

통계청승인번호 117067

noinboho.or.kr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Contents

Part 01 서론

1. 발간목적	3
2. 법적근거	4
3. 자료수집과정	4
4. 자료분석	4
5. 주요내용	5

Part 02 노인학대 주요통계

1. 노인학대 신고접수	9
2.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	10
3. 노인학대 피해노인 현황	12
4. 노인학대 행위자 현황	13
5. 노인학대 유형	14
6. 노인학대 발생장소 및 특성	15
7. 경제적 학대 현황	17
8. 치매진단 노인학대 현황	19
9. 시설 노인학대 현황	21
10. 재학대 현황	22

Part 03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 (2013~2022년)

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27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28
3.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30
4.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31
5. 연도별 재학대 건수	32
6. 연도별 학대유형 건수	33
7.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34
8.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35
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36
10.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37
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38
1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39
13.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41
14.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42



Part 04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 1. 노인학대 신고접수 47
 - 1) 전체 신고접수 47
 - 2)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49
 - 3) 시군구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53
 - 4) 발생장소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59
 - 5) 신고자 유형 59
 - 6) 신고접수 및 경로 인지 유형 62

Part 05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 1. 현장조사 67
- 2. 사례판정 69

Part 06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 1.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81
 - 1)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81
 - 2) 노인학대 유형 II (학대유형 건수) 82
 - 3)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90
 - 4)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연령 90
 - 5)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91
 - 6)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91
 - 7) 학대발생장소 92
 - 8) 학대발생빈도 99
 - 9) 학대지속기간 100
 - 10) 학대발생원인(학대행위자 원인) 101
 - 11) 학대발생원인(가족-환경원인) 103

Part 07 노인학대 상담 및 제공서비스 현황

- 1. 노인학대 상담 107
 - 1) 월별 상담횟수 107
 - 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108
 - 3)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110
 - 4) 지역 및 기관별 전체상담 횟수 112
 - 5) 지역 및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 횟수 114



Contents

2. 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서비스	116
1)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116
2)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현황	117

Part 08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사례분석 결과

1. 학대피해노인 현황	121
1) 65세 이상 인구 수 대비 학대피해노인 성별	121
2)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21
3)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122
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124
5)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125
6)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126
7)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및 동거자 유형	126
8)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27
9)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133
10)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33
11)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	134
12)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134
13) 학대피해노인 건강상태	134
14)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 정도	137
2. 학대행위자 현황	139
1)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39
2) 지역 및 기관별 학대행위자 성별	139
3)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141
4) 학대행위자 결혼유형	151
5)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51
6)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152
7)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52
8) 학대행위자 건강상태	153

Part 09 노인학대 주요 사례 분석 결과

1. 경제적 학대 현황	157
1) 지역 및 기관별 경제적 학대 현황	157
2)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59



3)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160
4)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연령대	161
5)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장소	161
6)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빈도	162
7) 경제적 학대 학대지속기간	163
8) 경제적 학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63
2.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164
1)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164
2)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성별 및 연령대	166
3)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대상 학대행위자 유형	168
4)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유형	169
5)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170
6)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171
7)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172
8)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가구형태	173
3. 시설학대 현황	174
1)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	174
2) 시설학대 신고자 유형	177
3)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79
4) 시설학대 학대유형	180
5) 시설학대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181
6)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182
7)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183
8)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84
9)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185
10)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86
4. 재학대 현황	187
1) 지역 및 기관별 재학대 현황	187
2) 재학대 신고자 유형	189
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90
4) 재학대 사례판정	191
5) 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192
6)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193
7) 재학대 학대발생장소	194



Contents

8) 재학대 학대발생빈도	195
9) 재학대 학대지속기간	196
10)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97
1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97
12)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199
1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동거여부	199
14)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200
15) 재학대 학대행위자 중독 유형	201

Part 10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

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실적	205
1) 보호노인 현황	205
2) 보호노인 결혼 유형	206
3)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206
4) 보호노인 가구형태	207
5) 보호노인 주거형태	207
6) 보호노인 학대 유형	208
7) 보호노인 치매여부	209
8) 보호노인의 우울증 검사	209
9) 퇴소 후 거주 현황	209
10)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입소자)	210
11)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	211

Part 11 부 록

1.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	215
2.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16



Contents Table

[표 3-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27
[표 3-2]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28
[표 3-3]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30
[표 3-4]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31
[표 3-5]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32
[표 3-6] 연도별 학대유형 건수	33
[표 3-7]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34
[표 3-8]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및 비율	35
[표 3-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36
[표 3-10]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37
[표 3-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38
[표 3-1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39
[표 3-13]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41
[표 3-14]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42
[표 3-15]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43
[표 4-1]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47
[표 4-2] 월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48
[표 4-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49
[표 4-4]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율	51
[표 4-5] 시군구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53
[표 4-6] 발생장소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59
[표 4-7] 신고자 유형 I	59
[표 4-8] 신고자 유형 II (신고의무자)	61
[표 4-9] 신고자 유형 III (비신고의무자)	61
[표 4-10] 신고접수 경로	62
[표 4-11] 신고접수 유형	62
[표 4-12] 신고 경로 인지 유형별 신고자 구분	63
[표 5-1] 현장조사	67
[표 5-2] 지역 및 기관별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67
[표 5-3]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69
[표 5-4] 시군구별 사례판정 결과	71



Contents Table

[표 5-5] 사례판정 결과별 노인학대 유형	77
[표 5-6] 사례판정 결과별 신고자 유형	78
[표 6-1]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81
[표 6-2] 노인학대 유형 II (학대유형 건수)	82
[표 6-3] 시군구별 노인학대 유형 II (학대유형 건수)	82
[표 6-4] 노인학대 유형별 구체적 행위	89
[표 6-5]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90
[표 6-6]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연령	90
[표 6-7]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91
[표 6-8]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91
[표 6-9] 학대발생장소	92
[표 6-10] 시군구별 학대발생장소	92
[표 6-11] 학대발생장소별 학대유형	99
[표 6-12] 학대발생빈도	99
[표 6-13] 학대발생빈도별 노인학대 유형	100
[표 6-14] 학대지속기간	100
[표 6-15] 학대행위자 원인	101
[표 6-16]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유형	102
[표 6-17] 가족-환경 원인	103
[표 7-1] 월별 상담횟수	107
[표 7-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108
[표 7-3]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110
[표 7-4] 지역 및 기관별 전체상담 횟수	112
[표 7-5] 지역 및 기관별 한 사례당 평균 상담 횟수	114
[표 7-6]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116
[표 7-7]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현황	117
[표 8-1] 65세 이상 인구 수 대비 학대피해노인 성별 분포	121
[표 8-2]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 분포	121
[표 8-3]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122
[표 8-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124
[표 8-5]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125



[표 8-6]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126
[표 8-7]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126
[표 8-8] 학대피해노인 동거자 유형	126
[표 8-9]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27
[표 8-10] 시군구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27
[표 8-11]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133
[표 8-12]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33
[표 8-13]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	134
[표 8-14]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134
[표 8-15] 학대피해노인 질병유형	134
[표 8-16] 학대피해노인 장애 수	135
[표 8-17]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	136
[표 8-18]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136
[표 8-19] 학대피해노인 중독 유형	136
[표 8-20]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 정도	137
[표 8-21] 학대행위자 성별 연령분포	139
[표 8-22] 지역 및 기관별 학대행위자 성별	139
[표 8-23]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141
[표 8-24] 시군구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141
[표 8-25] 학대행위자 연령별 학대행위자 유형 분포	148
[표 8-26] 학대행위자 중 배우자 성별	148
[표 8-27]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행위자 유형	149
[표 8-28]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149
[표 8-29]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150
[표 8-30] 학대행위자 결혼유형	151
[표 8-31]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51
[표 8-32] 학대행위자 연령대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51
[표 8-33]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152
[표 8-34]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52
[표 8-35] 학대행위자 장애유형	153
[표 8-36] 학대행위자 중독유형	153



Contents Table

[표 9-1] 지역 및 기관별 경제적 학대 현황	157
[표 9-2]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59
[표 9-3]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160
[표 9-4]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연령대	161
[표 9-5]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장소	161
[표 9-6]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빈도	162
[표 9-7] 경제적 학대 학대지속기간	163
[표 9-8] 경제적 학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63
[표 9-9]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164
[표 9-10]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성별	166
[표 9-11]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연령대	167
[표 9-12]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과 학대행위자 유형	168
[표 9-13]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유형	169
[표 9-14]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170
[표 9-15]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171
[표 9-16]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172
[표 9-17]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가구형태	173
[표 9-18]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	174
[표 9-19] 시설학대 신고자 유형	177
[표 9-20]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79
[표 9-21] 시설학대 학대유형	180
[표 9-22] 시설학대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181
[표 9-23]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182
[표 9-24]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183
[표 9-25]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	184
[표 9-26]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84
[표 9-27]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185
[표 9-28]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86
[표 9-29] 지역 및 기관별 재학대 현황	187
[표 9-30] 신규-재학대 신고자 유형	189
[표 9-3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90



[표 9-32]	신규-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사례판정	191
[표 9-33]	신규-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192
[표 9-34]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193
[표 9-35]	신규-재학대 학대발생장소	194
[표 9-36]	재학대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195
[표 9-37]	신규-재학대 학대발생빈도	195
[표 9-38]	신규-재학대 학대지속기간	196
[표 9-39]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97
[표 9-40]	신규-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97
[표 9-4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 유형 건수	198
[표 9-42]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199
[표 9-4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동거여부	200
[표 9-44]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200
[표 9-45]	재학대 학대행위자 중독 유형	201
[표 10-1]	보호노인 현황	205
[표 10-2]	보호노인 성별 및 연령대	205
[표 10-3]	보호노인 결혼 유형	206
[표 10-4]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206
[표 10-5]	보호노인 가구형태	207
[표 10-6]	보호노인 주거형태	207
[표 10-7]	보호노인 학대 유형	208
[표 10-8]	보호노인 치매여부	209
[표 10-9]	보호노인 우울증 검사결과	209
[표 10-10]	퇴소 후 거주 현황	209
[표 10-11]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입소자)	210
[표 10-12]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	211



Contents

Picture

[그림 2-1] 노인학대 신고접수	9
[그림 2-2]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신고의무자)	10
[그림 2-3]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비신고의무자)	11
[그림 2-4] 학대피해노인 현황	12
[그림 2-5]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2
[그림 2-6] 학대행위자 현황	13
[그림 2-7] 학대행위자 유형	13
[그림 2-8] 노인학대유형	14
[그림 2-9] 장소별 노인학대유형	14
[그림 2-10] 학대발생장소	15
[그림 2-11] 학대발생빈도 및 지속기간	16
[그림 2-12] 경제적 학대 현황	17
[그림 2-13] 경제적 학대 발생장소 및 행위자 유형	18
[그림 2-14] 치매진단 노인학대 현황	19
[그림 2-15] 치매진단 노인학대 발생장소 및 행위자 유형	20
[그림 2-16] 시설 노인학대 현황	21
[그림 2-17] 시설 노인학대 신고자유형	21
[그림 2-18] 재학대 현황	22
[그림 2-19] 재학대 신고자유형	23
[그림 2-20] 재학대 발생장소 및 행위자 유형	24
[그림 3-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비율 추이	27
[그림 3-2]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 비율 추이	29
[그림 3-3] 연도별 현장조사 건수 및 비율 추이	30
[그림 3-4] 연도별 사례판정 비율 추이	31
[그림 3-5]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추이	32
[그림 3-6] 연도별 학대유형 비율 추이	33
[그림 3-7]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34
[그림 3-8]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비율 추이	35
[그림 3-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비율 추이	36
[그림 3-10]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비율 추이	37
[그림 3-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비율 추이	38



[그림 3-1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40
[그림 3-13] 연도별 학대행위자 본인 추이	40
[그림 3-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41
[그림 3-15]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42
[그림 3-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 추이	43
[그림 4-1] 전체 신고건수 비율	47
[그림 4-2] 학대사례 건수 대비 재학대 건수 비율	47
[그림 4-3] 월별 신고접수 건수 추이	48
[그림 4-4] 지역 기관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50
[그림 4-5] 기관별 노인학대 신고접수율(노인인구 천명당)	52
[그림 4-6] 신고자 유형 I	59
[그림 4-7] 신고자 유형 II	61
[그림 4-8] 신고접수 유형	62
[그림 4-9] 신고의무자의 신고 경로 인지	63
[그림 4-10]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경로 인지	63
[그림 5-1] 사례판정 결과	70
[그림 5-2] 사례판정 결과별 노인학대 유형	77
[그림 5-3] 사례판정 결과별 신고자 유형	78
[그림 6-1]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81
[그림 6-2] 노인학대 유형 II (학대유형 건수)	82
[그림 6-3] 학대발생장소	92
[그림 6-4] 학대발생빈도	99
[그림 6-5] 학대지속기간	100
[그림 6-6] 학대행위자 원인	101
[그림 6-7]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유형	102
[그림 6-8] 가족-환경 원인	103
[그림 7-1] 월별 상담횟수	107
[그림 7-2]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109
[그림 7-3]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111
[그림 7-4] 지역 및 기관별 전체상담 횟수	113
[그림 7-5]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 횟수	115



Contents Picture

[그림 8-1]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분포	122
[그림 8-2]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124
[그림 8-3]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125
[그림 8-4] 학대행위자 연령분포	139
[그림 8-5]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141
[그림 9-1] 지역 및 기관별 경제적 학대 현황	158
[그림 9-2]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59
[그림 9-3]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160
[그림 9-4] 경제적 학대 행위자 연령대	161
[그림 9-5]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장소	161
[그림 9-6]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빈도	162
[그림 9-7] 경제적 학대 학대지속기간	163
[그림 9-8]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166
[그림 9-9]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성별	166
[그림 9-10]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연령대	167
[그림 9-11]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과 학대행위자 유형	168
[그림 9-12]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유형	169
[그림 9-13]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170
[그림 9-14]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171
[그림 9-15]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172
[그림 9-16]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가구형태	173
[그림 9-17]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79
[그림 9-18] 시설학대 학대유형	180
[그림 9-19]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182
[그림 9-20]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183
[그림 9-21]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86
[그림 9-22] 기관별 재학대 접수 건수 및 비율	188
[그림 9-2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90
[그림 9-24]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사례판정 비율	191
[그림 9-25] 신규-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192
[그림 9-26]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193



[그림 9-27] 신규-재학대 학대발생장소	194
[그림 9-28] 재학대 학대발생빈도	196
[그림 9-29] 신규-재학대 학대지속기간	196
[그림 9-30]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98
[그림 9-3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 유형	199
[그림 9-32]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200
[그림 10-1] 보호노인 성별 및 연령대	206
[그림 10-2] 보호노인 가구형태	207
[그림 10-3] 보호노인 주거형태	208
[그림 10-4] 보호노인 학대 유형	208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언,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접수, 조사 및 개입 등의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전문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 보호노인

보호노인이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입소자와 이용자의 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입소자는 쉼터에서 숙식과 함께 치유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대상을 말하는 것이며, 이용자는 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 치유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대상을 의미

● 노인학대 신고 접수

🔍 신고접수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신고 및 상담 목적의 모든 사례

● 재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사례

🔍 신고자 유형

●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 자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 등의 직군이 포함됨(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비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본 보고서에서는 친족, 타인, 경찰, 관련기관, 학대행위자 본인, 학대피해노인 본인 등으로 분류됨

📍 학대발생장소

🔍 가정내 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 생활시설 학대

노인복지법 제31조의제1호, 제2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이용시설 학대

노인복지법 제31조의제3호, 제4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등)과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 같은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병원 학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일반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공공장소 학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나 여럿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현장조사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 행위자로 신고된 자를 조사하기 위한 방문을 의미함

🔍 응급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당시 응급한 노인학대 상황으로 의심되며,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당시 노인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가운데 응급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이며, 신고접수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 실시

● 사례판정

현장조사 및 신고접수 당시 파악된 정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응급 사례, 비응급 사례, 잠재적 사례, 일반사례로 분류하는 과정

🔍 학대사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함

● 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됨. 또한 학대 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되며, 노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말함

● 비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이 아닌 경우,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됨

● 잠재적 사례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기술 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됨

🔍 일반사례

신고 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 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를 의미함

●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사용 등)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경제적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임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중복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중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상담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 학대상담

학대상담이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단한 사례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을 의미함

● 일반상담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로 유관기관 안내 및 복지서비스 등의 단순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을 의미함

● 접수상담

신고접수 시의 초기 상담을 의미함

● 진행상담

사례개입을 위해 진행되는 모든 상담을 의미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상담, 학대행위자 상담, 관련자 및 주변인 상담, 현장조사 및 방문 상담 등을 말함

● 종결상담

학대피해노인의 위험요인 제거 및 학대행위자 분리 등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종결을 앞두고 실시한 상담을 말함. 사례 종결여부는 종결지표를 통해 결정되며, 이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종결 이전에 확인하는 점검리스트의 기능을 함

🔍 사후관리

종결된 사례에 대해 학대피해노인이 안전한지 학대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을 말함

복지서비스연계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게 각종 사회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필요자원을 연계·제공하는 서비스

법률서비스연계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법적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에 대한 정보나 법률지원을 연계·제공하는 서비스

의료서비스연계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증진 및 학대행위자의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적 치료를 연계·제공하는 서비스

보호서비스

학대피해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킴이 연결 및 거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가구형태

노인독거가구

다른 가구원 없이 노인 혼자 거주하는 가구형태

노인부부 가구

학대피해노인과 배우자만으로 이루어진 가구형태

자녀동거 가구

학대피해노인과 자녀만 동거하는 가구형태

손자녀동거 가구

학대피해노인과 손자녀만 동거하는 가구형태

자녀·손자녀 동거 가구

학대피해노인과 자녀 및 손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가구형태

● 건강상태

🔍 치매

- 치매진단

의학적 검사를 통해 의사가 치매로 진단한 상태

- 치매의심

간이정신상태검사나 학대피해노인의 상황에 따라 치매로 의심되는 상태

🔍 ADL/IADL

- 일상생활수행능력: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몹단장하기, 집안일 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등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 기타 용어정리

🔍 학대행위자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행하는 자

🔍 부양의무자

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할 의무가 있는 자로 노인의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노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해당됨

🔍 보호자

노인을 보호하는 자로 부양의무자 및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를 받는 사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요약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요약

- 본 보고서는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상담사업 사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본 보고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및 상담이 진행된 사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하여 추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방향과 노인보호 정책마련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보고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19,552건의 사례를 분석하였음
- 신고접수 건수 19,552건에 대해 현장조사와 상담진행을 통하여 확인된 학대사례는 6,807건임
- 본 보고서 자료는 노인학대 신고접수, 상담, 학대 유형,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학대발생원인, 서비스제공에 대한 각각의 현황을 정리하였음
-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2017. 6. 3.)에 따라 2018년 1월 이후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노인학대로 규정하였음. 단, 기존 개입한 노인학대 사례(만 65세 미만)를 중심으로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져 일부 항목의 경우 기존 사례를 포함한 수치임
- 지역별 현황의 경우, 각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처리현황을 단순 집계한 것으로서 각 유형별 현황의 숫자가 많지 않아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지 못하므로 단순비교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

●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 노인학대 신고접수

노인학대 신고접수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상담 및 신고목적의 모든 사례를 의미하며, 신고 당시 수집한 기초정보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각 기관은 자체사례회의 및 사례판정 위원회 등을 거쳐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로 분류함

-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전체신고 건수는 19,552건**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19,391건 → 19,552건) 하였음
 - 일반사례¹⁾는 12,745건(65.2%)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12,617건 → 12,745건)
 - 학대사례²⁾는 6,807건(34.8%)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6,774건 → 6,807건)
- 학대사례 6,807건 중 신고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1,569건(23.0%)**, **서울특별시 616건(9.0%)**, **경상북도 608건(8.9%)**의 순으로 나타남

🔍 신고자 유형

노인학대 신고자의 유형은 크게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되며,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 자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의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 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 등으로 분류함. 비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본 보고서에서는 친족, 타인, 경찰 등 관련기관, 학대행위자 본인, 학대피해노인 본인 등으로 분류함

- 노인학대 사례 6,807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1,125건(16.5%)**이며 비신고의무자는 **5,682건(83.5%)**으로 나타남
 -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30.8% 증가(860건 → 1,125건)
 -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3.9% 감소(5,914건 → 5,682건)
 - ※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신고의무자 직군으로 변경되어 시행일 기준으로 구분함 (시행일: '22.3.22.)

1) 일반사례란, 신고 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를 의미함.
2) 학대사례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함.

🔍 신고접수 경로 및 접수유형, 경로 인지 유형

신고접수 경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사례의 응급성 정도, 현재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및 학대 지속성 여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대처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또는 112 신고 등으로 분류함

- 신고접수 경로 유형을 살펴보면, 112이관을 통한 접수가 3,891건(57.2%)으로 약 절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세부 유형으로 자체접수 2,371건(34.8%), 행정복지센터 165건(2.4%), 시청 149건(2.2%) 등이 있음

신고접수 유형은 신고접수 경로의 세부적인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를 통한 전화 신고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신고, 신고앱을 통한 신고, 신고자의 기관 내방 또는 상담원 방문 등의 대면신고 및 서신에 의한 신고로 분류함

- 신고접수 유형을 살펴보면, 서신³⁾을 통한 접수가 4,371건(64.2%)으로 과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세부 유형으로 전화 2,081건(30.6%), 대면 280건(4.1%), 온라인 75건(1.1%)이 있음

신고 경로 인지 유형은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알게 된 경로를 의미함

- 신고 경로 인지 유형을 살펴보면,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이 5,944건(87.3%)으로 과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세부 유형으로는 “타 기관 안내”가 238건(3.5%), “이미 개입 경험이 있으며 직접 홍보의 경우”가 193건(2.8%)으로 나타남
 - 신고의무자의 신고 경로 인지(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 : 전년 대비 31.9% 증가(794건 → 1,047건)
 -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경로 인지(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 : 전년 대비 3.5% 감소(5,074건 → 4,897건)

🔴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현장조사란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를 조사하기 위한 방문을 의미하며, 학대사례의 경우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완강한 거부,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악화로 인한 병원 및 시설입소, 학대 피해노인의 이사 및 이주 또는 학대피해노인이 현장조사를 원하지 않고, 제3의 장소나 기관 내방 등을 원하여 불가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3) 112 이관 시 이메일 및 팩스 등으로 접수된 경우 신고접수 유형 구분 시 서신으로 분류.

- 2022년 전체 학대사례 6,807건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6,703건(98.5%)**임
 ※ 현장조사 건수 : '18년(4,965건) - '19년(5,084건) - '20년(6,152건) - '21년(6,696건) - '22년(6,703건)

현장조사와 방문상담은 학대피해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되는 상담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주거환경 및 생활수준, 심리상태, 주변 자원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여부 및 생활상태 등을 확인하는데 용이함

- 전체 학대사례 6,807건에 대한 **방문상담 횟수는 36,067회**로 한 사례 당 방문상담 횟수는 5.3회로 나타남

🔍 사례판정

사례판정은 현장조사 실시 후 신고접수 당시 파악된 정보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학대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의미함.

- 2022년 전체 학대사례 6,807건 중 사례판정 비율은 응급 사례가 170건(2.5%), 비응급 사례가 4,157건(61.1%), 잠재적 사례가 2,480건(36.4%)으로 나타남
 - 응급 사례⁴⁾의 경우 전년 대비 19.7% 증가(142건 → 170건)
 - 비응급 사례⁵⁾의 경우 전년 대비 6.5% 감소(4,445건 → 4,157건)
 - 잠재적 사례⁶⁾의 경우 전년 대비 13.4% 증가(2,187건 → 2,480건)
- 응급 및 비응급 사례의 경우 “신체적 - 정서적 - 방임”, 잠재적 사례의 학대 유형은 “정서적 - 신체적 - 방임”의 순으로 나타남

🔍 재학대

재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사례를 의미하며, 2022년 학대사례 6,807건 중 **재학대 건수는 817건(12.0%)**으로 여성피해노인이 667명(81.6%), 남성피해노인이 150명(18.4%)으로 나타남

※ 재학대 건수 : '18년(488건) - '19년(500건) - '20년(614건) - '21년(739건) - '22년(817건)

4) 응급사례는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5) 비응급사례는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이 아닌 경우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을 의미함.
 6) 잠재적 사례는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간의 의사소통기술 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함.

● 노인학대 유형

🔍 노인학대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근거하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등으로 분류하며, 2022년 학대 유형 건수는 10,542건⁷⁾임

- 정서적 학대 4,561건(43.3%), 신체적 학대 4,431건(42.0%), 방임 689건(6.5%), 경제적 학대 397건(3.8%), 성적학대 259건(2.5%), 자기방임 169건(1.6%), 유기 36건(0.3%) 순으로 나타남
- 전체 학대유형 10,542건 중 성별에 따른 학대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정서적 학대 : 여성 3,632건(79.6%), 남성 929건(20.4%)
 - 신체적 학대 : 여성 3,544건(80.0%), 남성 887건(20.0%)
 - 방임 : 여성 465건(67.5%), 남성 224건(32.5%)
 - 경제적 학대 : 여성 271건(68.3%), 남성 126건(31.7%)
 - 성적 학대 : 여성 226건(87.3%), 남성 33건(12.7%)
 - 자기방임 : 여성 92건(54.4%), 남성 77건(45.6%)
 - 유기 : 여성 22건(61.1%), 남성 14건(38.9%)
- 학대 유형별로 학대피해노인의 연령대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신체적, 정서적, 자기방임 학대 유형의 경우 70대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반면, 경제적, 성적, 방임, 유기 학대 유형은 80대에서 높게 나타남
-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의 학대행위자 유형은 “배우자 - 아들 - 딸”이며, 방임의 경우는 “기관⁸⁾ - 아들 - 딸” 순으로 나타남. 또한 방임의 경우, 자녀에 의한 방임과 노인복지시설 등의 기관을 이용하거나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을 방임하는 것을 모두 포함함
 - 기타 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유형 순위
 - 경제적 학대(아들 - 기관 - 딸)
 - 성적 학대(기관 - 배우자 - 타인)
 - 유기(아들 - 딸 - 손자녀)

7)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수치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수치는 차이가 있음. 즉, 학대피해노인 1명이 학대행위자로부터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우, 학대사례는 1건이나 학대유형 건수는 2건으로 집계됨.

8) 노인복지시설 등의 기관을 이용하거나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을 방임하는 경우를 의미함.

● 학대발생장소

🔍 학대발생장소

노인학대의 유형을 학대발생 공간에 따라 분류하면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등으로 분류함

- 전체 학대사례 6,807건 중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5,867건(86.2%)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그 외 세부 유형으로는 생활시설 662건⁹⁾(9.7%), 기타 89건(1.3%), 병원 86건(1.3%), 이용시설 52건(0.8%), 공공장소 51건(0.7%) 순으로 나타남
 - 가정 내 학대의 경우 전년 대비 1.6% 감소(5,962건 → 5,867건)
 - 생활시설의 경우 전년 대비 23.5% 증가(536건 → 662건)
 - 병원의 경우 전년 대비 38.7% 증가(62건 → 86건)

● 노인학대 상담

🔍 노인학대 상담

노인학대 상담은 일반상담과 학대상담으로 구분되며, 일반상담은 단순 정보제공 등의 일반사례에 대한 상담으로 보통 정보제공과 함께 상담이 종료되며, 학대상담의 경우 학대상담방법과 학대상담과정에 따라 분류함

- 전체 신고접수 건수 19,552건에 대한 전체 상담횟수는 203,884회임
 - 학대상담 횟수 159,402회, 한 사례당 평균 상담 횟수 23.4회
 - 일반상담 횟수 44,482회, 한 사례당 평균 상담 횟수 3.5회
- 전년 대비 상담 횟수는 1.7% 증가(200,513회 → 203,884회)
 - 학대상담 횟수 경우 전년 대비 0.03% 감소(159,446회 → 159,402회)
 - 일반상담 횟수 경우 전년 대비 8.3% 증가(41,067회 → 44,482회)

🔍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구분

학대상담방법은 전체 학대상담 횟수 159,402회에 대한 구체적 상담방법에 따른 분류로 전화상담, 방문상담, 내방상담, 서신을 통한 상담, 온라인 상담, 기타 등이 있음

- 전화상담의 경우 108,425회(68.0%)로 전년 대비 0.5% 감소(108,919회 → 108,425회)
- 방문상담의 경우 36,067회(22.6%)로 전년 대비 4.8% 감소(37,889회 → 36,067회)

9) 2015년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에 한하여 생활시설 학대로 집계함.

🔍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구분

학대상담과정은 전체 학대상담 횟수 159,402회에 대한 상담과정에 따른 분류로 접수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로 분류함

- 상담과정에 따라 살펴보면 **진행상담 121,656회(76.3%)**, 사후관리 24,330회(15.3%), 접수상담 6,903회(4.3%), 종결상담 6,513회(4.1%) 순으로 나타남

🔴 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공 서비스는 크게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연계, 법률서비스연계, 의료서비스연계,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으로 분류함

🔍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학대피해노인 6,807명에 대해 **총 232,656회로 한 사례당 평균 34.2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음
 - 세부 유형으로 살펴보면, **상담서비스 129,809회(55.8%)**, **정보제공서비스 81,595회 (35.1%)**, 복지서비스연계 17,477(7.5%), 보호서비스 1,808회(0.8%), 의료서비스연계 1,519회(0.7%), 법률서비스연계 448회(0.2%)의 순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학대행위자 7,494명에 대해 **총 49,824회로 한 사례당 평균 6.6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음
 - 세부 유형으로 살펴보면, **상담서비스 27,389회(55.0%)**, **정보제공서비스 20,300회(40.7%)**, 복지서비스연계 1,949회(3.9%)의 순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 현황

🔍 성별 및 연령

- 전체 학대피해노인은 6,807명으로 **여성 5,245명(77.1%)**, **남성 1,562명(22.9%)**이며, **여성 3.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학대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 정서적 학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정서적 - 신체적 - 방임의 순으로 학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남성 노인의 학대 피해 유형 : 정서적 929건(40.6%) - 신체적 887건(38.7%) - 방임 224건(9.8%)
- 여성 노인의 학대 피해 유형 : 정서적 3,632건(44.0%) - 신체적 3,544건(42.9%) - 방임 465건(5.6%)
- 연령대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70대 2,810명(41.3%), 80대 2,076명(30.5%), 60대 1,467명(2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결혼 및 동거가족

학대피해노인의 결혼 및 동거가족 형태는 노인 혼자 거주하는 노인독거가구, 노부부만 거주하는 노인 부부가구와 노인과 손자녀만 거주하는 손자녀동거가구, 자녀와 손자녀까지 함께 거주하는 자녀·손자녀동거 가구, 노인과 자녀만 동거하는 자녀동거 가구로 분류되며, 기타 가구형태로는 시설에 거주하거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형태 등을 의미함. 다만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가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실행하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도 동거, 비동거 어느 한쪽의 위험요인이 더 높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 학대피해노인의 결혼유형을 살펴보면 배우자 있음이 4,139건(60.8%), 배우자 없음이 2,668건(39.2%)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의 동거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학대피해노인 6,807명 중 학대행위자와 동거하는 경우는 4,833명 (71.0%)이며, 비동거는 1,974명(29.0%)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와 동거하는 4,833명에 대한 동거 가족유형(중복)은 총 7,190명이며,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3,266명(45.4%)으로 가장 높고, 아들이 1,897명(26.4%), 딸 611명(8.5%), 손자녀가 483명(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노인부부가구가 2,467명(36.2%), 자녀동거가구가 2,034명(29.9%), 노인독거가구가 1,127명(16.6%)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및 교육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생활이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급여 등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함

- 학대피해노인의 6,807명 중 수급자는 1,157명(17.0%)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의 교육정도는 초졸이 2,544명(37.4%)으로 가장 높았고 무학이 1,590명(23.4%), 고졸이 1,288명(18.9%)의 순으로 나타나 초졸과 무학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건강상태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항목은 질병 유형, 장애 수, 장애유형, 치매정도, 중독 유형 등이 해당되며,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상태는 사례개입 시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 상담 시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항목임

- **질병유형**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디스크, 골다공증 등이 있으며,
 - 전체 학대피해노인 6,807명 중 하나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는 5,909명(86.8%)으로, 고혈압 1,432명(24.2%), 당뇨병 862명(14.6%), 관절염 822명(1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로 구분되며, 신체장애는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등으로, 정신장애는 지적, 우울, 정신분열 등으로 분류함
 - 전체 학대피해노인 6,807명 중에서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대피해노인은 670명(9.8%)으로 신체장애 423명(63.1%), 정신장애 247명(36.9%)으로 나타남
 - 세부 유형으로는 우울장애 175명(26.1%), 지체장애 154명(23.0%), 청각장애 115명(1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치매정도**는 크게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와 치매로 의심하는 치매의심으로 분류함
 -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가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는 1,767명(26.0%)으로 치매의심이 597명(8.8%), 치매로 병원진단을 받은 치매진단은 1,170명(17.2%)으로 나타남
- **중독유형**은 중독성을 지닌 항목의 중독여부와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약물 사용 장애, 도박중독 등이 해당됨
 - 학대피해노인 6,807명 중 77명(1.1%)이 하나 이상의 중독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알코올 사용 장애가 71명(92.2%)으로 나타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일상생활정도**는 학대피해노인의 기능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으로 분류됨
 -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은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타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등을 통해 파악함
 -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은 몸단장하기, 집안일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 사러가기, 금전 관리하기, 전화 사용하기, 약 챙겨먹기 등을 통해 파악함
-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일상생활정도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경우 각각의 항목은 71.9~73.9% 수준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경우 67.6~72.4% 수준으로 “완전자립”이 가능한 상태로 나타남

직업유형

학대피해노인의 직업유형은 학대피해노인의 주 수입원인 직업의 유무와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업유형은 학대피해노인의 생활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학대피해노인의 **직업유형**을 살펴보면, 무직이 5,836명(85.7%)으로 과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며, 단순 노무 종사자가 356명(5.2%), 자영업자가 184명(2.7%)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 현황

🔍 성별 및 연령

- 전체 학대행위자는 7,494명¹⁰⁾으로 남성이 5,184명(69.2%), 여성이 2,310명(30.8%)이며, 여성에 비해 남성의 수가 약 2.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학대행위자 7,494명 중 아들이 2,092명으로 27.9%에 해당하였으며, 이는 남성 학대 행위자 5,184명 중 약 40.4%에 해당하는 수치임
- 연령대를 살펴보면 70세 이상이 전체 학대행위자의 2,458명(32.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남성 학대행위자 연령대 : 70세 이상 2,073명(40.0%) - 50대 1,056명(20.4%) - 40대 832명(16.0%)
 - 여성 학대행위자 연령대 : 50대 707명(30.6%) - 60대 616명(26.7%) - 40대 437명(18.9%)
- 한편 65세 이상 학대행위자가 65세 이상 노인을 학대하는 노(老)-노(老)학대는 총 3,166건으로 전체 학대행위자 수의 42.2%에 해당됨

🔍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는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으로 분류하며, 친족은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등의 세부 항목으로, 타인은 동거인, 이웃 등으로, 기관은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됨

- 전체 학대행위자 7,494명에 대한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배우자 2,615명(34.9%), 아들 2,092명(27.9%), 기관 1,362명(18.2%)의 순으로 나타남. 2021년 처음으로 배우자-아들 순으로 바뀐 뒤, 2022년에는 그 비율이 높아짐
 - 아들, 배우자,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등 친족의 경우가 5,699명(76.0%)으로 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학대행위자가 본인인 경우는 169명(2.3%)이며 전년 대비 17.2% 감소(204건 → 169건)

🔍 결혼유형

- 학대행위자 결혼유형은 크게 배우자 있음과 배우자 없음으로 구분되며 배우자 있음은 4,695명(62.7%), 배우자 없음은 2,799명(37.3%)으로 나타남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초혼이 4,169명(55.6%)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미혼이 1,783명(23.8%)으로 가장 많았음

10)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의 수와 학대행위자의 수는 차이가 있음.

🔍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및 교육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생활이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급여 등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함

- 학대행위자의 7,494명 중 수급자는 786명(10.5%)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2,988명(39.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대졸 이상이 1,945명(26.0%)으로 나타남

🔍 건강상태

학대행위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항목은 장애유형, 중독 유형 등이 있으며,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로 분류하고, 신체장애는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등으로 정신장애는 지적, 우울, 정신분열 등으로 분류함

- 학대행위자 7,494명 중에서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대행위자는 총 1,090명(14.5%)으로 정신장애 777명(71.3%), 신체장애가 313명(28.7%)으로 나타남
 - 세부 유형별로 보면 정신분열 319명(29.3%), 우울장애 263명(2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중독 유형은 중독성을 지닌 항목의 중독여부와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약물 사용 장애, 도박중독 등이 해당됨
 - 학대행위자 중 1,018명(13.6%)이 하나 이상의 중독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중 알코올 사용장애가 954명(93.7%), 도박중독이 35명(3.4%), 약물 사용장애가 29명(2.8%)으로 나타남

🔍 직업유형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은 학대행위자의 주 수입원인 직업의 유무와 종류를 의미하며, 학대행위자의 생활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학대피해노인의 경제적 부양부담과도 연결됨

-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을 살펴보면, 무직이 4,358명(58.2%)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전문직 955명(12.7%), 단순 노무 종사자 655명(8.7%), 서비스·판매종사자 525명(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PART 01

서론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PART

1

서론

01 | 발간목적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활동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제고됨은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질적 성장을 거듭하였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1개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20개¹¹⁾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학대피해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국의 노인학대 현황 추이를 분석하고 노인학대와 관련한 인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한국 사회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노인학대 예방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11) 이 중 전남서부 및 경기남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으로 설치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음.

02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통계청 승인번호 117067)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제4호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근거에 따라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기록된 노인학대 사례 자료를 분석하였음

03 | 자료수집과정

본 자료는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된 노인학대 예방 사업실적을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집계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며, 해당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04 | 자료분석

모든 항목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의미 있는 몇 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노인학대 현황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주요 학대사례에 대한 연도별 변화(13년~22년) 추이를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각 항목의 합계가 100%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2017. 6. 3.)에 따라 2018년 1월 이후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노인학대로 규정하였다. 단, 기존 개입한 노인학대사례(만 65세 미만)를 중심으로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져 일부 항목의 경우 기존 사례를 포함한 수치이다.

05 | 주요내용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집계된 노인학대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다음 항목에 대한 실적을 담고 있다.

분 류	내 용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연도별 신고자 유형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연도별 재학대 건수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접수 건수 신고자 유형 신고접수 경로 및 경로 인지 유형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조사 사례판정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노인학대 유형 II (학대 유형 건수) 학대발생장소, 학대발생빈도, 학대지속기간, 학대발생원인 	
노인학대 상담 및 제공서비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학대 상담 횟수 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서비스 현황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사례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피해노인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연령대, 학대유형, 결혼유형, 동거여부 및 동거자 유형 가구형태, 주거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교육정도, 직업유형 건강상태, 일상생활 정도 학대행위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연령대, 결혼유형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학대행위자 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교육정도, 직업유형 건강상태 	
노인학대 주요 사례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학대 현황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현황 시설학대 현황 재학대 현황 	
기타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PART 02

노인학대 주요통계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PART

2

노인학대 주요통계

01 | 노인학대 신고접수

- ④ (학대사례) 6,807건, 전년 대비 0.5% 증가('21년 6,774건 → '22년 6,807건)
- ④ (일반사례) 12,745건, 전년 대비 1.0% 증가('21년 12,617건 → '22년 12,745건)
- ④ (전체사례) 19,552건, 전년 대비 0.8% 증가('21년 19,391건 → '22년 19,55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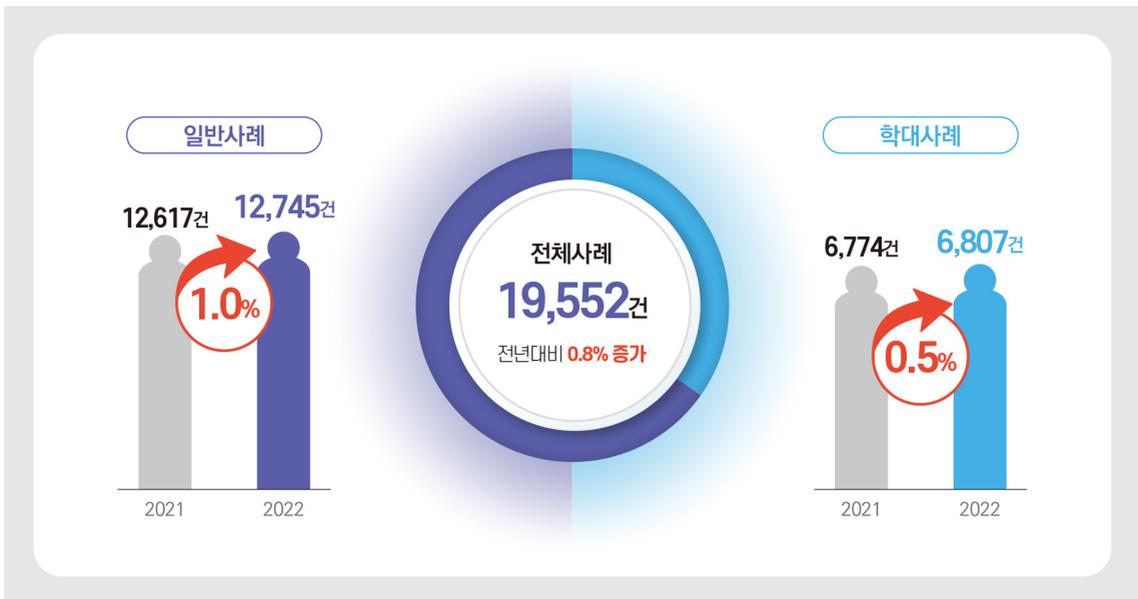


그림 2-1 노인학대 신고접수

02 |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

🔍 (신고의무자) 1,125명, 전년 대비 30.8% 증가('21년 860명 → '22년 1,125명)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전년 대비 35.3% 감소('21년 326명 → '22년 211명)
- 노인복지시설 설치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전년 대비 86.7% 증가('21년 83명 → '22년 155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및 요양직 직원 전년 대비 16.0% 증가('21년 25명 → '22년 29명)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전년 대비 6.7% 감소('21년 45명 → '22년 42명)
-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전년 대비 81.8% 증가('21년 11명 → '22년 2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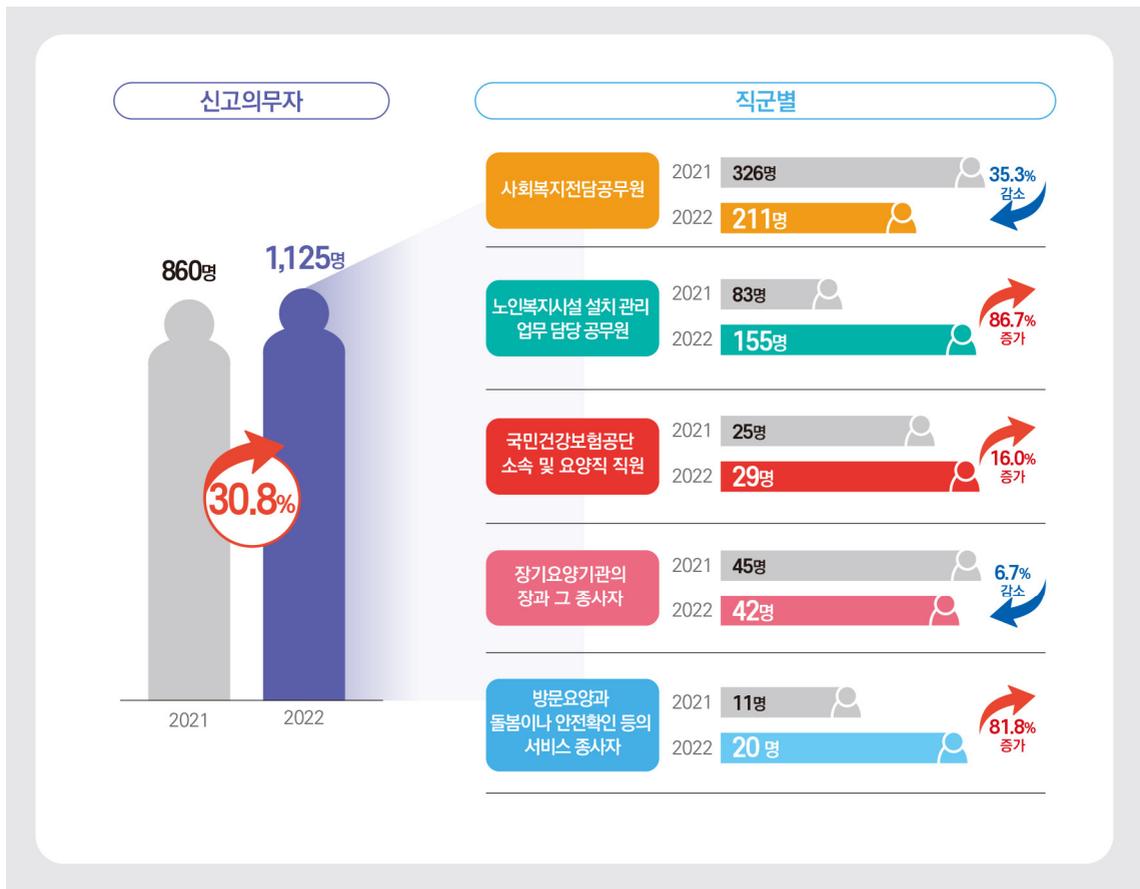


그림 2-2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신고의무자)

- 🔍 (비신고의무자) 5,682명, 전년 대비 **3.9% 감소**(’21년 5,914명 → ’22년 5,682명)
- 경찰 전년 대비 3.5% 증가(’21년 4,155명 → ’22년 4,302명)
 -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전년 대비 1.9% 증가(’21년 359명 → ’22년 366명)
 - 학대피해노인 본인 전년 대비 7.5% 감소(’21년 361명 → ’22년 33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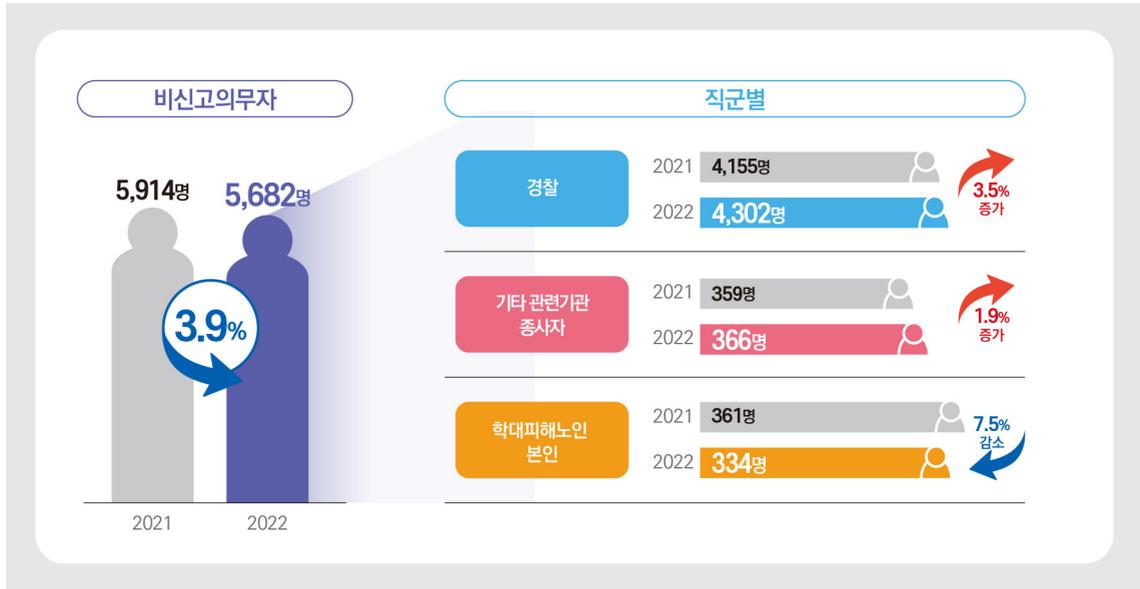


그림 2-3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비신고의무자)

03 | 노인학대 피해노인 현황

🔍 (학대피해노인) 6,807명, 전년 대비 0.5% 증가('21년 6,774명 → '22년 6,807명)

- 남성: 1,562명(22.9%) / 여성: 5,245명(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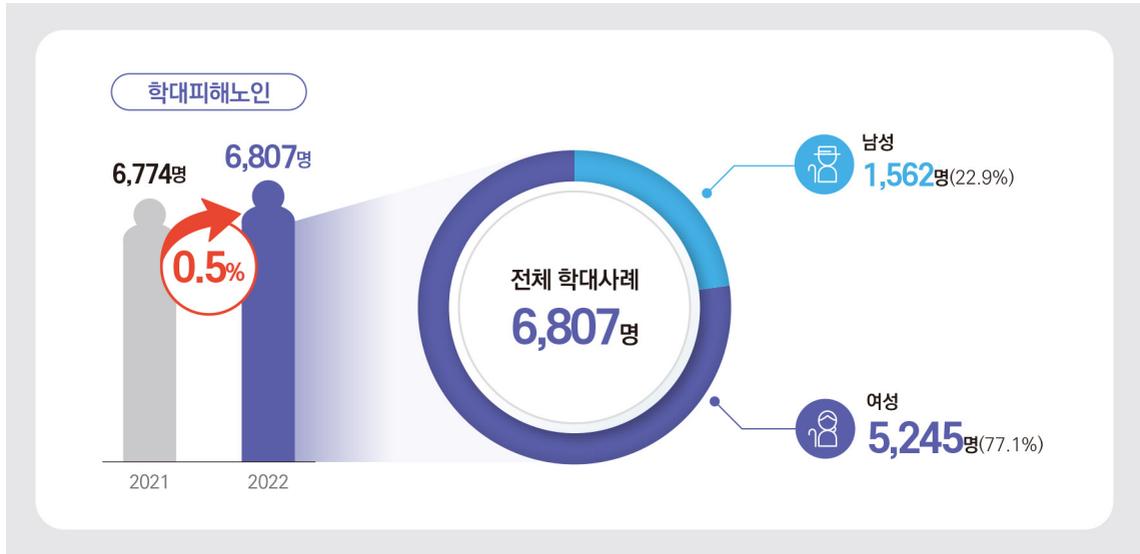


그림 2-4 학대피해노인 현황

🔍 (가구형태) “노인부부 - 자녀동거” 순으로 유지되었으나 노인부부 비율 증가

- 노인부부('21년 34.4% → '22년 36.2%)

- 자녀동거('21년 31.2% → '22년 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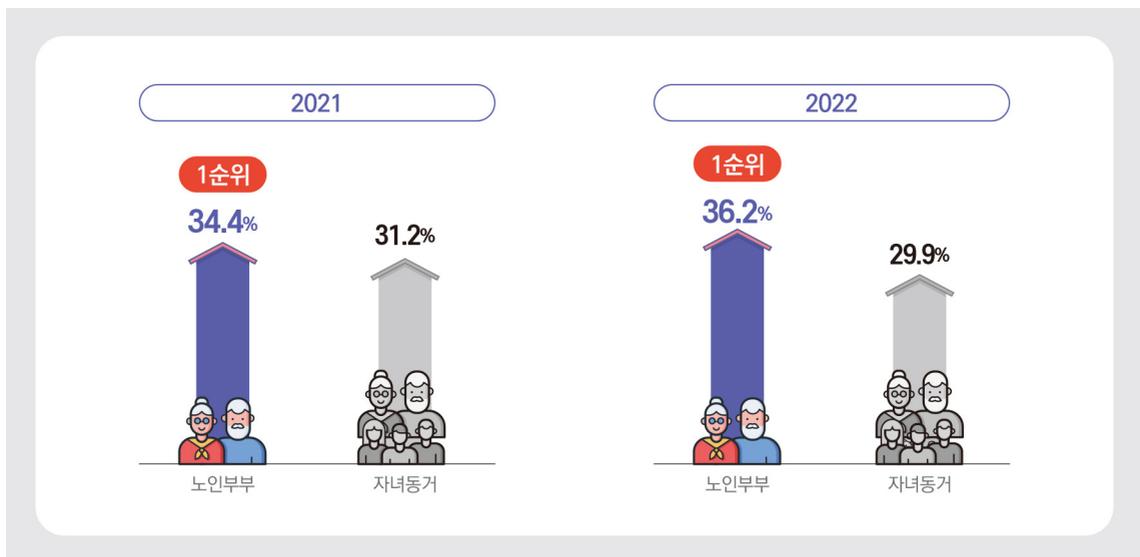


그림 2-5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04 | 노인학대 행위자 현황

🔍 (학대행위자) 7,494명, 전년 대비 11.0% 감소('21년 8,423명 → '22년 7,494명)

- 남성: 5,184명(69.2%) / 여성: 2,310명(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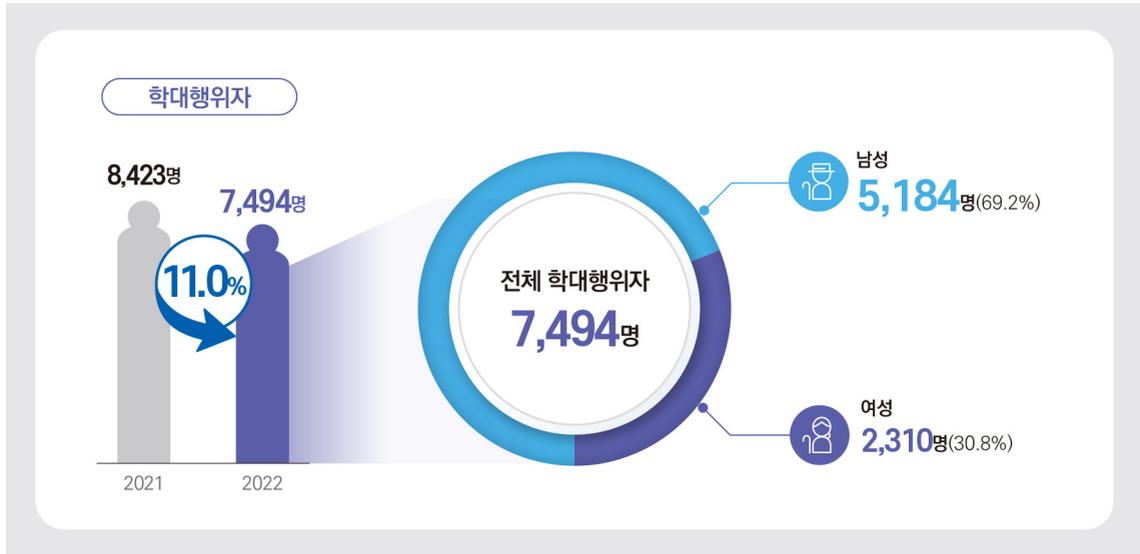


그림 2-6 학대행위자 현황

🔍 (행위자 유형) “배우자 - 아들” 순이면서 전년 대비 비율 증가

- 배우자('21년 29.1% → '22년 34.9%)

- 아들('21년 27.2% → '22년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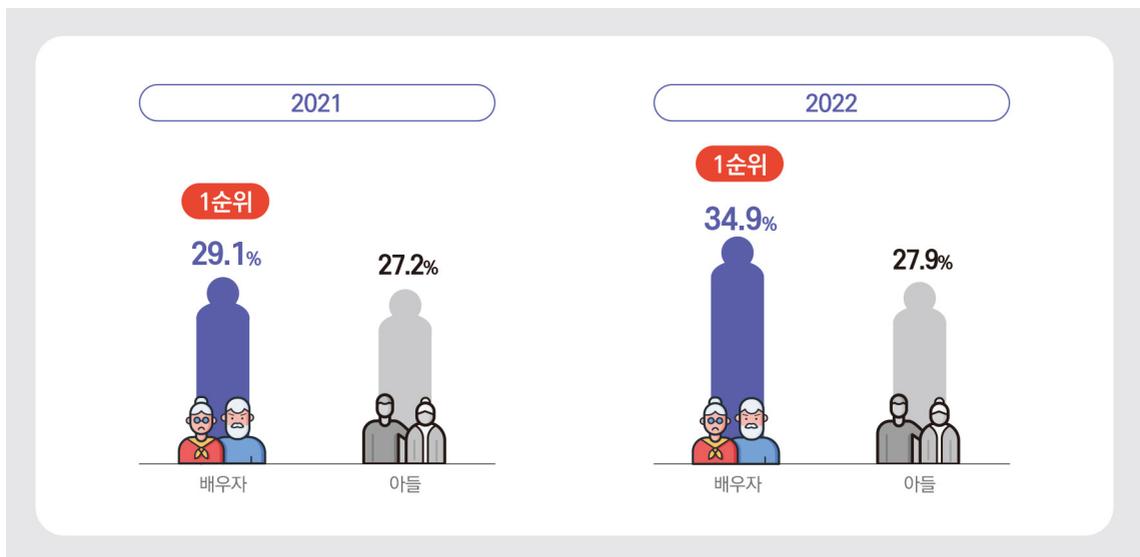


그림 2-7 학대행위자 유형

05 | 노인학대 유형

🔍 (노인학대유형) 10,542건, 전년 대비 0.8% 감소('21년 10,624건 → '22년 10,542건)

- 정서적 학대(43.3%), 신체적 학대(42.0%),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5%), 자기방임(1.6%), 유기(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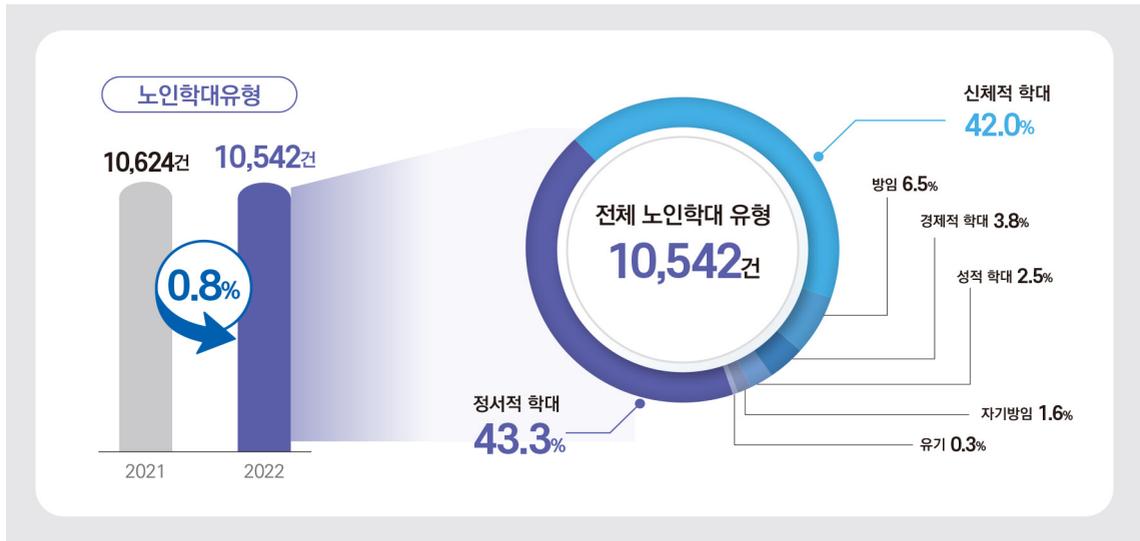


그림 2-8 노인학대유형

🔍 (장소별 노인학대유형)

- (가정) 정서적 학대(47.2%), 신체적 학대(43.4%), 경제적 학대(3.4%), 방임(3.3%) 등
- (생활시설) 방임(33.3%), 신체적 학대(31.5%), 성적 학대(19.5%), 경제적 학대(8.3%)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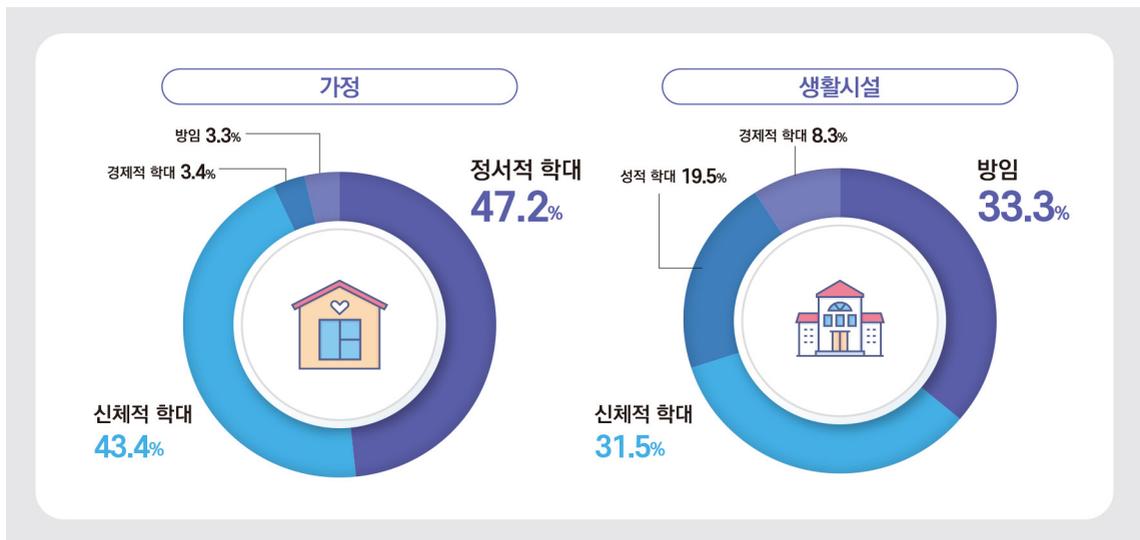


그림 2-9 장소별 노인학대유형

06 | 노인학대 발생장소 및 특성

🔍 (학대발생장소) 가정 5,867건(86.2%), 생활시설 662건(9.7%), 기타 89건(1.3%) 등

- 생활시설 전년 대비 23.5% 증가('21년 536건 → '22년 662건)
- 이용시설 전년 대비 40.2% 감소('21년 87건 → '22년 5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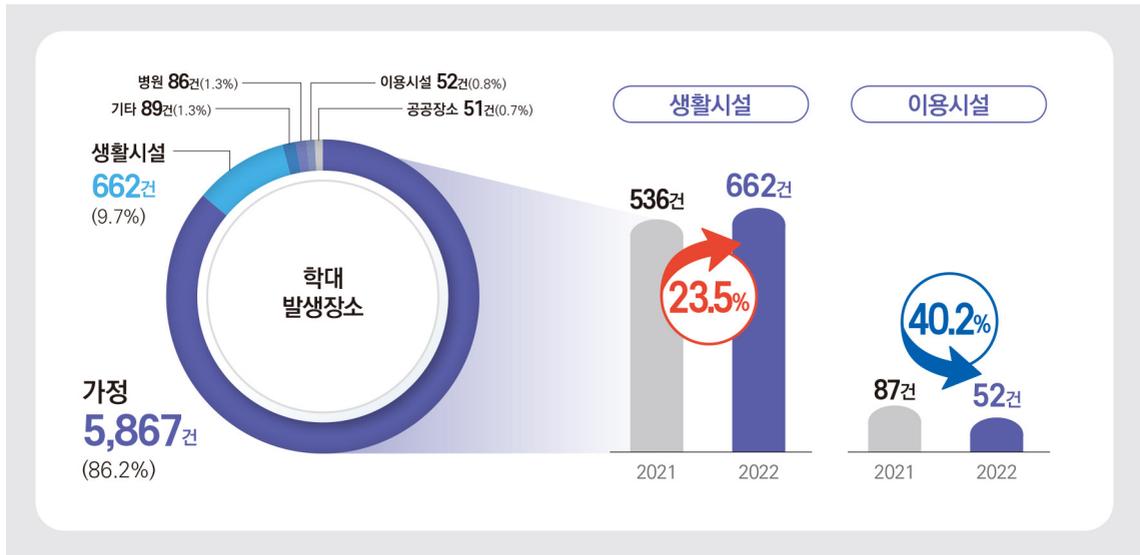


그림 2-10 학대발생장소

🔍 (학대발생빈도)

- 6개월에 한 번 이상 전년 대비 42.9% 증가('21년 543건 → '22년 776건)
- 일회성 전년 대비 13.6% 증가('21년 1,167건 → '22년 1,326건)

🔍 (학대지속기간)

- 일회성 전년 대비 12.1% 증가('21년 1,108건 → '22년 1,242건)
- 1개월 미만 전년 대비 13.4% 증가('21년 216건 → '22년 24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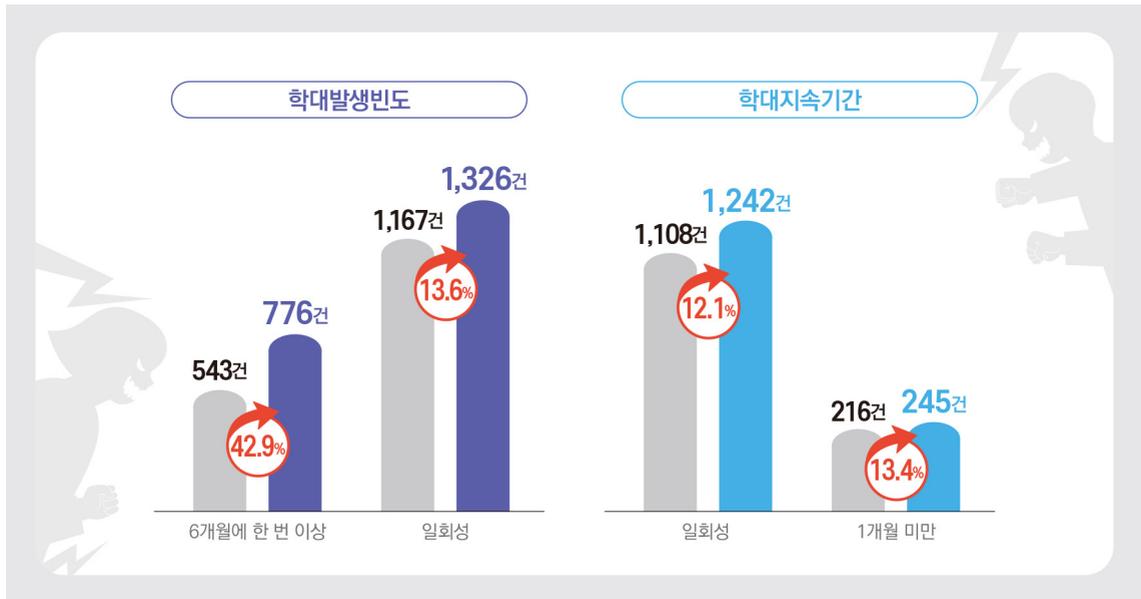


그림 2-11 학대발생빈도 및 지속기간

07 | 경제적 학대 현황

🔍 (경제적 학대) 397명, 전년 대비 2.2% 감소('21년 406명 → '22년 397명)

- 남성: 126명(31.7%) / 여성: 271명(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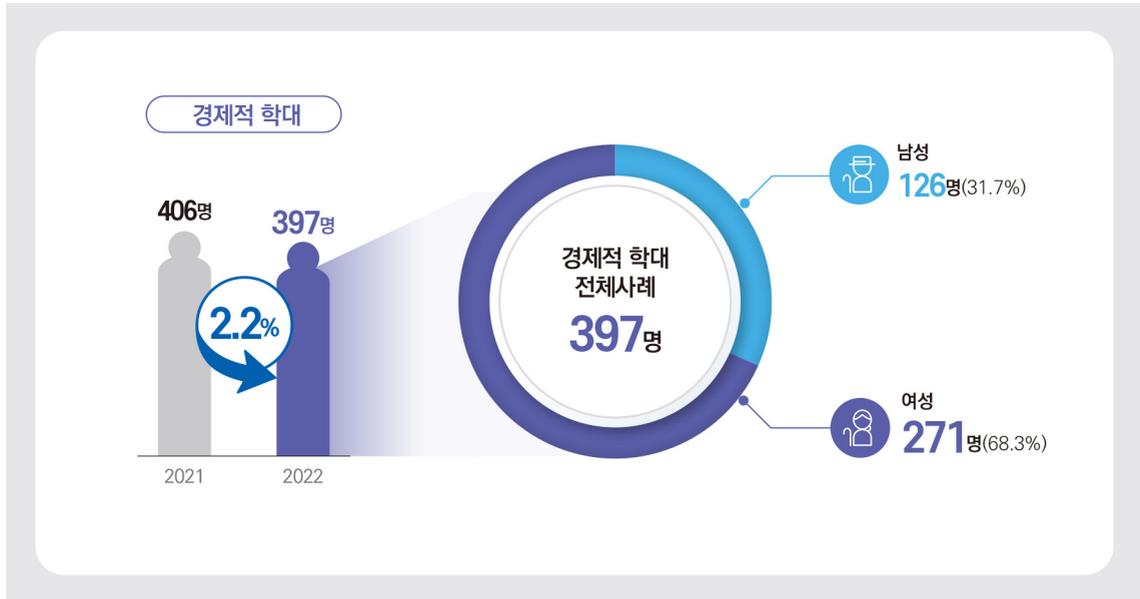


그림 2-12 경제적 학대 현황

🔍 (학대발생장소)

- (가정) 전년 대비 **17.0% 감소**(’21년 376건(92.6%) → ’22년 312건(78.6%))
- (시설) 전년 대비 **236.4% 증가**(’21년 22건(5.4%) → ’22년 74건(18.6%))

🔍 (장소별 학대행위자)

- (가정) 아들(50.3%), 딸(13.5%), 배우자(10.5%) 등
- (시설) 노인복지시설종사자(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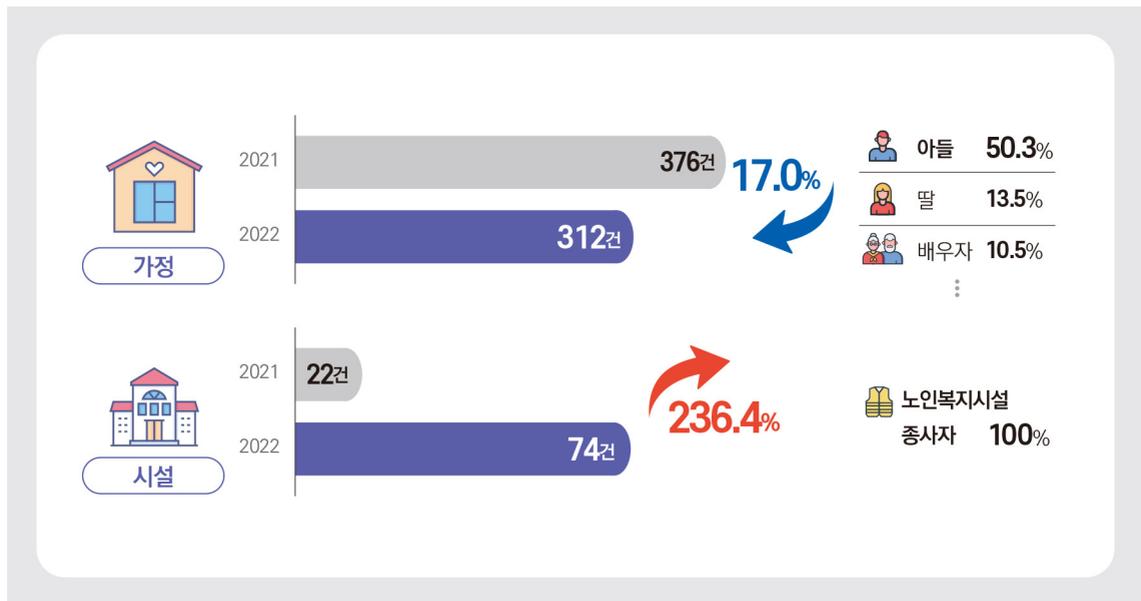


그림 2-13 경제적 학대 발생장소 및 행위자 유형

08 | 치매진단 노인학대 현황

🔍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진단) 1,170명, 전년 대비 7.1% 증가('21년 1,092명 → '22년 1,170명)

- 남성: 290명(24.8%) / 여성: 880명(7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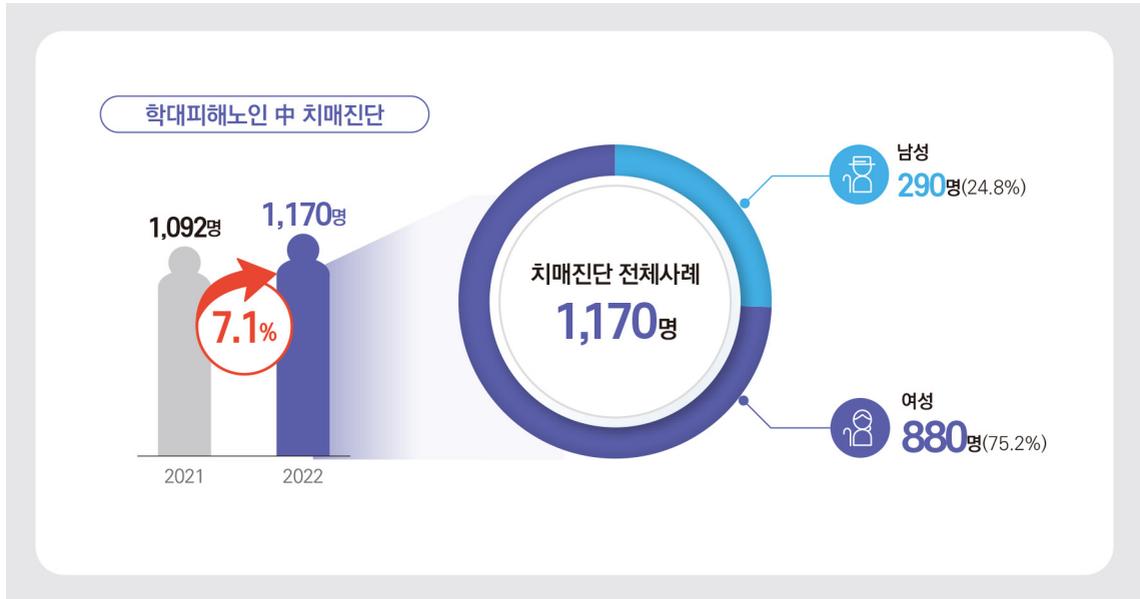


그림 2-14 치매진단 노인학대 현황

🔍 (학대발생장소)

- (가정) 전년 대비 **0.4% 감소**(’21년 562건(51.5%) → ’22년 560건(47.9%))
- (시설) 전년 대비 **13.0% 증가**(’21년 476건(43.6%) → ’22년 538건(46.0%))

🔍 (장소별 학대행위자)

- (가정) 아들(41.6%), 배우자(24.7%), 딸(12.8%) 등
- (시설) 노인복지시설종사자(97.5%)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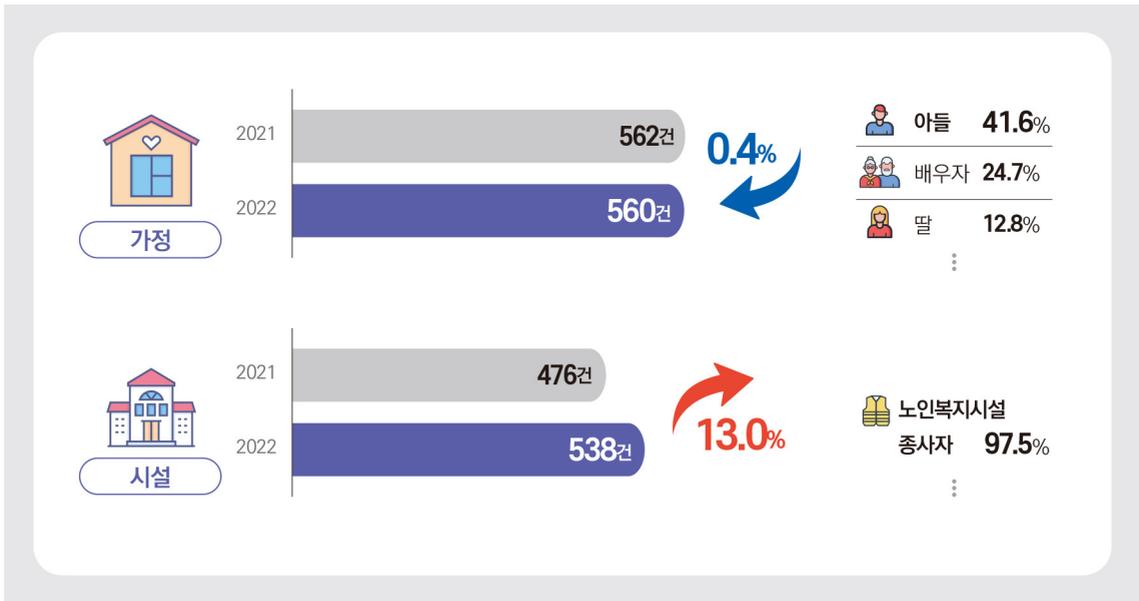


그림 2-15 치매진단 노인학대 발생장소 및 행위자 유형

09 | 시설 노인학대 현황

🔍 (시설학대) 714명, 전년 대비 14.6% 증가('21년 623명 → '22년 714명)

- 남성: 204명(28.6%) / 여성: 510명(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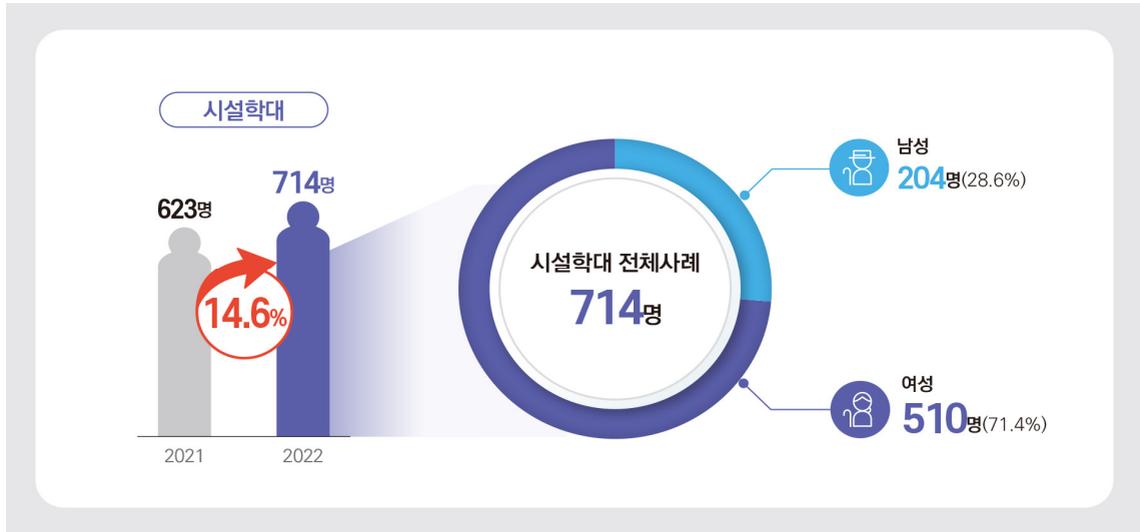


그림 2-16 시설 노인학대 현황

🔍 (신고자유형) 신고의무자 467명(65.4%), 비신고의무자 247명(34.6%)

- (신고의무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23.8%),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21.0%) 등

- (비신고의무자) 친족(19.0%),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8.8%)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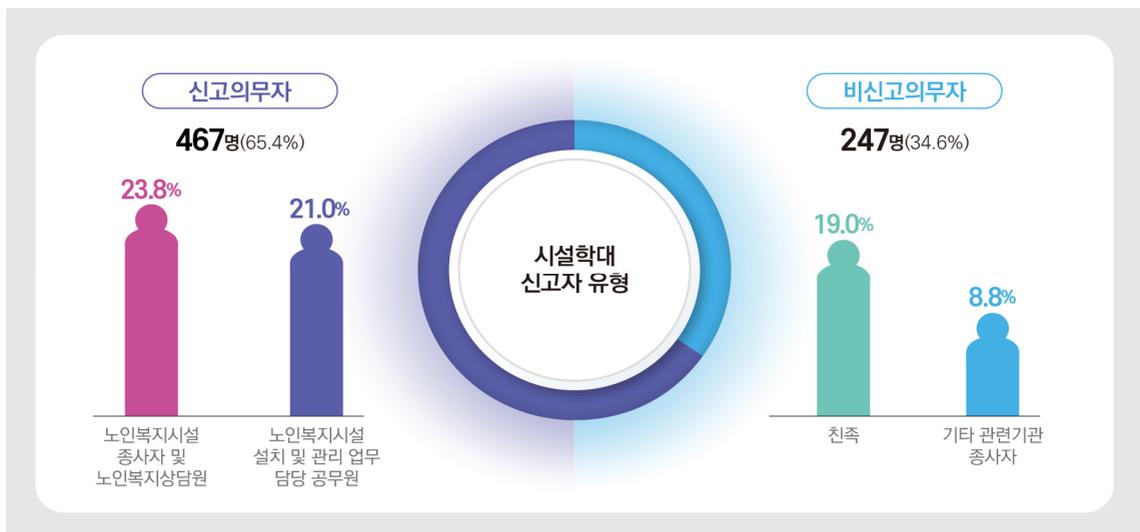


그림 2-17 시설 노인학대 신고자유형

10 | 재학대 현황

🔍 (재학대) 817건, 전년 대비 10.6% 증가('21년 739건 → '22년 817건)

- 남성: 150명(18.4%) / 여성: 667명(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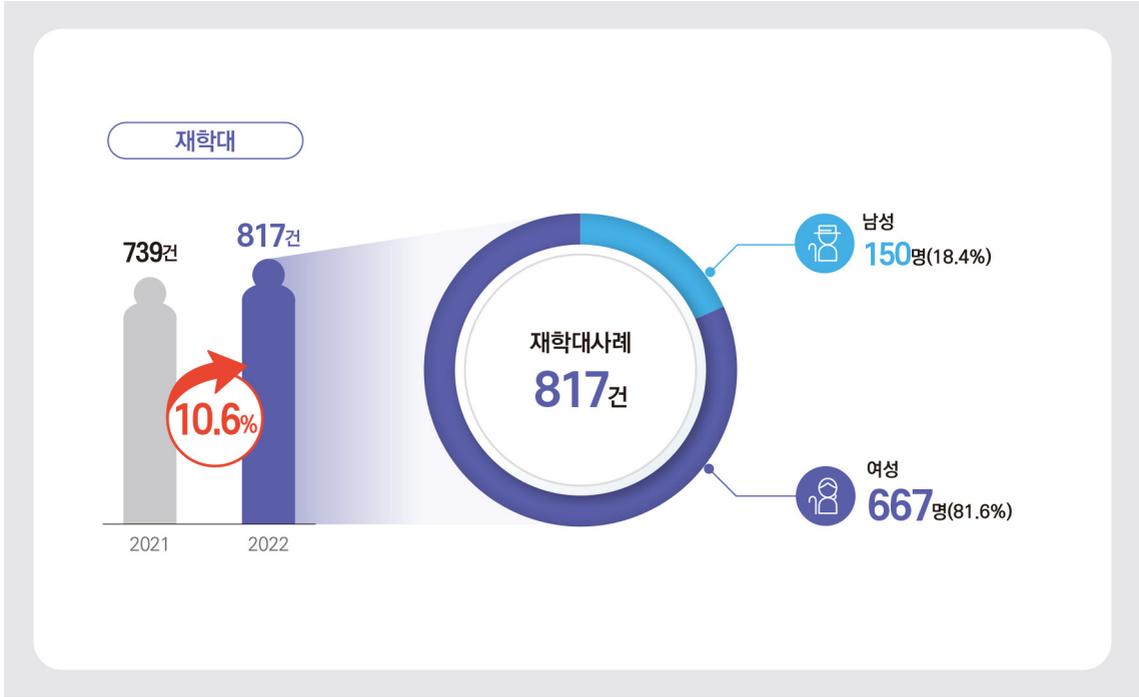


그림 2-18 재학대 현황

🔍 (신고자 유형) 신고의무자 83명(10.2%), 비신고의무자 734명(89.8%)

- (비신고의무자) 경찰(69.5%), 피해자 본인(7.5%) 등

- (신고의무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3.1%), 사회복지전담공무원(2.2%)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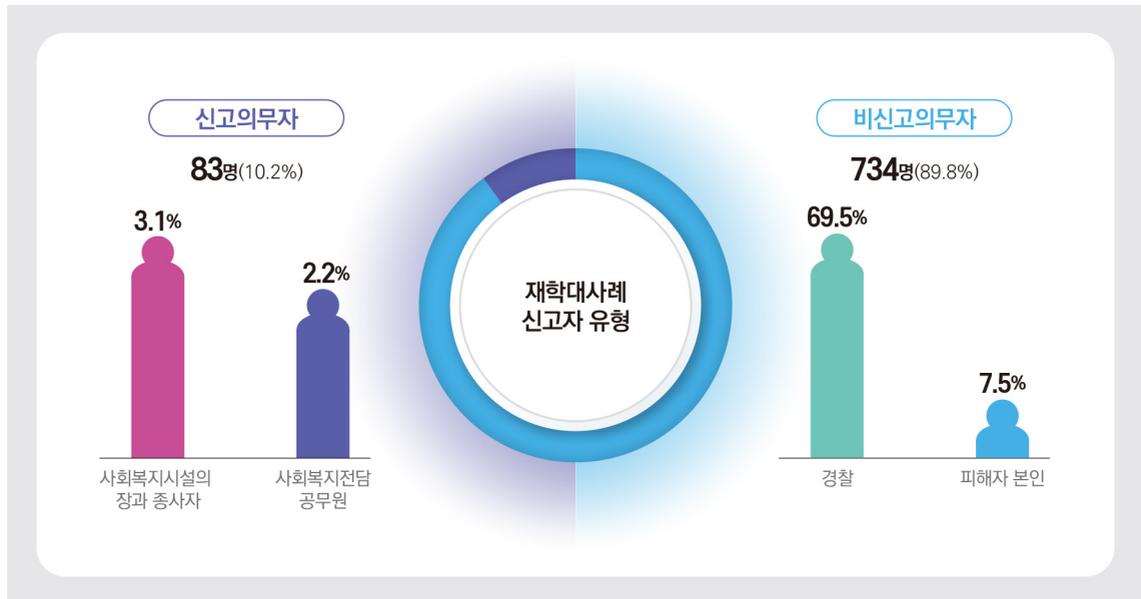


그림 2-19 재학대 신고자유형

🔍 (학대발생장소)

- (가정) 전년 대비 **12.2% 증가**(’21년 716건(96.9%) → ’22년 803건(98.3%))
- (시설) 전년 대비 **100% 증가**(’21년 2건(0.3%) → ’22년 4건(0.5%))

🔍 (학대행위자)

- (가정) 아들(42.4%), 배우자(40.9%), 딸(8.1%) 등
- (시설) 노인복지시설종사자(87.5%), 의료인(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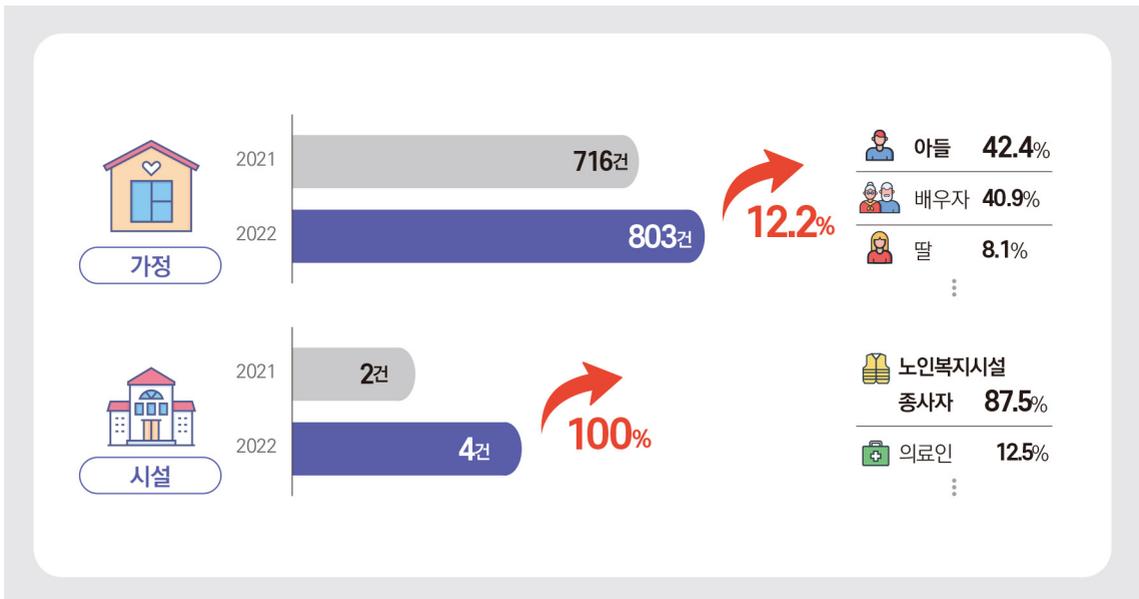


그림 2-20 재학대 발생장소 및 행위자 유형



PART 03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

(2013~2022년)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PART

3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 (2013~2022년)

01 |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표 3-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일반 사례	6,642	7,037	8,087	7,729	8,687	10,294	10,828	10,714	12,617	12,745
증감률	65.4	66.6	67.9	64.4	65.3	66.5	67.4	63.1	65.1	65.2
학대 사례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6,807
증감률	34.6	33.4	32.1	35.6	34.7	33.5	32.6	36.9	34.9	34.8
전체 사례	10,162	10,569	11,905	12,009	13,309	15,482	16,071	16,973	19,391	19,552
증감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증감률	8.8	4.0	12.6	0.9	10.8	16.3	3.8	5.6	14.2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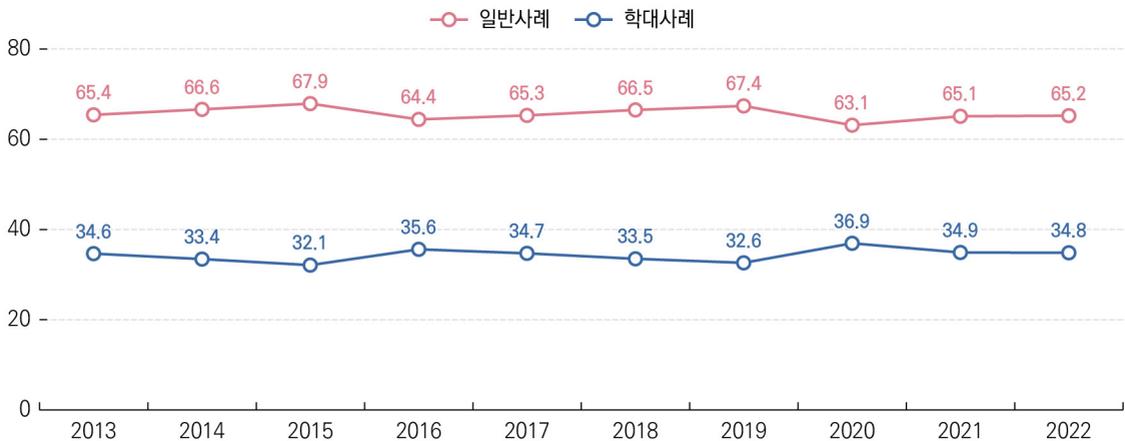


그림 3-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비율 추이

02 | 연도별 신고자 유형

표 3-2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신 고 의 무 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43	42	44	27	20	26	24	35	23	18
		1.2	1.2	1.2	0.6	0.4	0.5	0.5	0.6	0.3	0.3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	-	-	9	12	21	20	11	20
		-	-	-	-	0.2	0.2	0.4	0.3	0.2	0.3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207	182	178	168	153	194	225	267	246	298
		5.9	5.2	4.7	3.9	3.3	3.7	4.3	4.3	3.6	4.4
	장애 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5	16	2	2	1	3	4	4	6
		-	0.1	0.4	0.0	0.0	0.0	0.1	0.1	0.1	0.1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66	85	101	79	105	72	83	92	70	59
		1.9	2.4	2.6	1.8	2.3	1.4	1.6	1.5	1.0	0.9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263	322	290	382	283	398	375	246	326	211
		7.5	9.1	7.6	8.9	6.1	7.7	7.2	3.9	4.8	3.1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24	17	31	44	18	12	17	25	10	9
		0.7	0.5	0.8	1.0	0.4	0.2	0.3	0.4	0.1	0.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6	46	38	45	34	29	24	116	45	42
		1.0	1.3	1.0	1.1	0.7	0.6	0.5	1.9	0.7	0.6
	119 구급대의 대원	6	8	9	3	5	2	2	5	1	1
		0.2	0.2	0.2	0.1	0.1	0.0	0.0	0.1	0.0	0.0
	건강가정지원 센터의 장과 종사자	-	2	-	1	2	-	-	-	1	1
		-	0.1	-	0.0	0.0	-	-	-	0.0	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	-	-	-	1	1	-	-	-	
	-	-	-	-	-	0.0	0.0	-	-	-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	-	-	4	5	9	5	7	6	
	-	-	-	-	0.1	0.1	0.2	0.1	0.1	0.1	
응급구조사	-	-	-	-	-	-	-	1	-	-	
	-	-	-	-	-	-	-	0.0	-	-	
의료기사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및 요양직 직원	-	-	-	-	-	5	66	89	25	29	
	-	-	-	-	-	0.1	1.3	1.4	0.4	0.4	

12) 관련기관에는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22.3.22. 이전 기준),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됨.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역보건의료 기관의 장과 종사자	지역보건의료 기관의 장과 종사자	-	-	-	-	-	5	9	8	8	9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	-	-	-	5	18	26	83	155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	-	-	-	-	-	-	-	-	261
		-	-	-	-	-	-	-	-	-	3.8
	소계	645	709	707	751	635	767	877	939	860	1,125
		18.3	20.1	18.5	17.5	13.7	14.8	16.7	15.0	12.7	16.5
비 신 고 의 무 자	학대피해노인 본인	842	777	722	582	431	387	358	450	361	334
		23.9	22.0	18.9	13.6	9.3	7.5	6.8	7.2	5.3	4.9
	학대행위자 본인	7	10	8	4	6	4	5	6	8	4
		0.2	0.3	0.2	0.1	0.1	0.1	0.1	0.1	0.1	0.1
	친족	592	519	567	500	407	472	386	531	549	507
		16.8	14.7	14.9	11.7	8.8	9.1	7.4	8.5	8.1	7.4
	타인	292	300	320	236	755	156	259	216	197	118
		8.3	8.5	8.4	5.5	16.3	3.0	4.9	3.5	2.9	1.7
	관련기관 ¹²⁾	1,142	1,217	1,494	2,207	2,388	3,402	3,358	4,117	4,799	4,719
		32.4	34.5	39.1	51.6	51.7	65.6	64.0	65.8	70.8	69.3
	소계	2,875	2,823	3,111	3,529	3,987	4,421	4,366	5,320	5,914	5,682
		81.7	79.9	81.5	82.5	86.3	85.2	83.3	85.0	87.3	83.5
계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6,80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경우, 「노인복지법」 개정(’21.12.21.)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분류되어 시행일 기준으로 노인학대 현황을 적용함(시행: ’22.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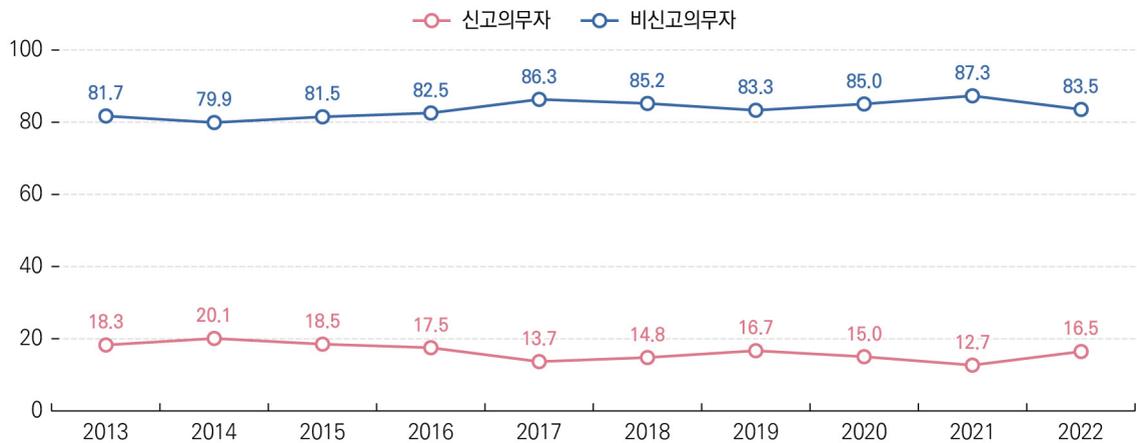


그림 3-2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 비율 추이

03 |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표 3-3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현장조사 실시	3,189	3,302	3,659	3,971	4,443	4,965	5,084	6,152	6,696	6,703
현장조사 미실시	331	230	159	476	179	223	159	107	78	104
계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6,80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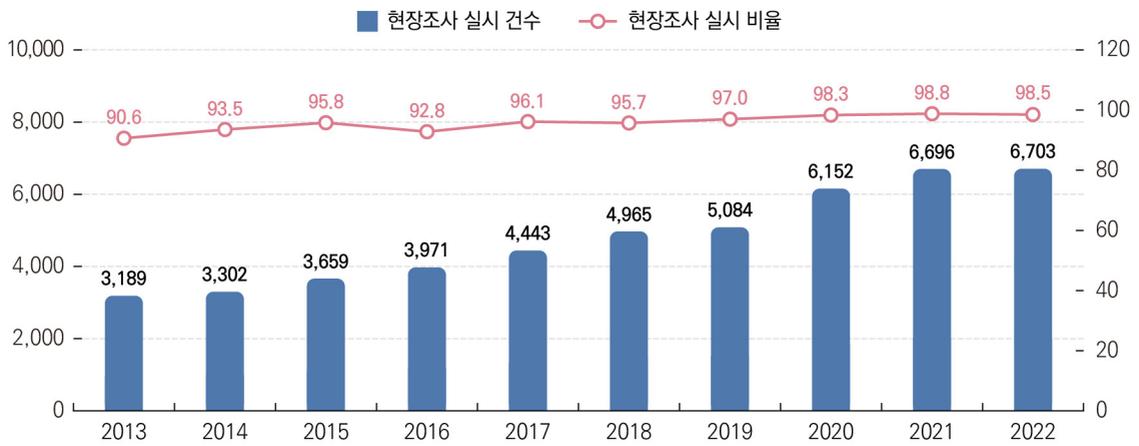


그림 3-3 연도별 현장조사 건수 및 비율 추이

04 |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표 3-4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응급	258	184	251	159	165	105	104	165	142	170
	7.3	5.2	6.6	3.7	3.6	2.0	2.0	2.6	2.1	2.5
비응급	2,288	2,211	2,271	2,472	2,803	3,221	3,322	3,923	4,445	4,157
	65.0	62.6	59.5	57.8	60.6	62.1	63.4	62.7	65.6	61.1
잠재	974	1,137	1,296	1,649	1,654	1,862	1,817	2,171	2,187	2,480
	27.7	32.2	33.9	38.5	35.8	35.9	34.7	34.7	32.3	36.4
계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6,80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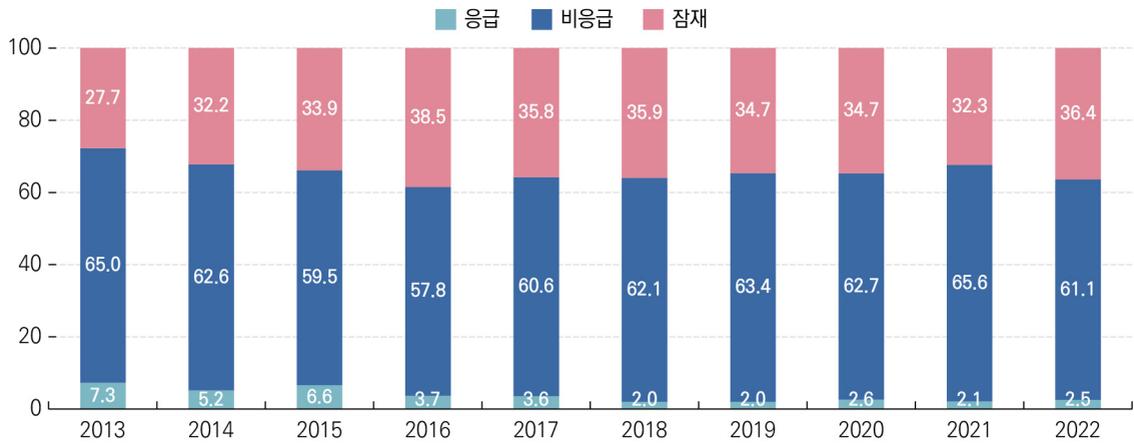


그림 3-4 연도별 사례판정 비율 추이

05 | 연도별 재학대 건수

표 3-5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학대사례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6,807	
재학대	건수	212	208	229	249	359	488	500	614	739	817
	비율	6.0	5.9	6.0	5.8	7.8	9.4	9.5	9.8	10.9	12.0
증감률	-28.9	-1.9	10.1	8.7	44.2	35.9	2.5	22.8	20.4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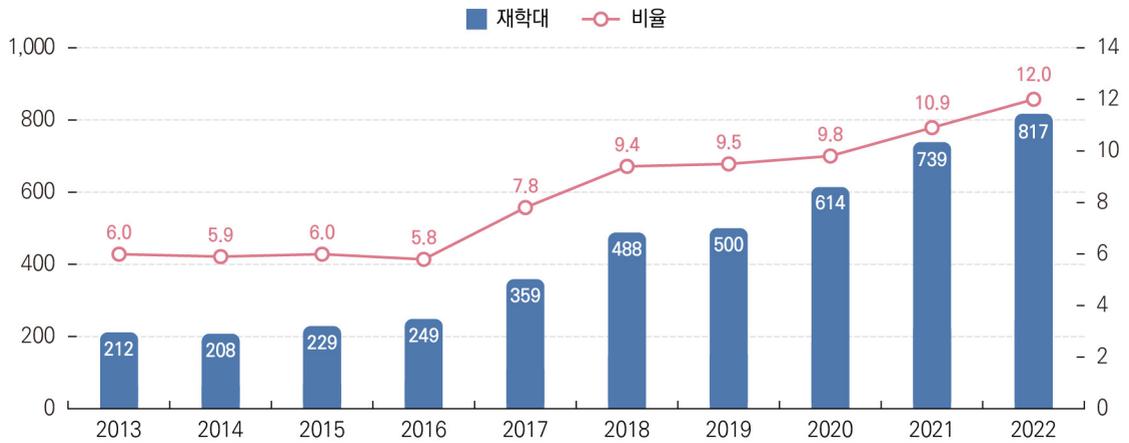


그림 3-5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추이

06 | 연도별 학대유형 건수

표 3-6 연도별 학대유형 건수

(단위: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신체적 학대	1,430	1,426	1,591	2,132	2,651	3,046	3,138	3,917	4,390	4,431
	24.5	24.7	25.9	31.3	36.4	37.3	38.1	40.0	41.3	42.0
정서적 학대	2,235	2,169	2,330	2,730	3,064	3,508	3,465	4,188	4,627	4,561
	38.3	37.6	37.9	40.1	42.0	42.9	42.1	42.7	43.6	43.3
성적 학대	90	131	102	91	150	228	218	231	260	259
	1.5	2.3	1.7	1.3	2.1	2.8	2.6	2.4	2.4	2.5
경제적 학대	526	521	542	491	411	381	426	431	406	397
	9.0	9.0	8.8	7.2	5.6	4.7	5.2	4.4	3.8	3.8
방임	1,087	984	919	778	649	718	741	760	691	689
	18.6	17.0	14.9	11.4	8.9	8.8	9.0	7.8	6.5	6.5
자기방임	375	463	622	523	291	240	200	223	204	169
	6.4	8.0	10.1	7.7	4.0	2.9	2.4	2.3	1.9	1.6
유기	89	78	48	66	71	55	41	53	46	36
	1.5	1.4	0.8	1.0	1.0	0.7	0.5	0.5	0.4	0.3
계	5,832	5,772	6,154	6,811	7,287	8,176	8,229	9,803	10,624	10,54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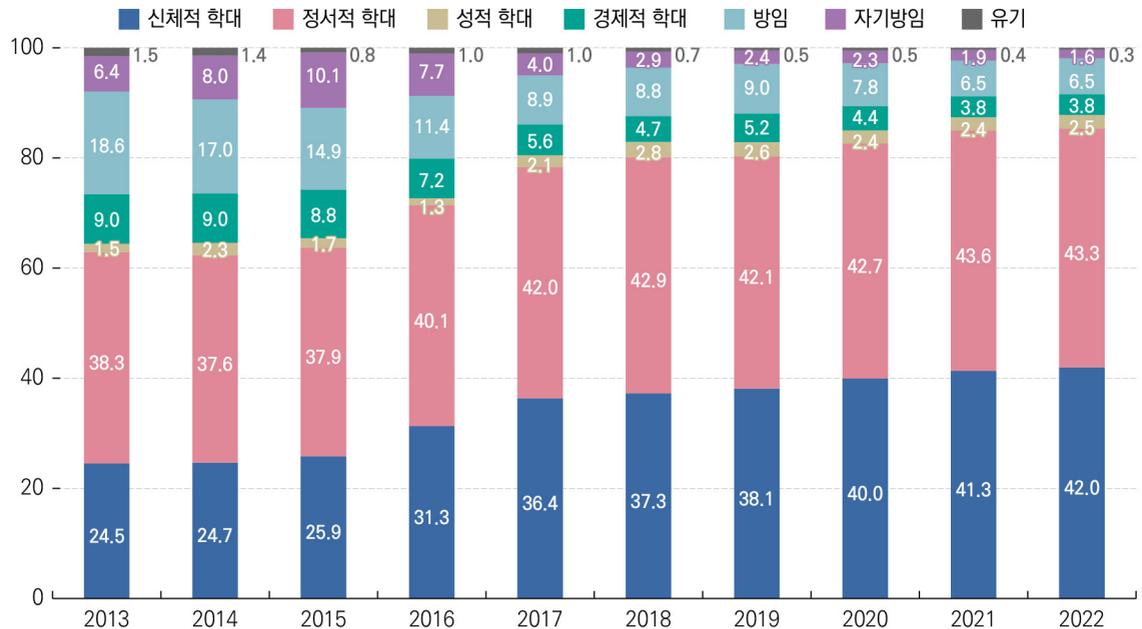


그림 3-6 연도별 학대유형 비율 추이

07 |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표 3-7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가정 내	2,925	2,983	3,276	3,799	4,129	4,616	4,450	5,505	5,962	5,867
	83.1	84.5	85.8	88.8	89.3	89.0	84.9	88.0	88.0	86.2
생활 시설	251	246	206	238	327	380	486	521	536	662
	7.1	7.0	5.4	5.6	7.1	7.3	9.3	8.3	7.9	9.7
이용 시설	42	44	57	16	16	41	131	92	87	52
	1.2	1.2	1.5	0.4	0.3	0.8	2.5	1.5	1.3	0.8
병원	107	100	88	24	27	65	45	37	62	86
	3.0	2.8	2.3	0.6	0.6	1.3	0.9	0.6	0.9	1.3
공공 장소	86	74	80	94	58	42	60	39	54	51
	2.4	2.1	2.1	2.2	1.3	0.8	1.1	0.6	0.8	0.7
기타	109	85	111	109	65	44	71	65	73	89
	3.1	2.4	2.9	2.5	1.4	0.8	1.4	1.0	1.1	1.3
계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6,80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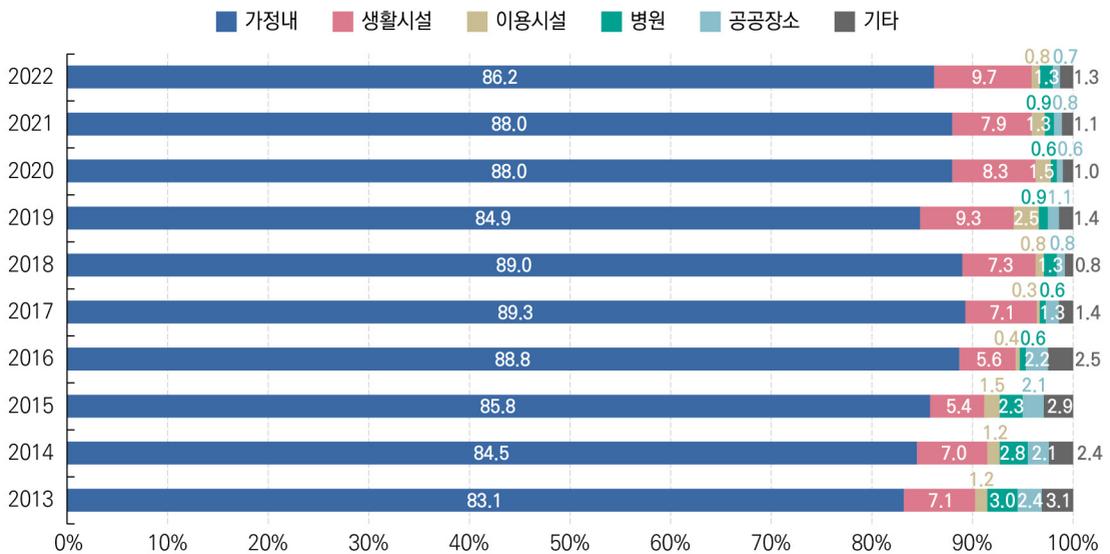


그림 3-7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08 |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표 3-8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및 비율

(단위: 회,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일반 상담	11,177	10,860	13,462	16,464	22,326	25,793	30,128	32,003	41,067	44,482
증감률	14.1	13.1	14.7	16.6	20.1	20.2	21.5	17.5	20.5	21.8
증감률	7.7	-2.8	24.0	22.3	35.6	15.5	16.8	6.2	28.3	8.3
학대 상담	68,280	71,889	78,368	82,468	88,919	102,172	110,226	150,846	159,446	159,402
증감률	85.9	86.9	85.3	83.4	79.9	79.8	78.5	82.5	79.5	78.2
증감률	4.6	5.3	9.0	5.2	7.8	14.9	7.9	36.9	5.7	-0.03
계	79,457	82,749	91,830	98,932	111,245	127,965	140,354	182,849	200,513	203,884
증감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증감률	5.0	4.1	11.0	7.7	12.4	15.0	9.7	30.3	9.7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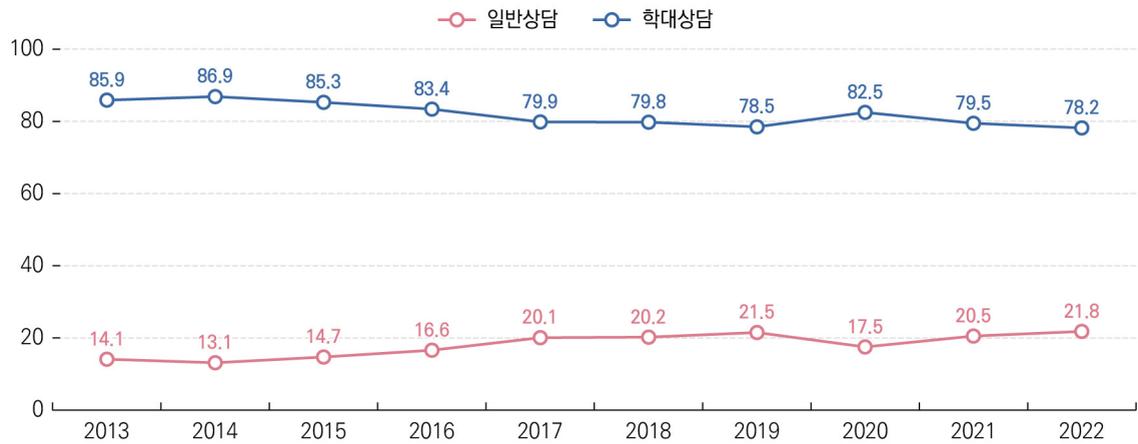


그림 3-8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비율 추이

09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표 3-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단위: 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9세 이하	12	9	3	5	4	-	-	-	-	-
	0.3	0.3	0.1	0.1	0.1	-	-	-	-	-
60~64세	189	191	204	213	141	-	-	-	-	-
	5.4	5.4	5.3	5.0	3.1	-	-	-	-	-
65~69세	462	452	524	589	740	819	919	1,240	1,428	1,467
	13.1	12.8	13.7	13.8	16.0	15.8	17.5	19.8	21.1	21.6
70~74세	728	654	771	852	969	1,193	1,189	1,385	1,505	1,439
	20.7	18.5	20.2	19.9	21.0	23.0	22.7	22.1	22.2	21.1
75~79세	753	846	865	978	1,071	1,250	1,157	1,339	1,394	1,371
	21.4	24.0	22.7	22.9	23.2	24.1	22.1	21.4	20.6	20.1
80~84세	712	716	770	881	900	1,020	1,031	1,218	1,269	1,272
	20.2	20.3	20.2	20.6	19.5	19.7	19.7	19.5	18.7	18.7
85~89세	420	421	456	499	525	588	586	690	769	804
	11.9	11.9	11.9	11.7	11.4	11.3	11.2	11.0	11.4	11.8
90~94세	193	191	163	206	204	245	289	283	308	337
	5.5	5.4	4.3	4.8	4.4	4.7	5.5	4.5	4.5	5.0
95~99세	42	46	56	53	58	61	63	92	92	103
	1.2	1.3	1.5	1.2	1.3	1.2	1.2	1.5	1.4	1.5
100세 이상	9	6	6	4	10	12	9	12	9	14
	0.3	0.2	0.2	0.1	0.2	0.2	0.2	0.2	0.1	0.2
계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6,80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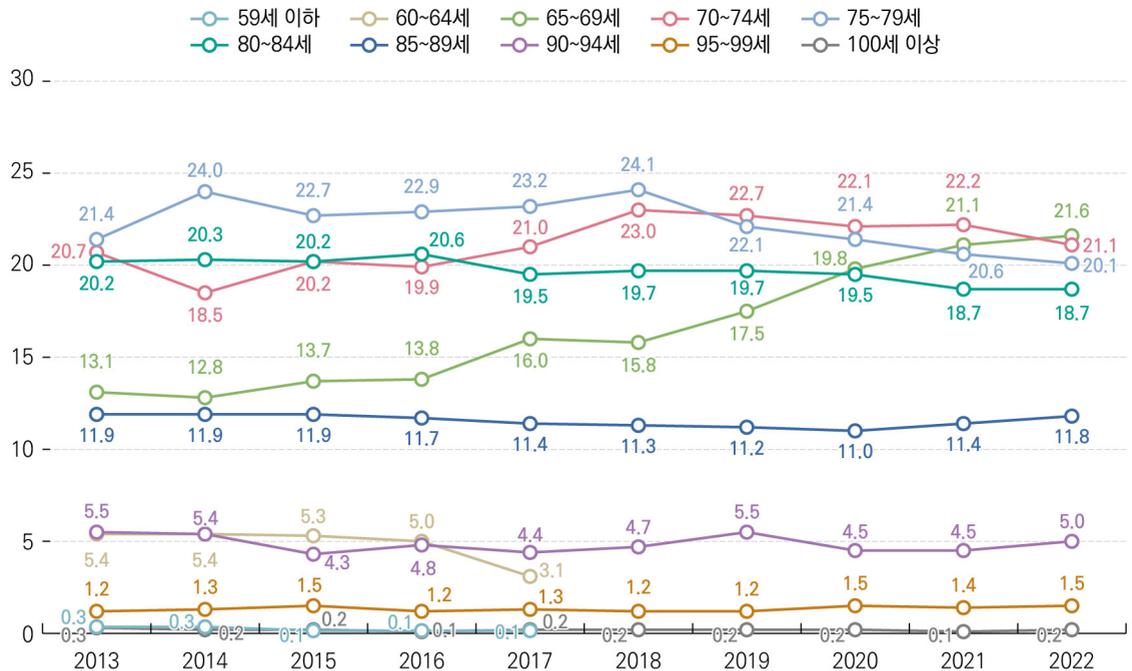


그림 3-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비율 추이

10 |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표 3-10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단위: 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0~19세	31	12	18	33	46	50	42	62	67	65
	0.8	0.3	0.4	0.7	0.9	0.9	0.7	0.9	0.8	0.9
20~29세	75	63	46	76	115	105	81	117	138	138
	1.9	1.6	1.1	1.6	2.3	1.9	1.4	1.7	1.6	1.8
30~39세	310	347	372	296	325	318	306	389	405	394
	7.7	9.0	8.8	6.4	6.4	5.6	5.3	5.8	4.8	5.3
40~49세	1,022	911	870	1,040	1,150	1,253	1,184	1,352	1,393	1,269
	25.5	23.5	20.6	22.4	22.5	22.1	20.5	20.2	16.5	16.9
50~59세	1,201	981	1,156	1,166	1,275	1,414	1,465	1,634	2,486	1,763
	29.9	25.3	27.4	25.1	25.0	25.0	25.4	24.4	29.5	23.5
60~69세	580	602	622	687	827	824	940	1,110	1,557	1,407
	14.5	15.5	14.7	14.8	16.2	14.5	16.3	16.6	18.5	18.8
70세 이상	794	960	1,140	1,339	1,363	1,701	1,759	2,034	2,377	2,458
	19.8	24.8	27.0	28.9	26.7	30.0	30.4	30.4	28.2	32.8
계	4,013	3,876	4,224	4,637	5,101	5,665	5,777	6,698	8,423	7,49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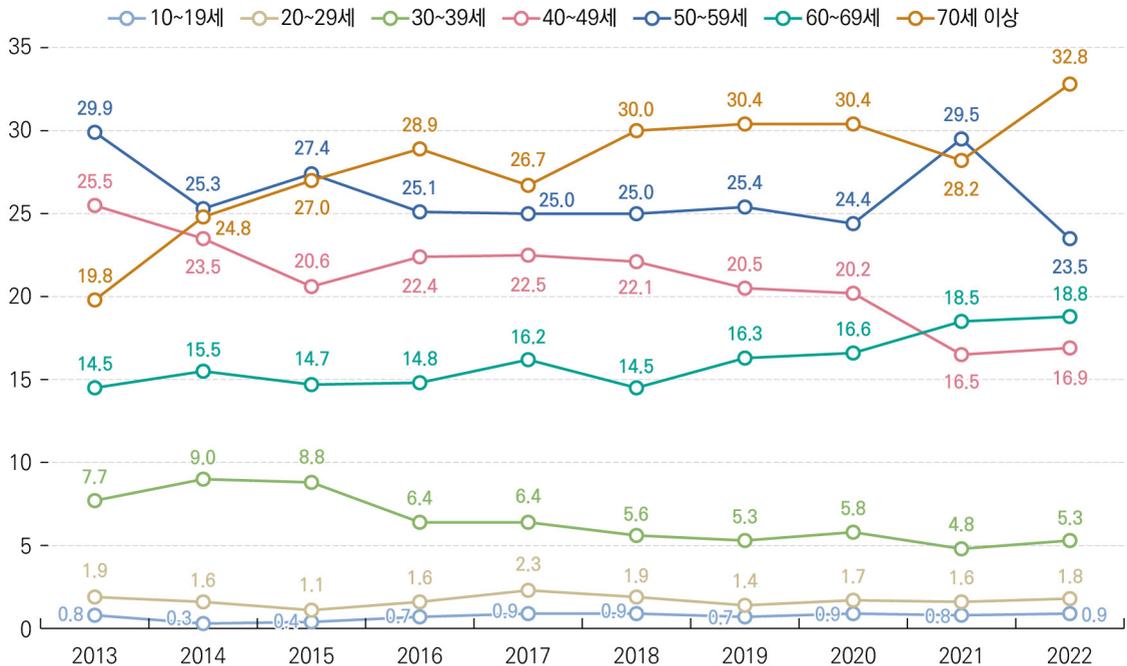


그림 3-10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비율 추이

11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표 3-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노인 독거	1,141	1,172	1,318	1,140	1,007	999	1,039	1,073	1,195	1,127
	32.4	33.2	34.5	26.6	21.8	19.3	19.8	17.1	17.6	16.6
노인 부부	635	701	808	1,023	1,216	1,512	1,669	2,046	2,332	2,467
	18.0	19.8	21.2	23.9	26.3	29.1	31.8	32.7	34.4	36.2
자녀 동거	937	932	1,021	1,328	1,536	1,738	1,588	2,060	2,111	2,034
	26.6	26.4	26.7	31.0	33.2	33.5	30.3	32.9	31.2	29.9
손자녀 동거	137	123	139	154	178	187	182	199	217	205
	3.9	3.5	3.6	3.6	3.9	3.6	3.5	3.2	3.2	3.0
자녀· 손자녀 동거	291	244	185	234	245	252	195	253	235	228
	8.3	6.9	4.8	5.5	5.3	4.9	3.7	4.0	3.5	3.3
기타	379	360	347	401	440	500	570	628	684	746
	10.8	10.2	9.1	9.4	9.5	9.6	10.9	10.0	10.1	11.0
계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6,80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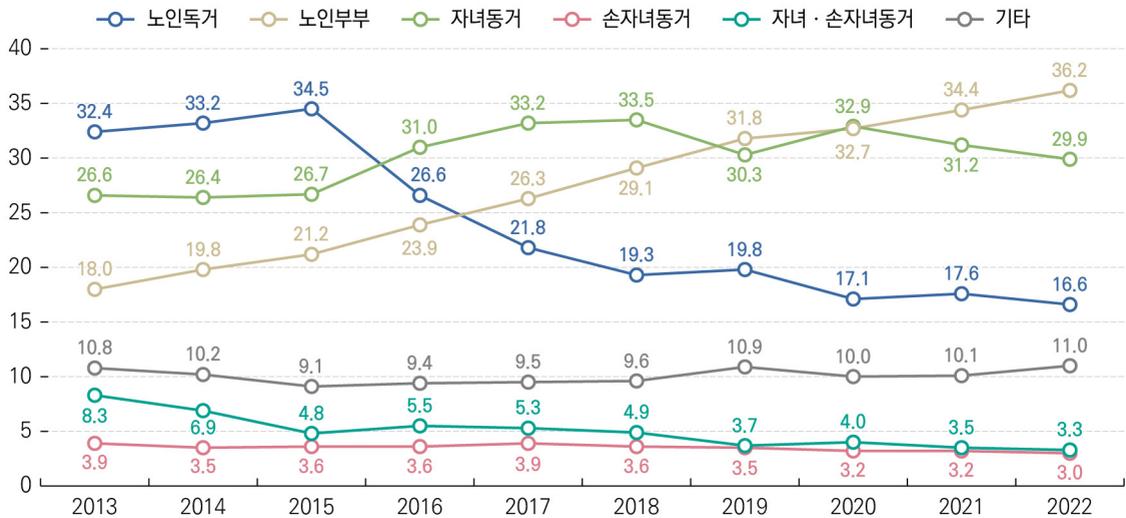


그림 3-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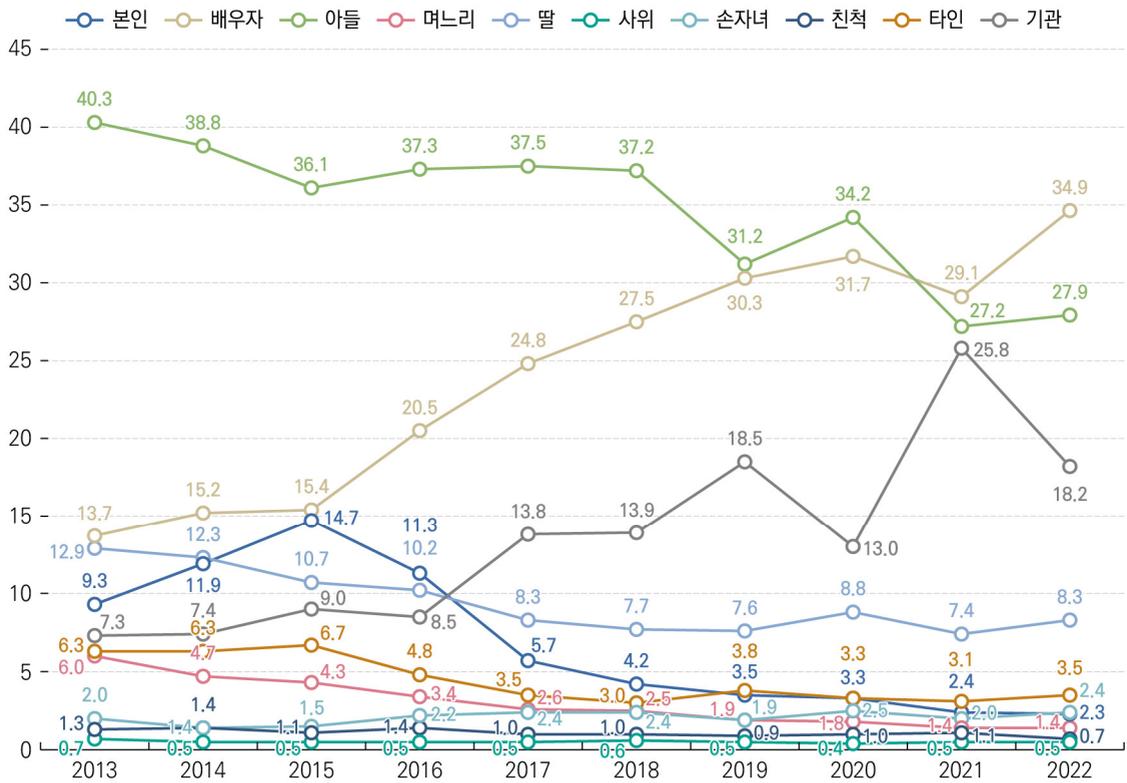


그림 3-1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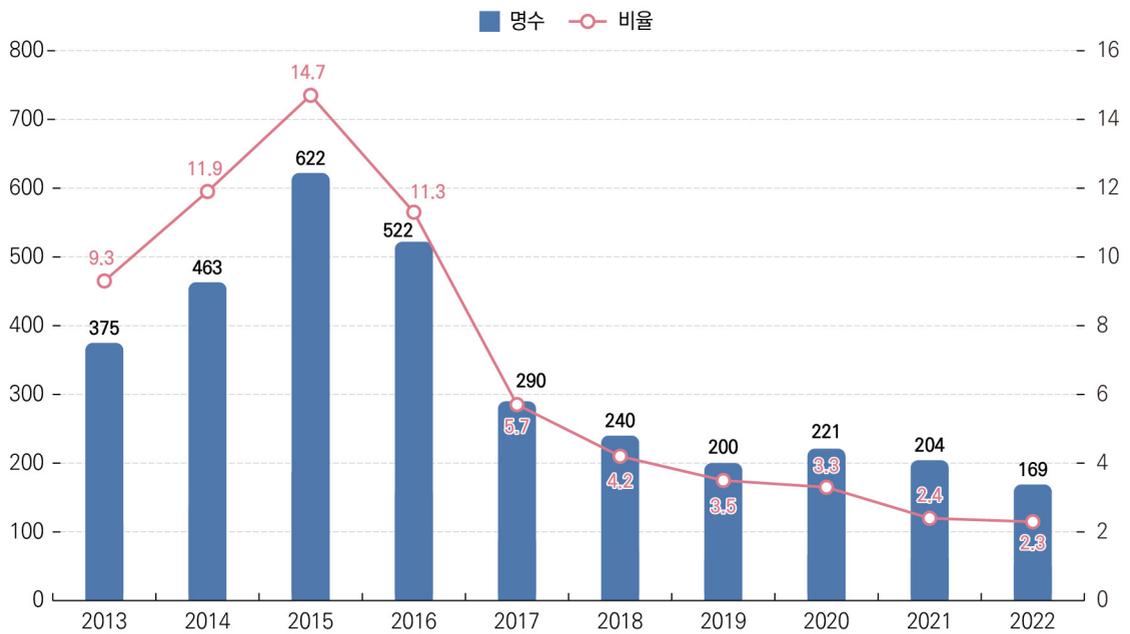


그림 3-13 연도별 학대행위자 본인 추이

13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표 3-13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78	758	870	871	785	851	810	992	1,165	1,157
전체 학대피해노인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6,8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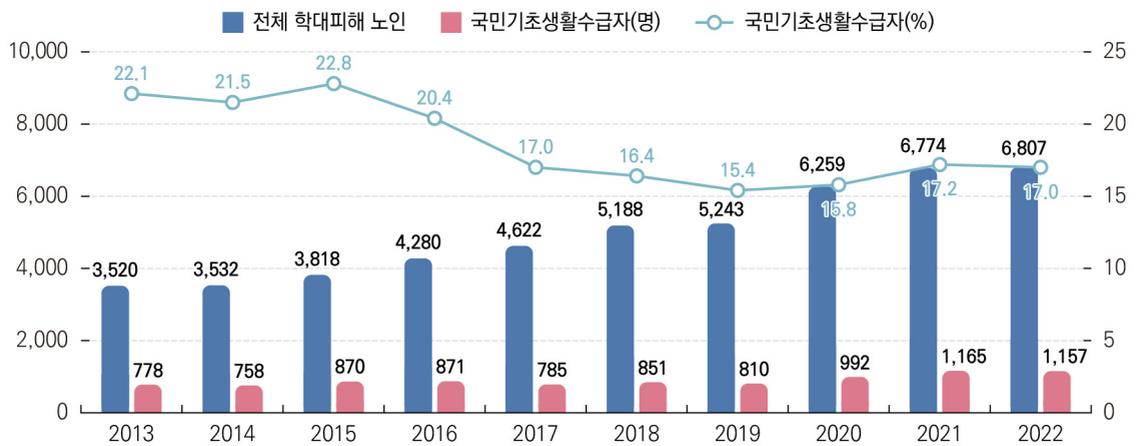


그림 3-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14 |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표 3-14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49	445	546	947	575	591	544	719	799	786
	11.2	11.5	12.9	20.4	11.3	10.4	9.4	10.7	9.5	10.5
전체 학대행위자	4,013	3,876	4,224	4,637	5,101	5,665	5,777	6,698	8,423	7,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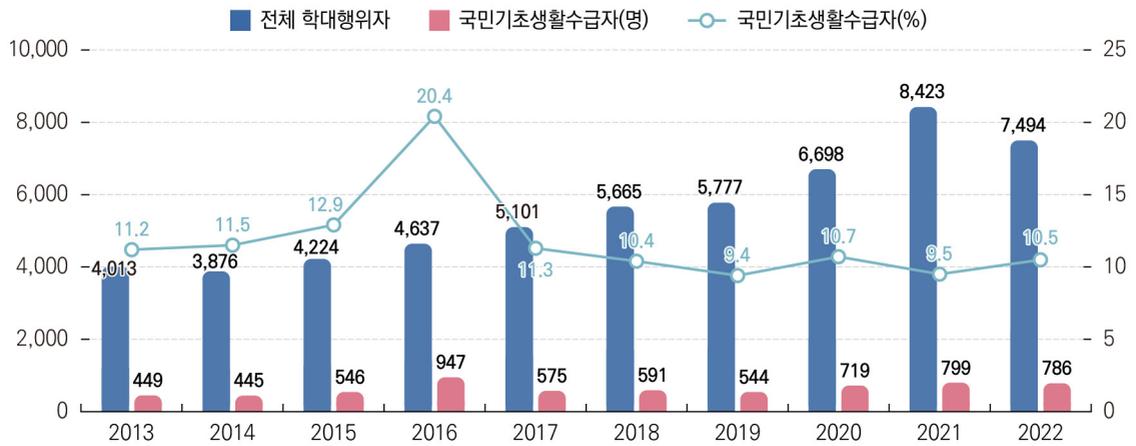


그림 3-15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표 3-15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 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학대사례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6,807	
치매 정도	치매 의심	459	488	561	593	488	507	550	608	607	597
	치매 진단	372	461	469	521	634	700	831	927	1,092	1,170
	계	831	949	1,030	1,114	1,122	1,207	1,381	1,535	1,699	1,767
학대사례 대비 치매의심 및 진단사례 비율	23.6	26.9	27.0	26.0	24.3	23.3	26.3	24.5	25.1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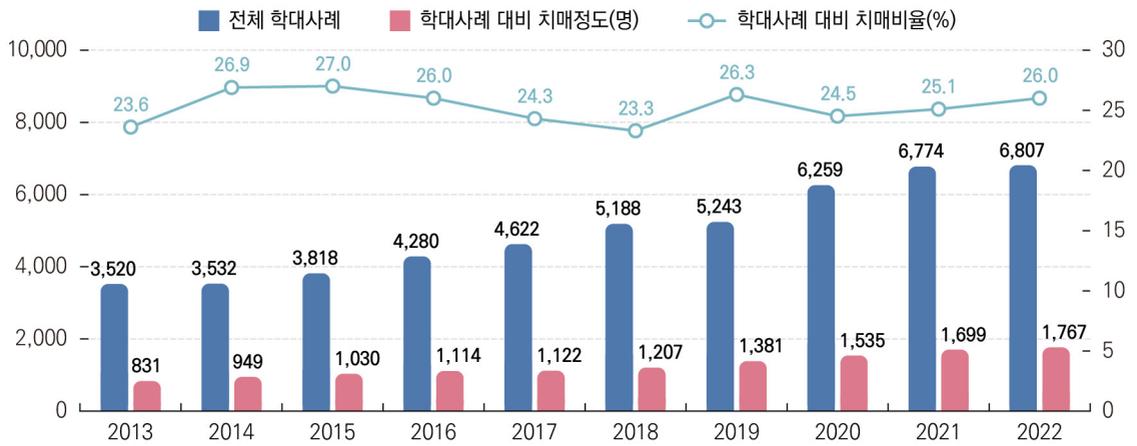


그림 3-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 추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PART 04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PART
4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01 | 노인학대 신고접수

1) 전체 신고접수

표 4-1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분	전체 신고접수			학대사례 대비 재학대 사례
	학대사례	일반사례	전체	
건수	6,807	12,745	19,552	817
비율	34.8	65.2	100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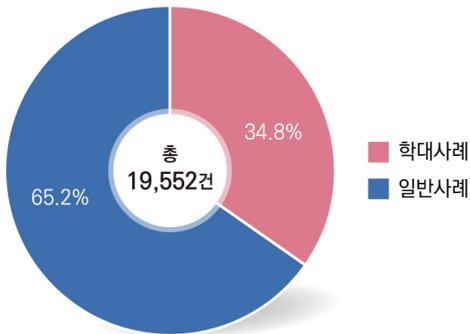


그림 4-1 전체 신고건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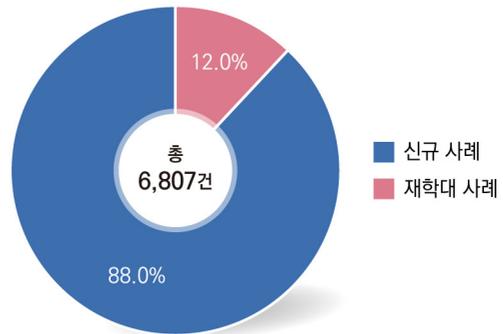


그림 4-2 학대사례 건수 대비 재학대 건수 비율

표 4-2 월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분	학대사례		일반사례		전체사례	
1월	504	7.4	934	7.3	1,438	7.4
2월	471	6.9	659	5.2	1,130	5.8
3월	588	8.6	766	6.0	1,354	6.9
4월	556	8.2	911	7.1	1,467	7.5
5월	588	8.6	1,232	9.7	1,820	9.3
6월	573	8.4	1,097	8.6	1,670	8.5
7월	663	9.7	1,221	9.6	1,884	9.6
8월	628	9.2	1,188	9.3	1,816	9.3
9월	627	9.2	1,076	8.4	1,703	8.7
10월	510	7.5	1,297	10.2	1,807	9.2
11월	599	8.8	1,619	12.7	2,218	11.3
12월	500	7.3	745	5.8	1,245	6.4
계	6,807	100	12,745	100	19,55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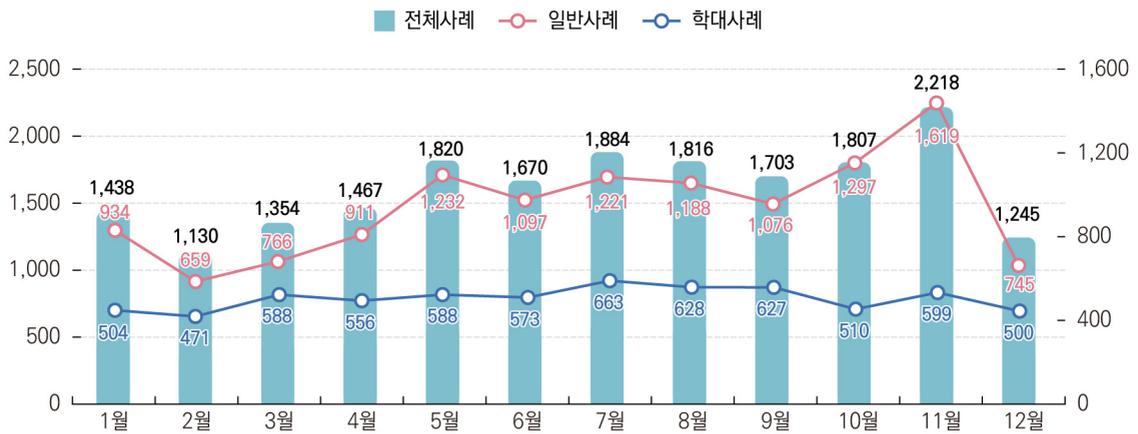


그림 4-3 월별 신고접수 건수 추이

2)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표 4-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학대사례		일반사례		계	
서울	서울남부	147	20.2	580	79.8	727	100
	서울북부	118	19.2	496	80.8	614	100
	서울서부	164	28.3	416	71.7	580	100
	서울동부	187	36.3	328	63.7	515	100
	소계	616	25.0	1,820	75.0	2,436	100
부산	부산동부	318	46.4	368	53.6	686	100
	부산서부	238	42.9	317	57.1	555	100
	소계	556	45.0	685	55.0	1,241	100
대구	대구남부	169	35.1	313	64.9	482	100
	대구북부	115	28.3	291	71.7	406	100
	소계	284	32.0	604	68.0	888	100
인천	인천	245	46.6	281	53.4	526	100
	인천서부	213	59.2	147	40.8	360	100
	소계	458	52.0	428	48.0	886	100
광주		167	42.0	231	58.0	398	100
대전		146	21.9	520	78.1	666	100
울산		162	32.0	344	68.0	506	100
경기	경기동부	242	41.6	340	58.4	582	100
	경기북부	470	56.7	359	43.3	829	100
	경기서부	304	51.5	286	48.5	590	100
	경기도	241	41.6	338	58.4	579	100
	경기북서부	312	58.2	224	41.8	536	100
	소계	1,569	50.0	1,547	50.0	3,116	100
강원	강원	183	36.0	325	64.0	508	100
	강원동부	122	22.6	419	77.4	541	100
	강원남부	127	32.2	267	67.8	394	100
	소계	432	30.0	1,011	70.0	1,443	100
충북	충북	98	14.5	580	85.5	678	100
	충북북부	94	26.0	268	74.0	362	100
	소계	192	18.0	848	82.0	1,040	100
충남	충남	202	51.4	191	48.6	393	100
	충남남부	120	53.8	103	46.2	223	100
	소계	322	52.0	294	48.0	616	100
전북	전북	148	47.7	162	52.3	310	100
	전북서부	150	23.8	479	76.2	629	100
	소계	298	32.0	641	68.0	939	100

지역	기관명	학대사례		일반사례		계	
전남	전남동부	152	40.6	222	59.4	374	100
	전남서부	224	39.6	341	60.4	565	100
	소계	376	40.0	563	60.0	939	100
경북	경북동부	170	37.6	282	62.4	452	100
	경북북부	132	24.0	418	76.0	550	100
	경북서부	205	29.2	496	70.8	701	100
	경북남부	101	32.0	215	68.0	316	100
	소계	608	30.0	1,411	70.0	2,019	100
경남	경남	341	37.9	559	62.1	900	100
	경남서부	146	23.5	476	76.5	622	100
	소계	487	32.0	1,035	68.0	1,522	1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79	14.6	463	85.4	542	100
	제주도서귀포시	55	15.5	300	84.5	355	100
	소계	134	15.0	763	85.0	897	100
계		6,807	34.8	12,745	65.2	19,55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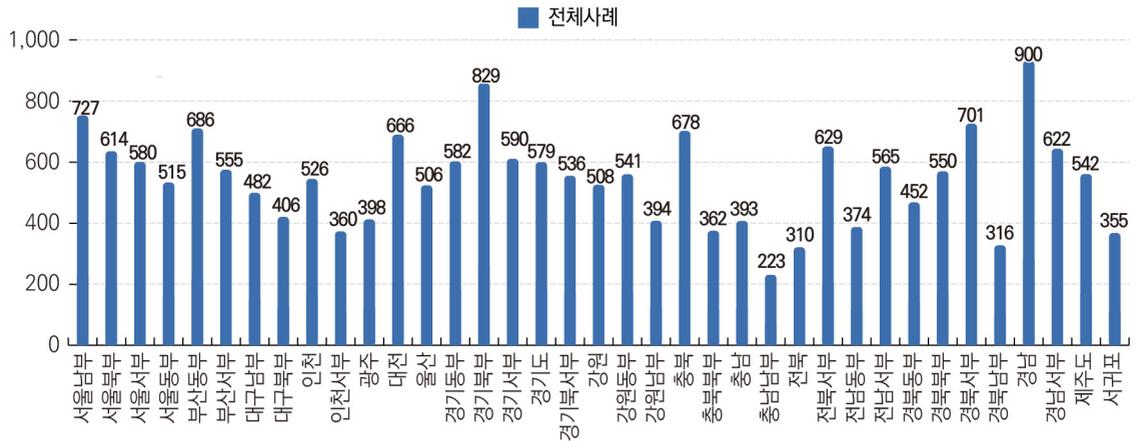


그림 4-4 지역 기관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표 4-4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율

(단위: 명, 건, %)

지역 및 기관명		총인구수 (A)	65세 이상 인구수 (B)	총인구수대비 65세 이상 인구수 (C=B/A×100)	신고접수 건수 (D)	지역별신고 접수율 (노인인구 천명당) (E=D/B×1000)
서울	서울남부	2,801,407	473,578	16.9	727	1.5
	서울북부	1,876,129	366,606	19.5	614	1.7
	서울서부	2,409,584	421,936	17.5	580	1.4
	서울동부	2,341,252	396,087	16.9	515	1.3
	소계	9,428,372	1,658,207	17.6	2,436	1.5
부산	부산동부	1,523,672	337,462	22.1	686	2.0
	부산서부	1,794,140	374,950	20.9	555	1.5
	소계	3,317,812	712,412	21.5	1,241	1.7
대구	대구남부	1,353,223	234,853	17.4	482	2.1
	대구북부	1,010,468	200,845	19.9	406	2.0
	소계	2,363,691	435,698	18.4	888	2.0
인천	인천	1,530,524	243,948	15.9	526	2.2
	인천서부	1,436,790	219,902	15.3	360	1.6
	소계	2,967,314	463,850	15.6	886	1.9
광주		1,431,050	222,970	15.6	398	1.8
대전		1,446,072	232,663	16.1	666	2.9
울산		1,110,663	163,812	14.7	506	3.1
경기	경기동부	2,847,145	457,710	16.1	582	1.3
	경기북부	2,168,120	359,101	16.6	829	2.3
	경기서부	2,643,784	386,872	14.6	590	1.5
	경기도	3,740,658	452,860	12.1	579	1.3
	경기북서부	2,189,725	336,264	15.4	536	1.6
	소계	13,589,432	1,992,807	14.7	3,116	1.6
강원	강원	473,874	104,872	22.1	508	4.8
	강원동부	502,208	122,108	24.3	541	4.4
	강원남부	560,416	122,894	21.9	394	3.2
	소계	1,536,498	349,874	22.8	1,443	4.1
충북	충북	1,098,913	193,431	17.6	678	3.5
	충북북부	496,145	123,508	24.9	362	2.9
	소계	1,595,058	316,939	19.9	1,040	3.3
충남	충남	1,957,143	309,499	15.8	393	1.3
	충남남부	549,485	167,615	30.5	223	1.3
	소계	2,506,628	477,114	19.0	616	1.3
전북	전북	944,475	199,420	21.1	310	1.6
	전북서부	825,132	211,199	25.6	629	3.0
	소계	1,769,607	410,619	23.2	939	2.3

지역 및 기관명		총인구수 (A)	65세 이상 인구수 (B)	총인구수대비 65세 이상 인구수 (C=B/A×100)	신고접수 건수 (D)	지역별신고 접수율 (노인인구 천명당) (E=D/B×1000)
전남	전남동부	1,044,348	250,857	24.0	374	1.5
	전남서부	773,349	206,624	26.7	565	2.7
	소계	1,817,697	457,481	25.2	939	2.1
경북	경북동부	861,228	201,168	23.4	452	2.2
	경북북부	407,461	129,256	31.7	550	4.3
	경북서부	755,196	149,801	19.8	701	4.7
	경북남부	576,607	138,050	23.9	316	2.3
	소계	2,600,492	618,275	23.8	2,019	3.3
경남	경남	2,542,972	441,899	17.4	900	2.0
	경남서부	737,521	196,902	26.7	622	3.2
	소계	3,280,493	638,801	19.5	1,522	2.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493,389	77,364	15.7	542	7.0
	제주도서귀포시	184,770	38,404	20.8	355	9.2
	소계	678,159	115,768	17.1	897	7.7
계		51,439,038	9,267,290	18.0	19,552	2.1

주. 65세 이상 인구수 : 행정안전부 2022년 주민등록 인구통계(2022.1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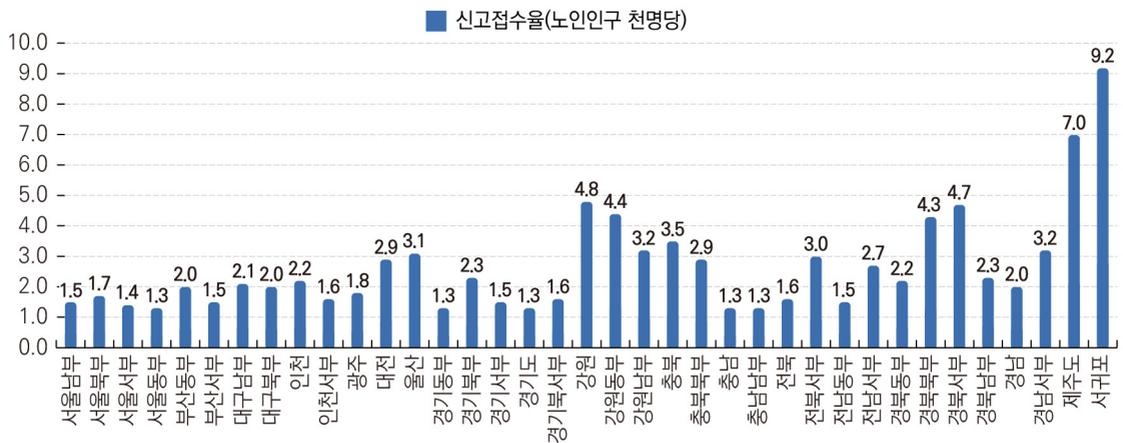


그림 4-5 기관별 노인학대 신고접수율(노인인구 천명당)

3) 시군구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표 4-5 시군구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건수	비율
서울	종로구	10	0.1
	중구	9	0.1
	용산구	26	0.4
	성동구	28	0.4
	광진구	29	0.4
	동대문구	8	0.1
	중랑구	49	0.7
	성북구	16	0.2
	강북구	32	0.5
	도봉구	25	0.4
	노원구	37	0.5
	은평구	36	0.5
	서대문구	18	0.3
	마포구	27	0.4
	양천구	24	0.4
	강서구	40	0.6
	구로구	41	0.6
	금천구	12	0.2
	영등포구	7	0.1
	동작구	32	0.5
	관악구	35	0.5
	서초구	8	0.1
	강남구	12	0.2
	송파구	31	0.5
	강동구	24	0.4
	소계	616	9.0
부산	중구	9	0.1
	서구	27	0.4
	동구	38	0.6
	영도구	39	0.6
	부산진구	62	0.9
	동래구	33	0.5
	남구	51	0.7
	북구	48	0.7
	해운대구	53	0.8
	사하구	60	0.9
	금정구	16	0.2
	강서구	10	0.1
	연제구	33	0.5

구 분		건수	비율
	수영구	18	0.3
	사상구	36	0.5
	기장군	23	0.3
	소계	556	8.2
대구	중구	15	0.2
	동구	46	0.7
	서구	26	0.4
	남구	27	0.4
	북구	29	0.4
	수성구	45	0.7
	달서구	58	0.9
	달성군	38	0.6
	소계	284	4.2
인천	중구	26	0.4
	동구	16	0.2
	미추홀구	74	1.1
	연수구	26	0.4
	남동구	98	1.4
	부평구	80	1.2
	계양구	55	0.8
	서구	55	0.8
	강화군	23	0.3
	옹진군	5	0.1
	소계	458	6.7
광주	동구	24	0.4
	서구	30	0.4
	남구	22	0.3
	북구	62	0.9
	광산구	29	0.4
	소계	167	2.5
대전	동구	28	0.4
	중구	30	0.4
	서구	40	0.6
	유성구	31	0.5
	대덕구	17	0.2
	소계	146	2.1
울산	중구	38	0.6
	남구	49	0.7
	동구	29	0.4
	북구	24	0.4
	울주군	22	0.3
	소계	162	2.4
경기	수원시	96	1.4

구 분		건수	비율
	성남시	95	1.4
	의정부시	118	1.7
	안양시	37	0.5
	부천시	116	1.7
	광명시	41	0.6
	평택시	23	0.3
	동두천시	14	0.2
	안산시	73	1.1
	고양시	170	2.5
	과천시	10	0.1
	구리시	37	0.5
	남양주시	206	3.0
	오산시	18	0.3
	시흥시	60	0.9
	군포시	33	0.5
	의왕시	7	0.1
	하남시	14	0.2
	용인시	84	1.2
	파주시	91	1.3
	이천시	10	0.1
	안성시	11	0.2
	김포시	33	0.5
	화성시	20	0.3
	광주시	32	0.5
	양주시	39	0.6
	포천시	46	0.7
	여주시	12	0.2
	연천군	4	0.1
	가평군	10	0.1
	양평군	9	0.1
소계	1,569	23.0	
강원	춘천시	89	1.3
	원주시	87	1.3
	강릉시	70	1.0
	동해시	6	0.1
	태백시	12	0.2
	속초시	9	0.1
	삼척시	6	0.1
	홍천군	71	1.0
	횡성군	3	0.0
	영월군	5	0.1
	평창군	9	0.1
	정선군	11	0.2

구 분		건수	비율
	철원군	14	0.2
	화천군	1	0.0
	양구군	4	0.1
	인제군	4	0.1
	고성군	5	0.1
	양양군	26	0.4
	소계	432	6.3
충북	청주시	72	1.1
	충주시	37	0.5
	제천시	25	0.4
	보은군	7	0.1
	옥천군	5	0.1
	영동군	-	-
	진천군	10	0.1
	괴산군	6	0.1
	음성군	25	0.4
	단양군	1	0.0
	증평군	3	0.0
	기타*	1	0.0
	소계	192	2.8
충남	천안시	53	0.8
	공주시	33	0.5
	보령시	19	0.3
	아산시	27	0.4
	서산시	31	0.5
	논산시	30	0.4
	계룡시	4	0.1
	당진시	25	0.4
	금산군	12	0.2
	부여군	15	0.2
	서천군	5	0.1
	청양군	1	0.0
	홍성군	5	0.1
	예산군	18	0.3
	태안군	5	0.1
	기타*	1	0.0
소계	284	4.2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38	0.6
	소계	38	0.6
전북	전주시	95	1.4
	군산시	47	0.7
	익산시	39	0.6
	정읍시	30	0.4

구 분		건수	비율
	남원시	13	0.2
	김제시	11	0.2
	완주군	19	0.3
	진안군	2	0.0
	무주군	2	0.0
	장수군	6	0.1
	임실군	8	0.1
	순창군	3	0.0
	고창군	16	0.2
	부안군	7	0.1
	소계	298	4.4
전남	목포시	54	0.8
	여수시	41	0.6
	순천시	37	0.5
	나주시	68	1.0
	광양시	16	0.2
	담양군	11	0.2
	곡성군	6	0.1
	구례군	5	0.1
	고흥군	14	0.2
	보성군	10	0.1
	화순군	6	0.1
	장흥군	1	0.0
	강진군	10	0.1
	해남군	17	0.2
	영암군	5	0.1
	무안군	33	0.5
	함평군	6	0.1
	영광군	12	0.2
	장성군	4	0.1
	완도군	7	0.1
	진도군	5	0.1
신안군	8	0.1	
소계	376	5.5	
경북	포항시	104	1.5
	경주시	48	0.7
	김천시	62	0.9
	안동시	64	0.9
	구미시	78	1.1
	영주시	27	0.4
	영천시	10	0.1
	상주시	28	0.4
	문경시	29	0.4

구 분		건수	비율
	경산시	57	0.8
	군위군	2	0.0
	의성군	13	0.2
	청송군	2	0.0
	영양군	1	0.0
	영덕군	9	0.1
	청도군	15	0.2
	고령군	5	0.1
	성주군	8	0.1
	칠곡군	12	0.2
	예천군	18	0.3
	봉화군	9	0.1
	울진군	7	0.1
	울릉군	-	-
	소계	608	8.9
경남	창원시	115	1.7
	진주시	72	1.1
	통영시	11	0.2
	사천시	16	0.2
	김해시	82	1.2
	밀양시	10	0.1
	거제시	37	0.5
	양산시	72	1.1
	의령군	3	0.0
	함안군	5	0.1
	창녕군	3	0.0
	고성군	6	0.1
	남해군	5	0.1
	하동군	30	0.4
	산청군	3	0.0
	함양군	6	0.1
	거창군	7	0.1
	합천군	4	0.1
	소계	487	7.2
	제주	제주시	79
서귀포시		55	0.8
소계		134	2.0
합계		6,807	100

*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가 아닌 타부양가족의 집에 머무르거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 등이 해당됨.

4) 발생장소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표 4-6 발생장소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 장소	기타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요양병원	일반병원			
응급	147	3	12	-	1	-	-	3	4	170
	86.5	1.8	7.1	-	0.6	-	-	1.8	2.4	100
비응급	3,614	70	327	1	20	40	4	31	50	4,157
	86.9	1.7	7.9	0.0	0.5	1.0	0.1	0.7	1.2	100
잠재적	2,106	10	240	-	30	38	4	17	35	2,480
	84.9	0.4	9.7	-	1.2	1.5	0.2	0.7	1.4	100
계	5,867	83	579	1	51	78	8	51	89	6,807
	86.2	1.2	8.5	0.0	0.7	1.1	0.1	0.7	1.3	100

5) 신고자 유형

표 4-7 신고자 유형 I

(단위: 건,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계
1,125	5,682	6,807
16.5	83.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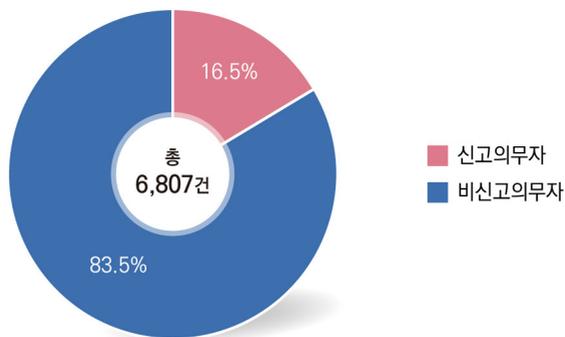


그림 4-6 신고자 유형 I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3. 13., 2018. 12. 11., 2021. 12. 21.>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표 4-8 신고자 유형 II (신고의무자)

(단위: 건, %)

신고의무자																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 요양과 돌봄이나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 복지 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 복지 상담원	장애 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 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기 요양 기관의 장과 종사자	119 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의 장과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의 장과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국민 건강 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 보건 의료 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 복지 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 복지 시설의 장과 종사자 *
18	20	298	6	59	211	9	42	1	1	-	6	-	-	29	9	155	261	1,125
1.6	1.8	26.5	0.5	5.2	18.8	0.8	3.7	0.1	0.1	-	0.5	-	-	2.6	0.8	13.8	23.2	100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경우, 「노인복지법」 개정(‘21.12.21.)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분류되어 시행일 이후 수치임(시행: ’22.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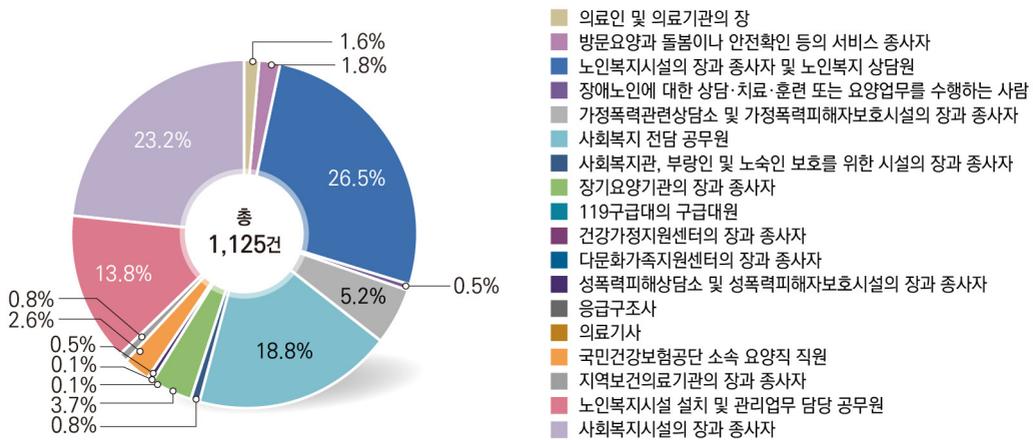


그림 4-7 신고자 유형 II

표 4-9 신고자 유형 III (비신고의무자)

(단위: 건, %)

비신고의무자					계
학대피해노인 본인	학대행위자 본인	친족 ¹³⁾	타인 ¹⁴⁾	관련기관 ¹⁵⁾	
334	4	507	118	4,719	5,682
5.9	0.1	8.9	2.1	83.1	100

13) 친족에는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등이 해당됨.

14) 타인에는 동거인, 이웃, 익명, 친구 등이 해당됨.

15) 관련기관에는 경찰관, 기타 관련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22.3.22. 이전 사례 포함) 등이 해당됨.

6) 신고접수 및 경로 인지 유형

가. 신고접수 경로

표 4-10 신고접수 경로

(단위: 건,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 이관	보건 복지 콜센터 129 이관	여성 긴급 전화 1366	112 이관	건강 보험 공단	경로당	노인 돌봄 서비스 생활 관리사	노인 일자리 사업	시청	의료 기관	자체 접수	정신 건강 복지 센터	타지역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이관	행정 복지 센터	희망 복지 지원단	계
5	44	45	3,891	17	1	27	2	149	16	2,371	13	34	165	27	6,807
0.1	0.6	0.7	57.2	0.2	0.0	0.4	0.0	2.2	0.2	34.8	0.2	0.5	2.4	0.4	100

나. 신고접수 유형

표 4-11 신고접수 유형

(단위: 건, %)

대 면	서 신 ¹⁶⁾	온라인	전 화	계
280	4,371	75	2,081	6,807
4.1	64.2	1.1	30.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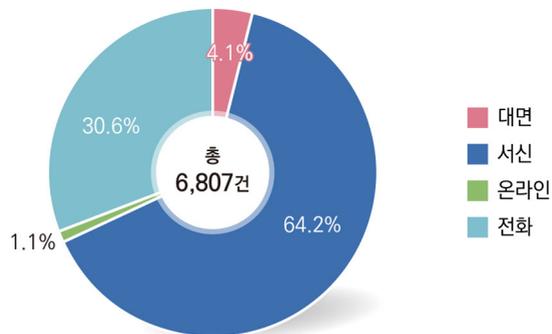


그림 4-8 신고접수 유형

16) 112 등 연계기관에서 의뢰한 '노인학대 의심 사례통보서' 등 문서로 신고된 유형이 서신 신고에 해당됨.

다. 신고 경로 인지 유형

표 4-12 신고 경로 인지 유형별 신고자 구분

(단위: 건, %)

구분	대중매체	이미 개입 경험이 있으며 직접 홍보의 경우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	인터넷	주변인	직접홍보	타기관 안내	계
신고 의무자	7	29	1,047	20	1	11	10	1,125
	0.6	2.6	93.1	1.8	0.1	1.0	0.9	100
비신고 의무자	92	164	4,897	134	89	78	228	5,682
	1.6	2.9	86.2	2.4	1.6	1.4	4.0	100
계	99	193	5,944	154	90	89	238	6,807
	1.5	2.8	87.3	2.3	1.3	1.3	3.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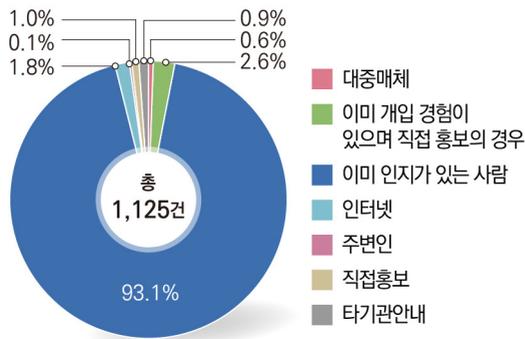


그림 4-9 신고의무자의 신고 경로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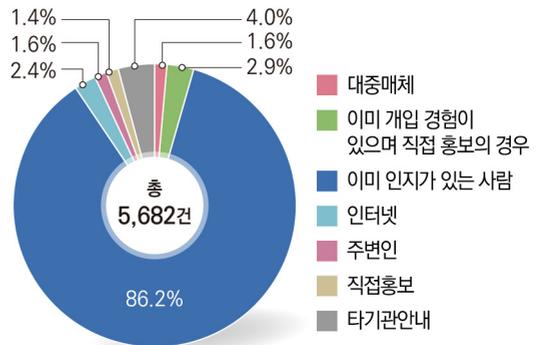


그림 4-10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경로 인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PART 05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PART

5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01 | 현장조사

표 5-1 현장조사

(단위: 건, %)

학대사례	현장조사	실시비율
6,807	6,703	98.5

표 5-2 지역 및 기관별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단위: 건, 회, %)

지역	기관명	학대사례 (A)	현장조사 (B)	실시비율 (C)=B/A×100	방문상담 (D)	방문상담횟수 (E)=D/A
서울	서울남부	147	147	100	653	4.4
	서울북부	118	118	100	876	7.4
	서울서부	164	164	100	1,036	6.3
	서울동부	187	186	99.5	964	5.2
	소계	616	615	99.8	3,529	5.7
부산	부산동부	318	318	100	1,728	5.4
	부산서부	238	238	100	854	3.6
	소계	556	556	100	2,582	4.6
대구	대구남부	169	169	100	819	4.8
	대구북부	115	115	100	743	6.5
	소계	284	284	100	1,562	5.5
인천	인천	245	245	100	882	3.6
	인천서부	213	206	96.7	541	2.5
	소계	458	451	98.5	1,423	3.1
광주		167	167	100	527	3.2
대전		146	144	98.6	1,025	7.0
울산		162	154	95.1	923	5.7
경기	경기동부	242	230	95.0	699	2.9
	경기북부	470	470	100	1,122	2.4
	경기서부	304	304	100	870	2.9
	경기도	241	210	87.1	358	1.5
	경기북서부	312	310	99.4	934	3.0
	소계	1,569	1,524	97.1	3,983	2.5

지역	기관명	학대사례 (A)	현장조사 (B)	실시비율 (C)=B/A×100	방문상담 (D)	방문상담횟수 (E)=D/A
강원	강원	183	181	98.9	1,941	10.6
	강원동부	122	116	95.1	726	6.0
	강원남부	127	127	100	862	6.8
	소계	432	424	98.1	3,529	8.2
충북	충북	98	96	98.0	932	9.5
	충북북부	94	90	95.7	761	8.1
	소계	192	186	96.9	1,693	8.8
충남	충남	202	199	98.5	1,451	7.2
	충남남부	120	120	100	612	5.1
	소계	322	319	99.1	2,063	6.4
전북	전북	148	148	100	857	5.8
	전북서부	150	136	90.7	711	4.7
	소계	298	284	95.3	1,568	5.3
전남	전남동부	152	152	100	555	3.7
	전남서부	224	217	96.9	2,178	9.7
	소계	376	369	98.1	2,733	7.3
경북	경북동부	170	170	100	1,194	7.0
	경북북부	132	132	100	1,332	10.1
	경북서부	205	205	100	1,216	5.9
	경북남부	101	101	100	1,188	11.8
	소계	608	608	100	4,930	8.1
경남	경남	341	339	99.4	1,300	3.8
	경남서부	146	145	99.3	1,227	8.4
	소계	487	484	99.4	2,527	5.2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79	79	100	670	8.5
	제주도서귀포시	55	55	100	800	14.5
	소계	134	134	100	1,470	11.0
계		6,807	6,703	98.5	36,067	5.3

02 | 사례판정

표 5-3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서울	서울남부	1	0.7	103	70.1	43	29.3	147	100
	서울북부	5	4.2	63	53.4	50	42.4	118	100
	서울서부	2	1.2	111	67.7	51	31.1	164	100
	서울동부	3	1.6	36	19.3	148	79.1	187	100
	소계	11	1.8	313	50.8	292	47.4	616	100
부산	부산동부	6	1.9	223	70.1	89	28.0	318	100
	부산서부	28	11.8	168	70.6	42	17.6	238	100
	소계	34	6.1	391	70.3	131	23.6	556	100
대구	대구남부	2	1.2	155	91.7	12	7.1	169	100
	대구북부	1	0.9	53	46.1	61	53.0	115	100
	소계	3	1.1	208	73.2	73	25.7	284	100
인천	인천	-	-	15	6.1	230	93.9	245	100
	인천서부	17	8.0	100	46.9	96	45.1	213	100
	소계	17	3.7	115	25.1	326	71.2	458	100
광주		9	5.4	154	92.2	4	2.4	167	100
대전		-	-	70	47.9	76	52.1	146	100
울산		1	0.6	135	83.3	26	16.0	162	100
경기	경기동부	2	0.8	185	76.4	55	22.7	242	100
	경기북부	13	2.8	313	66.6	144	30.6	470	100
	경기서부	13	4.3	133	43.8	158	52.0	304	100
	경기도	6	2.5	45	18.7	190	78.8	241	100
	경기북서부	6	1.9	239	76.6	67	21.5	312	100
	소계	40	2.5	915	58.3	614	39.1	1,569	100
강원	강원	1	0.5	162	88.5	20	10.9	183	100
	강원동부	-	-	33	27.0	89	73.0	122	100
	강원남부	3	2.4	103	81.1	21	16.5	127	100
	소계	4	0.9	298	69.0	130	30.1	432	100
충북	충북	6	6.1	64	65.3	28	28.6	98	100
	충북북부	12	12.8	71	75.5	11	11.7	94	100
	소계	18	9.4	135	70.3	39	20.3	192	100
충남	충남	4	2.0	173	85.6	25	12.4	202	100
	충남남부	3	2.5	57	47.5	60	50.0	120	100
	소계	7	2.2	230	71.4	85	26.4	322	100

지역	기관명	응급		비용급		잠재적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전북	전북	-	-	117	79.1	31	20.9	148	100
	전북서부	-	-	41	27.3	109	72.7	150	100
	소계	-	-	158	53.0	140	47.0	298	100
전남	전남동부	5	3.3	147	96.7	-	-	152	100
	전남서부	10	4.5	169	75.4	45	20.1	224	100
	소계	15	4.0	316	84.0	45	12.0	376	100
경북	경북동부	-	-	13	7.6	157	92.4	170	100
	경북북부	3	2.3	91	68.9	38	28.8	132	100
	경북서부	1	0.5	158	77.1	46	22.4	205	100
	경북남부	-	-	3	3.0	98	97.0	101	100
	소계	4	0.7	265	43.6	339	55.8	608	100
경남	경남	4	1.2	279	81.8	58	17.0	341	100
	경남서부	-	-	96	65.8	50	34.2	146	100
	소계	4	0.8	375	77.0	108	22.2	487	1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	-	31	39.2	48	60.8	79	100
	제주도서귀포시	3	5.5	48	87.3	4	7.3	55	100
	소계	3	2.2	79	59.0	52	38.8	134	100
계		170	2.5	4,157	61.1	2,480	36.4	6,80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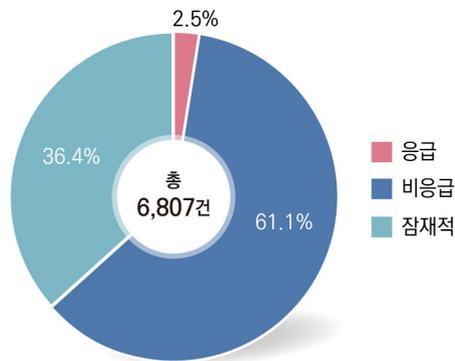


그림 5-1 사례판정 결과

표 5-4 시군구별 사례판정 결과

(단위: 건, %)

지역	시군구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울	종로구	1	10.0	4	40.0	5	50.0	10	100
	중구	-	-	7	77.8	2	22.2	9	100
	용산구	1	3.8	5	19.2	20	76.9	26	100
	성동구	-	-	9	32.1	19	67.9	28	100
	광진구	2	6.9	4	13.8	23	79.3	29	100
	동대문구	-	-	5	62.5	3	37.5	8	100
	중랑구	-	-	5	10.2	44	89.8	49	100
	성북구	1	6.3	5	31.3	10	62.5	16	100
	강북구	2	6.3	19	59.4	11	34.4	32	100
	도봉구	-	-	12	48.0	13	52.0	25	100
	노원구	2	5.4	22	59.5	13	35.1	37	100
	은평구	-	-	27	75.0	9	25.0	36	100
	서대문구	-	-	10	55.6	8	44.4	18	100
	마포구	-	-	19	70.4	8	29.6	27	100
	양천구	-	-	12	50.0	12	50.0	24	100
	강서구	1	2.5	32	80.0	7	17.5	40	100
	구로구	1	2.4	28	68.3	12	29.3	41	100
	금천구	-	-	5	41.7	7	58.3	12	100
	영등포구	-	-	5	71.4	2	28.6	7	100
	동작구	-	-	22	68.8	10	31.3	32	100
	관악구	-	-	26	74.3	9	25.7	35	100
	서초구	-	-	8	100	-	-	8	100
	강남구	-	-	9	75.0	3	25.0	12	100
송파구	-	-	6	19.4	25	80.6	31	100	
강동구	-	-	7	29.2	17	70.8	24	100	
소계	11	1.8	313	50.8	292	47.4	616	100	
부산	중구	-	-	9	100	-	-	9	100
	서구	-	-	21	77.8	6	22.2	27	100
	동구	-	-	26	68.4	12	31.6	38	100
	영도구	1	2.6	28	71.8	10	25.6	39	100
	부산진구	14	22.6	39	62.9	9	14.5	62	100
	동래구	2	6.1	25	75.8	6	18.2	33	100
	남구	2	3.9	28	54.9	21	41.2	51	100
	북구	1	2.1	34	70.8	13	27.1	48	100
	해운대구	4	7.5	38	71.7	11	20.8	53	100
	사하구	-	-	46	76.7	14	23.3	60	100
	금정구	-	-	14	87.5	2	12.5	16	100
	강서구	-	-	5	50.0	5	50.0	10	100
	연제구	5	15.2	21	63.6	7	21.2	33	100
	수영구	3	16.7	12	66.7	3	16.7	18	100
	사상구	2	5.6	26	72.2	8	22.2	36	100

지역	시군구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기장군	-	-	19	82.6	4	17.4	23	100
	소계	34	6.1	391	70.3	131	23.6	556	100
대구	중구	-	-	7	46.7	8	53.3	15	100
	동구	-	-	25	54.3	21	45.7	46	100
	서구	1	3.8	11	42.3	14	53.8	26	100
	남구	1	3.7	26	96.3	-	-	27	100
	북구	-	-	11	37.9	18	62.1	29	100
	수성구	-	-	40	88.9	5	11.1	45	100
	달서구	-	-	54	93.1	4	6.9	58	100
	달성군	1	2.6	34	89.5	3	7.9	38	100
	소계	3	1.1	208	73.2	73	25.7	284	100
	인천	중구	-	-	1	3.8	25	96.2	26
동구		-	-	-	-	16	100	16	100
미추홀구		-	-	5	6.8	69	93.2	74	100
연수구		-	-	3	11.5	23	88.5	26	100
남동구		-	-	6	6.1	92	93.9	98	100
부평구		2	2.5	36	45.0	42	52.5	80	100
계양구		1	1.8	28	50.9	26	47.3	55	100
서구		14	25.5	19	34.5	22	40.0	55	100
강화군		-	-	17	73.9	6	26.1	23	100
옹진군		-	-	-	-	5	100	5	100
소계	17	3.7	115	25.1	326	71.2	458	100	
광주	동구	1	4.2	22	91.7	1	4.2	24	100
	서구	1	3.3	28	93.3	1	3.3	30	100
	남구	2	9.1	19	86.4	1	4.5	22	100
	북구	5	8.1	56	90.3	1	1.6	62	100
	광산구	-	-	29	100	-	-	29	100
	소계	9	5.4	154	92.2	4	2.4	167	100
대전	동구	-	-	14	50.0	14	50.0	28	100
	중구	-	-	13	43.3	17	56.7	30	100
	서구	-	-	17	42.5	23	57.5	40	100
	유성구	-	-	25	80.6	6	19.4	31	100
	대덕구	-	-	1	5.9	16	94.1	17	100
	소계	-	-	70	47.9	76	52.1	146	100
울산	중구	1	2.6	29	76.3	8	21.1	38	100
	남구	-	-	47	95.9	2	4.1	49	100
	동구	-	-	18	62.1	11	37.9	29	100
	북구	-	-	23	95.8	1	4.2	24	100
	울주군	-	-	18	81.8	4	18.2	22	100
	소계	1	0.6	135	83.3	26	16.0	162	100
경기	수원시	4	4.2	19	19.8	73	76.0	96	100
	성남시	-	-	70	73.7	25	26.3	95	100
	의정부시	5	4.2	70	59.3	43	36.4	118	100

지역	시군구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강원	안양시	1	2.7	11	29.7	25	67.6	37	100
	부천시	8	6.9	49	42.2	59	50.9	116	100
	광명시	-	-	20	48.8	21	51.2	41	100
	평택시	-	-	4	17.4	19	82.6	23	100
	동두천시	2	14.3	7	50.0	5	35.7	14	100
	안산시	1	1.4	13	17.8	59	80.8	73	100
	고양시	4	2.4	129	75.9	37	21.8	170	100
	과천시	-	-	4	40.0	6	60.0	10	100
	구리시	1	2.7	30	81.1	6	16.2	37	100
	남양주시	2	1.0	156	75.7	48	23.3	206	100
	오산시	-	-	2	11.1	16	88.9	18	100
	시흥시	3	5.0	30	50.0	27	45.0	60	100
	군포시	-	-	18	54.5	15	45.5	33	100
	의왕시	1	14.3	1	14.3	5	71.4	7	100
	하남시	2	14.3	7	50.0	5	35.7	14	100
	용인시	-	-	64	76.2	20	23.8	84	100
	파주시	-	-	72	79.1	19	20.9	91	100
	이천시	1	10.0	7	70.0	2	20.0	10	100
	안성시	-	-	2	18.2	9	81.8	11	100
	김포시	-	-	27	81.8	6	18.2	33	100
	화성시	1	5.0	5	25.0	14	70.0	20	100
	광주시	1	3.1	26	81.3	5	15.6	32	100
	양주시	-	-	20	51.3	19	48.7	39	100
	포천시	1	2.2	26	56.5	19	41.3	46	100
	여주시	-	-	11	91.7	1	8.3	12	100
	연천군	-	-	4	100	-	-	4	100
	가평군	2	20.0	4	40.0	4	40.0	10	100
	양평군	-	-	7	77.8	2	22.2	9	100
소계		40	2.5	915	58.3	614	39.1	1,569	100
강원	춘천시	1	1.1	75	84.3	13	14.6	89	100
	원주시	2	2.3	74	85.1	11	12.6	87	100
	강릉시	-	-	25	35.7	45	64.3	70	100
	동해시	-	-	1	16.7	5	83.3	6	100
	태백시	-	-	12	100	-	-	12	100
	속초시	-	-	4	44.4	5	55.6	9	100
	삼척시	-	-	1	16.7	5	83.3	6	100
	홍천군	-	-	67	94.4	4	5.6	71	100
	횡성군	1	33.3	2	66.7	-	-	3	100
	영월군	-	-	5	100	-	-	5	100
	평창군	-	-	9	100	-	-	9	100
	정선군	-	-	1	9.1	10	90.9	11	100
	철원군	-	-	12	85.7	2	14.3	14	100
	화천군	-	-	1	100	-	-	1	100

지역	시군구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양구군	-	-	3	75.0	1	25.0	4	100
	인제군	-	-	4	100	-	-	4	100
	고성군	-	-	2	40.0	3	60.0	5	100
	양양군	-	-	-	-	26	100	26	100
	소계	4	0.9	298	69.0	130	30.1	432	100
충북	청주시	2	2.8	46	63.9	24	33.3	72	100
	충주시	4	10.8	29	78.4	4	10.8	37	100
	제천시	2	8.0	20	80.0	3	12.0	25	100
	보은군	-	-	6	85.7	1	14.3	7	100
	옥천군	-	-	5	100	-	-	5	100
	영동군	-	-	-	-	-	-	-	-
	진천군	3	30.0	4	40.0	3	30.0	10	100
	괴산군	2	33.3	4	66.7	-	-	6	100
	음성군	3	12.0	18	72.0	4	16.0	25	100
	단양군	1	100	-	-	-	-	1	100
	증평군	-	-	3	100	-	-	3	100
	기타*	1	100	-	-	-	-	1	100
소계	18	9.4	135	70.3	39	20.3	192	100	
충남	천안시	1	1.9	42	79.2	10	18.9	53	100
	공주시	-	-	17	51.5	16	48.5	33	100
	보령시	1	5.3	10	52.6	8	42.1	19	100
	아산시	1	3.7	20	74.1	6	22.2	27	100
	서산시	1	3.2	25	80.6	5	16.1	31	100
	논산시	2	6.7	10	33.3	18	60.0	30	100
	계룡시	-	-	2	50.0	2	50.0	4	100
	당진시	1	4.0	22	88.0	2	8.0	25	100
	금산군	-	-	5	41.7	7	58.3	12	100
	부여군	-	-	9	60.0	6	40.0	15	100
	서천군	-	-	3	60.0	2	40.0	5	100
	청양군	-	-	-	-	1	100	1	100
	홍성군	-	-	5	100	-	-	5	100
	예산군	-	-	17	94.4	1	5.6	18	100
	태안군	-	-	5	100	-	-	5	100
	기타*	-	-	1	100	-	-	1	100
소계	7	2.5	193	68.0	84	29.6	284	10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	-	37	97.4	1	2.6	38	100
	소계	-	-	37	97.4	1	2.6	38	100
전북	전주시	-	-	74	77.9	21	22.1	95	100
	군산시	-	-	11	23.4	36	76.6	47	100
	익산시	-	-	12	30.8	27	69.2	39	100
	정읍시	-	-	14	46.7	16	53.3	30	100
	남원시	-	-	12	92.3	1	7.7	13	100
	김제시	-	-	1	9.1	10	90.9	11	100

지역	시군구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완주군	-	-	16	84.2	3	15.8	19	100
	진안군	-	-	2	100	-	-	2	100
	무주군	-	-	1	50.0	1	50.0	2	100
	장수군	-	-	4	66.7	2	33.3	6	100
	임실군	-	-	5	62.5	3	37.5	8	100
	순창군	-	-	3	100	-	-	3	100
	고창군	-	-	1	6.3	15	93.8	16	100
	부안군	-	-	2	28.6	5	71.4	7	100
	소계	-	-	158	53.0	140	47.0	298	100
전남	목포시	2	3.7	46	85.2	6	11.1	54	100
	여수시	-	-	41	100	-	-	41	100
	순천시	2	5.4	35	94.6	-	-	37	100
	나주시	-	-	51	75.0	17	25.0	68	100
	광양시	2	12.5	14	87.5	-	-	16	100
	담양군	-	-	11	100	-	-	11	100
	곡성군	-	-	6	100	-	-	6	100
	구례군	-	-	5	100	-	-	5	100
	고흥군	-	-	14	100	-	-	14	100
	보성군	1	10.0	9	90.0	-	-	10	100
	화순군	-	-	6	100	-	-	6	100
	장흥군	-	-	1	100	-	-	1	100
	강진군	-	-	6	60.0	4	40.0	10	100
	해남군	1	5.9	13	76.5	3	17.6	17	100
	영암군	1	20.0	4	80.0	-	-	5	100
	무안군	1	3.0	29	87.9	3	9.1	33	100
	함평군	1	16.7	3	50.0	2	33.3	6	100
	영광군	-	-	10	83.3	2	16.7	12	100
	장성군	-	-	4	100	-	-	4	100
	완도군	2	28.6	1	14.3	4	57.1	7	100
진도군	2	40.0	2	40.0	1	20.0	5	100	
신안군	-	-	5	62.5	3	37.5	8	100	
소계	15	4.0	316	84.0	45	12.0	376	100	
경북	포항시	-	-	8	7.7	96	92.3	104	100
	경주시	-	-	4	8.3	44	91.7	48	100
	김천시	-	-	48	77.4	14	22.6	62	100
	안동시	1	1.6	41	64.1	22	34.4	64	100
	구미시	1	1.3	61	78.2	16	20.5	78	100
	영주시	1	3.7	19	70.4	7	25.9	27	100
	영천시	-	-	2	20.0	8	80.0	10	100
	상주시	-	-	21	75.0	7	25.0	28	100
	문경시	-	-	23	79.3	6	20.7	29	100
	경산시	-	-	1	1.8	56	98.2	57	100
	군위군	-	-	-	-	2	100	2	100

지역	시군구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의성군	-	-	11	84.6	2	15.4	13	100
	청송군	-	-	-	-	2	100	2	100
	영양군	-	-	1	100	-	-	1	100
	영덕군	-	-	-	-	9	100	9	100
	청도군	-	-	-	-	15	100	15	100
	고령군	-	-	-	-	5	100	5	100
	성주군	-	-	5	62.5	3	37.5	8	100
	칠곡군	-	-	-	-	12	100	12	100
	예천군	1	5.6	12	66.7	5	27.8	18	100
	봉화군	-	-	7	77.8	2	22.2	9	100
	울진군	-	-	1	14.3	6	85.7	7	100
	울릉군	-	-	-	-	-	-	-	-
	소계	4	0.7	265	43.6	339	55.8	608	100
경남	창원시	2	1.7	98	85.2	15	13.0	115	100
	진주시	-	-	37	51.4	35	48.6	72	100
	통영시	-	-	9	81.8	2	18.2	11	100
	사천시	-	-	15	93.8	1	6.3	16	100
	김해시	2	2.4	61	74.4	19	23.2	82	100
	밀양시	-	-	4	40.0	6	60.0	10	100
	거제시	-	-	33	89.2	4	10.8	37	100
	양산시	-	-	60	83.3	12	16.7	72	100
	의령군	-	-	1	33.3	2	66.7	3	100
	함안군	-	-	5	100	-	-	5	100
	창녕군	-	-	3	100	-	-	3	100
	고성군	-	-	6	100	-	-	6	100
	남해군	-	-	1	20.0	4	80.0	5	100
	하동군	-	-	28	93.3	2	6.7	30	100
	산청군	-	-	2	66.7	1	33.3	3	100
	함양군	-	-	4	66.7	2	33.3	6	100
	거창군	-	-	6	85.7	1	14.3	7	100
	합천군	-	-	2	50.0	2	50.0	4	100
	소계	4	0.8	375	77.0	108	22.2	487	100
제주	제주시	-	-	31	39.2	48	60.8	79	100
	서귀포시	3	5.5	48	87.3	4	7.3	55	100
	소계	3	2.2	79	59.0	52	38.8	134	100
합계		170	2.5	4,157	61.1	2,480	36.4	6,807	100

*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가 아닌 타부양가족의 집에 머무르거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 등이 해당됨.

표 5-5 사례판정 결과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분	응급		비응급		잠재적		계	
신체적 학대	129	39.0	3,026	45.2	1,276	36.3	4,431	42.0
정서적 학대	125	37.8	2,839	42.4	1,597	45.5	4,561	43.3
성적 학대	16	4.8	182	2.7	61	1.7	259	2.5
경제적 학대	11	3.3	258	3.9	128	3.6	397	3.8
방임	32	9.7	294	4.4	363	10.3	689	6.5
자기방임	10	3.0	85	1.3	74	2.1	169	1.6
유기	8	2.4	16	0.2	12	0.3	36	0.3
계	331	100	6,700	100	3,511	100	10,542*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807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542건)에는 차이가 있음



그림 5-2 사례판정 결과별 노인학대 유형

표 5-6 사례판정 결과별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신고자 유형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피해자 본인	6	3.5	190	4.6	138	5.6	334	4.9
학대행위자	-	-	3	0.1	1	0.0	4	0.1
친족 ¹⁷⁾	7	4.1	273	6.6	227	9.2	507	7.4
타인 ¹⁸⁾	5	2.9	59	1.4	54	2.2	118	1.7
관련기관 ¹⁹⁾	98	57.6	2,979	71.7	1,642	66.2	4,719	69.3
신고의무자*	54	31.8	653	15.7	418	16.9	1,125	16.5
계	170	100	4,157	100	2,480	100	6,807	100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경우, 「노인복지법」개정(21.12.21.)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분류되어 시행일 기준으로 분류· 집계함 (시행: '22.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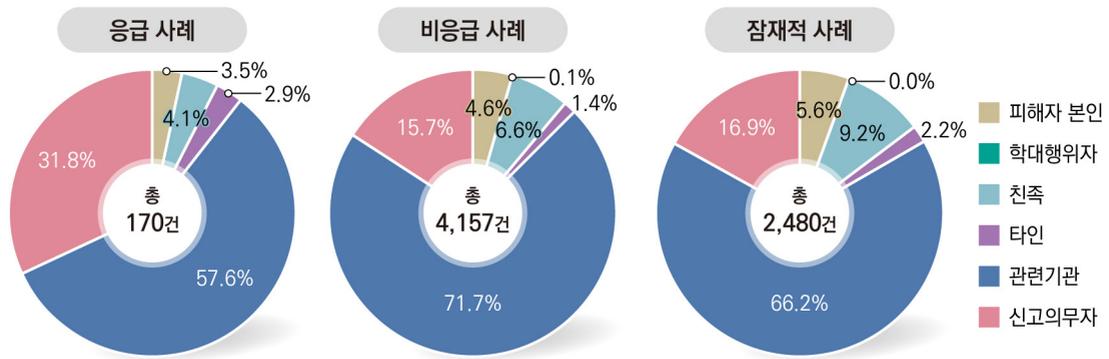


그림 5-3 사례판정 결과별 신고자 유형

17) 친족에는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이 해당됨.

18) 타인에는 동거인, 이웃, 익명, 친구 등이 해당됨.

19) 관련기관에는 경찰관,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22.1.1~'22.3.21.) 등이 해당됨.



PART 06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PART
6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01 |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1)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표 6-1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단위: 건,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중복학대	계
719	649	63	104	281	80	17	4,894	6,807
10.6	9.5	0.9	1.5	4.1	1.2	0.2	71.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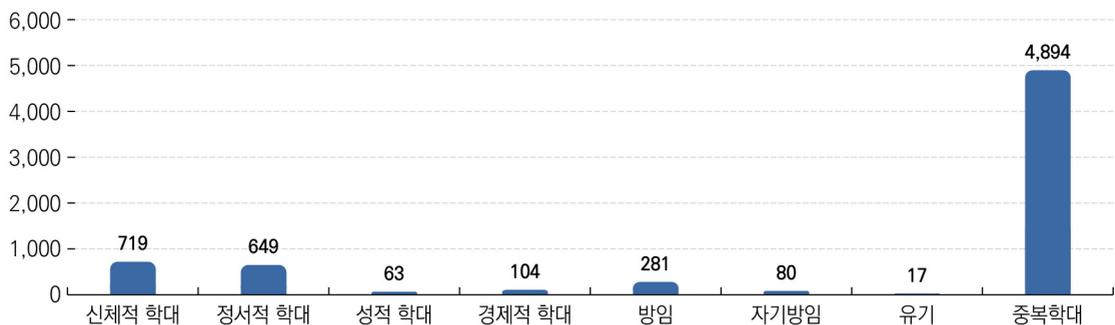


그림 6-1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2) 노인학대 유형II(학대유형 건수)

표 6-2 노인학대 유형II(학대유형 건수)

(단위: 건,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4,431	4,561	259	397	689	169	36	10,542*
42.0	43.3	2.5	3.8	6.5	1.6	0.3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807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542건)에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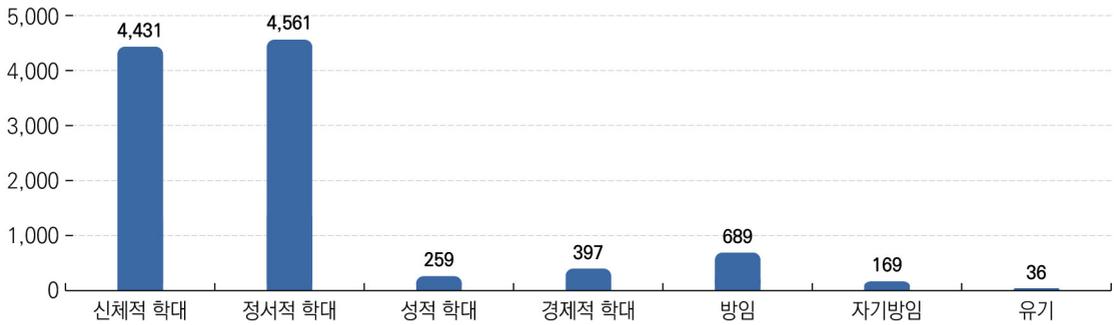


그림 6-2 노인학대 유형II(학대유형 건수)

표 6-3 시군구별 노인학대 유형II(학대유형 건수)

(단위: 건, %)

지역	시군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서울	종로구	8	44.4	10	55.6	-	-	-	18	100
	중구	6	42.9	8	57.1	-	-	-	14	100
	용산구	17	39.5	22	51.2	1	2.3	2	43	100
	성동구	23	42.6	26	48.1	1	1.9	3	54	100
	광진구	20	38.5	27	51.9	-	-	2	52	100
	동대문구	2	20.0	3	30.0	-	-	1	10	100
	중랑구	33	41.8	44	55.7	-	-	1	79	100
	성북구	8	30.8	12	46.2	2	7.7	1	26	100
	강북구	21	37.5	28	50.0	-	-	4	56	100
	도봉구	20	45.5	20	45.5	-	-	2	44	100
	노원구	30	42.9	33	47.1	1	1.4	4	70	100
	은평구	26	41.3	30	47.6	-	-	1	63	100
	서대문구	13	43.3	15	50.0	-	-	-	30	100
	마포구	24	47.1	24	47.1	-	-	2	51	100
	양천구	17	45.9	17	45.9	-	-	-	37	100
	강서구	35	47.3	33	44.6	1	1.4	-	74	100
구로구	34	47.9	32	45.1	-	-	3	71	100	

지역	시군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금천구	9	50.0	8	44.4	-	-	-	-	1	5.6	-	-	-	-	18	100
	영등포구	5	50.0	4	40.0	-	-	-	-	1	10.0	-	-	-	-	10	100
	동작구	25	45.5	29	52.7	-	-	1	1.8	-	-	-	-	-	-	55	100
	관악구	24	41.4	27	46.6	1	1.7	1	1.7	4	6.9	1	1.7	-	-	58	100
	서초구	6	42.9	8	57.1	-	-	-	-	-	-	-	-	-	-	14	100
	강남구	8	40.0	10	50.0	-	-	-	-	2	10.0	-	-	-	-	20	100
	송파구	22	42.3	26	50.0	-	-	1	1.9	2	3.8	1	1.9	-	-	52	100
	강동구	19	45.2	22	52.4	-	-	-	-	1	2.4	-	-	-	-	42	100
	총합계	455	42.9	518	48.8	7	0.7	29	2.7	41	3.9	10	0.9	1	0.1	1,061	100
부산	중구	5	38.5	7	53.8	-	-	-	-	1	7.7	-	-	-	-	13	100
	서구	21	45.7	23	50.0	-	-	-	-	2	4.3	-	-	-	-	46	100
	동구	26	42.6	32	52.5	-	-	1	1.6	2	3.3	-	-	-	-	61	100
	영도구	34	47.2	34	47.2	-	-	3	4.2	1	1.4	-	-	-	-	72	100
	부산진구	46	44.2	49	47.1	1	1.0	3	2.9	2	1.9	3	2.9	-	-	104	100
	동래구	17	29.8	30	52.6	1	1.8	2	3.5	4	7.0	-	-	3	5.3	57	100
	남구	38	44.2	43	50.0	1	1.2	4	4.7	-	-	-	-	-	-	86	100
	북구	32	41.6	40	51.9	1	1.3	1	1.3	3	3.9	-	-	-	-	77	100
	해운대구	35	39.3	50	56.2	-	-	1	1.1	3	3.4	-	-	-	-	89	100
	사하구	48	43.6	55	50.0	1	0.9	4	3.6	1	0.9	1	0.9	-	-	110	100
	금정구	10	38.5	11	42.3	-	-	4	15.4	1	3.8	-	-	-	-	26	100
	강서구	4	26.7	9	60.0	-	-	1	6.7	1	6.7	-	-	-	-	15	100
	연제구	21	36.8	26	45.6	1	1.8	3	5.3	4	7.0	2	3.5	-	-	57	100
	수영구	11	37.9	17	58.6	-	-	-	-	-	-	-	-	1	3.4	29	100
	사상구	26	42.6	32	52.5	-	-	1	1.6	-	-	2	3.3	-	-	61	100
기장군	9	28.1	16	50.0	2	6.3	1	3.1	4	12.5	-	-	-	-	32	100	
총합계	383	41.0	474	50.7	8	0.9	29	3.1	29	3.1	8	0.9	4	0.4	935	100	
대전	중구	13	50.0	12	46.2	-	-	-	-	-	-	1	3.8	-	-	26	100
	동구	34	43.6	33	42.3	2	2.6	3	3.8	2	2.6	4	5.1	-	-	78	100
	서구	20	43.5	19	41.3	1	2.2	1	2.2	3	6.5	2	4.3	-	-	46	100
	남구	23	45.1	25	49.0	1	2.0	-	-	2	3.9	-	-	-	-	51	100
	북구	20	44.4	18	40.0	-	-	1	2.2	3	6.7	3	6.7	-	-	45	100
	수성구	33	41.3	39	48.8	-	-	3	3.8	4	5.0	1	1.3	-	-	80	100
	달서구	50	49.5	50	49.5	-	-	-	-	1	1.0	-	-	-	-	101	100
	달성군	30	44.8	33	49.3	-	-	1	1.5	3	4.5	-	-	-	-	67	100
	총합계	223	45.1	229	46.4	4	0.8	9	1.8	18	3.6	11	2.2	-	-	494	100
인천	중구	13	33.3	19	48.7	2	5.1	-	-	5	12.8	-	-	-	-	39	100
	동구	11	42.3	13	50.0	-	-	-	-	1	3.8	1	3.8	-	-	26	100
	미추홀구	36	31.9	56	49.6	-	-	6	5.3	14	12.4	1	0.9	-	-	113	100
	연수구	11	31.4	15	42.9	1	2.9	1	2.9	7	20.0	-	-	-	-	35	100
	남동구	54	37.8	68	47.6	3	2.1	2	1.4	15	10.5	1	0.7	-	-	143	100
부평구	60	46.2	61	46.9	3	2.3	1	0.8	4	3.1	1	0.8	-	-	130	100	

지역	시군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계양구	44	47.3	44	47.3	-	-	1	1.1	4	4.3	-	-	-	-	93	100
	서구	39	32.2	48	39.7	13	10.7	1	0.8	18	14.9	2	1.7	-	-	121	100
	강화군	18	48.6	16	43.2	2	5.4	-	-	1	2.7	-	-	-	-	37	100
	옹진군	3	27.3	2	18.2	2	18.2	1	9.1	3	27.3	-	-	-	-	11	100
	총합계	289	38.6	342	45.7	26	3.5	13	1.7	72	9.6	6	0.8	-	-	748	100
광주	동구	16	53.3	11	36.7	1	3.3	1	3.3	-	-	1	3.3	-	-	30	100
	서구	21	61.8	12	35.3	-	-	1	2.9	-	-	-	-	-	-	34	100
	남구	14	53.8	10	38.5	-	-	1	3.8	-	-	1	3.8	-	-	26	100
	북구	44	57.9	32	42.1	-	-	-	-	-	-	-	-	-	-	76	100
	광산구	19	52.8	13	36.1	-	-	1	2.8	3	8.3	-	-	-	-	36	100
	총합계	114	56.4	78	38.6	1	0.5	4	2.0	3	1.5	2	1.0	-	-	202	100
대전	동구	17	37.8	19	42.2	1	2.2	1	2.2	6	13.3	1	2.2	-	-	45	100
	중구	23	43.4	25	47.2	-	-	2	3.8	2	3.8	1	1.9	-	-	53	100
	서구	29	36.7	34	43.0	4	5.1	5	6.3	4	5.1	2	2.5	1	1.3	79	100
	유성구	8	19.5	11	26.8	1	2.4	2	4.9	19	46.3	-	-	-	-	41	100
	대덕구	11	44.0	9	36.0	2	8.0	1	4.0	2	8.0	-	-	-	-	25	100
	총합계	88	36.2	98	40.3	8	3.3	11	4.5	33	13.6	4	1.6	1	0.4	243	100
울산	중구	28	48.3	22	37.9	-	-	-	-	5	8.6	3	5.2	-	-	58	100
	남구	31	43.1	34	47.2	-	-	1	1.4	4	5.6	1	1.4	1	1.4	72	100
	동구	14	34.1	18	43.9	1	2.4	3	7.3	5	12.2	-	-	-	-	41	100
	북구	17	41.5	21	51.2	-	-	1	2.4	2	4.9	-	-	-	-	41	100
	울주군	15	39.5	15	39.5	-	-	4	10.5	3	7.9	1	2.6	-	-	38	100
	총합계	105	42.0	110	44.0	1	0.4	9	3.6	19	7.6	5	2.0	1	0.4	250	100
경기	수원시	60	44.1	63	46.3	-	-	1	0.7	5	3.7	3	2.2	4	2.9	136	100
	성남시	62	45.6	55	40.4	1	0.7	3	2.2	13	9.6	1	0.7	1	0.7	136	100
	의정부시	69	46.3	43	28.9	2	1.3	10	6.7	20	13.4	5	3.4	-	-	149	100
	안양시	20	37.0	27	50.0	-	-	2	3.7	4	7.4	1	1.9	-	-	54	100
	부천시	72	39.1	91	49.5	-	-	7	3.8	9	4.9	2	1.1	3	1.6	184	100
	광명시	31	43.1	35	48.6	-	-	5	6.9	1	1.4	-	-	-	-	72	100
	평택시	14	37.8	17	45.9	1	2.7	1	2.7	2	5.4	1	2.7	1	2.7	37	100
	동두천시	8	38.1	10	47.6	-	-	1	4.8	2	9.5	-	-	-	-	21	100
	안산시	50	48.1	53	51.0	1	1.0	-	-	-	-	-	-	-	-	104	100
	고양시	115	46.2	114	45.8	-	-	2	0.8	18	7.2	-	-	-	-	249	100
	과천시	8	44.4	10	55.6	-	-	-	-	-	-	-	-	-	-	18	100
	구리시	20	43.5	17	37.0	-	-	4	8.7	4	8.7	-	-	1	2.2	46	100
	남양주시	128	48.3	101	38.1	4	1.5	13	4.9	17	6.4	-	-	2	0.8	265	100
	오산시	14	51.9	13	48.1	-	-	-	-	-	-	-	-	-	-	27	100
	시흥시	46	46.5	42	42.4	-	-	1	1.0	9	9.1	-	-	1	1.0	99	100
군포시	23	41.8	29	52.7	1	1.8	1	1.8	1	1.8	-	-	-	-	55	100	
의왕시	4	40.0	6	60.0	-	-	-	-	-	-	-	-	-	-	10	100	
하남시	6	33.3	5	27.8	1	5.6	-	-	5	27.8	-	-	1	5.6	18	100	

지역	시군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충청	용인시	53	45.3	46	39.3	2	1.7	4	3.4	11	9.4	1	0.9	-	-	117	100
	파주시	62	44.9	65	47.1	1	0.7	1	0.7	9	6.5	-	-	-	-	138	100
	이천시	7	41.2	7	41.2	-	-	-	-	2	11.8	-	-	1	5.9	17	100
	안성시	5	31.3	7	43.8	-	-	-	-	2	12.5	2	12.5	-	-	16	100
	김포시	18	40.0	19	42.2	-	-	1	2.2	7	15.6	-	-	-	-	45	100
	화성시	13	39.4	15	45.5	-	-	2	6.1	1	3.0	2	6.1	-	-	33	100
	광주시	29	55.8	20	38.5	-	-	1	1.9	2	3.8	-	-	-	-	52	100
	양주시	22	46.8	9	19.1	1	2.1	3	6.4	11	23.4	-	-	1	2.1	47	100
	포천시	31	50.0	20	32.3	3	4.8	3	4.8	5	8.1	-	-	-	-	62	100
	여주시	9	64.3	4	28.6	-	-	-	-	1	7.1	-	-	-	-	14	100
	연천군	2	50.0	-	-	-	-	-	-	2	50.0	-	-	-	-	4	100
	가평군	5	33.3	6	40.0	-	-	1	6.7	1	6.7	-	-	2	13.3	15	100
	양평군	4	36.4	5	45.5	-	-	-	-	1	9.1	1	9.1	-	-	11	100
	총합계	1,010	44.9	954	42.4	18	0.8	67	3.0	165	7.3	19	0.8	18	0.8	2,251	100
강원	춘천시	53	42.7	47	37.9	7	5.6	7	5.6	3	2.4	6	4.8	1	0.8	124	100
	원주시	59	41.0	34	23.6	34	23.6	10	6.9	5	3.5	1	0.7	1	0.7	144	100
	강릉시	55	45.8	37	30.8	11	9.2	1	0.8	12	10.0	4	3.3	-	-	120	100
	동해시	3	37.5	3	37.5	-	-	1	12.5	1	12.5	-	-	-	-	8	100
	태백시	11	47.8	7	30.4	-	-	3	13.0	1	4.3	1	4.3	-	-	23	100
	속초시	6	50.0	3	25.0	-	-	-	-	3	25.0	-	-	-	-	12	100
	삼척시	5	55.6	4	44.4	-	-	-	-	-	-	-	-	-	-	9	100
	홍천군	10	13.0	11	14.3	-	-	53	68.8	2	2.6	1	1.3	-	-	77	100
	횡성군	2	33.3	3	50.0	-	-	1	16.7	-	-	-	-	-	-	6	100
	영월군	2	28.6	5	71.4	-	-	-	-	-	-	-	-	-	-	7	100
	평창군	7	35.0	8	40.0	-	-	3	15.0	2	10.0	-	-	-	-	20	100
	정선군	1	4.5	10	45.5	-	-	2	9.1	9	40.9	-	-	-	-	22	100
	철원군	3	16.7	4	22.2	-	-	-	-	11	61.1	-	-	-	-	18	100
	화천군	1	50.0	1	50.0	-	-	-	-	-	-	-	-	-	-	2	100
	양구군	3	60.0	1	20.0	1	20.0	-	-	-	-	-	-	-	-	5	100
	인제군	2	28.6	2	28.6	-	-	2	28.6	1	14.3	-	-	-	-	7	100
	고성군	3	50.0	2	33.3	-	-	-	-	1	16.7	-	-	-	-	6	100
양양군	1	3.8	1	3.8	-	-	-	-	24	92.3	-	-	-	-	26	100	
총합계	227	35.7	183	28.8	53	8.3	83	13.1	75	11.8	13	2.0	2	0.3	636	100	
충북	청주시	56	43.1	54	41.5	1	0.8	4	3.1	13	10.0	2	1.5	-	-	130	100
	충주시	31	41.3	30	40.0	7	9.3	1	1.3	4	5.3	2	2.7	-	-	75	100
	제천시	10	26.3	13	34.2	8	21.1	1	2.6	3	7.9	3	7.9	-	-	38	100
	보은군	7	41.2	7	41.2	2	11.8	1	5.9	-	-	-	-	-	-	17	100
	옥천군	3	30.0	3	30.0	-	-	1	10.0	1	10.0	2	20.0	-	-	10	100
	영동군	-	-	-	-	-	-	-	-	-	-	-	-	-	-	-	-
	진천군	9	47.4	9	47.4	-	-	1	5.3	-	-	-	-	-	-	19	100
괴산군	3	30.0	4	40.0	1	10.0	-	-	1	10.0	1	10.0	-	-	10	100	

지역	시군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음성군	17	41.5	19	46.3	-	-	1	2.4	-	-	4	9.8	-	-	41	100
	단양군	1	33.3	1	33.3	-	-	1	33.3	-	-	-	-	-	-	3	100
	증평군	2	40.0	2	40.0	-	-	1	20.0	-	-	-	-	-	-	5	100
	기타*	-	-	-	-	-	-	-	-	1	100	-	-	-	-	1	100
	총합계	139	39.8	142	40.7	19	5.4	12	3.4	23	6.6	14	4.0	-	-	349	100
충남	천안시	35	40.7	36	41.9	3	3.5	4	4.7	6	7.0	-	-	2	2.3	86	100
	공주시	25	52.1	19	39.6	-	-	1	2.1	2	4.2	1	2.1	-	-	48	100
	보령시	10	34.5	13	44.8	-	-	1	3.4	4	13.8	1	3.4	-	-	29	100
	아산시	13	33.3	18	46.2	-	-	1	2.6	5	12.8	2	5.1	-	-	39	100
	서산시	23	44.2	24	46.2	-	-	3	5.8	1	1.9	-	-	1	1.9	52	100
	논산시	18	42.9	17	40.5	-	-	-	-	5	11.9	2	4.8	-	-	42	100
	계룡시	3	75.0	-	-	-	-	-	-	1	25.0	-	-	-	-	4	100
	당진시	17	38.6	20	45.5	-	-	2	4.5	4	9.1	1	2.3	-	-	44	100
	금산군	8	44.4	10	55.6	-	-	-	-	-	-	-	-	-	-	18	100
	부여군	10	50.0	7	35.0	-	-	-	-	3	15.0	-	-	-	-	20	100
	서천군	3	50.0	3	50.0	-	-	-	-	-	-	-	-	-	-	6	100
	청양군	1	100	-	-	-	-	-	-	-	-	-	-	-	-	1	100
	홍성군	3	42.9	3	42.9	-	-	-	-	1	14.3	-	-	-	-	7	100
	예산군	10	38.5	14	53.8	-	-	1	3.8	1	3.8	-	-	-	-	26	100
	태안군	5	71.4	2	28.6	-	-	-	-	-	-	-	-	-	-	7	100
	기타*	1	100	-	-	-	-	-	-	-	-	-	-	-	-	1	100
	총합계	185	43.0	186	43.3	3	0.7	13	3.0	33	7.7	7	1.6	3	0.7	430	10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30	47.6	30	47.6	1	1.6	1	1.6	1	1.6	-	-	-	-	63	100
	총합계	30	47.6	30	47.6	1	1.6	1	1.6	1	1.6	-	-	-	-	63	100
전북	전주시	57	39.0	50	34.2	5	3.4	3	2.1	28	19.2	3	2.1	-	-	146	100
	군산시	21	32.8	27	42.2	1	1.6	3	4.7	10	15.6	2	3.1	-	-	64	100
	익산시	18	37.5	26	54.2	-	-	-	-	3	6.3	1	2.1	-	-	48	100
	정읍시	16	43.2	9	24.3	-	-	2	5.4	7	18.9	3	8.1	-	-	37	100
	남원시	9	40.9	13	59.1	-	-	-	-	-	-	-	-	-	-	22	100
	김제시	4	26.7	6	40.0	1	6.7	2	13.3	2	13.3	-	-	-	-	15	100
	완주군	12	38.7	15	48.4	1	3.2	-	-	2	6.5	1	3.2	-	-	31	100
	진안군	1	25.0	1	25.0	-	-	-	-	1	25.0	1	25.0	-	-	4	100
	무주군	1	33.3	1	33.3	-	-	-	-	-	-	1	33.3	-	-	3	100
	장수군	6	54.5	5	45.5	-	-	-	-	-	-	-	-	-	-	11	100
	임실군	5	38.5	5	38.5	-	-	1	7.7	1	7.7	1	7.7	-	-	13	100
	순창군	3	60.0	1	20.0	-	-	1	20.0	-	-	-	-	-	-	5	100
	고창군	6	31.6	10	52.6	-	-	-	-	3	15.8	-	-	-	-	19	100
	부안군	3	33.3	2	22.2	-	-	2	22.2	2	22.2	-	-	-	-	9	100
총합계	162	37.9	171	40.0	8	1.9	14	3.3	59	13.8	13	3.0	-	-	427	100	
전남	목포시	26	39.4	29	43.9	-	-	2	3.0	4	6.1	5	7.6	-	-	66	100

지역	시군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여수시	20	37.0	32	59.3	-	-	2	3.7	-	-	-	-	-	-	54	100
	순천시	21	38.9	30	55.6	-	-	-	-	1	1.9	2	3.7	-	-	54	100
	나주시	31	32.6	15	15.8	34	35.8	12	12.6	3	3.2	-	-	-	-	95	100
	광양시	8	38.1	12	57.1	-	-	-	-	1	4.8	-	-	-	-	21	100
	담양군	8	42.1	9	47.4	1	5.3	1	5.3	-	-	-	-	-	-	19	100
	곡성군	4	50.0	3	37.5	-	-	-	-	-	-	1	12.5	-	-	8	100
	구례군	3	42.9	4	57.1	-	-	-	-	-	-	-	-	-	-	7	100
	고흥군	6	35.3	10	58.8	1	5.9	-	-	-	-	-	-	-	-	17	100
	보성군	7	38.9	9	50.0	2	11.1	-	-	-	-	-	-	-	-	18	100
	화순군	2	28.6	4	57.1	-	-	-	-	-	-	1	14.3	-	-	7	100
	장흥군	-	-	1	100	-	-	-	-	-	-	-	-	-	-	1	100
	강진군	5	35.7	8	57.1	1	7.1	-	-	-	-	-	-	-	-	14	100
	해남군	12	57.1	7	33.3	-	-	1	4.8	1	4.8	-	-	-	-	21	100
	영암군	3	37.5	4	50.0	-	-	1	12.5	-	-	-	-	-	-	8	100
	무안군	27	49.1	10	18.2	13	23.6	-	-	5	9.1	-	-	-	-	55	100
	함평군	4	57.1	2	28.6	-	-	1	14.3	-	-	-	-	-	-	7	100
	영광군	9	56.3	6	37.5	-	-	-	-	1	6.3	-	-	-	-	16	100
	장성군	2	33.3	4	66.7	-	-	-	-	-	-	-	-	-	-	6	100
	완도군	5	50.0	3	30.0	-	-	-	-	2	20.0	-	-	-	-	10	100
	진도군	5	71.4	2	28.6	-	-	-	-	-	-	-	-	-	-	7	100
신안군	1	12.5	4	50.0	-	-	-	-	3	37.5	-	-	-	-	8	100	
총합계	209	40.3	208	40.1	52	10.0	20	3.9	21	4.0	9	1.7	-	-	519	100	
경북	포항시	57	34.1	94	56.3	4	2.4	6	3.6	5	3.0	1	0.6	-	-	167	100
	경주시	28	33.3	45	53.6	2	2.4	7	8.3	1	1.2	-	-	1	1.2	84	100
	김천시	41	45.6	38	42.2	3	3.3	2	2.2	3	3.3	3	3.3	-	-	90	100
	안동시	35	34.0	45	43.7	2	1.9	10	9.7	5	4.9	5	4.9	1	1.0	103	100
	구미시	49	41.9	56	47.9	6	5.1	-	-	6	5.1	-	-	-	-	117	100
	영주시	14	35.9	16	41.0	1	2.6	1	2.6	2	5.1	5	12.8	-	-	39	100
	영천시	3	20.0	7	46.7	1	6.7	1	6.7	2	13.3	1	6.7	-	-	15	100
	상주시	16	39.0	16	39.0	-	-	-	-	3	7.3	5	12.2	1	2.4	41	100
	문경시	18	42.9	19	45.2	1	2.4	1	2.4	1	2.4	2	4.8	-	-	42	100
	경산시	42	51.2	22	26.8	15	18.3	1	1.2	1	1.2	1	1.2	-	-	82	100
	군위군	1	33.3	1	33.3	-	-	1	33.3	-	-	-	-	-	-	3	100
	의성군	8	34.8	10	43.5	1	4.3	3	13.0	-	-	1	4.3	-	-	23	100
	청송군	-	-	2	100	-	-	-	-	-	-	-	-	-	-	2	100
	영양군	1	50.0	1	50.0	-	-	-	-	-	-	-	-	-	-	2	100
	영덕군	7	43.8	5	31.3	3	18.8	1	6.3	-	-	-	-	-	-	16	100
	청도군	13	33.3	14	35.9	5	12.8	1	2.6	6	15.4	-	-	-	-	39	100
	고령군	4	44.4	4	44.4	-	-	1	11.1	-	-	-	-	-	-	9	100
성주군	6	46.2	6	46.2	-	-	-	-	-	-	1	7.7	-	-	13	100	
칠곡군	9	47.4	9	47.4	-	-	-	-	1	5.3	-	-	-	-	19	100	

지역	시군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예천군	4	18.2	9	40.9	-	-	1	4.5	5	22.7	3	13.6	-	-	22	100
	봉화군	7	46.7	6	40.0	-	-	1	6.7	-	-	1	6.7	-	-	15	100
	울진군	4	33.3	5	41.7	-	-	2	16.7	1	8.3	-	-	-	-	12	100
	총합계	367	38.4	430	45.0	44	4.6	40	4.2	42	4.4	29	3.0	3	0.3	955	100
경남	창원시	84	45.7	82	44.6	1	0.5	11	6.0	4	2.2	2	1.1	-	-	184	100
	진주시	54	51.4	38	36.2	-	-	3	2.9	4	3.8	6	5.7	-	-	105	100
	통영시	8	42.1	9	47.4	-	-	2	10.5	-	-	-	-	-	-	19	100
	사천시	15	51.7	12	41.4	-	-	-	-	2	6.9	-	-	-	-	29	100
	김해시	50	38.8	59	45.7	1	0.8	4	3.1	14	10.9	1	0.8	-	-	129	100
	밀양시	4	36.4	5	45.5	-	-	-	-	2	18.2	-	-	-	-	11	100
	거제시	27	45.8	23	39.0	-	-	2	3.4	7	11.9	-	-	-	-	59	100
	양산시	55	44.7	55	44.7	1	0.8	5	4.1	6	4.9	-	-	1	0.8	123	100
	의령군	2	50.0	1	25.0	-	-	-	-	-	-	1	25.0	-	-	4	100
	함안군	4	40.0	3	30.0	-	-	1	10.0	2	20.0	-	-	-	-	10	100
	창녕군	-	-	2	50.0	-	-	1	25.0	1	25.0	-	-	-	-	4	100
	고성군	5	45.5	4	36.4	-	-	2	18.2	-	-	-	-	-	-	11	100
	남해군	2	33.3	3	50.0	-	-	1	16.7	-	-	-	-	-	-	6	100
	하동군	30	88.2	4	11.8	-	-	-	-	-	-	-	-	-	-	34	100
	산청군	1	33.3	2	66.7	-	-	-	-	-	-	-	-	-	-	3	100
	함양군	4	40.0	5	50.0	-	-	1	10.0	-	-	-	-	-	-	10	100
	거창군	6	54.5	5	45.5	-	-	-	-	-	-	-	-	-	-	11	100
	합천군	3	60.0	1	20.0	-	-	-	-	1	20.0	-	-	-	-	5	100
	총합계	354	46.8	313	41.3	3	0.4	33	4.4	43	5.7	10	1.3	1	0.1	757	100
제주	제주시	54	40.9	60	45.5	3	2.3	5	3.8	5	3.8	3	2.3	2	1.5	132	100
	서귀포시	37	41.1	35	38.9	-	-	5	5.6	7	7.8	6	6.7	-	-	90	100
	총합계	91	41.0	95	42.8	3	1.4	10	4.5	12	5.4	9	4.1	2	0.9	222	100
합계	4,431	42.0	4,561	43.3	259	2.5	397	3.8	689	6.5	169	1.6	36	0.3	10,542 ^{*)}	100	

*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가 아닌 타부양가족의 집에 머무르거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 등이 해당됨.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807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542건)에는 차이가 있음

표 6-4 노인학대 유형별 구체적 행위

(단위: 건, %)

구분	학대 유형별 구체적 행위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제한한다.	108	1.0
	노인을 폭행한다.	3,199	30.3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2	0.0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	161	1.5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43	0.4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14	0.1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899	8.5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5	0.0
소계	4,431	42.0	
정서적 학대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17	0.2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235	2.2
	노인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다.	23	0.2
	노인을 무시하거나 기피한다.	10	0.1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4,022	38.2
	노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한다.	40	0.4
	노인의 사생활과 입·퇴소와 관련한 의사결정권을 제한한다.	6	0.1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208	2.0
소계	4,561	43.3	
성적 학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거나 행위를 한다.	205	1.9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54	0.5
	소계	259	2.5
경제적 학대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299	2.8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80	0.8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18	0.2
	소계	397	3.8
방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230	2.2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36	0.3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한다.	124	1.2
	노인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다.	112	1.1
	노인의 일상생활 관련 보호 및 서비스를 방치한다.	112	1.1
	의료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58	0.6
	자기방임 노인을 방치한다.	-	-
	학대사례를 방치하거나 신고하지 않는다.	17	0.2
소계	689	6.5	
자기 방임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	169	1.6
	소계	169	1.6
유기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36	0.3
	소계	36	0.3
계	계	10,542*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807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542건)에는 차이가 있음

3)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표 6-5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단위: 건, %)

구분	남성	여성	계
신체적 학대	887	3,544	4,431
	20.0	80.0	100
정서적 학대	929	3,632	4,561
	20.4	79.6	100
성적 학대	33	226	259
	12.7	87.3	100
경제적 학대	126	271	397
	31.7	68.3	100
방임	224	465	689
	32.5	67.5	100
자기방임	77	92	169
	45.6	54.4	100
유기	14	22	36
	38.9	61.1	100
계	2,290	8,252	10,542*
	21.7	78.3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807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542건)에는 차이가 있음

4)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연령

표 6-6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연령

(단위: 건, %)

구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신체적 학대	1,100	1,021	899	775	421	168	42	5	4,431
	24.8	23.0	20.3	17.5	9.5	3.8	0.9	0.1	100
정서적 학대	1,126	1,084	991	802	401	126	28	3	4,561
	24.7	23.8	21.7	17.6	8.8	2.8	0.6	0.1	100
성적 학대	22	26	23	51	66	50	21	-	259
	8.5	10.0	8.9	19.7	25.5	19.3	8.1	-	100
경제적 학대	44	68	78	101	72	24	10	-	397
	11.1	17.1	19.6	25.4	18.1	6.0	2.5	-	100
방임	41	60	103	175	171	93	38	8	689
	6.0	8.7	14.9	25.4	24.8	13.5	5.5	1.2	100
자기방임	30	31	41	34	25	7	1	-	169
	17.8	18.3	24.3	20.1	14.8	4.1	0.6	-	100
유기	3	4	7	8	7	6	1	-	36
	8.3	11.1	19.4	22.2	19.4	16.7	2.8	-	100
계	2,366	2,294	2,142	1,946	1,163	474	141	16	10,542*
	22.4	21.8	20.3	18.5	11.0	4.5	1.3	0.2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807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542건)에는 차이가 있음

5)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표 6-7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신체적 학대	1	2,061	1,329	49	336	28	129	25	143	330	4,431
	0.0	46.5	30.0	1.1	7.6	0.6	2.9	0.6	3.2	7.4	100
정서적 학대	1	2,087	1,548	71	408	20	125	29	166	106	4,561
	0.0	45.8	33.9	1.6	8.9	0.4	2.7	0.6	3.6	2.3	100
성적 학대	-	41	6	-	-	1	3	-	18	190	259
	-	15.8	2.3	-	-	0.4	1.2	-	6.9	73.4	100
경제적 학대	1	37	167	10	44	1	17	9	36	75	397
	0.3	9.3	42.1	2.5	11.1	0.3	4.3	2.3	9.1	18.9	100
방임	7	39	153	8	81	-	4	6	12	379	689
	1.0	5.7	22.2	1.2	11.8	-	0.6	0.9	1.7	55.0	100
자기방임	157	1	6	-	2	-	-	-	3	-	169
	92.9	0.6	3.6	-	1.2	-	-	-	1.8	-	100
유기	-	2	15	-	14	-	3	-	2	-	36
	-	5.6	41.7	-	38.9	-	8.3	-	5.6	-	100
계	167	4,268	3,224	138	885	50	281	69	380	1,080	10,542*
	1.6	40.5	30.6	1.3	8.4	0.5	2.7	0.7	3.6	10.2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807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542건)에는 차이가 있음

6)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표 6-8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노인 독거	455	536	42	156	212	144	19	1,564
	10.3	11.8	16.2	39.3	30.8	85.2	52.8	14.8
노인 부부	1,916	1,935	37	68	43	10	2	4,011
	43.2	42.4	14.3	17.1	6.2	5.9	5.6	38.0
손자녀 동거	148	158	2	23	6	-	3	340
	3.3	3.5	0.8	5.8	0.9	-	8.3	3.2
자녀· 손자녀동거	149	173	-	6	16	2	-	346
	3.4	3.8	-	1.5	2.3	1.2	-	3.3
자녀 동거	1,409	1,575	11	112	116	8	6	3,237
	31.8	34.5	4.2	28.2	16.8	4.7	16.7	30.7
기타	354	184	167	32	296	5	6	1,044
	8.0	4.0	64.5	8.1	43.0	3.0	16.7	9.9
계	4,431	4,561	259	397	689	169	36	10,54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807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542건)에는 차이가 있음

7) 학대발생장소

표 6-9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요양병원	일반병원			
5,867	579	83	1	51	78	8	51	89	6,807
86.2	8.5	1.2	0.0	0.7	1.1	0.1	0.7	1.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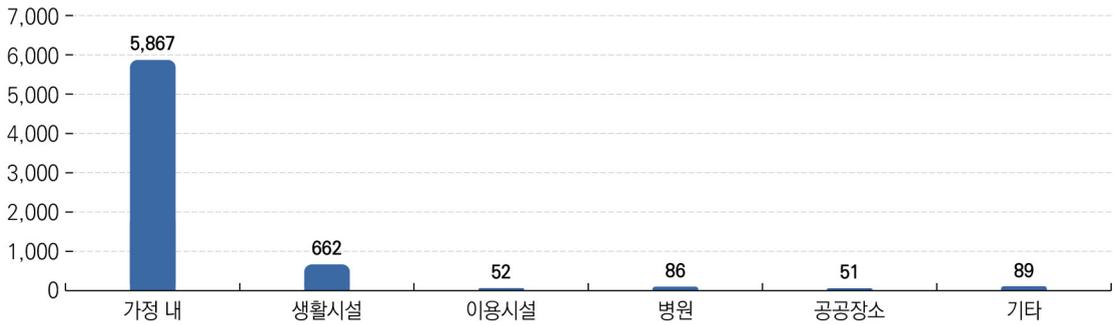


그림 6-3 학대발생장소

표 6-10 시군구별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지역	시군구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서울	종로구	9	90.0	-	-	-	1	10
	중구	9	100	-	-	-	-	9
	용산구	25	96.2	-	-	-	1	26
	성동구	28	100	-	-	-	-	28
	광진구	29	100	-	-	-	-	29
	동대문구	7	87.5	-	-	1	-	8
	중랑구	47	95.9	1	2.0	-	1	49
	성북구	16	100	-	-	-	-	16
	강북구	32	100	-	-	-	-	32
	도봉구	25	100	-	-	-	-	25
	노원구	37	100	-	-	-	-	37
	은평구	34	94.4	-	-	1	1	36
	서대문구	15	83.3	2	11.1	1	-	18
	마포구	26	96.3	-	1	-	-	27
	양천구	21	87.5	3	12.5	-	-	24
	강서구	36	90.0	2	5.0	-	1	40
구로구	38	92.7	2	4.9	-	1	41	
금천구	12	100	-	-	-	-	12	

지역	시군구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영등포구	7	100	-	-	-	-	-	-	-	-	-	-	7	100
	동작구	31	96.9	-	-	-	-	-	-	1	3.1	-	-	32	100
	관악구	34	97.1	1	2.9	-	-	-	-	-	-	-	-	35	100
	서초구	8	100	-	-	-	-	-	-	-	-	-	-	8	100
	강남구	10	83.3	-	-	1	8.3	1	8.3	-	-	-	-	12	100
	송파구	30	96.8	-	-	-	-	-	-	-	-	1	3.2	31	100
	강동구	24	100	-	-	-	-	-	-	-	-	-	-	24	100
	소계	590	95.8	11	1.8	2	0.3	4	0.6	3	0.5	6	1.0	616	100
부산	중구	7	77.8	-	-	-	-	1	11.1	1	11.1	-	-	9	100
	서구	27	100	-	-	-	-	-	-	-	-	-	-	27	100
	동구	38	100	-	-	-	-	-	-	-	-	-	-	38	100
	영도구	39	100	-	-	-	-	-	-	-	-	-	-	39	100
	부산진구	61	98.4	-	-	1	1.6	-	-	-	-	-	-	62	100
	동래구	29	87.9	-	-	-	-	-	-	-	-	4	12.1	33	100
	남구	50	98.0	-	-	-	-	1	2.0	-	-	-	-	51	100
	북구	48	100	-	-	-	-	-	-	-	-	-	-	48	100
	해운대구	50	94.3	-	-	-	-	-	-	1	1.9	2	3.8	53	100
	사하구	57	95.0	2	3.3	-	-	-	-	-	-	1	1.7	60	100
	금정구	13	81.3	1	6.3	-	-	-	-	2	12.5	-	-	16	100
	강서구	10	100	-	-	-	-	-	-	-	-	-	-	10	100
	연제구	33	100	-	-	-	-	-	-	-	-	-	-	33	100
	수영구	17	94.4	-	-	-	-	-	-	1	5.6	-	-	18	100
	사상구	36	100	-	-	-	-	-	-	-	-	-	-	36	100
	기장군	20	87.0	2	8.7	1	4.3	-	-	-	-	-	-	23	100
소계	535	96.2	5	0.9	2	0.4	2	0.4	5	0.9	7	1.3	556	100	
대구	중구	14	93.3	-	-	-	-	-	-	-	-	1	6.7	15	100
	동구	44	95.7	2	4.3	-	-	-	-	-	-	-	-	46	100
	서구	23	88.5	3	11.5	-	-	-	-	-	-	-	-	26	100
	남구	26	96.3	-	-	-	-	1	3.7	-	-	-	-	27	100
	북구	25	86.2	1	3.4	2	6.9	1	3.4	-	-	-	-	29	100
	수성구	41	91.1	-	-	1	2.2	3	6.7	-	-	-	-	45	100
	달서구	54	93.1	3	5.2	-	-	1	1.7	-	-	-	-	58	100
	달성군	36	94.7	1	2.6	-	-	1	2.6	-	-	-	-	38	100
소계	263	92.6	10	3.5	3	1.1	7	2.5	-	-	1	0.4	284	100	
인천	중구	23	88.5	1	3.8	1	3.8	1	3.8	-	-	-	-	26	100
	동구	16	100	-	-	-	-	-	-	-	-	-	-	16	100
	미추홀구	61	82.4	9	12.2	3	4.1	1	1.4	-	-	-	-	74	100
	연수구	20	76.9	4	15.4	2	7.7	-	-	-	-	-	-	26	100
	남동구	76	77.6	16	16.3	1	1.0	1	1.0	2	2.0	2	2.0	98	100
	부평구	74	92.5	2	2.5	2	2.5	-	-	1	1.3	1	1.3	80	100
	계양구	50	90.9	2	3.6	-	-	2	3.6	-	-	1	1.8	55	100

지역	시군구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서구	39	70.9	15	27.3	-	-	1	1.8	-	-	-	-	55	100
	강화군	20	87.0	1	4.3	-	-	-	-	1	4.3	1	4.3	23	100
	옹진군	1	20.0	4	80.0	-	-	-	-	-	-	-	-	5	100
	소계	380	83.0	54	11.8	9	2.0	6	1.3	4	0.9	5	1.1	458	100
광주	동구	23	95.8	-	-	-	-	-	-	-	-	1	4.2	24	100
	서구	26	86.7	1	3.3	-	-	3	10.0	-	-	-	-	30	100
	남구	21	95.5	-	-	-	-	1	4.5	-	-	-	-	22	100
	북구	58	93.5	-	-	1	1.6	2	3.2	-	-	1	1.6	62	100
	광산구	23	79.3	1	3.4	1	3.4	2	6.9	-	-	2	6.9	29	100
	소계	151	90.4	2	1.2	2	1.2	8	4.8	-	-	4	2.4	167	100
대전	동구	23	82.1	5	17.9	-	-	-	-	-	-	-	-	28	100
	중구	29	96.7	-	-	1	3.3	-	-	-	-	-	-	30	100
	서구	38	95.0	-	-	1	2.5	-	-	-	-	1	2.5	40	100
	유성구	10	32.3	20	64.5	-	-	-	-	-	-	1	3.2	31	100
	대덕구	15	88.2	1	5.9	1	5.9	-	-	-	-	-	-	17	100
	소계	115	78.8	26	17.8	3	2.1	-	-	-	-	2	1.4	146	100
울산	중구	35	92.1	-	-	-	-	-	-	-	-	3	7.9	38	100
	남구	45	91.8	-	-	-	-	-	-	-	-	4	8.2	49	100
	동구	25	86.2	3	10.3	1	3.4	-	-	-	-	-	-	29	100
	북구	21	87.5	1	4.2	-	-	1	4.2	-	-	1	4.2	24	100
	울주군	21	95.5	1	4.5	-	-	-	-	-	-	-	-	22	100
	소계	147	90.7	5	3.1	1	0.6	1	0.6	-	-	8	4.9	162	100
경기	수원시	86	89.6	4	4.2	-	-	-	-	2	2.1	4	4.2	96	100
	성남시	78	82.1	14	14.7	1	1.1	1	1.1	1	1.1	-	-	95	100
	의정부시	99	83.9	12	10.2	1	0.8	6	5.1	-	-	-	-	118	100
	안양시	36	97.3	1	2.7	-	-	-	-	-	-	-	-	37	100
	부천시	109	94.0	1	0.9	-	-	3	2.6	-	-	3	2.6	116	100
	광명시	38	92.7	1	2.4	-	-	-	-	1	2.4	1	2.4	41	100
	평택시	22	95.7	1	4.3	-	-	-	-	-	-	-	-	23	100
	동두천시	13	92.9	1	7.1	-	-	-	-	-	-	-	-	14	100
	안산시	72	98.6	-	-	-	-	-	-	-	-	1	1.4	73	100
	고양시	149	87.6	17	10.0	4	2.4	-	-	-	-	-	-	170	100
	과천시	10	100	-	-	-	-	-	-	-	-	-	-	10	100
	구리시	36	97.3	-	-	-	-	1	2.7	-	-	-	-	37	100
	남양주시	180	87.4	21	10.2	1	0.5	3	1.5	1	0.5	-	-	206	100
	오산시	18	100	-	-	-	-	-	-	-	-	-	-	18	100
	시흥시	51	85.0	6	10.0	-	-	1	1.7	2	3.3	-	-	60	100
	군포시	32	97.0	1	3.0	-	-	-	-	-	-	-	-	33	100
	의왕시	6	85.7	-	-	-	-	1	14.3	-	-	-	-	7	100
	하남시	8	57.1	5	35.7	-	-	1	7.1	-	-	-	-	14	100
용인시	68	81.0	14	16.7	-	-	2	2.4	-	-	-	-	84	100	

지역	시군구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충청	파주시	81	89.0	7	7.7	-	-	3	3.3	-	-	-	-	91	100
	이천시	7	70.0	1	10.0	-	-	1	10.0	-	-	1	10.0	10	100
	안성시	10	90.9	1	9.1	-	-	-	-	-	-	-	-	11	100
	김포시	25	75.8	6	18.2	-	-	2	6.1	-	-	-	-	33	100
	화성시	19	95.0	-	-	-	-	-	-	1	5.0	-	-	20	100
	광주시	28	87.5	2	6.3	1	3.1	-	-	-	-	1	3.1	32	100
	양주시	19	48.7	18	46.2	2	5.1	-	-	-	-	-	-	39	100
	포천시	32	69.6	14	30.4	-	-	-	-	-	-	-	-	46	100
	여주시	10	83.3	-	-	-	-	2	16.7	-	-	-	-	12	100
	연천군	-	-	4	100	-	-	-	-	-	-	-	-	4	100
	가평군	7	70.0	-	-	3	30.0	-	-	-	-	-	-	10	100
	양평군	8	88.9	1	11.1	-	-	-	-	-	-	-	-	9	100
	소계	1,357	86.5	153	9.8	13	0.8	27	1.7	8	0.5	11	0.7	1,569	100
강원	춘천시	72	80.9	12	13.5	-	-	-	-	-	-	5	5.6	89	100
	원주시	46	52.9	40	46.0	-	-	-	-	1	1.1	-	-	87	100
	강릉시	59	84.3	11	15.7	-	-	-	-	-	-	-	-	70	100
	동해시	6	100	-	-	-	-	-	-	-	-	-	-	6	100
	태백시	12	100	-	-	-	-	-	-	-	-	-	-	12	100
	속초시	9	100	-	-	-	-	-	-	-	-	-	-	9	100
	삼척시	6	100	-	-	-	-	-	-	-	-	-	-	6	100
	홍천군	14	19.7	56	78.9	-	-	-	-	-	-	1	1.4	71	100
	횡성군	3	100	-	-	-	-	-	-	-	-	-	-	3	100
	영월군	5	100	-	-	-	-	-	-	-	-	-	-	5	100
	평창군	9	100	-	-	-	-	-	-	-	-	-	-	9	100
	정선군	1	9.1	10	90.9	-	-	-	-	-	-	-	-	11	100
	철원군	5	35.7	-	-	-	-	9	64.3	-	-	-	-	14	100
	화천군	-	-	1	100	-	-	-	-	-	-	-	-	1	100
	양구군	4	100	-	-	-	-	-	-	-	-	-	-	4	100
	인제군	3	75.0	1	25.0	-	-	-	-	-	-	-	-	4	100
	고성군	4	80.0	1	20.0	-	-	-	-	-	-	-	-	5	100
양양군	2	7.7	24	92.3	-	-	-	-	-	-	-	-	26	100	
소계	260	60.2	156	36.1	-	-	9	2.1	1	0.2	6	1.4	432	100	
충북	청주시	53	73.6	10	13.9	3	4.2	1	1.4	1	1.4	4	5.6	72	100
	충주시	31	83.8	6	16.2	-	-	-	-	-	-	-	-	37	100
	제천시	16	64.0	2	8.0	-	-	7	28.0	-	-	-	-	25	100
	보은군	7	100	-	-	-	-	-	-	-	-	-	-	7	100
	옥천군	5	100	-	-	-	-	-	-	-	-	-	-	5	100
	영동군	-	-	-	-	-	-	-	-	-	-	-	-	-	-
	진천군	8	80.0	1	10.0	-	-	-	-	-	-	1	10.0	10	100
	괴산군	5	83.3	1	16.7	-	-	-	-	-	-	-	-	6	100
	음성군	22	88.0	-	-	-	-	-	-	1	4.0	2	8.0	25	100

지역	시군구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단양군	1	100	-	-	-	-	-	-	-	-	-	-	1	100
	증평군	3	100	-	-	-	-	-	-	-	-	-	-	3	100
	기타*	1	100	-	-	-	-	-	-	-	-	-	-	1	100
	소계	152	79.2	20	10.4	3	1.6	8	4.2	2	1.0	7	3.6	192	100
충남	천안시	50	94.3	1	1.9	-	-	2	3.8	-	-	-	-	53	100
	공주시	31	93.9	2	6.1	-	-	-	-	-	-	-	-	33	100
	보령시	19	100	-	-	-	-	-	-	-	-	-	-	19	100
	아산시	24	88.9	1	3.7	-	-	-	-	1	3.7	1	3.7	27	100
	서산시	30	96.8	-	-	-	-	-	-	-	-	1	3.2	31	100
	논산시	24	80.0	4	13.3	-	-	2	6.7	-	-	-	-	30	100
	계룡시	3	75.0	-	-	-	-	1	25.0	-	-	-	-	4	100
	당진시	20	80.0	4	16.0	-	-	1	4.0	-	-	-	-	25	100
	금산군	12	100	-	-	-	-	-	-	-	-	-	-	12	100
	부여군	11	73.3	4	26.7	-	-	-	-	-	-	-	-	15	100
	서천군	4	80.0	-	-	-	-	-	-	1	20.0	-	-	5	100
	청양군	1	100	-	-	-	-	-	-	-	-	-	-	1	100
	홍성군	5	100	-	-	-	-	-	-	-	-	-	-	5	100
	예산군	18	100	-	-	-	-	-	-	-	-	-	-	18	100
	태안군	5	100	-	-	-	-	-	-	-	-	-	-	5	100
	기타*	1	100	-	-	-	-	-	-	-	-	-	-	1	100
소계	258	90.8	16	5.6	-	-	6	2.1	2	0.7	2	0.7	284	10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36	94.7	-	-	1	2.6	-	-	-	-	1	2.6	38	100
	소계	36	94.7	-	-	1	2.6	-	-	-	-	1	2.6	38	100
전북	전주시	59	62.1	30	31.6	3	3.2	-	-	1	1.1	2	2.1	95	100
	군산시	45	95.7	-	-	-	-	1	2.1	1	2.1	-	-	47	100
	익산시	35	89.7	1	2.6	2	5.1	-	-	-	-	1	2.6	39	100
	정읍시	21	70.0	6	20.0	-	-	-	-	1	3.3	2	6.7	30	100
	남원시	13	100	-	-	-	-	-	-	-	-	-	-	13	100
	김제시	11	100	-	-	-	-	-	-	-	-	-	-	11	100
	완주군	19	100	-	-	-	-	-	-	-	-	-	-	19	100
	진안군	2	100	-	-	-	-	-	-	-	-	-	-	2	100
	무주군	2	100	-	-	-	-	-	-	-	-	-	-	2	100
	장수군	6	100	-	-	-	-	-	-	-	-	-	-	6	100
	임실군	8	100	-	-	-	-	-	-	-	-	-	-	8	100
	순창군	3	100	-	-	-	-	-	-	-	-	-	-	3	100
	고창군	16	100	-	-	-	-	-	-	-	-	-	-	16	100
	부안군	6	85.7	1	14.3	-	-	-	-	-	-	-	-	7	100
소계	246	82.6	38	12.8	5	1.7	1	0.3	3	1.0	5	1.7	298	100	
전남	목포시	50	92.6	2	3.7	2	3.7	-	-	-	-	-	-	54	100
	여수시	39	95.1	-	-	-	-	-	-	-	-	2	4.9	41	100
	순천시	35	94.6	1	2.7	-	-	-	-	1	2.7	-	-	37	100

지역	시군구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울진군	7	100	-	-	-	-	-	-	-	-	-	-	7	100
	울릉군	-	-	-	-	-	-	-	-	-	-	-	-	-	-
	소계	514	84.5	64	10.5	2	0.3	3	0.5	9	1.5	16	2.6	608	100
경남	창원시	114	99.1	-	-	-	-	1	0.9	-	-	-	-	115	100
	진주시	68	94.4	1	1.4	-	-	-	-	3	4.2	-	-	72	100
	통영시	11	100	-	-	-	-	-	-	-	-	-	-	11	100
	사천시	15	93.8	1	6.3	-	-	-	-	-	-	-	-	16	100
	김해시	78	95.1	2	2.4	1	1.2	-	-	1	1.2	-	-	82	100
	밀양시	6	60.0	3	30.0	-	-	-	-	1	10.0	-	-	10	100
	거제시	33	89.2	3	8.1	-	-	-	-	-	-	1	2.7	37	100
	양산시	71	98.6	-	-	-	-	1	1.4	-	-	-	-	72	100
	의령군	2	66.7	-	-	-	-	-	-	-	-	1	33.3	3	100
	함안군	5	100	-	-	-	-	-	-	-	-	-	-	5	100
	창녕군	2	66.7	-	-	-	-	1	33.3	-	-	-	-	3	100
	고성군	3	50.0	3	50.0	-	-	-	-	-	-	-	-	6	100
	남해군	4	80.0	-	-	-	-	1	20.0	-	-	-	-	5	100
	하동군	7	23.3	23	76.7	-	-	-	-	-	-	-	-	30	100
	산청군	3	100	-	-	-	-	-	-	-	-	-	-	3	100
	함양군	6	100	-	-	-	-	-	-	-	-	-	-	6	100
	거창군	6	85.7	-	-	1	14.3	-	-	-	-	-	-	7	100
	합천군	4	100	-	-	-	-	-	-	-	-	-	-	4	100
	소계	438	89.9	36	7.4	2	0.4	4	0.8	5	1.0	2	0.4	487	100
제주	제주시	74	93.7	1	1.3	1	1.3	-	-	2	2.5	1	1.3	79	100
	서귀포시	50	90.9	5	9.1	-	-	-	-	-	-	-	-	55	100
	소계	124	92.5	6	4.5	1	0.7	-	-	2	1.5	1	0.7	134	100
합계		5,867	86.2	662	9.7	52	0.8	86	1.3	51	0.7	89	1.3	6,807	100

*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가 아닌 타부양가족의 집에 머무르거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 등이 해당됨.

표 6-11 학대발생장소별 학대유형

(단위: 건, %)

구 분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 장소	기타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요양병원	일반병원			
신체적 학대	4,025	10	269	-	17	25	4	37	44	4,431
	43.4	10.6	33.9	-	28.3	26.3	44.4	42.0	34.9	42.0
정서적 학대	4,382	7	59	1	14	16	1	36	45	4,561
	47.2	7.4	7.4	100	23.3	16.8	11.1	40.9	35.7	43.3
성적 학대	62	7	166	-	4	13	-	5	2	259
	0.7	7.4	20.9	-	6.7	13.7	-	5.7	1.6	2.5
경제적 학대	312	56	18	-	-	-	-	3	8	397
	3.4	59.6	2.3	-	-	-	-	3.4	6.3	3.8
방임	304	14	281	-	25	41	4	3	17	689
	3.3	14.9	35.4	-	41.7	43.2	44.4	3.4	13.5	6.5
자기 방임	167	-	-	-	-	-	-	1	1	169
	1.8	-	-	-	-	-	-	1.1	0.8	1.6
유기	24	-	-	-	-	-	-	3	9	36
	0.3	-	-	-	-	-	-	3.4	7.1	0.3
계	9,276	94	793	1	60	95	9	88	126	10,54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807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542건)에는 차이가 있음

8) 학대발생빈도

표 6-12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일회성	6개월에 한번 이상	3개월에 한번 이상	1개월에 한번 이상	1주일에 한번 이상	매일	계
1,326	776	807	1,734	1,462	702	6,807
19.5	11.4	11.9	25.5	21.5	10.3	100



그림 6-4 학대발생빈도

표 6-13 학대발생빈도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일회성	857	595	23	46	184	11	15	1,731
	49.5	34.4	1.3	2.7	10.6	0.6	0.9	100
6개월에 한 번 이상	556	511	16	75	19	7	2	1,186
	46.9	43.1	1.3	6.3	1.6	0.6	0.2	100
3개월에 한 번 이상	563	633	7	35	33	2	-	1,273
	44.2	49.7	0.5	2.7	2.6	0.2	-	100
1개월에 한 번 이상	1,216	1,418	20	114	84	13	3	2,868
	42.4	49.4	0.7	4.0	2.9	0.5	0.1	100
1주일에 한 번 이상	931	1,170	60	82	164	24	1	2,432
	38.3	48.1	2.5	3.4	6.7	1.0	0.0	100
매일	308	234	133	45	205	112	15	1,052
	29.3	22.2	12.6	4.3	19.5	10.6	1.4	100
계	4,431	4,561	259	397	689	169	36	10,542*
	42.0	43.3	2.5	3.8	6.5	1.6	0.3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807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542건)에는 차이가 있음

9) 학대지속기간

표 6-14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일회성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계
1,242	245	935	2,178	2,207	6,807
18.2	3.6	13.7	32.0	32.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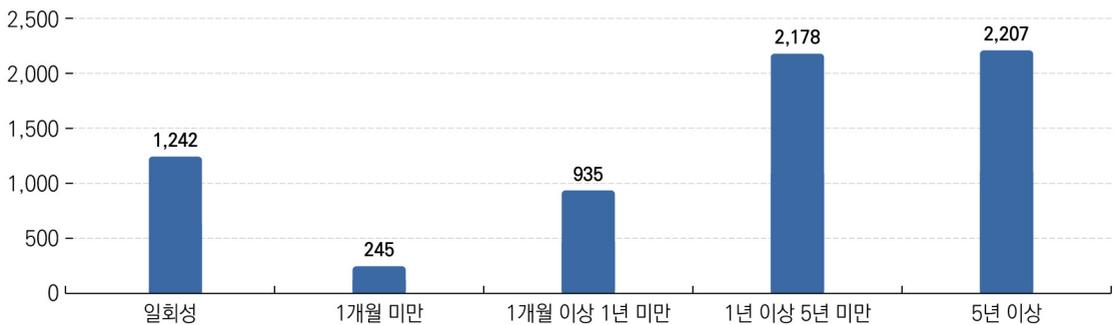


그림 6-5 학대지속기간

10) 학대발생원인(학대행위자 원인)

표 6-15 학대행위자 원인

(단위: 건, %)

학대행위자 원인	건 수	비율
개인의 내적문제 ²⁰⁾	4,900	37.4
개인의 외적문제 ²¹⁾	2,607	19.9
경제적 의존성	1,213	9.3
과거 학대 받은 경험	157	1.2
신체적 의존성	690	5.3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	1,402	10.7
정신적 의존성	1,581	12.1
피해자 부양부담	538	4.1
계	13,08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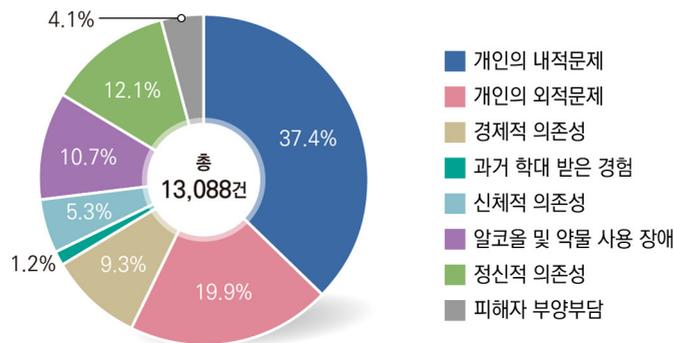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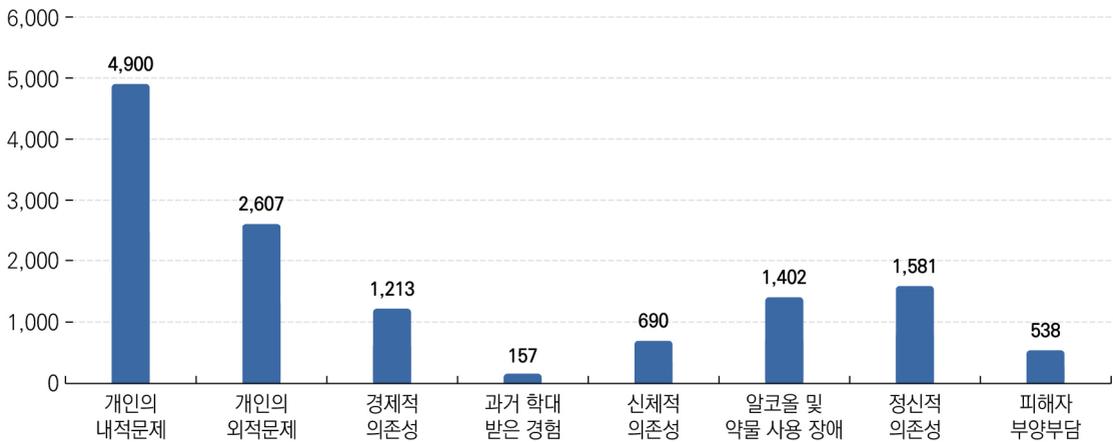


그림 6-6 학대행위자 원인

20) 개인의 내적인 문제는 성격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노, 고집스러운 성격, 자신감 결여, 지나친 경계, 사회적 반응의 결핍, 적대적 행위, 충동적 성격, 폭력적 성격, 사회적 고립, 정서적 욕구불만 등이 포함됨.

21) 개인의 외적인 문제는 학대행위자의 이혼, 재혼, 부부갈등, 스트레스, 실직 등이 해당됨.

표 6-16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학대발생원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개인의 내적문제	3,339	1,010	62	65	302	107	15	4,900
	68.1	20.6	1.3	1.3	6.2	2.2	0.3	100
개인의 외적문제	1,776	504	42	37	192	50	6	2,607
	68.1	19.3	1.6	1.4	7.4	1.9	0.2	100
경제적 의존성	833	285	2	44	34	12	3	1,213
	68.7	23.5	0.2	3.6	2.8	1.0	0.2	100
과거 학대 받은 경험	102	40	-	-	13	1	1	157
	65.0	25.5	-	-	8.3	0.6	0.6	100
신체적 의존성	527	113	2	3	19	24	2	690
	76.4	16.4	0.3	0.4	2.8	3.5	0.3	100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	1,075	310	2	1	3	11	-	1,402
	76.7	22.1	0.1	0.1	0.2	0.8	-	100
정신적 의존성	1,190	322	2	8	32	25	2	1,581
	75.3	20.4	0.1	0.5	2.0	1.6	0.1	100
피해자 부양부담	260	132	12	9	115	2	8	538
	48.3	24.5	2.2	1.7	21.4	0.4	1.5	100
계	9,102	2,716	124	167	710	232	37	13,088
	69.5	20.8	0.9	1.3	5.4	1.8	0.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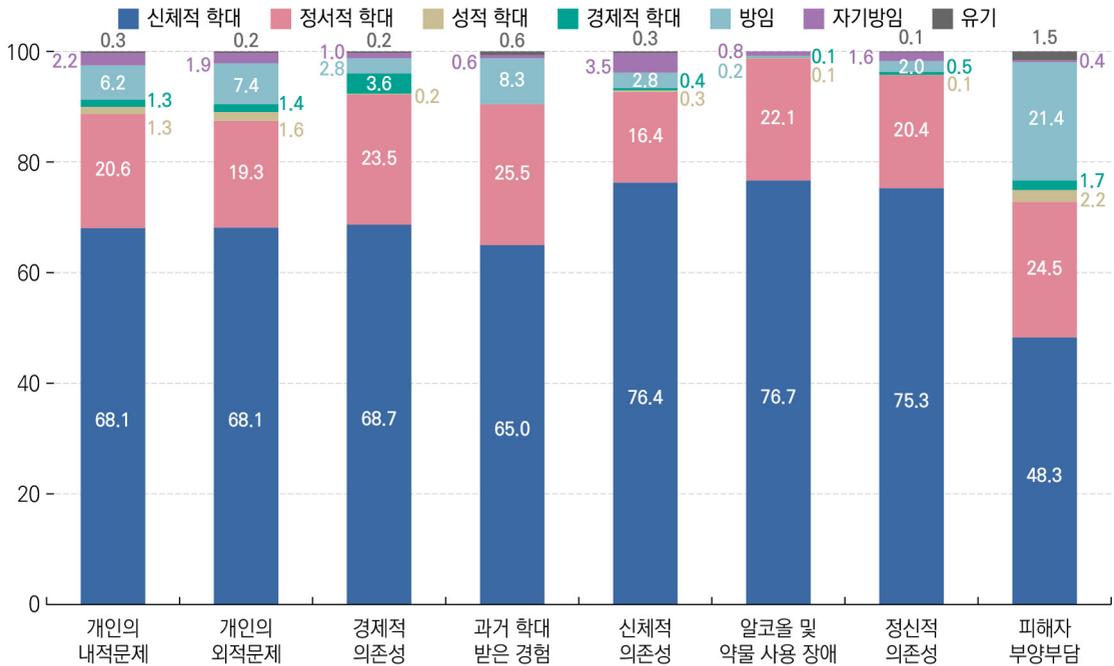


그림 6-7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유형

11) 학대발생원인(가족 - 환경원인)

표 6-17 가족 - 환경 원인

(단위: 건, %)

가족구성원과의 갈등 (자녀간, 형제간, 친족간)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피해자-학대행위자 갈등	계
1,540	594	4,914	7,048
21.9	8.4	69.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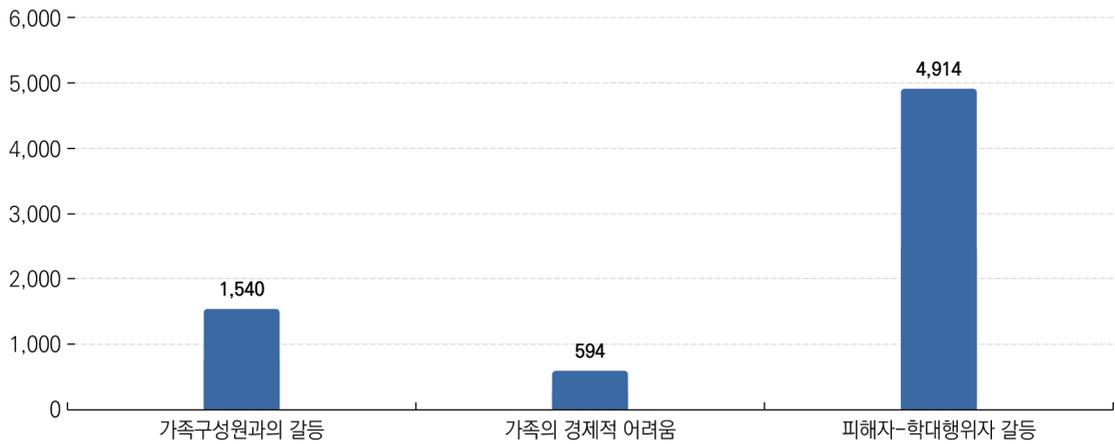


그림 6-8 가족 - 환경 원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PART 07

노인학대 상담 및 제공서비스 현황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PART 7 노인학대 상담 및 제공서비스 현황

01 | 노인학대 상담

1) 월별 상담횟수

표 7-1 월별 상담횟수

(단위: 회, %)

구분	학대상담		일반상담		전체상담	
1월	10,906	6.8	3,017	6.8	13,923	6.8
2월	10,766	6.8	3,127	7.0	13,893	6.8
3월	12,852	8.1	3,436	7.7	16,288	8.0
4월	12,217	7.7	3,683	8.3	15,900	7.8
5월	12,934	8.1	4,129	9.3	17,063	8.4
6월	12,831	8.0	3,843	8.6	16,674	8.2
7월	13,918	8.7	3,717	8.4	17,635	8.6
8월	13,492	8.5	3,837	8.6	17,329	8.5
9월	14,688	9.2	3,883	8.7	18,571	9.1
10월	14,156	8.9	3,841	8.6	17,997	8.8
11월	16,385	10.3	4,616	10.4	21,001	10.3
12월	14,257	8.9	3,353	7.5	17,610	8.6
계	159,402	100	44,482	100	203,884	100



그림 7-1 월별 상담횟수

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방법²²⁾에 따른 상담 구분

표 7-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단위: 회, %)

지역	지역기관	전 화		방 문		내 방		서 신		온라인		기 타		계	
서울	서울남부	2,711	2.5	653	1.8	6	0.3	213	2.3	19	1.2	826	37.4	4,428	2.8
	서울북부	3,098	2.9	876	2.4	26	1.4	292	3.1	5	0.3	100	4.5	4,397	2.8
	서울서부	2,912	2.7	1,036	2.9	6	0.3	207	2.2	142	9.3	146	6.6	4,449	2.8
	서울동부	2,667	2.5	964	2.7	18	0.9	198	2.1	53	3.5	212	9.6	4,112	2.6
	소계	11,388	10.5	3,529	9.8	56	2.9	910	9.8	219	14.4	1,284	58.2	17,386	10.9
부산	부산동부	4,363	4.0	1,728	4.8	44	2.3	384	4.1	5	0.3	126	5.7	6,650	4.2
	부산서부	4,123	3.8	854	2.4	98	5.1	194	2.1	14	0.9	105	4.8	5,388	3.4
	소계	8,486	7.8	2,582	7.2	142	7.5	578	6.2	19	1.2	231	10.5	12,038	7.6
대구	대구남부	4,037	3.7	819	2.3	34	1.8	240	2.6	21	1.4	14	0.6	5,165	3.2
	대구북부	2,826	2.6	743	2.1	48	2.5	210	2.3	48	3.2	57	2.6	3,932	2.5
	소계	6,863	6.3	1,562	4.3	82	4.3	450	4.9	69	4.5	71	3.2	9,097	5.7
인천	인천	1,950	1.8	882	2.4	19	1.0	436	4.7	30	2.0	2	0.1	3,319	2.1
	인천서부	3,408	3.1	541	1.5	48	2.5	247	2.7	53	3.5	43	1.9	4,340	2.7
	소계	5,358	4.9	1,423	3.9	67	3.5	683	7.4	83	5.5	45	2.0	7,659	4.8
광주	2,438	2.2	527	1.5	83	4.4	160	1.7	3	0.2	17	0.8	3,228	2.0	
대전	3,297	3.0	1,025	2.8	85	4.5	549	5.9	21	1.4	-	-	4,977	3.1	
울산	2,931	2.7	923	2.6	62	3.3	246	2.7	9	0.6	-	-	4,171	2.6	
경기	경기동부	1,535	1.4	699	1.9	9	0.5	443	4.8	13	0.9	6	0.3	2,705	1.7
	경기북부	6,273	5.8	1,122	3.1	42	2.2	793	8.5	26	1.7	1	0.0	8,257	5.2
	경기서부	3,631	3.3	870	2.4	20	1.0	469	5.1	119	7.8	3	0.1	5,112	3.2
	경기도	2,880	2.7	358	1.0	17	0.9	318	3.4	7	0.5	34	1.5	3,614	2.3
	경기북서부	3,502	3.2	934	2.6	32	1.7	410	4.4	194	12.7	238	10.8	5,310	3.3
	소계	17,821	16.4	3,983	11.0	120	6.3	2,433	26.2	359	23.6	282	12.8	24,998	15.7
강원	강원	3,863	3.6	1,941	5.4	174	9.1	337	3.6	334	21.9	21	1.0	6,670	4.2
	강원동부	1,757	1.6	726	2.0	110	5.8	186	2.0	102	6.7	7	0.3	2,888	1.8
	강원남부	2,152	2.0	862	2.4	32	1.7	109	1.2	105	6.9	52	2.4	3,312	2.1
	소계	7,772	7.2	3,529	9.8	316	16.6	632	6.8	541	35.5	80	3.6	12,870	8.1
충북	충북	1,776	1.6	932	2.6	133	7.0	125	1.3	5	0.3	44	2.0	3,015	1.9
	충북북부	926	0.9	761	2.1	14	0.7	122	1.3	1	0.1	5	0.2	1,829	1.1
	소계	2,702	2.5	1,693	4.7	147	7.7	247	2.7	6	0.4	49	2.2	4,844	3.0
충남	충남	3,077	2.8	1,451	4.0	49	2.6	274	3.0	76	5.0	3	0.1	4,930	3.1
	충남남부	1,266	1.2	612	1.7	38	2.0	106	1.1	10	0.7	9	0.4	2,041	1.3
	소계	4,343	4.0	2,063	5.7	87	4.6	380	4.1	86	5.7	12	0.5	6,971	4.4

22) 학대피해노인(6,8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 횟수는 159,402회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방법으로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내방상담, 서신을 통한 상담, 온라인 상담, 기타 등이 있음.

지역	지역기관	전 화		방 문		내 방		서 신		온라인		기 타		계	
전북	전북	2,121	2.0	857	2.4	161	8.4	75	0.8	2	0.1	17	0.8	3,233	2.0
	전북서부	1,884	1.7	711	2.0	8	0.4	110	1.2	11	0.7	6	0.3	2,730	1.7
	소계	4,005	3.7	1,568	4.3	169	8.9	185	2.0	13	0.9	23	1.0	5,963	3.7
전남	전남동부	2,322	2.1	555	1.5	45	2.4	157	1.7	3	0.2	4	0.2	3,086	1.9
	전남서부	3,867	3.6	2,178	6.0	55	2.9	117	1.3	11	0.7	3	0.1	6,231	3.9
	소계	6,189	5.7	2,733	7.6	100	5.2	274	3.0	14	0.9	7	0.3	9,317	5.8
경북	경북동부	2,842	2.6	1,194	3.3	65	3.4	141	1.5	7	0.5	3	0.1	4,252	2.7
	경북북부	3,768	3.5	1,332	3.7	103	5.4	172	1.9	5	0.3	31	1.4	5,411	3.4
	경북서부	3,789	3.5	1,216	3.4	33	1.7	227	2.4	11	0.7	23	1.0	5,299	3.3
	경북남부	2,018	1.9	1,188	3.3	94	4.9	402	4.3	4	0.3	3	0.1	3,709	2.3
	소계	12,417	11.5	4,930	13.7	295	15.5	942	10.2	27	1.8	60	2.7	18,671	11.7
경남	경남	6,217	5.7	1,300	3.6	17	0.9	238	2.6	9	0.6	18	0.8	7,799	4.9
	경남서부	3,451	3.2	1,227	3.4	13	0.7	229	2.5	11	0.7	26	1.2	4,957	3.1
	소계	9,668	8.9	2,527	7.0	30	1.6	467	5.0	20	1.3	44	2.0	12,756	8.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893	1.7	670	1.9	47	2.5	90	1.0	4	0.3	1	0.0	2,705	1.7
	제주도서귀포시	854	0.8	800	2.2	18	0.9	50	0.5	29	1.9	-	-	1,751	1.1
	소계	2,747	2.5	1,470	4.1	65	3.4	140	1.5	33	2.2	1	0.0	4,456	2.8
계		108,425	100	36,067	100	1,906	100	9,276	100	1,522	100	2,206	100	159,40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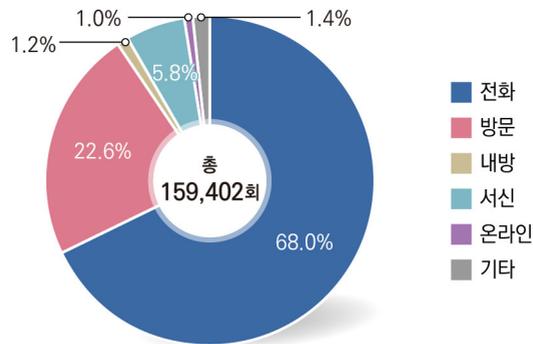


그림 7-2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3)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과정²³⁾에 따른 상담 구분

표 7-3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단위: 회, %)

지역	기관명	접수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		계	
서울	서울남부	147	2.1	3,118	2.6	157	2.4	1,006	4.1	4,428	2.8
	서울북부	118	1.7	3,630	3.0	155	2.4	494	2.0	4,397	2.8
	서울서부	164	2.4	3,072	2.5	181	2.8	1,032	4.2	4,449	2.8
	서울동부	187	2.7	3,504	2.9	173	2.7	248	1.0	4,112	2.6
	소계	616	8.9	13,324	11.0	666	10.2	2,780	11.4	17,386	10.9
부산	부산동부	318	4.6	4,378	3.6	304	4.7	1,650	6.8	6,650	4.2
	부산서부	238	3.4	4,547	3.7	221	3.4	382	1.6	5,388	3.4
	소계	556	8.1	8,925	7.3	525	8.1	2,032	8.4	12,038	7.6
대구	대구남부	169	2.4	4,133	3.4	167	2.6	696	2.9	5,165	3.2
	대구북부	190	2.8	2,878	2.4	178	2.7	686	2.8	3,932	2.5
	소계	359	5.2	7,011	5.8	345	5.3	1,382	5.7	9,097	5.7
인천	인천	245	3.5	1,899	1.6	285	4.4	890	3.7	3,319	2.1
	인천서부	213	3.1	3,673	3.0	179	2.7	275	1.1	4,340	2.7
	소계	458	6.6	5,572	4.6	464	7.1	1,165	4.8	7,659	4.8
광주		167	2.4	2,310	1.9	119	1.8	632	2.6	3,228	2.0
대전		146	2.1	3,497	2.9	157	2.4	1,177	4.8	4,977	3.1
울산		162	2.3	3,235	2.7	177	2.7	597	2.5	4,171	2.6
경기	경기동부	242	3.5	1,836	1.5	198	3.0	429	1.8	2,705	1.7
	경기북부	471	6.8	5,693	4.7	463	7.1	1,630	6.7	8,257	5.2
	경기서부	304	4.4	3,931	3.2	286	4.4	591	2.4	5,112	3.2
	경기도	240	3.5	2,922	2.4	180	2.8	272	1.1	3,614	2.3
	경기북서부	312	4.5	3,980	3.3	305	4.7	713	2.9	5,310	3.3
	소계	1,569	22.7	18,362	15.1	1,432	22.0	3,635	14.9	24,998	15.7
강원	강원	183	2.7	5,005	4.1	124	1.9	1,358	5.6	6,670	4.2
	강원동부	122	1.8	2,376	2.0	121	1.9	269	1.1	2,888	1.8
	강원남부	127	1.8	2,661	2.2	139	2.1	385	1.6	3,312	2.1
	소계	432	6.3	10,042	8.3	384	5.9	2,012	8.3	12,870	8.1
충북	충북	99	1.4	2,289	1.9	114	1.8	513	2.1	3,015	1.9
	충북북부	94	1.4	1,539	1.3	90	1.4	106	0.4	1,829	1.1
	소계	193	2.8	3,828	3.1	204	3.1	619	2.5	4,844	3.0
충남	충남	201	2.9	4,063	3.3	203	3.1	463	1.9	4,930	3.1
	충남남부	121	1.8	1,449	1.2	132	2.0	339	1.4	2,041	1.3
	소계	322	4.7	5,512	4.5	335	5.1	802	3.3	6,971	4.4

23) 학대피해노인(6,8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 횟수는 159,402회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과정으로는 접수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로 분류함.

지역	기관명	접수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		계	
전북	전북	148	2.1	2,684	2.2	118	1.8	283	1.2	3,233	2.0
	전북서부	150	2.2	2,301	1.9	89	1.4	190	0.8	2,730	1.7
	소계	298	4.3	4,985	4.1	207	3.2	473	1.9	5,963	3.7
전남	전남동부	152	2.2	2,488	2.0	146	2.2	300	1.2	3,086	1.9
	전남서부	230	3.3	4,756	3.9	157	2.4	1,088	4.5	6,231	3.9
	소계	382	5.5	7,244	6.0	303	4.7	1,388	5.7	9,317	5.8
경북	경북동부	170	2.5	3,385	2.8	176	2.7	521	2.1	4,252	2.7
	경북북부	146	2.1	4,561	3.7	148	2.3	556	2.3	5,411	3.4
	경북서부	205	3.0	4,327	3.6	193	3.0	574	2.4	5,299	3.3
	경북남부	101	1.5	2,424	2.0	102	1.6	1,082	4.4	3,709	2.3
	소계	622	9.0	14,697	12.1	619	9.5	2,733	11.2	18,671	11.7
경남	경남	341	4.9	5,411	4.4	333	5.1	1,714	7.0	7,799	4.9
	경남서부	146	2.1	3,990	3.3	121	1.9	700	2.9	4,957	3.1
	소계	487	7.1	9,401	7.7	454	7.0	2,414	9.9	12,756	8.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79	1.1	2,326	1.9	73	1.1	227	0.9	2,705	1.7
	제주도 서귀포시	55	0.8	1,385	1.1	49	0.8	262	1.1	1,751	1.1
	소계	134	1.9	3,711	3.1	122	1.9	489	2.0	4,456	2.8
계		6,903	100	121,656	100	6,513	100	24,330	100	159,40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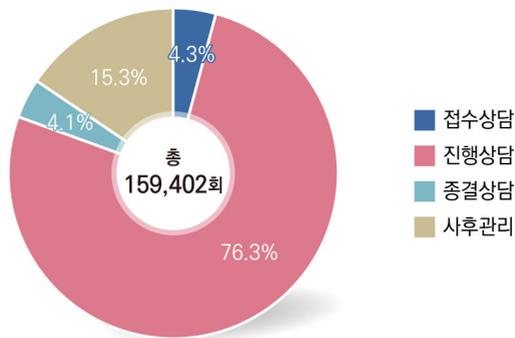


그림 7-3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4) 지역 및 기관별 전체상담 횟수

표 7-4 지역 및 기관별 전체상담 횟수

(단위: 회, %)

지역	기관명	학대상담		일반상담		계	
서울	서울남부	4,428	2.8	1,953	4.4	6,381	3.1
	서울북부	4,397	2.8	2,151	4.8	6,548	3.2
	서울서부	4,449	2.8	1,774	4.0	6,223	3.1
	서울동부	4,112	2.6	1,558	3.5	5,670	2.8
	소계	17,386	10.9	7,436	16.7	24,822	12.2
부산	부산동부	6,650	4.2	1,531	3.4	8,181	4.0
	부산서부	5,388	3.4	741	1.7	6,129	3.0
	소계	12,038	7.6	2,272	5.1	14,310	7.0
대구	대구남부	5,165	3.2	1,299	2.9	6,464	3.2
	대구북부	3,932	2.5	692	1.6	4,624	2.3
	소계	9,097	5.7	1,991	4.5	11,088	5.4
인천	인천	3,319	2.1	680	1.5	3,999	2.0
	인천서부	4,340	2.7	1,201	2.7	5,541	2.7
	소계	7,659	4.8	1,881	4.2	9,540	4.7
광주		3,228	2.0	1,044	2.3	4,272	2.1
대전		4,977	3.1	3,190	7.2	8,167	4.0
울산		4,171	2.6	866	1.9	5,037	2.5
경기	경기동부	2,705	1.7	1,162	2.6	3,867	1.9
	경기북부	8,257	5.2	797	1.8	9,054	4.4
	경기서부	5,112	3.2	2,156	4.8	7,268	3.6
	경기도	3,614	2.3	2,256	5.1	5,870	2.9
	경기북서부	5,310	3.3	614	1.4	5,924	2.9
	소계	24,998	15.7	6,985	15.7	31,983	15.7
강원	강원	6,670	4.2	746	1.7	7,416	3.6
	강원동부	2,888	1.8	965	2.2	3,853	1.9
	강원남부	3,312	2.1	509	1.1	3,821	1.9
	소계	12,870	8.1	2,220	5.0	15,090	7.4
충북	충북	3,015	1.9	1,352	3.0	4,367	2.1
	충북북부	1,829	1.1	635	1.4	2,464	1.2
	소계	4,844	3.0	1,987	4.5	6,831	3.4

지역	기관명	학대상담		일반상담		계	
충남	충남	4,930	3.1	1,525	3.4	6,455	3.2
	충남남부	2,041	1.3	555	1.2	2,596	1.3
	소계	6,971	4.4	2,080	4.7	9,051	4.4
전북	전북	3,233	2.0	509	1.1	3,742	1.8
	전북서부	2,730	1.7	1,113	2.5	3,843	1.9
	소계	5,963	3.7	1,622	3.6	7,585	3.7
전남	전남동부	3,086	1.9	444	1.0	3,530	1.7
	전남서부	6,231	3.9	1,117	2.5	7,348	3.6
	소계	9,317	5.8	1,561	3.5	10,878	5.3
경북	경북동부	4,252	2.7	1,238	2.8	5,490	2.7
	경북북부	5,411	3.4	1,088	2.4	6,499	3.2
	경북서부	5,299	3.3	1,188	2.7	6,487	3.2
	경북남부	3,709	2.3	1,379	3.1	5,088	2.5
	소계	18,671	11.7	4,893	11.0	23,564	11.6
경남	경남	7,799	4.9	809	1.8	8,608	4.2
	경남서부	4,957	3.1	1,128	2.5	6,085	3.0
	소계	12,756	8.0	1,937	4.4	14,693	7.2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705	1.7	1,554	3.5	4,259	2.1
	제주도 서귀포시	1,751	1.1	963	2.2	2,714	1.3
	소계	4,456	2.8	2,517	5.7	6,973	3.4
계		159,402	100	44,482	100	203,88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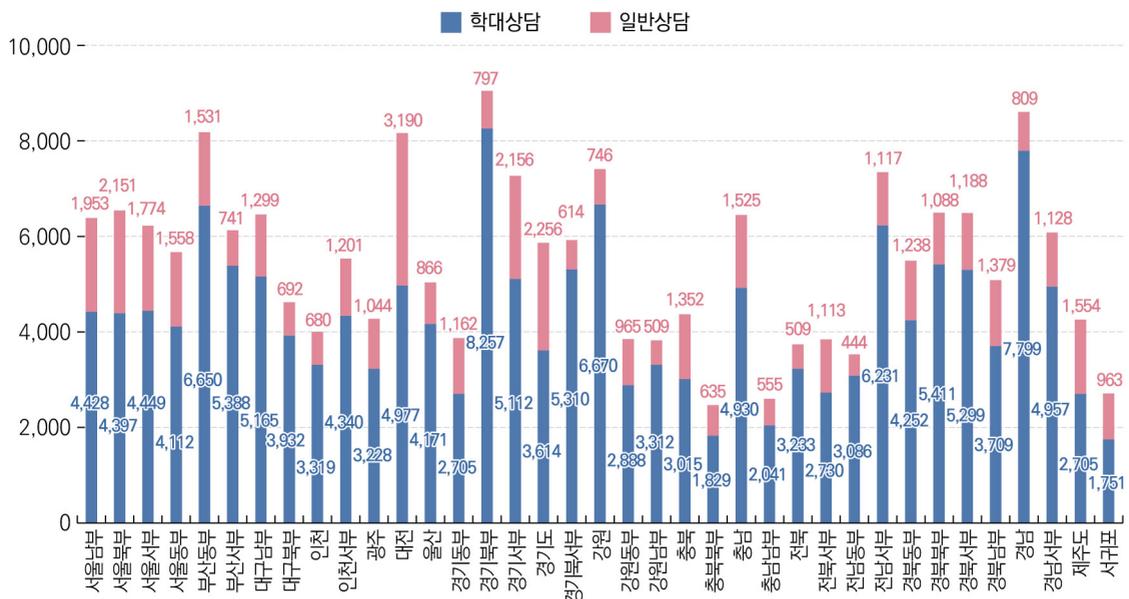


그림 7-4 지역 및 기관별 전체상담 횟수

5) 지역 및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 횟수

표 7-5 지역 및 기관별 한 사례당 평균 상담 횟수

(단위: 회, 건, %)

지역	기관명	학대상담 횟수	학대상례 건수	한 사례당 학대상담 횟수	일반상담 횟수	일반사례 건수	한 사례당 일반상담 횟수
서울	서울남부	4,428	147	30.1	1,953	580	3.4
	서울북부	4,397	118	37.3	2,151	496	4.3
	서울서부	4,449	164	27.1	1,774	416	4.3
	서울동부	4,112	187	22.0	1,558	328	4.8
	소계	17,386	616	28.0	7,436	1,820	4.1
부산	부산동부	6,650	318	20.9	1,531	368	4.2
	부산서부	5,388	238	22.6	741	317	2.3
	소계	12,038	556	22.0	2,272	685	3.3
대구	대구남부	5,165	169	30.6	1,299	313	4.2
	대구북부	3,932	115	34.2	692	291	2.4
	소계	9,097	284	32.0	1,991	604	3.3
인천	인천	3,319	245	13.5	680	281	2.4
	인천서부	4,340	213	20.4	1,201	147	8.2
	소계	7,659	458	17.0	1,881	428	4.4
광주		3,228	167	19.3	1,044	231	4.5
대전		4,977	146	34.1	3,190	520	6.1
울산		4,171	162	25.7	866	344	2.5
경기	경기동부	2,705	242	11.2	1,162	340	3.4
	경기북부	8,257	470	17.6	797	359	2.2
	경기서부	5,112	304	16.8	2,156	286	7.5
	경기도	3,614	241	15.0	2,256	338	6.7
	경기북서부	5,310	312	17.0	614	224	2.7
	소계	24,998	1,569	16.0	6,985	1,547	4.5
강원	강원	6,670	183	36.4	746	325	2.3
	강원동부	2,888	122	23.7	965	419	2.3
	강원남부	3,312	127	26.1	509	267	1.9
	소계	12,870	432	30.0	2,220	1,011	2.2
충북	충북	3,015	98	30.8	1,352	580	2.3
	충북북부	1,829	94	19.5	635	268	2.4
	소계	4,844	192	25.0	1,987	848	2.3
충남	충남	4,930	202	24.4	1,525	191	8.0
	충남남부	2,041	120	17.0	555	103	5.4
	소계	6,971	322	22.0	2,080	294	7.1

지역	기관명	학대상담 횟수	학대사례 건수	한 사례당 학대상담 횟수	일반상담 횟수	일반사례 건수	한 사례당 일반상담 횟수
전북	전북	3,233	148	21.8	509	162	3.1
	전북서부	2,730	150	18.2	1,113	479	2.3
	소계	5,963	298	20.0	1,622	641	2.5
전남	전남동부	3,086	152	20.3	444	222	2.0
	전남서부	6,231	224	27.8	1,117	341	3.3
	소계	9,317	376	25.0	1,561	563	2.8
경북	경북동부	4,252	170	25.0	1,238	282	4.4
	경북북부	5,411	132	41.0	1,088	418	2.6
	경북서부	5,299	205	25.8	1,188	496	2.4
	경북남부	3,709	101	36.7	1,379	215	6.4
	소계	18,671	608	30.7	4,893	1,411	3.5
경남	경남	7,799	341	22.9	809	559	1.4
	경남서부	4,957	146	34.0	1,128	476	2.4
	소계	12,756	487	26.2	1,937	1,035	1.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705	79	34.2	1,554	463	3.4
	제주도 서귀포시	1,751	55	31.8	963	300	3.2
	소계	4,456	134	33.3	2,517	763	3.3
계		159,402	6,807	23.4	44,482	12,745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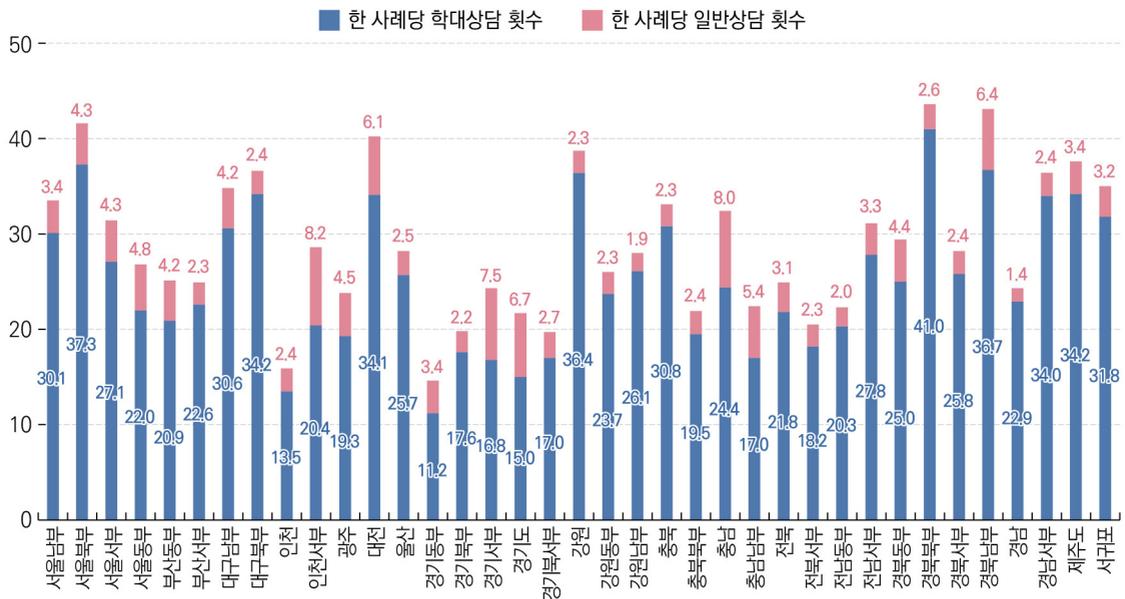


그림 7-5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 횟수

02 | 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서비스

1)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표 7-6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단위: 회, %)

구 분		횟 수	비 율
상담서비스	학대피해노인 개별상담	62,586	26.9
	학대피해노인 집단상담	223	0.1
	가족상담	17,011	7.3
	관련자 상담	47,691	20.5
	심리 및 기타검사	838	0.4
	위기개입 기술	562	0.2
	강점관점 개입 기술	898	0.4
	소계	129,809	55.8
복지서비스 연계	국민기초수급권 연결	166	0.1
	긴급복지지원 연결	47	0.0
	가족지원서비스 연결	162	0.1
	재가서비스 연결	255	0.1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3,982	1.7
	기타자원 연결	6,754	2.9
	후원 연결	1,235	0.5
	직접 후원	4,876	2.1
소계	17,477	7.5	
법률서비스 연계	법률상담 연결	323	0.1
	법률소송 지원	73	0.0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52	0.0
	소계	448	0.2
의료서비스 연계	연계(이송)	69	0.0
	연계(의료기관 서비스 제공)	362	0.2
	연계(방문간호)	28	0.0
	지원(이송 및 동행)	720	0.3
	지원(의료비 지급)	340	0.1
	소계	1,519	0.7
보호서비스	지킴이 연결	366	0.2
	시설보호	50	0.0
	일시보호	1,392	0.6
	소계	1,808	0.8
정보제공 서비스	정보제공	73,834	31.7
	재학대 예방교육	7,761	3.3
	소계	81,595	35.1
계		232,656	100

2)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현황

표 7-7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현황

(단위: 회, %)

	구분	횟수	비율
상담서비스	학대행위자 개별상담	19,923	40.0
	학대행위자 집단상담	108	0.2
	가족상담	2,060	4.1
	관련자 상담	5,144	10.3
	심리 및 기타검사	154	0.3
	소계	27,389	55.0
복지서비스 연계	국민기초수급권 연결	12	0.0
	긴급복지지원 연결	3	0.0
	가족지원서비스 연결	60	0.1
	재가서비스 연결	27	0.1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761	1.5
	기타자원 연결	593	1.2
	직접 후원	493	1.0
	소계	1,949	3.9
법률서비스 연계	법률상담 연결	24	0.0
	법률소송 지원	2	0.0
	소계	26	0.1
의료서비스 연계	연계(이송)	13	0.0
	연계(의료기관서비스제공)	51	0.1
	연계(방문간호)	2	0.0
	지원(이송 및 동행)	71	0.1
	지원(의료비지급)	23	0.0
	소계	160	0.3
정보제공 서비스	재학대예방교육	5,132	10.3
	정보제공	15,168	30.4
	소계	20,300	40.7
계		49,824	10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PART 08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사례분석 결과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PART
8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사례분석 결과

01 | 학대피해노인 현황

1) 65세 이상 인구 수 대비 학대피해노인 성별

표 8-1 65세 이상 인구 수 대비 학대피해노인 성별 분포

(단위: 명, %)

구 분	65세 이상 인구 수	비 율	학대피해노인 수	비 율
남	4,069,199	43.9	1,562	22.9
여	5,198,091	56.1	5,245	77.1
계	9,267,290	100	6,807	100

주. 65세 이상 인구수 : 행정안전부 2022년 주민등록 인구통계(2022.12. 기준)

2)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표 8-2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 분포

(단위: 명, %)

피해노인 성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남성	279	318	339	336	213	59	18	-	1,562
	17.9	20.4	21.7	21.5	13.6	3.8	1.2	-	100
여성	1,188	1,121	1,032	936	591	278	85	14	5,245
	22.7	21.4	19.7	17.8	11.3	5.3	1.6	0.3	100
계	1,467	1,439	1,371	1,272	804	337	103	14	6,807
	21.6	21.1	20.1	18.7	11.8	5.0	1.5	0.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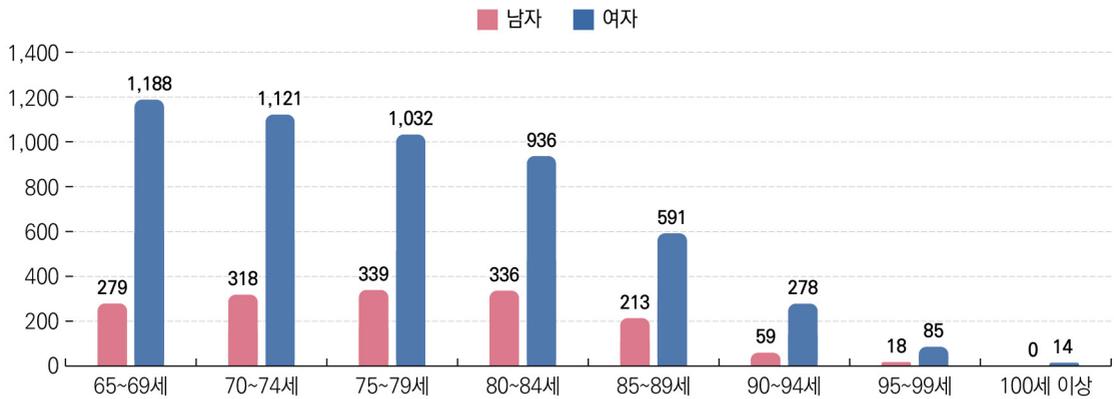


그림 8-1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분포

3)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표 8-3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단위: 명, %)

지역	기관명	남 성		여 성		계	
서울	서울남부	29	19.7	118	80.3	147	100
	서울북부	17	14.4	101	85.6	118	100
	서울서부	39	23.8	125	76.2	164	100
	서울동부	40	21.4	147	78.6	187	100
	소계	125	20.3	491	79.7	616	100
부산	부산동부	63	19.8	255	80.2	318	100
	부산서부	57	23.9	181	76.1	238	100
	소계	120	21.6	436	78.4	556	100
대구	대구남부	23	13.6	146	86.4	169	100
	대구북부	23	20.0	92	80.0	115	100
	소계	46	16.2	238	83.8	284	100
인천	인천	53	21.6	192	78.4	245	100
	인천서부	42	19.7	171	80.3	213	100
	소계	95	20.7	363	79.3	458	100
광주		38	22.8	129	77.2	167	100
대전		43	29.5	103	70.5	146	100
울산		28	17.3	134	82.7	162	100
경기	경기동부	51	21.1	191	78.9	242	100
	경기북부	144	30.6	326	69.4	470	100
	경기서부	66	21.7	238	78.3	304	100
	경기도	48	19.9	193	80.1	241	100
	경기북서부	85	27.2	227	72.8	312	100
	소계	394	25.1	1,175	74.9	1,569	100

지역	기관명	남 성		여 성		계	
강원	강원	62	33.9	121	66.1	183	100
	강원동부	39	32.0	83	68.0	122	100
	강원남부	38	29.9	89	70.1	127	100
	소계	139	32.2	293	67.8	432	100
충북	충북	19	19.4	79	80.6	98	100
	충북북부	18	19.1	76	80.9	94	100
	소계	37	19.3	155	80.7	192	100
충남	충남	53	26.2	149	73.8	202	100
	충남남부	25	20.8	95	79.2	120	100
	소계	78	24.2	244	75.8	322	100
전북	전북	39	26.4	109	73.6	148	100
	전북서부	26	17.3	124	82.7	150	100
	소계	65	21.8	233	78.2	298	100
전남	전남동부	30	19.7	122	80.3	152	100
	전남서부	40	17.9	184	82.1	224	100
	소계	70	18.6	306	81.4	376	100
경북	경북동부	32	18.8	138	81.2	170	100
	경북북부	35	26.5	97	73.5	132	100
	경북서부	53	25.9	152	74.1	205	100
	경북남부	20	19.8	81	80.2	101	100
	소계	140	23.0	468	77.0	608	100
경남	경남	80	23.5	261	76.5	341	100
	경남서부	34	23.3	112	76.7	146	100
	소계	114	23.4	373	76.6	487	1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1	26.6	58	73.4	79	100
	제주도서귀포시	9	16.4	46	83.6	55	100
	소계	30	22.4	104	77.6	134	100
계		1,562	22.9	5,245	77.1	6,807	100

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표 8-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피해자 성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남성	887	929	33	126	224	77	14	2,290
	38.7	40.6	1.4	5.5	9.8	3.4	0.6	100
여성	3,544	3,632	226	271	465	92	22	8,252
	42.9	44.0	2.7	3.3	5.6	1.1	0.3	100
계	4,431	4,561	259	397	689	169	36	10,542*
	42.0	43.3	2.5	3.8	6.5	1.6	0.3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807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542건)에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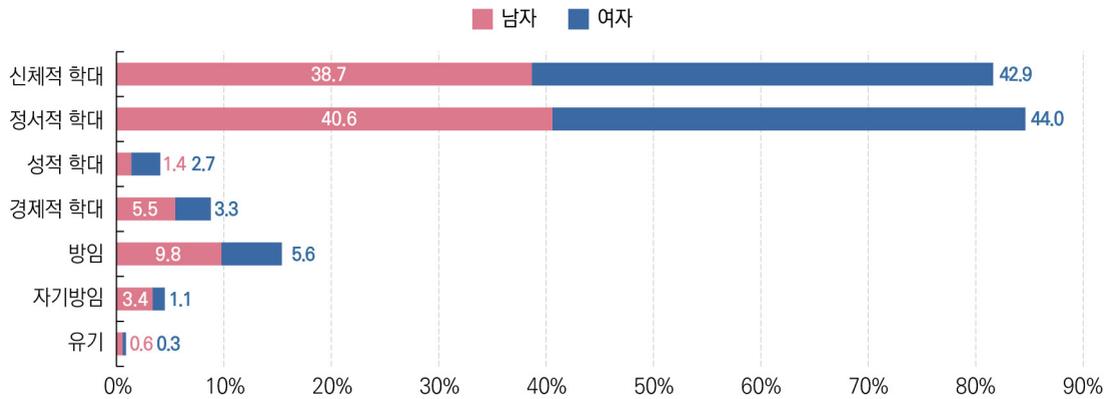


그림 8-2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5)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표 8-5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피해자 연령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65~69세	1,100	1,126	22	44	41	30	3	2,366
	46.5	47.6	0.9	1.9	1.7	1.3	0.1	100
70~74세	1,021	1,084	26	68	60	31	4	2,294
	44.5	47.3	1.1	3.0	2.6	1.4	0.2	100
75~79세	899	991	23	78	103	41	7	2,142
	42.0	46.3	1.1	3.6	4.8	1.9	0.3	100
80~84세	775	802	51	101	175	34	8	1,946
	39.8	41.2	2.6	5.2	9.0	1.7	0.4	100
85~89세	421	401	66	72	171	25	7	1,163
	36.2	34.5	5.7	6.2	14.7	2.1	0.6	100
90~94세	168	126	50	24	93	7	6	474
	35.4	26.6	10.5	5.1	19.6	1.5	1.3	100
95~99세	42	28	21	10	38	1	1	141
	29.8	19.9	14.9	7.1	27.0	0.7	0.7	100
100세 이상	5	3	-	-	8	-	-	16
	31.3	18.8	-	-	50.0	-	-	100
계	4,431	4,561	259	397	689	169	36	10,542*
	42.0	43.3	2.5	3.8	6.5	1.6	0.3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807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542건)에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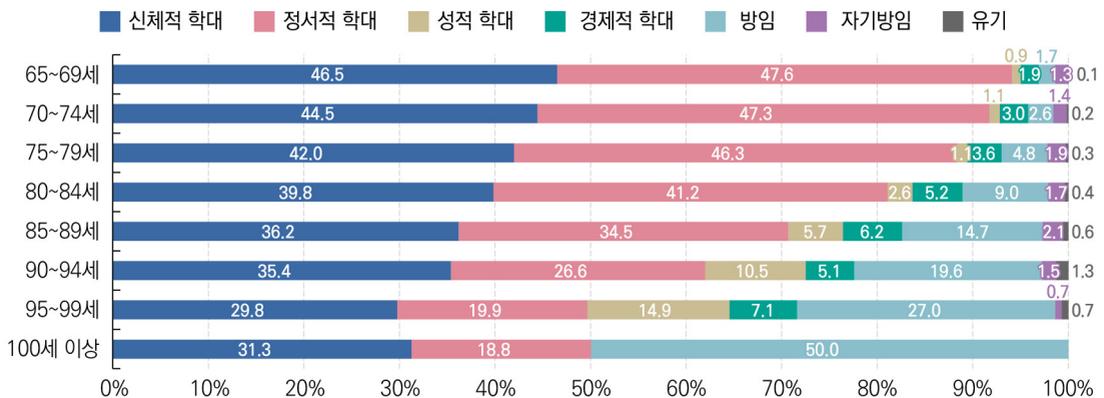


그림 8-3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6)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표 8-6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단위: 명, %)

구 분		명 수	비 율
배우자 있음	초혼	3,606	53.0
	재혼	308	4.5
	사실혼	225	3.3
	소계	4,139	60.8
배우자 없음	사별	2,189	32.2
	이혼	309	4.5
	별거	82	1.2
	가출	13	0.2
	미혼	75	1.1
	소계	2,668	39.2
계		6,807	100

7)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및 동거자 유형

표 8-7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단위: 명, %)

동거	비동거	계
4,833	1,974	6,807
71.0	29.0	100

표 8-8 학대피해노인 동거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명 수	비 율
배우자	3,266	45.4
아 들	1,897	26.4
딸	611	8.5
손자녀	483	6.7
시설	477	6.6
며느리	164	2.3
기타 동거인	123	1.7
병원	63	0.9
기타 친·인척	48	0.7
사위	58	0.8
계	7,190*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동거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6,807명)와 동거자 유형(7,190명)은 차이가 있음

8)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표 8-9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명, %)

피해자가구형태	명 수	비 율
노인독거	1,127	16.6
노인부부	2,467	36.2
자녀동거	2,034	29.9
손자녀동거	205	3.0
자녀·손자녀동거	228	3.3
기 타	746	11.0
계	6,807	100

표 8-10 시군구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명, %)

지역	시군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 동거		기타		계	
서울	종로구	2	20.0	4	40.0	3	30.0	-	-	1	10.0	-	-	10	100
	중구	1	11.1	3	33.3	4	44.4	1	11.1	-	-	-	-	9	100
	용산구	3	11.5	12	46.2	10	38.5	-	-	1	3.8	-	-	26	100
	성동구	1	3.6	14	50.0	12	42.9	1	3.6	-	-	-	-	28	100
	광진구	2	6.9	17	58.6	9	31.0	-	-	1	3.4	-	-	29	100
	동대문구	-	-	4	50.0	2	25.0	-	-	-	-	2	25.0	8	100
	중랑구	5	10.2	23	46.9	18	36.7	-	-	2	4.1	1	2.0	49	100
	성북구	2	12.5	6	37.5	7	43.8	-	-	1	6.3	-	-	16	100
	강북구	1	3.1	11	34.4	15	46.9	1	3.1	1	3.1	3	9.4	32	100
	도봉구	2	8.0	11	44.0	9	36.0	2	8.0	1	4.0	-	-	25	100
	노원구	3	8.1	14	37.8	17	45.9	2	5.4	-	-	1	2.7	37	100
	은평구	2	5.6	12	33.3	12	33.3	-	-	4	11.1	6	16.7	36	100
	서대문구	-	-	4	22.2	9	50.0	1	5.6	-	-	4	22.2	18	100
	마포구	2	7.4	12	44.4	5	18.5	4	14.8	-	-	4	14.8	27	100
	양천구	3	12.5	8	33.3	7	29.2	1	4.2	2	8.3	3	12.5	24	100
	강서구	7	17.5	13	32.5	9	22.5	1	2.5	4	10.0	6	15.0	40	100
	구로구	6	14.6	13	31.7	17	41.5	2	4.9	-	-	3	7.3	41	100
	금천구	2	16.7	3	25.0	6	50.0	-	-	1	8.3	-	-	12	100
	영등포구	2	28.6	1	14.3	4	57.1	-	-	-	-	-	-	7	100
	동작구	1	3.1	13	40.6	12	37.5	-	-	2	6.3	4	12.5	32	100
관악구	6	17.1	10	28.6	12	34.3	1	2.9	4	11.4	2	5.7	35	100	
서초구	1	12.5	3	37.5	3	37.5	-	-	-	-	1	12.5	8	100	
강남구	2	16.7	3	25.0	5	41.7	1	8.3	-	-	1	8.3	12	100	
송파구	5	16.1	11	35.5	11	35.5	-	-	2	6.5	2	6.5	31	100	
동구	1	4.2	6	25.0	14	58.3	1	4.2	2	8.3	-	-	24	100	
소계	62	10.1	231	37.5	232	37.7	19	3.1	29	4.7	43	7.0	616	100	

지역	시군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 동거		기타		계	
부산	중구	-	-	4	44.4	2	22.2	-	-	2	22.2	1	11.1	9	100
	서구	4	14.8	16	59.3	6	22.2	1	3.7	-	-	-	-	27	100
	동구	6	15.8	18	47.4	10	26.3	1	2.6	1	2.6	2	5.3	38	100
	영도구	1	2.6	19	48.7	19	48.7	-	-	-	-	-	-	39	100
	부산진구	12	19.4	20	32.3	18	29.0	3	4.8	5	8.1	4	6.5	62	100
	동래구	8	24.2	18	54.5	3	9.1	-	-	-	-	4	12.1	33	100
	남구	2	3.9	26	51.0	20	39.2	2	3.9	-	-	1	2.0	51	100
	북구	4	8.3	18	37.5	19	39.6	3	6.3	3	6.3	1	2.1	48	100
	해운대구	10	18.9	20	37.7	14	26.4	4	7.5	3	5.7	2	3.8	53	100
	사하구	4	6.7	31	51.7	20	33.3	1	1.7	1	1.7	3	5.0	60	100
	금정구	7	43.8	5	31.3	3	18.8	-	-	-	-	1	6.3	16	100
	강서구	3	30.0	1	10.0	5	50.0	-	-	-	-	1	10.0	10	100
	연제구	6	18.2	17	51.5	7	21.2	1	3.0	2	6.1	-	-	33	100
	수영구	3	16.7	6	33.3	6	33.3	1	5.6	1	5.6	1	5.6	18	100
	사상구	6	16.7	15	41.7	12	33.3	2	5.6	1	2.8	-	-	36	100
	기장군	8	34.8	7	30.4	5	21.7	1	4.3	1	4.3	1	4.3	23	100
소계	84	15.1	241	43.3	169	30.4	20	3.6	20	3.6	22	4.0	556	100	
대구	중구	4	26.7	2	13.3	7	46.7	2	13.3	-	-	-	-	15	100
	동구	10	21.7	21	45.7	9	19.6	-	-	5	10.9	1	2.2	46	100
	서구	4	15.4	6	23.1	11	42.3	2	7.7	1	3.8	2	7.7	26	100
	남구	3	11.1	16	59.3	7	25.9	-	-	1	3.7	-	-	27	100
	북구	4	13.8	11	37.9	7	24.1	3	10.3	2	6.9	2	6.9	29	100
	수성구	6	13.3	27	60.0	9	20.0	1	2.2	1	2.2	1	2.2	45	100
	달서구	8	13.8	28	48.3	13	22.4	4	6.9	-	-	5	8.6	58	100
	달성군	6	15.8	21	55.3	5	13.2	1	2.6	1	2.6	4	10.5	38	100
소계	45	15.8	132	46.5	68	23.9	13	4.6	11	3.9	15	5.3	284	100	
인천	중구	7	26.9	9	34.6	6	23.1	-	-	-	-	4	15.4	26	100
	동구	2	12.5	7	43.8	7	43.8	-	-	-	-	-	-	16	100
	미추홀구	14	18.9	22	29.7	23	31.1	4	5.4	2	2.7	9	12.2	74	100
	연수구	4	15.4	10	38.5	8	30.8	-	-	-	-	4	15.4	26	100
	남동구	10	10.2	43	43.9	25	25.5	2	2.0	2	2.0	16	16.3	98	100
	부평구	9	11.3	35	43.8	26	32.5	5	6.3	3	3.8	2	2.5	80	100
	계양구	6	10.9	25	45.5	19	34.5	2	3.6	-	-	3	5.5	55	100
	서구	9	16.4	14	25.5	11	20.0	4	7.3	2	3.6	15	27.3	55	100
	강화군	3	13.0	6	26.1	10	43.5	-	-	1	4.3	3	13.0	23	100
	옹진군	-	-	1	20.0	-	-	-	-	-	-	4	80.0	5	100
	소계	64	14.0	172	37.6	135	29.5	17	3.7	10	2.2	60	13.1	458	100
광주	동구	4	16.7	14	58.3	4	16.7	1	4.2	1	4.2	-	-	24	100
	서구	6	20.0	14	46.7	8	26.7	-	-	-	-	2	6.7	30	100
	남구	4	18.2	10	45.5	4	18.2	-	-	2	9.1	2	9.1	22	100
	북구	7	11.3	36	58.1	14	22.6	2	3.2	3	4.8	-	-	62	100

지역	시군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 동거		기타		계	
		가수	비율	가수	비율	가수	비율	가수	비율	가수	비율	가수	비율	가수	비율
	광산구	8	27.6	11	37.9	4	13.8	3	10.3	-	-	3	10.3	29	100
	소계	29	17.4	85	50.9	34	20.4	6	3.6	6	3.6	7	4.2	167	100
대전	동구	5	17.9	5	17.9	13	46.4	-	-	1	3.6	4	14.3	28	100
	중구	1	3.3	6	20.0	16	53.3	4	13.3	3	10.0	-	-	30	100
	서구	4	10.0	19	47.5	16	40.0	-	-	-	-	1	2.5	40	100
	유성구	1	3.2	2	6.5	5	16.1	1	3.2	1	3.2	21	67.7	31	100
	대덕구	5	29.4	4	23.5	4	23.5	-	-	2	11.8	2	11.8	17	100
	소계	16	11.0	36	24.7	54	37.0	5	3.4	7	4.8	28	19.2	146	100
	울산	중구	9	23.7	20	52.6	7	18.4	-	-	1	2.6	1	2.6	38
남구		11	22.4	18	36.7	15	30.6	-	-	2	4.1	3	6.1	49	100
동구		7	24.1	9	31.0	6	20.7	2	6.9	2	6.9	3	10.3	29	100
북구		5	20.8	10	41.7	6	25.0	1	4.2	1	4.2	1	4.2	24	100
울주군		6	27.3	9	40.9	6	27.3	-	-	-	-	1	4.5	22	100
소계		38	23.5	66	40.7	40	24.7	3	1.9	6	3.7	9	5.6	162	100
경기	수원시	13	13.5	31	32.3	43	44.8	3	3.1	2	2.1	4	4.2	96	100
	성남시	9	9.5	30	31.6	37	38.9	1	1.1	2	2.1	16	16.8	95	100
	의정부시	27	22.9	27	22.9	45	38.1	3	2.5	3	2.5	13	11.0	118	100
	안양시	8	21.6	12	32.4	12	32.4	2	5.4	2	5.4	1	2.7	37	100
	부천시	13	11.2	40	34.5	45	38.8	5	4.3	6	5.2	7	6.0	116	100
	광명시	2	4.9	11	26.8	23	56.1	-	-	3	7.3	2	4.9	41	100
	평택시	3	13.0	7	30.4	12	52.2	-	-	-	-	1	4.3	23	100
	동두천시	1	7.1	4	28.6	5	35.7	-	-	-	-	4	28.6	14	100
	안산시	9	12.3	27	37.0	30	41.1	3	4.1	-	-	4	5.5	73	100
	고양시	20	11.8	52	30.6	66	38.8	3	1.8	8	4.7	21	12.4	170	100
	과천시	-	-	3	30.0	6	60.0	-	-	1	10.0	-	-	10	100
	구리시	8	21.6	13	35.1	14	37.8	-	-	1	2.7	1	2.7	37	100
	남양주시	29	14.1	93	45.1	51	24.8	6	2.9	8	3.9	19	9.2	206	100
	오산시	3	16.7	8	44.4	6	33.3	1	5.6	-	-	-	-	18	100
	시흥시	6	10.0	16	26.7	24	40.0	5	8.3	2	3.3	7	11.7	60	100
	군포시	3	9.1	12	36.4	15	45.5	2	6.1	-	-	1	3.0	33	100
	의왕시	-	-	4	57.1	2	28.6	-	-	-	-	1	14.3	7	100
	하남시	1	7.1	2	14.3	5	35.7	-	-	-	-	6	42.9	14	100
	용인시	5	6.0	30	35.7	26	31.0	3	3.6	2	2.4	18	21.4	84	100
	파주시	7	7.7	39	42.9	29	31.9	2	2.2	1	1.1	13	14.3	91	100
	이천시	-	-	2	20.0	5	50.0	-	-	-	-	3	30.0	10	100
	안성시	3	27.3	3	27.3	3	27.3	1	9.1	-	-	1	9.1	11	100
	김포시	2	6.1	10	30.3	8	24.2	-	-	2	6.1	11	33.3	33	100
	화성시	5	25.0	4	20.0	9	45.0	1	5.0	1	5.0	-	-	20	100
광주시	-	-	14	43.8	13	40.6	-	-	2	6.3	3	9.4	32	100	
양주시	14	35.9	7	17.9	5	12.8	1	2.6	-	-	12	30.8	39	100	
포천시	4	8.7	17	37.0	9	19.6	2	4.3	2	4.3	12	26.1	46	100	

지역	시군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 동거		기타		계	
	여주시	-	-	2	16.7	8	66.7	1	8.3	-	-	1	8.3	12	100
	연천군	-	-	-	-	-	-	-	-	-	-	4	100	4	100
	가평군	3	30.0	3	30.0	4	40.0	-	-	-	-	-	-	10	100
	양평군	2	22.2	6	66.7	-	-	-	-	-	-	1	11.1	9	100
	소계	200	12.7	529	33.7	560	35.7	45	2.9	48	3.1	187	11.9	1,569	100
강원	춘천시	20	22.5	40	44.9	16	18.0	4	4.5	-	-	9	10.1	89	100
	원주시	7	8.0	11	12.6	22	25.3	-	-	5	5.7	42	48.3	87	100
	강릉시	12	17.1	21	30.0	21	30.0	-	-	2	2.9	14	20.0	70	100
	동해시	2	33.3	-	-	3	50.0	1	16.7	-	-	-	-	6	100
	태백시	4	33.3	-	-	8	66.7	-	-	-	-	-	-	12	100
	속초시	2	22.2	3	33.3	4	44.4	-	-	-	-	-	-	9	100
	삼척시	-	-	2	33.3	1	16.7	-	-	2	33.3	1	16.7	6	100
	홍천군	54	76.1	5	7.0	6	8.5	1	1.4	1	1.4	4	5.6	71	100
	횡성군	-	-	1	33.3	2	66.7	-	-	-	-	-	-	3	100
	영월군	-	-	-	-	4	80.0	-	-	1	20.0	-	-	5	100
	평창군	2	22.2	4	44.4	2	22.2	-	-	1	11.1	-	-	9	100
	정선군	-	-	-	-	1	9.1	-	-	-	-	10	90.9	11	100
	철원군	3	21.4	-	-	1	7.1	-	-	1	7.1	9	64.3	14	100
	화천군	-	-	-	-	-	-	-	-	-	-	1	100	1	100
	양구군	2	50.0	1	25.0	1	25.0	-	-	-	-	-	-	4	100
	인제군	1	25.0	-	-	1	25.0	-	-	2	50.0	-	-	4	100
	고성군	2	40.0	-	-	2	40.0	-	-	-	-	1	20.0	5	100
	양양군	-	-	2	7.7	-	-	-	-	-	-	24	92.3	26	100
	소계	111	25.7	90	20.8	95	22.0	6	1.4	15	3.5	115	26.6	432	100
충북	청주시	5	6.9	27	37.5	22	30.6	1	1.4	3	4.2	14	19.4	72	100
	충주시	5	13.5	22	59.5	4	10.8	1	2.7	-	-	5	13.5	37	100
	제천시	3	12.0	4	16.0	7	28.0	-	-	2	8.0	9	36.0	25	100
	보은군	1	14.3	3	42.9	2	28.6	-	-	1	14.3	-	-	7	100
	옥천군	2	40.0	1	20.0	1	20.0	1	20.0	-	-	-	-	5	100
	영동군	-	-	-	-	-	-	-	-	-	-	-	-	-	-
	진천군	1	10.0	-	-	4	40.0	1	10.0	2	20.0	2	20.0	10	100
	괴산군	1	16.7	3	50.0	1	16.7	-	-	-	-	1	16.7	6	100
	음성군	6	24.0	6	24.0	10	40.0	-	-	3	12.0	-	-	25	100
	단양군	-	-	1	100	-	-	-	-	-	-	-	-	1	100
	증평군	-	-	2	66.7	1	33.3	-	-	-	-	-	-	3	100
	기타*	-	-	-	-	-	-	-	-	-	-	1	100	1	100
	소계	24	12.5	69	35.9	52	27.1	4	2.1	11	5.7	32	16.7	192	100
충남	천안시	11	20.8	16	30.2	18	34.0	3	5.7	-	-	5	9.4	53	100
	공주시	4	12.1	20	60.6	8	24.2	-	-	-	-	1	3.0	33	100
	보령시	6	31.6	9	47.4	4	21.1	-	-	-	-	-	-	19	100
	아산시	7	25.9	5	18.5	12	44.4	1	3.7	-	-	2	7.4	27	100

지역	시군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 동거		기타		계	
		인수	비율	인수	비율	인수	비율	인수	비율	인수	비율	인수	비율	인수	비율
	서산시	2	6.5	12	38.7	11	35.5	6	19.4	-	-	-	-	31	100
	논산시	7	23.3	12	40.0	4	13.3	1	3.3	3	10.0	3	10.0	30	100
	계룡시	1	25.0	2	50.0	-	-	-	-	-	-	1	25.0	4	100
	당진시	3	12.0	8	32.0	9	36.0	-	-	-	-	5	20.0	25	100
	금산군	1	8.3	9	75.0	2	16.7	-	-	-	-	-	-	12	100
	부여군	3	20.0	7	46.7	3	20.0	-	-	-	-	2	13.3	15	100
	서천군	3	60.0	1	20.0	1	20.0	-	-	-	-	-	-	5	100
	청양군	1	100	-	-	-	-	-	-	-	-	-	-	1	100
	홍성군	1	20.0	-	-	3	60.0	-	-	-	-	1	20.0	5	100
	예산군	3	16.7	7	38.9	7	38.9	-	-	1	5.6	-	-	18	100
	태안군	-	-	3	60.0	2	40.0	-	-	-	-	-	-	5	100
	기타*	-	-	-	-	-	-	-	-	1	100	-	-	1	100
소계	53	18.7	111	39.1	84	29.6	11	3.9	5	1.8	20	7.0	284	10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2	5.3	14	36.8	16	42.1	3	7.9	2	5.3	1	2.6	38	100
	소계	2	5.3	14	36.8	16	42.1	3	7.9	2	5.3	1	2.6	38	100
전북	전주시	35	36.8	31	32.6	18	18.9	2	2.1	1	1.1	8	8.4	95	100
	군산시	19	40.4	10	21.3	15	31.9	-	-	3	6.4	-	-	47	100
	익산시	11	28.2	17	43.6	10	25.6	1	2.6	-	-	-	-	39	100
	정읍시	7	23.3	4	13.3	12	40.0	-	-	-	-	7	23.3	30	100
	남원시	-	-	6	46.2	5	38.5	-	-	2	15.4	-	-	13	100
	김제시	3	27.3	5	45.5	2	18.2	-	-	-	-	1	9.1	11	100
	완주군	2	10.5	15	78.9	1	5.3	1	5.3	-	-	-	-	19	100
	진안군	1	50.0	1	50.0	-	-	-	-	-	-	-	-	2	100
	무주군	1	50.0	-	-	1	50.0	-	-	-	-	-	-	2	100
	장수군	2	33.3	3	50.0	1	16.7	-	-	-	-	-	-	6	100
	임실군	3	37.5	1	12.5	4	50.0	-	-	-	-	-	-	8	100
	순창군	1	33.3	1	33.3	1	33.3	-	-	-	-	-	-	3	100
	고창군	2	12.5	9	56.3	3	18.8	2	12.5	-	-	-	-	16	100
	부안군	3	42.9	2	28.6	-	-	-	-	-	-	2	28.6	7	100
	소계	90	30.2	105	35.2	73	24.5	6	2.0	6	2.0	18	6.0	298	100
전남	목포시	14	25.9	24	44.4	11	20.4	-	-	1	1.9	4	7.4	54	100
	여수시	5	12.2	14	34.1	18	43.9	2	4.9	2	4.9	-	-	41	100
	순천시	5	13.5	17	45.9	10	27.0	2	5.4	2	5.4	1	2.7	37	100
	나주시	9	13.2	14	20.6	6	8.8	2	2.9	2	2.9	35	51.5	68	100
	광양시	3	18.8	8	50.0	4	25.0	-	-	1	6.3	-	-	16	100
	담양군	2	18.2	5	45.5	4	36.4	-	-	-	-	-	-	11	100
	곡성군	2	33.3	2	33.3	1	16.7	-	-	-	-	1	16.7	6	100
	구례군	-	-	3	60.0	2	40.0	-	-	-	-	-	-	5	100
	고흥군	-	-	5	35.7	5	35.7	2	14.3	-	-	2	14.3	14	100
보성군	3	30.0	3	30.0	4	40.0	-	-	-	-	-	-	10	100	

지역	시군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 동거		기타		계	
경북	화순군	-	-	-	-	5	83.3	1	16.7	-	-	-	-	6	100
	장흥군	1	100	-	-	-	-	-	-	-	-	-	-	1	100
	강진군	1	10.0	7	70.0	1	10.0	-	-	1	10.0	-	-	10	100
	해남군	3	17.6	8	47.1	5	29.4	-	-	-	-	1	5.9	17	100
	영암군	1	20.0	2	40.0	1	20.0	-	-	1	20.0	-	-	5	100
	무안군	3	9.1	7	21.2	4	12.1	-	-	-	-	19	57.6	33	100
	함평군	1	16.7	3	50.0	2	33.3	-	-	-	-	-	-	6	100
	영광군	1	8.3	3	25.0	6	50.0	-	-	1	8.3	1	8.3	12	100
	장성군	-	-	2	50.0	2	50.0	-	-	-	-	-	-	4	100
	완도군	-	-	6	85.7	-	-	-	-	-	-	1	14.3	7	100
	진도군	1	20.0	2	40.0	1	20.0	-	-	1	20.0	-	-	5	100
	신안군	4	50.0	4	50.0	-	-	-	-	-	-	-	-	8	100
소계	59	15.7	139	37.0	92	24.5	9	2.4	12	3.2	65	17.3	376	100	
경북	포항시	45	43.3	35	33.7	20	19.2	2	1.9	-	-	2	1.9	104	100
	경주시	8	16.7	29	60.4	9	18.8	1	2.1	-	-	1	2.1	48	100
	김천시	10	16.1	20	32.3	19	30.6	4	6.5	2	3.2	7	11.3	62	100
	안동시	15	23.4	29	45.3	13	20.3	1	1.6	3	4.7	3	4.7	64	100
	구미시	8	10.3	34	43.6	26	33.3	2	2.6	1	1.3	7	9.0	78	100
	영주시	7	25.9	8	29.6	10	37.0	-	-	-	-	2	7.4	27	100
	영천시	3	30.0	3	30.0	3	30.0	-	-	1	10.0	-	-	10	100
	상주시	10	35.7	9	32.1	8	28.6	-	-	1	3.6	-	-	28	100
	문경시	8	27.6	12	41.4	8	27.6	-	-	-	-	1	3.4	29	100
	경산시	5	8.8	13	22.8	4	7.0	1	1.8	2	3.5	32	56.1	57	100
	군위군	1	50.0	1	50.0	-	-	-	-	-	-	-	-	2	100
	의성군	2	15.4	6	46.2	3	23.1	1	7.7	1	7.7	-	-	13	100
	청송군	-	-	1	50.0	-	-	1	50.0	-	-	-	-	2	100
	영양군	-	-	1	100	-	-	-	-	-	-	-	-	1	100
	영덕군	3	33.3	2	22.2	4	44.4	-	-	-	-	-	-	9	100
	청도군	-	-	4	26.7	1	6.7	4	26.7	-	-	6	40.0	15	100
	고령군	1	20.0	2	40.0	2	40.0	-	-	-	-	-	-	5	100
	성주군	1	12.5	4	50.0	3	37.5	-	-	-	-	-	-	8	100
	칠곡군	3	25.0	6	50.0	2	16.7	1	8.3	-	-	-	-	12	100
	예천군	6	33.3	3	16.7	5	27.8	-	-	-	-	4	22.2	18	100
	봉화군	3	33.3	4	44.4	2	22.2	-	-	-	-	-	-	9	100
울진군	-	-	1	14.3	5	71.4	1	14.3	-	-	-	-	7	100	
울릉군	-	-	-	-	-	-	-	-	-	-	-	-	0	0	
소계	139	22.9	227	37.3	147	24.2	19	3.1	11	1.8	65	10.7	608	100	
경남	창원시	24	20.9	44	38.3	34	29.6	2	1.7	7	6.1	4	3.5	115	100
	진주시	7	9.7	35	48.6	19	26.4	4	5.6	4	5.6	3	4.2	72	100
	통영시	3	27.3	2	18.2	6	54.5	-	-	-	-	-	-	11	100
	사천시	2	12.5	4	25.0	6	37.5	1	6.3	2	12.5	1	6.3	16	100

지역	시군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 동거		기타		계	
	김해시	11	13.4	31	37.8	26	31.7	6	7.3	4	4.9	4	4.9	82	100
	밀양시	5	50.0	-	-	2	20.0	-	-	-	-	3	30.0	10	100
	거제시	5	13.5	15	40.5	11	29.7	-	-	2	5.4	4	10.8	37	100
	양산시	15	20.8	33	45.8	19	26.4	1	1.4	2	2.8	2	2.8	72	100
	의령군	2	66.7	1	33.3	-	-	-	-	-	-	-	-	3	100
	함안군	2	40.0	1	20.0	1	20.0	-	-	1	20.0	-	-	5	100
	창녕군	3	100	-	-	-	-	-	-	-	-	-	-	3	100
	고성군	-	-	-	-	1	16.7	1	16.7	-	-	4	66.7	6	100
	남해군	-	-	-	-	4	80.0	-	-	-	-	1	20.0	5	100
	하동군	1	3.3	4	13.3	2	6.7	-	-	1	3.3	22	73.3	30	100
	산청군	-	-	3	100	-	-	-	-	-	-	-	-	3	100
	함양군	1	16.7	3	50.0	2	33.3	-	-	-	-	-	-	6	100
	거창군	-	-	2	28.6	5	71.4	-	-	-	-	-	-	7	100
	합천군	-	-	3	75.0	1	25.0	-	-	-	-	-	-	4	100
	소계	81	16.6	181	37.2	139	28.5	15	3.1	23	4.7	48	9.9	487	100
제주	제주시	16	20.3	23	29.1	26	32.9	4	5.1	4	5.1	6	7.6	79	100
	서귀포시	14	25.5	16	29.1	18	32.7	-	-	2	3.6	5	9.1	55	100
	소계	30	22.4	39	29.1	44	32.8	4	3.0	6	4.5	11	8.2	134	100
합계	1,127	16.6	2,467	36.2	2,034	29.9	205	3.0	228	3.3	746	11.0	6,807	100	

*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가 아닌 타부양가족의 집에 머무르거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 등이 해당됨.

9)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표 8-11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단위: 명, %)

자택	전세	월세	영구임대	의료시설	의료복지시설	무상	주거복지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기타	계
4,316	528	551	400	109	587	123	101	24	68	6,807
63.4	7.8	8.1	5.9	1.6	8.6	1.8	1.5	0.4	1.0	100

10)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표 8-12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전체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807	1,157
	17.0

11)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

표 8-13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

(단위: 명, %)

무 학	초 졸	중 졸	고 졸	전문대졸이상	계
1,590	2,544	1,124	1,288	261	6,807
23.4	37.4	16.5	18.9	3.8	100

12)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표 8-14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단위: 명, %)

구 분	명 수	비 율
무직	5,836	85.7
단순 노무 종사자	356	5.2
농·어·축산업 종사자	170	2.5
자영업자	184	2.7
서비스·판매종사자	148	2.2
전문직	35	0.5
기술공 및 준전문가	22	0.3
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8	0.1
종교인	19	0.3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4	0.2
사무종사자	12	0.2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3	0.0
계	6,807	100

13) 학대피해노인 건강상태

가. 학대피해노인 질병유형

표 8-15 학대피해노인 질병유형

(단위: 건, %)

구 분	건 수	비 율
고혈압	1,432	24.2
당뇨병	862	14.6
관절염	822	13.9
디스크	247	4.2
골다공증	213	3.6
중풍, 뇌혈관 질환	175	3.0

구 분	건 수	비 율
신경통	168	2.8
협심증, 심근경색증	121	2.0
요통, 좌골통	117	2.0
골절, 후유증	116	2.0
악성신생물(암)	90	1.5
감성선 질환	76	1.3
천식	48	0.8
만성신장질환	42	0.7
피부병	38	0.6
저혈압	29	0.5
백내장	25	0.4
빈혈	23	0.4
소화성궤양	22	0.4
만성간염,간경변	18	0.3
녹내장	17	0.3
폐결핵, 결핵	16	0.3
만성기관지염	11	0.2
만성중이염	4	0.1
기타	1,177	19.9
계	5,909*	100

* 질병은 2가지 이상의 질병이 동반되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807건)와 학대피해노인 질병유형 통계 수치(5,909건)에는 차이가 있음

나. 학대피해노인 장애 수 및 장애유형

표 8-16 학대피해노인 장애 수

(단위: 건, %)

장애 수	건 수	비 율
1개	83	12.4
2개 이상	587	87.6
계	670*	100

* 장애는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동반되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807건)와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 통계 수치(670건)에는 차이가 있음

표 8-17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신체 장애	지체장애	154	23.0
	청각장애	115	17.2
	시각장애	67	10.0
	뇌병변장애	42	6.3
	언어장애	13	1.9
	신장장애	7	1.0
	심장장애	6	0.9
	간질장애	6	0.9
	호흡기장애	5	0.7
	장루요루장애	5	0.7
	간장애	2	0.3
	안면장애	1	0.1
	소계	423	63.1
정신 장애	우울장애	175	26.1
	정신분열	35	5.2
	지적장애	27	4.0
	정동장애	9	1.3
	반사회적인격장애	1	0.1
	소계	247	36.9
계	670*	100	

* 장애는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동반되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807건)와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 통계 수치(670건)에는 차이가 있음

** 학대 결과로서 장애 판정 유무는 확인이 어려우며, 장애인 등급판정을 받거나 현장조사 시 장애가 의심되는 대상자도 포함.

다.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표 8-18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 명, %)

전체학대사례	치매진단(치매로 진단받음)	치매의심(치매가 의심됨)	계
6,807	1,170	597	1,767
	17.2	8.8	26.0

라. 학대피해노인 중독 유형

표 8-19 학대피해노인 중독 유형

(단위: 명, %)

전체학대사례	알코올 사용장애	약물사용장애	도박중독	계
6,807	71	5	1	77
	1.0	0.1	0.0	1.1

14)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 정도

표 8-20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 정도

(단위: 명, %)

구 분		부분도움	완전도움	완전자립	계
일상생활 수행능력 (ADL)	옷 벗고 입기	1,210	607	4,990	6,807
		17.8	8.9	73.3	100
	세수하기	1,212	593	5,002	6,807
		17.8	8.7	73.5	100
	양치질하기	1,213	592	5,002	6,807
		17.8	8.7	73.5	100
	목욕하기	1,233	680	4,894	6,807
		18.1	10.0	71.9	100
	식사하기	1,261	579	4,967	6,807
		18.5	8.5	73.0	100
	체위변경하기	1,202	583	5,022	6,807
		17.7	8.6	73.8	100
	일어나 앉기	1,235	585	4,987	6,807
		18.1	8.6	73.3	100
	움거 타기	1,241	619	4,947	6,807
		18.2	9.1	72.7	100
	방밖으로 나오기	1,215	604	4,988	6,807
		17.8	8.9	73.3	100
	화장실 사용하기	1,192	618	4,997	6,807
		17.5	9.1	73.4	100
대변조절하기	1,167	613	5,027	6,807	
	17.1	9.0	73.9	100	
소변조절하기	1,166	618	5,023	6,807	
	17.1	9.1	73.8	100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IADL)	몸단장하기	1,234	647	4,926	6,807
		18.1	9.5	72.4	100
	집안일 하기	1,316	769	4,722	6,807
		19.3	11.3	69.4	100
	식사준비하기	1,320	772	4,715	6,807
		19.4	11.3	69.3	100
	빨래하기	1,291	790	4,726	6,807
		19.0	11.6	69.4	100
	근거리 외출하기	1,381	780	4,646	6,807
		20.3	11.5	68.3	100

구 분		부분도움	완전도움	완전자립	계
	교통수단 이용하기	1,400	807	4,600	6,807
		20.6	11.9	67.6	100
	물건 사라가기	1,350	789	4,668	6,807
		19.8	11.6	68.6	100
	금전관리하기	1,312	751	4,744	6,807
		19.3	11.0	69.7	100
	전화 사용하기	1,274	679	4,854	6,807
		18.7	10.0	71.3	100
	약 챙겨 먹기	1,310	685	4,812	6,807
		19.2	10.1	70.7	100

02 | 학대행위자 현황

1)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표 8-21 학대행위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명, %)

구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남성	49	98	285	832	1,056	791	2,073	5,184
	0.9	1.9	5.5	16.0	20.4	15.3	40.0	100
여성	16	40	109	437	707	616	385	2,310
	0.7	1.7	4.7	18.9	30.6	26.7	16.7	100
계	65	138	394	1,269	1,763	1,407	2,458	7,494
	0.9	1.8	5.3	16.9	23.5	18.8	32.8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6,807명)와 학대행위자(7,494명)는 차이가 있음



그림 8-4 학대행위자 연령분포

2) 지역 및 기관별 학대행위자 성별

표 8-22 지역 및 기관별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명, %)

시도	시설명	남 성		여 성		계	
서울	서울남부	120	80.0	30	20.0	150	100
	서울북부	99	82.5	21	17.5	120	100
	서울서부	128	74.9	43	25.1	171	100
	서울동부	150	78.9	40	21.1	190	100
	소계	497	78.8	134	21.2	631	100
부산	부산동부	274	84.8	49	15.2	323	100
	부산서부	187	74.8	63	25.2	250	100
	소계	461	80.5	112	19.5	573	100
대구	대구남부	157	88.7	20	11.3	177	100
	대구북부	92	76.0	29	24.0	121	100
	소계	249	83.6	49	16.4	298	100

시도	시설명	남 성		여 성		계	
인천	인천	183	72.3	70	27.7	253	100
	인천서부	163	67.1	80	32.9	243	100
	소계	346	69.8	150	30.2	496	100
광주		137	81.5	31	18.5	168	100
대전		108	71.1	44	28.9	152	100
울산		119	72.1	46	27.9	165	100
경기	경기동부	173	68.9	78	31.1	251	100
	경기북부	326	65.6	171	34.4	497	100
	경기서부	249	78.5	68	21.5	317	100
	경기도	192	74.7	65	25.3	257	100
	경기북서부	214	67.9	101	32.1	315	100
	소계	1,154	70.5	483	29.5	1,637	100
강원	강원	149	46.7	170	53.3	319	100
	강원동부	71	51.4	67	48.6	138	100
	강원남부	66	32.5	137	67.5	203	100
	소계	286	43.3	374	56.7	660	100
충북	충북	82	42.1	113	57.9	195	100
	충북북부	66	66.0	34	34.0	100	100
	소계	148	50.2	147	49.8	295	100
충남	충남	158	76.7	48	23.3	206	100
	충남남부	103	83.7	20	16.3	123	100
	소계	261	79.3	68	20.7	329	100
전북	전북	120	75.0	40	25.0	160	100
	전북서부	108	71.1	44	28.9	152	100
	소계	228	73.1	84	26.9	312	100
전남	전남동부	129	84.3	24	15.7	153	100
	전남서부	144	41.5	203	58.5	347	100
	소계	273	54.6	227	45.4	500	100
경북	경북동부	125	71.4	50	28.6	175	100
	경북북부	102	73.9	36	26.1	138	100
	경북서부	147	67.4	71	32.6	218	100
	경북남부	66	64.7	36	35.3	102	100
	소계	440	69.5	193	30.5	633	100
경남	경남	268	77.2	79	22.8	347	100
	경남서부	96	64.4	53	35.6	149	100
	소계	364	73.4	132	26.6	496	1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68	82.9	14	17.1	82	100
	제주도서귀포시	45	67.2	22	32.8	67	100
	소계	113	75.8	36	24.2	149	100
계		5,184	69.2	2,310	30.8	7,494	100

3)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표 8-23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명, %)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 위	손자녀	친척	기타 타인	동거인	이웃	친구	기타 기관	노인 복지 시설	의료인	
169	2,615	2,092	106	620	38	179	49	102	86	71	5	60	1,237	65	7,494
2.3	34.9	27.9	1.4	8.3	0.5	2.4	0.7	1.4	1.1	0.9	0.1	0.8	16.5	0.9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6,807명)와 학대행위자(7,494명)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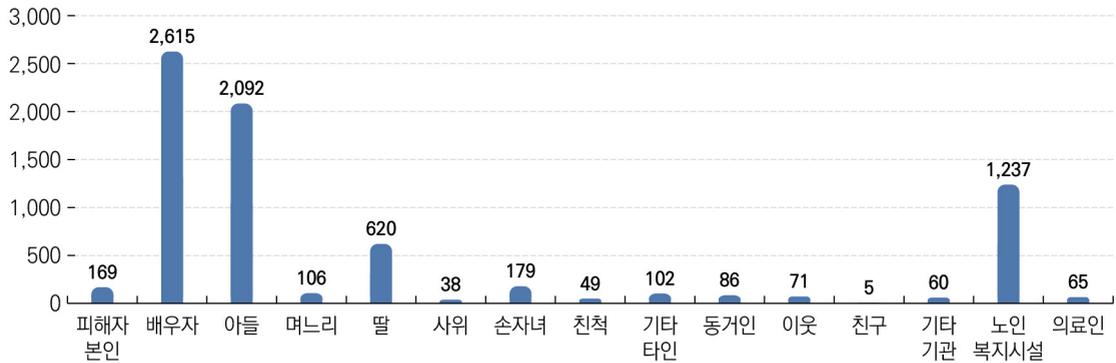


그림 8-5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표 8-24 시군구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명, %)

지역	시군구	피해자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서울	종로구	-	-	3	30.0	5	50.0	1	10.0	1	10.0	-	-	-	-	-	-	-	10	100		
	중구	-	-	3	33.3	3	33.3	-	-	2	22.2	-	-	1	11.1	-	-	-	-	9	100	
	용산구	-	-	13	50.0	4	15.4	-	-	6	23.1	-	-	1	3.8	-	-	2	7.7	-	26	100
	성동구	-	-	16	57.1	9	32.1	-	-	3	10.7	-	-	-	-	-	-	-	-	-	28	100
	광진구	1	3.4	18	62.1	9	31.0	-	-	-	-	-	-	1	3.4	-	-	-	-	-	29	100
	동대문구	-	-	4	44.4	2	22.2	-	-	1	11.1	-	-	-	-	-	1	11.1	1	11.1	9	100
	중랑구	-	-	30	58.8	13	25.5	1	2.0	4	7.8	-	-	-	-	-	2	3.9	1	2.0	51	100
	성북구	-	-	7	43.8	4	25.0	-	-	2	12.5	-	-	1	6.3	-	-	-	2	12.5	16	100
	강북구	1	3.1	13	40.6	14	43.8	-	-	2	6.3	-	-	-	-	-	1	3.1	1	3.1	32	100
	도봉구	-	-	14	56.0	6	24.0	-	-	3	12	-	-	2	8.0	-	-	-	-	-	25	100
	노원구	1	2.6	15	39.5	18	47.4	-	-	3	7.9	-	-	-	-	-	1	2.6	-	-	38	100
	은평구	2	4.8	14	33.3	14	33.3	-	-	8	19.0	-	-	-	-	-	2	4.8	2	4.8	42	100
	서대문구	-	-	5	27.8	6	33.3	-	-	3	16.7	-	-	-	-	-	1	5.6	3	16.7	18	100
	마포구	-	-	11	40.7	11	40.7	-	-	2	7.4	-	-	2	7.4	-	-	-	1	3.7	27	100
	양천구	-	-	8	33.3	6	25.0	-	-	4	16.7	-	-	3	12.5	-	-	-	3	12.5	24	100
강서구	3	7.3	18	43.9	7	17.1	1	2.4	5	12.2	1	2.4	-	-	-	4	9.8	2	4.9	41	100	

지역	시군구	피해자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부산	구로구	-	-	17	39.5	13	30.2	1	2.3	4	9.3	1	2.3	2	4.7	1	2.3	-	-	4	9.3	43	100	
	금천구	-	-	5	41.7	4	33.3	-	-	3	25.0	-	-	-	-	-	-	-	-	-	-	-	12	100
	영등포구	-	-	1	14.3	4	57.1	-	-	2	28.6	-	-	-	-	-	-	-	-	-	-	-	7	100
	동작구	-	-	15	46.9	13	40.6	-	-	3	9.4	-	-	-	-	1	3.1	-	-	-	-	-	32	100
	관악구	1	2.8	20	55.6	11	30.6	-	-	2	5.6	-	-	1	2.8	-	-	-	-	-	1	2.8	36	100
	서초구	-	-	3	37.5	4	50.0	-	-	1	12.5	-	-	-	-	-	-	-	-	-	-	-	8	100
	강남구	-	-	2	16.7	5	41.7	-	-	2	16.7	1	8.3	-	-	-	-	-	-	-	2	16.7	12	100
	송파구	1	3.2	13	41.9	9	29.0	1	3.2	4	12.9	-	-	1	3.2	-	-	2	6.5	-	-	-	31	100
	강동구	-	-	10	40.0	9	36.0	-	-	3	12.0	-	-	2	8.0	-	-	1	4.0	-	-	-	25	100
	소계	10	1.6	278	44.1	203	32.2	5	0.8	73	11.6	3	0.5	17	2.7	2	0.3	17	2.7	23	3.6	631	100	
부산	중구	-	-	4	44.4	2	22.2	-	-	2	22.2	-	-	-	-	-	-	-	-	1	11.1	9	100	
	서구	-	-	17	58.6	7	24.1	-	-	3	10.3	-	-	2	6.9	-	-	-	-	-	-	29	100	
	동구	-	-	15	38.5	17	43.6	-	-	2	5.1	-	-	-	-	1	2.6	4	10.3	-	-	39	100	
	영도구	-	-	21	52.5	16	40.0	1	2.5	2	5.0	-	-	-	-	-	-	-	-	-	-	40	100	
	부산진구	3	4.8	23	37.1	23	37.1	1	1.6	5	8.1	1	1.6	2	3.2	1	1.6	2	3.2	1	1.6	62	100	
	동래구	-	-	18	50.0	11	30.6	3	8.3	1	2.8	-	-	-	-	-	-	3	8.3	-	-	36	100	
	남구	-	-	29	56.9	17	33.3	-	-	2	3.9	-	-	2	3.9	-	-	-	-	1	2.0	51	100	
	북구	-	-	15	31.3	24	50.0	1	2.1	5	10.4	-	-	1	2.1	1	2.1	1	2.1	-	-	48	100	
	해운대구	-	-	22	40.0	16	29.1	2	3.6	10	18.2	1	1.8	3	5.5	-	-	-	-	1	1.8	55	100	
	사하구	1	1.7	28	46.7	19	31.7	-	-	6	10.0	-	-	2	3.3	-	-	2	3.3	2	3.3	60	100	
	금정구	-	-	5	31.3	5	31.3	-	-	3	18.8	-	-	-	-	1	6.3	1	6.3	1	6.3	16	100	
	강서구	-	-	1	9.1	7	63.6	-	-	2	18.2	-	-	-	-	1	9.1	-	-	-	-	11	100	
	연제구	2	5.6	18	50.0	9	25.0	-	-	5	13.9	1	2.8	1	2.8	-	-	-	-	-	-	36	100	
	수영구	-	-	7	38.9	4	22.2	-	-	5	27.8	-	-	1	5.6	-	-	1	5.6	-	-	18	100	
	사상구	2	5.6	15	41.7	13	36.1	-	-	3	8.3	-	-	-	-	-	-	3	8.3	-	-	36	100	
기장군	-	-	4	14.8	10	37.0	1	3.7	4	14.8	-	-	-	-	-	-	5	18.5	3	11.1	27	100		
소계	8	1.4	242	42.2	200	34.9	9	1.6	60	10.5	3	0.5	14	2.4	5	0.9	22	3.8	10	1.7	573	100		
대구	중구	1	6.7	4	26.7	6	40.0	1	6.7	1	6.7	-	-	1	6.7	-	-	1	6.7	-	-	15	100	
	동구	4	8.5	26	55.3	9	19.1	1	2.1	4	8.5	-	-	-	-	-	1	2.1	2	4.3	47	100		
	서구	2	6.7	7	23.3	10	33.3	-	-	3	10.0	-	-	2	6.7	-	-	-	-	6	20.0	30	100	
	남구	-	-	16	57.1	8	28.6	-	-	1	3.6	-	-	1	3.6	-	-	1	3.6	1	3.6	28	100	
	북구	3	10.0	11	36.7	9	30.0	-	-	-	-	1	3.3	2	6.7	-	-	-	-	4	13.3	30	100	
	수성구	1	2.0	26	51.0	12	23.5	-	-	1	2.0	-	-	1	2.0	-	-	6	11.8	4	7.8	51	100	
	달서구	-	-	30	51.7	15	25.9	-	-	2	3.4	-	-	3	5.2	3	5.2	1	1.7	4	6.9	58	100	
	달성군	-	-	23	59.0	10	25.6	1	2.6	-	-	-	-	1	2.6	1	2.6	1	2.6	2	5.1	39	100	
소계	11	3.7	143	48.0	79	26.5	3	1.0	12	4.0	1	0.3	11	3.7	4	1.3	11	3.7	23	7.7	298	100		
인천	중구	-	-	10	33.3	7	23.3	1	3.3	4	13.3	-	-	1	3.3	2	6.7	2	6.7	3	10.0	30	100	
	동구	1	6.3	8	50.0	5	31.3	-	-	1	6.3	1	6.3	-	-	-	-	-	-	-	-	16	100	
	미추홀구	1	1.3	22	29.3	28	37.3	1	1.3	5	6.7	1	1.3	2	2.7	-	-	2	2.7	13	17.3	75	100	
	연수구	-	-	8	28.6	9	32.1	-	-	2	7.1	-	-	-	-	-	-	1	3.6	8	28.6	28	100	
	남동구	1	1.0	44	44.4	23	23.2	-	-	5	5.1	1	1.0	1	1.0	-	-	6	6.1	18	18.2	99	100	
	부평구	1	1.3	44	55.0	17	21.3	-	-	6	7.5	-	-	6	7.5	-	-	2	2.5	4	5.0	80	100	
계양구	-	-	27	48.2	17	30.4	-	-	4	7.1	1	1.8	1	1.8	-	-	1	1.8	5	8.9	56	100		

지역	시군구	피해자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서구	2	2.4	18	21.4	12	14.3	1	1.2	7	8.3	-	-	2	2.4	-	-	-	-	42	50.0	84	100
	강화군	-	-	7	30.4	10	43.5	1	4.3	2	8.7	-	-	-	-	-	-	2	8.7	1	4.3	23	100
	용진군	-	-	1	20.0	-	-	-	-	-	-	-	-	-	-	-	-	-	-	4	80.0	5	100
	소계	6	1.2	189	38.1	128	25.8	4	0.8	36	7.3	4	0.8	13	2.6	2	0.4	16	3.2	98	19.8	496	100
광주	동구	1	4.2	12	50.0	7	29.2	-	-	2	8.3	-	-	2	8.3	-	-	-	-	-	-	24	100
	서구	-	-	12	40.0	10	33.3	-	-	1	3.3	-	-	-	-	1	3.3	2	6.7	4	13.3	30	100
	남구	1	4.5	9	40.9	4	18.2	-	-	3	13.6	1	4.5	2	9.1	1	4.5	-	-	1	4.5	22	100
	북구	-	-	35	56.5	16	25.8	1	1.6	3	4.8	-	-	1	1.6	-	-	2	3.2	4	6.5	62	100
	광산구	-	-	14	46.7	8	26.7	-	-	-	-	-	-	-	-	-	-	3	10.0	5	16.7	30	100
	소계	2	1.2	82	48.8	45	26.8	1	0.6	9	5.4	1	0.6	5	3.0	2	1.2	7	4.2	14	8.3	168	100
대전	동구	1	3.2	7	22.6	10	32.3	1	3.2	5	16.1	-	-	-	-	1	3.2	-	-	6	19.4	31	100
	중구	1	3.2	10	32.3	13	41.9	-	-	5	16.1	-	-	1	3.2	-	-	-	-	1	3.2	31	100
	서구	2	4.9	18	43.9	9	22.0	-	-	9	22.0	-	-	-	-	1	2.4	1	2.4	1	2.4	41	100
	유성구	-	-	3	9.4	4	12.5	-	-	1	3.1	-	-	2	6.3	-	-	1	3.1	21	65.6	32	100
	대덕구	-	-	5	29.4	4	23.5	-	-	4	23.5	-	-	-	-	1	5.9	1	5.9	2	11.8	17	100
	소계	4	2.6	43	28.3	40	26.3	1	0.7	24	15.8	-	-	3	2.0	3	2.0	3	2.0	31	20.4	152	100
울산	중구	3	7.7	20	51.3	5	12.8	1	2.6	4	10.3	-	-	1	2.6	1	2.6	1	2.6	3	7.7	39	100
	남구	1	2.0	20	40.0	15	30.0	-	-	6	12.0	1	2.0	-	-	-	-	3	6.0	4	8.0	50	100
	동구	-	-	10	33.3	6	20.0	-	-	4	13.3	-	-	2	6.7	-	-	4	13.3	4	13.3	30	100
	북구	-	-	11	45.8	8	33.3	-	-	1	4.2	-	-	-	-	-	-	1	4.2	3	12.5	24	100
	울주군	1	4.5	11	50.0	6	27.3	-	-	1	4.5	-	-	-	-	-	-	2	9.1	1	4.5	22	100
	소계	5	3	72	43.6	40	24.2	1	0.6	16	9.7	1	0.6	3	1.8	1	0.6	11	6.7	15	9.1	165	100
경기	수원시	3	2.9	39	37.9	35	34.0	2	1.9	13	12.6	-	-	4	3.9	-	-	3	2.9	4	3.9	103	100
	성남시	1	1.0	31	32.0	22	22.7	2	2.1	19	19.6	2	2.1	1	1.0	1	1.0	2	2.1	16	16.5	97	100
	의정부시	5	4.0	21	16.9	47	37.9	2	1.6	20	16.1	-	-	6	4.8	-	-	2	1.6	21	16.9	124	100
	안양시	1	2.3	16	37.2	10	23.3	-	-	13	30.2	1	2.3	1	2.3	-	-	-	-	1	2.3	43	100
	부천시	2	1.6	46	37.7	49	40.2	-	-	15	12.3	-	-	3	2.5	-	-	3	2.5	4	3.3	122	100
	광명시	-	-	15	36.6	18	43.9	-	-	4	9.8	-	-	-	-	1	2.4	1	2.4	2	4.9	41	100
	평택시	1	3.7	9	33.3	7	25.9	-	-	8	29.6	1	3.7	-	-	-	-	-	-	1	3.7	27	100
	동두천시	-	-	4	28.6	5	35.7	-	-	2	14.3	-	-	-	-	1	7.1	1	7.1	1	7.1	14	100
	안산시	-	-	33	45.2	27	37.0	4	5.5	3	4.1	1	1.4	2	2.7	-	-	3	4.1	-	-	73	100
	고양시	-	-	61	35.9	54	31.8	3	1.8	22	12.9	-	-	6	3.5	1	0.6	2	1.2	21	12.4	170	100
	과천시	-	-	4	36.4	5	45.5	-	-	1	9.1	-	-	1	9.1	-	-	-	-	-	-	11	100
	구리시	-	-	17	44.7	16	42.1	-	-	4	10.5	-	-	-	-	-	-	-	-	1	2.6	38	100
	남양주시	-	-	102	48.1	51	24.1	-	-	15	7.1	1	0.5	8	3.8	-	-	4	1.9	31	14.6	212	100
	오산시	-	-	10	55.6	4	22.2	-	-	2	11.1	-	-	2	11.1	-	-	-	-	-	-	18	100
	시흥시	-	-	23	38.3	21	35.0	-	-	5	8.3	1	1.7	3	5.0	-	-	-	-	7	11.7	60	100
	군포시	-	-	16	48.5	13	39.4	-	-	2	6.1	-	-	1	3.0	-	-	-	-	1	3.0	33	100
	의왕시	-	-	6	85.7	-	-	-	-	-	-	-	-	-	-	-	-	-	-	1	14.3	7	100
	하남시	-	-	1	5.6	5	27.8	-	-	2	11.1	-	-	-	-	-	-	-	-	10	55.6	18	100
	용인시	1	1.2	33	38.4	17	19.8	1	1.2	8	9.3	1	1.2	7	8.1	-	-	1	1.2	17	19.8	86	100
	파주시	-	-	44	46.8	27	28.7	-	-	8	8.5	-	-	3	3.2	-	-	2	2.1	10	10.6	94	100
	이천시	-	-	2	16.7	2	16.7	-	-	3	25	-	-	-	-	-	-	1	8.3	4	33.3	12	100

지역	시군구	피해자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강원	안성시	2	15.4	4	30.8	1	7.7	1	7.7	2	15.4	-	-	1	7.7	-	-	1	7.7	1	7.7	13	100
	김포시	-	-	8	24.2	7	21.2	-	-	6	18.2	-	-	2	6.1	-	-	2	6.1	8	24.2	33	100
	화성시	2	8.7	7	30.4	9	39.1	1	4.3	-	-	-	-	-	-	-	-	3	13.0	1	4.3	23	100
	광주시	-	-	13	39.4	12	36.4	-	-	2	6.1	-	-	1	3.0	-	-	2	6.1	3	9.1	33	100
	양주시	-	-	7	17.1	8	19.5	-	-	2	4.9	1	2.4	-	-	-	-	2	4.9	21	51.2	41	100
	포천시	-	-	13	24.1	10	18.5	1	1.9	4	7.4	-	-	6	11.1	-	-	-	-	20	37.0	54	100
	여주시	-	-	2	14.3	4	28.6	-	-	3	21.4	-	-	1	7.1	-	-	-	-	4	28.6	14	100
	연천군	-	-	-	-	-	-	-	-	-	-	-	-	-	-	-	-	-	-	4	100	4	100
	가평군	-	-	1	10.0	5	50.0	-	-	1	10	-	-	-	-	-	-	-	-	3	30	10	100
	양평군	1	11.1	4	44.4	3	33.3	-	-	-	-	-	-	-	-	-	-	-	-	1	11.1	9	100
	소계	19	1.2	592	36.2	494	30.2	17	1.0	189	11.5	9	0.5	59	3.6	4	0.2	35	2.1	219	13.4	1,637	100
강원	춘천시	6	5.7	36	34	22	20.8	1	0.9	7	6.6	-	-	3	2.8	-	-	4	3.8	27	25.5	106	100
	원주시	1	0.6	4	2.5	27	16.7	3	1.9	8	4.9	1	0.6	3	1.9	2	1.2	-	-	113	69.8	162	100
	강릉시	4	4.9	18	22.2	24	29.6	1	1.2	8	9.9	1	1.2	-	-	-	-	3	3.7	22	27.2	81	100
	동해시	-	-	-	-	5	62.5	1	12.5	2	25	-	-	-	-	-	-	-	-	-	-	8	100
	태백시	1	7.7	-	-	11	84.6	-	-	1	7.7	-	-	-	-	-	-	-	-	-	-	13	100
	속초시	-	-	3	33.3	4	44.4	-	-	1	11.1	-	-	-	-	1	11.1	-	-	-	-	9	100
	삼척시	-	-	2	33.3	2	33.3	-	-	-	-	-	-	1	16.7	1	16.7	-	-	-	-	6	100
	홍천군	1	0.6	3	1.7	4	2.3	2	1.1	4	2.3	-	-	-	-	-	-	1	0.6	162	91.5	177	100
	횡성군	-	-	1	33.3	2	66.7	-	-	-	-	-	-	-	-	-	-	-	-	-	-	3	100
	영월군	-	-	-	-	5	100	-	-	-	-	-	-	-	-	-	-	-	-	-	-	5	100
	평창군	-	-	-	-	8	88.9	-	-	1	11.1	-	-	-	-	-	-	-	-	-	-	9	100
	정선군	-	-	-	-	1	9.1	-	-	-	-	-	-	-	-	-	-	-	-	10	90.9	11	100
	철원군	-	-	1	4.2	2	8.3	1	4.2	-	-	-	-	-	1	4.2	1	4.2	18	75.0	24	100	
	화천군	-	-	-	-	-	-	-	-	-	-	-	-	-	-	-	-	-	-	1	100	1	100
	양구군	-	-	1	25	2	50.0	-	-	-	-	-	-	-	-	-	-	1	25.0	-	-	4	100
	인제군	-	-	-	-	2	28.6	1	14.3	1	14.3	-	-	-	-	-	-	-	-	3	42.9	7	100
	고성군	-	-	-	-	4	57.1	-	-	2	28.6	-	-	-	-	-	-	-	-	1	14.3	7	100
	양양군	-	-	2	7.4	-	-	-	-	-	-	-	-	-	-	-	-	-	-	25	92.6	27	100
소계	13	2.0	71	10.8	125	18.9	10	1.5	35	5.3	2	0.3	7	1.1	5	0.8	10	1.5	382	57.9	660	100	
충북	청주시	2	1.2	28	16.7	16	9.5	1	0.6	6	3.6	-	-	2	1.2	1	0.6	2	1.2	110	65.5	168	100
	충주시	2	5.0	24	60.0	2	5.0	-	-	1	2.5	-	-	-	-	-	-	2	5.0	9	22.5	40	100
	제천시	3	11.1	5	18.5	7	25.9	-	-	-	-	-	-	1	3.7	-	-	-	-	11	40.7	27	100
	보은군	-	-	5	71.4	2	28.6	-	-	-	-	-	-	-	-	-	-	-	-	-	-	7	100
	옥천군	2	33.3	2	33.3	2	33.3	-	-	-	-	-	-	-	-	-	-	-	-	-	-	6	100
	영동군	-	-	-	-	-	-	-	-	-	-	-	-	-	-	-	-	-	-	-	-	-	-
	진천군	-	-	-	-	6	60.0	1	10.0	-	-	-	-	-	-	-	-	2	20.0	1	10.0	10	100
	괴산군	1	16.7	2	33.3	-	-	-	-	-	-	-	-	-	-	-	-	2	33.3	1	16.7	6	100
	음성군	4	15.4	4	15.4	10	38.5	4	15.4	2	7.7	-	-	-	-	-	-	1	3.8	1	3.8	26	100
	단양군	-	-	1	100	-	-	-	-	-	-	-	-	-	-	-	-	-	-	-	-	1	100
	증평군	-	-	2	66.7	1	33.3	-	-	-	-	-	-	-	-	-	-	-	-	-	-	3	100
	기타*	-	-	-	-	-	-	-	-	1	100	-	-	-	-	-	-	-	-	-	-	1	100
소계	14	4.7	73	24.7	46	15.6	6	2.0	10	3.4	-	-	3	1.0	1	0.3	9	3.1	133	45.1	295	100	

지역	시군구	피해자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경상	고흥군	-	-	6	42.9	5	35.7	-	-	-	-	2	14.3	14	100								
	보성군	-	-	4	40.0	4	40.0	1	10.0	-	-	-	-	10	100								
	화순군	1	16.7	-	-	2	33.3	-	-	1	16.7	-	-	6	100								
	장흥군	-	-	-	-	1	100	-	-	-	-	-	-	1	100								
	강진군	-	-	7	70.0	2	20.0	-	-	-	-	1	10.0	10	100								
	해남군	-	-	9	52.9	5	29.4	-	-	1	5.9	-	-	17	100								
	영암군	-	-	2	40.0	2	40.0	-	-	1	20.0	-	-	5	100								
	무안군	-	-	7	19.4	2	5.6	-	-	4	11.1	-	-	21	58.3	36	100						
	함평군	-	-	2	33.3	3	50.0	-	-	-	-	1	16.7	-	6	100							
	영광군	-	-	3	25.0	7	58.3	-	-	-	-	1	8.3	1	8.3	12	100						
	장성군	-	-	3	75.0	1	25.0	-	-	-	-	-	-	-	4	100							
	완도군	-	-	2	28.6	4	57.1	-	-	-	-	1	14.3	-	7	100							
	진도군	-	-	2	40.0	2	40.0	-	-	-	-	1	20.0	-	5	100							
	신안군	-	-	4	40.0	4	40.0	1	10.0	1	10.0	-	-	-	10	100							
	소계	9	1.8	137	27.4	119	23.8	3	0.6	21	4.2	3	0.6	4	0.8	5	1	17	3.4	182	36.4	500	100
경북	포항시	1	0.9	34	31.2	28	25.7	3	2.8	19	17.4	1	0.9	3	2.8	2	1.8	9	8.3	9	8.3	109	100
	경주시	-	-	19	39.6	16	33.3	1	2.1	7	14.6	-	-	-	-	-	5	10.4	-	-	-	48	100
	김천시	3	4.2	18	25.0	20	27.8	6	8.3	2	2.8	-	-	3	4.2	-	-	8	11.1	12	16.7	72	100
	안동시	5	7.6	31	47.0	19	28.8	-	-	5	7.6	-	-	-	1	1.5	5	7.6	-	-	-	66	100
	구미시	-	-	34	42.5	25	31.3	3	3.8	4	5.0	-	-	2	2.5	1	1.3	1	1.3	10	12.5	80	100
	영주시	5	18.5	6	22.2	11	40.7	-	-	1	3.7	-	-	-	1	3.7	3	11.1	-	-	-	27	100
	영천시	1	10.0	3	30.0	4	40.0	1	10.0	-	-	-	-	-	-	-	1	10.0	-	-	-	10	100
	상주시	5	17.9	11	39.3	8	28.6	-	-	1	3.6	-	-	-	-	-	3	10.7	-	-	-	28	100
	문경시	2	6.9	13	44.8	10	34.5	1	3.4	-	-	-	-	-	-	-	-	-	3	10.3	-	29	100
	경산시	1	1.7	15	25.9	6	10.3	-	-	-	-	-	-	2	3.4	-	-	-	-	34	58.6	58	100
	군위군	-	-	2	100	-	-	-	-	-	-	-	-	-	-	-	-	-	-	-	-	2	100
	의성군	1	7.7	5	38.5	5	38.5	-	-	-	-	-	-	-	-	-	2	15.4	-	-	-	13	100
	청송군	-	-	1	50.0	-	-	-	-	-	-	-	-	1	50.0	-	-	-	-	-	-	2	100
	영양군	-	-	1	100	-	-	-	-	-	-	-	-	-	-	-	-	-	-	-	-	1	100
	영덕군	-	-	2	22.2	4	44.4	-	-	-	-	-	-	-	-	-	-	-	3	33.3	-	9	100
	청도군	-	-	5	33.3	1	6.7	1	6.7	-	-	-	-	1	6.7	1	6.7	-	-	6	40.0	15	100
	고령군	-	-	3	60.0	-	-	-	-	-	2	40.0	-	-	-	-	-	-	-	-	-	5	100
	성주군	1	11.1	5	55.6	3	33.3	-	-	-	-	-	-	-	-	-	-	-	-	-	-	9	100
	칠곡군	-	-	8	66.7	2	16.7	-	-	1	8.3	-	-	-	-	-	-	-	-	1	8.3	12	100
	예천군	3	13.6	2	9.1	3	13.6	-	-	3	13.6	-	-	-	-	-	3	13.6	8	36.4	22	100	
	봉화군	1	11.1	2	22.2	6	66.7	-	-	-	-	-	-	-	-	-	-	-	-	-	-	9	100
울진군	-	-	1	14.3	4	57.1	-	-	1	14.3	-	-	-	-	-	1	14.3	-	-	-	7	100	
울릉군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29	4.6	221	34.9	175	27.6	16	2.5	44	7.0	3	0.5	12	1.9	6	0.9	41	6.5	86	13.6	633	100	
경남	창원시	2	1.7	45	38.5	44	37.6	4	3.4	7	6.0	1	0.9	4	3.4	1	0.9	6	5.1	3	2.6	117	100
	진주시	6	8.1	36	48.6	18	24.3	3	4.1	6	8.1	-	-	1	1.4	-	-	2	2.7	2	2.7	74	100
	통영시	-	-	1	9.1	5	45.5	-	-	2	18.2	-	-	-	-	-	3	27.3	-	-	-	11	100
	사천시	-	-	7	43.8	6	37.5	-	-	1	6.3	-	-	1	6.3	-	-	-	1	6.3	16	100	

지역	시군구	피해자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충청	김해시	1	1.2	31	37.3	30	36.1	-	-	12	14.5	-	-	3	3.6	-	-	2	2.4	4	4.8	83	100
	밀양시	-	-	-	-	1	9.1	-	-	2	18.2	-	-	-	-	-	-	4	36.4	4	36.4	11	100
	거제시	-	-	18	48.6	9	24.3	2	5.4	2	5.4	-	-	-	-	-	-	3	8.1	3	8.1	37	100
	양산시	-	-	33	45.2	22	30.1	-	-	10	13.7	-	-	2	2.7	1	1.4	4	5.5	1	1.4	73	100
	의령군	1	33.3	1	33.3	-	-	-	-	-	-	-	-	-	-	-	-	1	33.3	-	-	3	100
	함안군	-	-	3	50.0	3	50.0	-	-	-	-	-	-	-	-	-	-	-	-	-	-	6	100
	창녕군	-	-	-	-	1	33.3	-	-	-	-	-	-	-	-	-	-	-	-	2	66.7	3	100
	고성군	-	-	-	-	1	16.7	-	-	-	-	-	-	1	16.7	-	-	1	16.7	3	50.0	6	100
	남해군	-	-	-	-	3	60.0	1	20.0	-	-	-	-	-	-	-	-	-	-	1	20.0	5	100
	하동군	-	-	4	12.9	1	3.2	-	-	1	3.2	1	3.2	-	-	-	-	-	-	24	77.4	31	100
	산청군	-	-	3	100	-	-	-	-	-	-	-	-	-	-	-	-	-	-	-	-	3	100
	함양군	-	-	1	16.7	4	66.7	-	-	-	-	1	16.7	-	-	-	-	-	-	-	-	6	100
	거창군	-	-	2	28.6	4	57.1	-	-	-	-	-	-	-	-	-	-	-	-	1	14.3	7	100
	합천군	-	-	4	100	-	-	-	-	-	-	-	-	-	-	-	-	-	-	-	-	4	100
		소계	10	2.0	189	38.1	152	30.6	10	2.0	43	8.7	3	0.6	12	2.4	2	0.4	26	5.2	49	9.9	496
제주	제주시	3	3.7	25	30.5	37	45.1	1	1.2	5	6.1	1	1.2	2	2.4	1	1.2	5	6.1	2	2.4	82	100
	서귀포시	6	9.0	18	26.9	20	29.9	3	4.5	3	4.5	-	-	-	-	1	1.5	-	-	16	23.9	67	100
	소계	9	6.0	43	28.9	57	38.3	4	2.7	8	5.4	1	0.7	2	1.3	2	1.3	5	3.4	18	12.1	149	100
	합계	169	2.3	2,615	34.9	2,092	27.9	106	1.4	620	8.3	38	0.5	179	2.4	49	0.7	264	3.5	1,362	18.2	7,494	100

*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가 아닌 타부양가족의 집에 머무르거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 등이 해당됨.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6,807명)와 학대행위자(7,494명)는 차이가 있음

표 8-25 학대행위자 연령별 학대행위자 유형 분포

(단위: 명, %)

구분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기타 타인	동거인	이웃	친구	기타 기관 종사자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의료인		
10~19세	-	-	-	-	-	-	65	-	-	-	-	-	-	-	-	-	65
	-	-	-	-	-	-	0.9	-	-	-	-	-	-	-	-	-	0.9
20~29세	-	-	33	4	7	-	78	1	1	2	2	-	1	7	2	138	
	-	-	0.4	0.1	0.1	-	1.0	0.0	0.0	0.0	0.0	-	0.0	0.1	0.0	1.8	
30~39세	-	-	194	15	56	3	25	-	1	2	2	-	3	90	3	394	
	-	-	2.6	0.2	0.7	0.0	0.3	-	0.0	0.0	0.0	-	0.0	1.2	0.0	5.3	
40~49세	-	4	773	28	251	10	11	1	7	2	3	-	3	146	30	1,269	
	-	0.1	10.3	0.4	3.3	0.1	0.1	0.0	0.1	0.0	0.0	-	0.0	1.9	0.4	16.9	
50~59세	-	54	827	33	230	19	-	12	21	8	11	1	20	505	22	1,763	
	-	0.7	11.0	0.4	3.1	0.3	-	0.2	0.3	0.1	0.1	0.0	0.3	6.7	0.3	23.5	
60~69세	31	518	239	23	69	6	-	18	26	35	21	2	24	387	8	1,407	
	0.4	6.9	3.2	0.3	0.9	0.1	-	0.2	0.3	0.5	0.3	0.0	0.3	5.2	0.1	18.8	
70세이상	138	2,039	26	3	7	-	-	17	46	37	32	2	9	102	-	2,458	
	1.8	27.2	0.3	0.0	0.1	-	-	0.2	0.6	0.5	0.4	0.0	0.1	1.4	-	32.8	
계	169	2,615	2,092	106	620	38	179	49	102	86	71	5	60	1,237	65	7,494	
	2.3	34.9	27.9	1.4	8.3	0.5	2.4	0.7	1.4	1.1	0.9	0.1	0.8	16.5	0.9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6,807명)와 학대행위자(7,494명)는 차이가 있음

표 8-26 학대행위자 중 배우자 성별

(단위: 명, %)

구분	배우자	전체 학대행위자 계
남성	2,295	5,184
	87.8	69.2
여성	320	2,310
	12.2	30.8
계	2,615	7,494
	100	100

표 8-27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명, %)

구분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기타 타인	동거인	이웃	친구	기타 기관 종사자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의료인	
노인 독거	144	134	361	27	180	13	23	18	57	13	48	4	10	286	12	1,330
	10.8	10.1	27.1	2.0	13.5	1.0	1.7	1.4	4.3	1.0	3.6	0.3	0.8	21.5	0.9	100
노인 부부	10	2,153	190	8	40	6	8	-	13	25	13	1	4	18	1	2,490
	0.4	86.5	7.6	0.3	1.6	0.2	0.3	-	0.5	1.0	0.5	0.0	0.2	0.7	0.0	100
손자녀 동거	-	34	47	6	12	3	98	2	3	2	-	-	-	2	-	209
	-	16.3	22.5	2.9	5.7	1.4	46.9	1.0	1.4	1.0	-	-	-	1.0	-	100
자녀· 손자녀 동거	2	26	107	17	34	3	40	-	1	-	-	-	-	7	-	237
	0.8	11.0	45.1	7.2	14.3	1.3	16.9	-	0.4	-	-	-	-	3.0	-	100
자녀 동거	8	248	1,357	42	338	12	8	2	8	9	5	-	1	34	7	2,079
	0.4	11.9	65.3	2.0	16.3	0.6	0.4	0.1	0.4	0.4	0.2	-	0.0	1.6	0.3	100
기타	5	20	30	6	16	1	2	27	20	37	5	-	45	890	45	1,149
	0.4	1.7	2.6	0.5	1.4	0.1	0.2	2.3	1.7	3.2	0.4	-	3.9	77.5	3.9	100
소계	169	2,615	2,092	106	620	38	179	49	102	86	71	5	60	1,237	65	7,494
	2.3	34.9	27.9	1.4	8.3	0.5	2.4	0.7	1.4	1.1	0.9	0.1	0.8	16.5	0.9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6,807명)와 학대행위자(7,494명)는 차이가 있음

표 8-28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단위: 명, %)

구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계
가정내	65	124	285	1,075	1,185	968	2,303	6,005
	1.1	2.1	4.7	17.9	19.7	16.1	38.4	100
생활시설	-	5	86	146	466	359	99	1,161
	-	0.4	7.4	12.6	40.1	30.9	8.5	100
이용시설	-	3	4	15	37	14	2	75
	-	4.0	5.3	20.0	49.3	18.7	2.7	100
병원	-	2	5	18	43	27	9	104
	-	1.9	4.8	17.3	41.3	26.0	8.7	100
공공장소	-	-	5	6	14	12	18	55
	-	-	9.1	10.9	25.5	21.8	32.7	100
기타	-	4	9	9	18	27	27	94
	-	4.3	9.6	9.6	19.1	28.7	28.7	100
계	65	138	394	1,269	1,763	1,407	2,458	7,494*
	0.9	1.8	5.3	16.9	23.5	18.8	32.8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6,807명)와 학대행위자(7,494명)는 차이가 있음

표 8-29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명, %)

구분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피해자 본인	167	-	-	-	1	1	169
	2.8	-	-	-	1.8	1.1	2.3
배우자	2,587	-	-	-	16	12	2,615
	43.1	-	-	-	29.1	12.8	34.9
아들	2,064	-	-	-	10	18	2,092
	34.4	-	-	-	18.2	19.1	27.9
며느리	103	-	-	-	1	2	106
	1.7	-	-	-	1.8	2.1	1.4
딸	606	1*	-	-	6	7	620
	10.1	0.1	-	-	10.9	7.4	8.3
사위	36	-	-	-	-	2	38
	0.6	-	-	-	-	2.1	0.5
손자녀	175	-	-	-	-	4	179
	2.9	-	-	-	-	4.3	2.4
친척	48	-	-	-	-	1	49
	0.8	-	-	-	-	1.1	0.7
기타 타인	73	-	4	-	7	18	102
	1.2	-	5.3	-	12.7	19.1	1.4
동거인	81	-	-	-	2	3	86
	1.3	-	-	-	3.6	3.2	1.1
이웃	47	-	-	-	11	13	71
	0.8	-	-	-	20.0	13.8	0.9
친구	4	-	-	-	1	-	5
	0.1	-	-	-	1.8	-	0.1
기타기관 종사자	4	6	-	47	-	3	60
	0.1	0.5	-	45.2	-	3.2	0.8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0	1,139	71	8	-	9	1,237
	0.2	98.1	94.7	7.7	-	9.6	16.5
의료인	-	15	-	49	-	1	65
	-	1.3	-	47.1	-	1.1	0.9
계	6,005	1,161	75	104	55	94	7,49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시설에서 가족 간 학대가 발생할 경우 '가정 내' 학대로 분류되나 시설에서 학대행위자가 다수일 경우, 학대발생장소 기준으로 분류되어 집계됨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6,807명)와 학대행위자(7,494명)는 차이가 있음

4) 학대행위자 결혼유형

표 8-30 학대행위자 결혼유형

(단위: 명, %)

구분		명수	비율
배우자 있음	초혼	4,169	55.6
	재혼	303	4.0
	사실혼	223	3.0
	소계	4,695	62.7
배우자 없음	미혼	1,783	23.8
	사별	180	2.4
	이혼	724	9.7
	별거	96	1.3
	기출	16	0.2
	소계	2,799	37.3
계		7,494*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6,807명)와 학대행위자(7,494명)는 차이가 있음

5)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표 8-31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전체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494	786
	10.5

표 8-32 학대행위자 연령대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
10~19세	8	1.0
20~29세	13	1.7
30~39세	28	3.6
40~49세	148	18.8
50~59세	202	25.7
60~69세	138	17.6
70세 이상	249	31.7
계	786	100

6)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표 8-33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단위: 명, %)

무 학	초 졸	중 졸	고 졸	전문대졸 이상	계
419	1,063	1,079	2,988	1,945	7,494*
5.6	14.2	14.4	39.9	26.0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6,807명)와 학대행위자(7,494명)는 차이가 있음

7)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표 8-34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단위: 명, %)

구분	명수	비율
무직	4,358	58.2
서비스·판매종사자	525	7.0
단순 노무 종사자	655	8.7
전문직	955	12.7
사무종사자	234	3.1
자영업자	294	3.9
농·어·축산업 종사자	190	2.5
기술공 및 준전문가	111	1.5
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93	1.2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42	0.6
종교인	13	0.2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24	0.3
계	7,494*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6,807명)와 학대행위자(7,494명)는 차이가 있음

8) 학대행위자 건강상태

가. 학대행위자 질병유형

표 8-35 학대행위자 장애유형**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신체 장애	지체장애	121	11.1
	청각장애	74	6.8
	뇌병변장애	32	2.9
	시각장애	31	2.8
	간질장애	24	2.2
	언어장애	17	1.6
	신장장애	4	0.4
	호흡기장애	3	0.3
	안면장애	3	0.3
	심장장애	2	0.2
	장루요루장애	1	0.1
	간장애	1	0.1
	소계	313	28.7
정신 장애	정신분열	319	29.3
	우울장애	263	24.1
	지적장애	107	9.8
	정동장애	57	5.2
	반사회적 인격 장애	27	2.5
	자폐성장애	4	0.4
	소계	777	71.3
계	1,090*	100	

* 장애는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동반되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학대행위자 통계 수치(7,494건)와 학대피해노인 장애 유형 통계 수치(1,090건)에는 차이가 있음

** 학대 결과로서 장애 판정 유무는 확인이 어려우며, 장애인 등급판정을 받거나 현장조사 시 장애가 의심되는 대상자도 포함.

나. 학대행위자 중독유형

표 8-36 학대행위자 중독유형

(단위: 명, %)

전체 학대행위자	도박중독	알코올 사용장애	약물 사용장애	계
7,494	35	954	29	1,018
	0.5	12.7	0.4	13.6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PART 09

노인학대 주요 사례 분석 결과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PART

9

노인학대 주요 사례 분석 결과

01 | 경제적 학대 현황

1) 지역 및 기관별 경제적 학대 현황

경제적 학대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022년 전체 학대유형 건수 10,542건 중 경제적 학대는 397건(3.8%)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26.6%, 강원특별자치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8.6%, 경상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7.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1 지역 및 기관별 경제적 학대 현황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경제적 학대		전체 학대유형 건수
		건수	비율	
서울	서울남부	5	2.0	246
	서울북부	12	5.8	206
	서울서부	3	1.0	287
	서울동부	9	2.8	322
	소계	29	2.7	1,061
부산	부산동부	15	2.8	541
	부산서부	14	3.6	394
	소계	29	3.1	935
대구	대구남부	4	1.3	301
	대구북부	5	2.6	193
	소계	9	1.8	494
인천	인천	10	2.7	367
	인천서부	3	0.8	381
	소계	13	1.7	748
광주		4	2.0	202
대전		11	4.5	243
울산		9	3.6	250
경기	경기동부	8	2.3	347
	경기북부	34	5.6	602
	경기서부	16	3.3	492
	경기도	4	1.1	353
	경기북서부	5	1.1	457
	소계	67	3.0	2,251

지역	기관명	경제적 학대		전체 학대유형 건수
		건수	비율	
강원	강원	62	26.6	233
	강원동부	2	1.1	181
	강원남부	19	8.6	222
	소계	83	13.1	636
충북	충북	8	4.4	182
	충북북부	4	2.4	167
	소계	12	3.4	349
충남	충남	12	3.7	324
	충남남부	2	1.2	169
	소계	14	2.8	493
전북	전북	5	2.1	235
	전북서부	9	4.7	192
	소계	14	3.3	427
전남	전남동부	3	1.4	213
	전남서부	17	5.6	306
	소계	20	3.9	519
경북	경북동부	16	5.7	281
	경북북부	16	7.8	204
	경북서부	3	1.0	303
	경북남부	5	3.0	167
	소계	40	4.2	955
경남	경남	28	5.1	550
	경남서부	5	2.4	207
	소계	33	4.4	75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5	3.8	132
	제주도서귀포시	5	5.6	90
	소계	10	4.5	222
계		397	3.8	10,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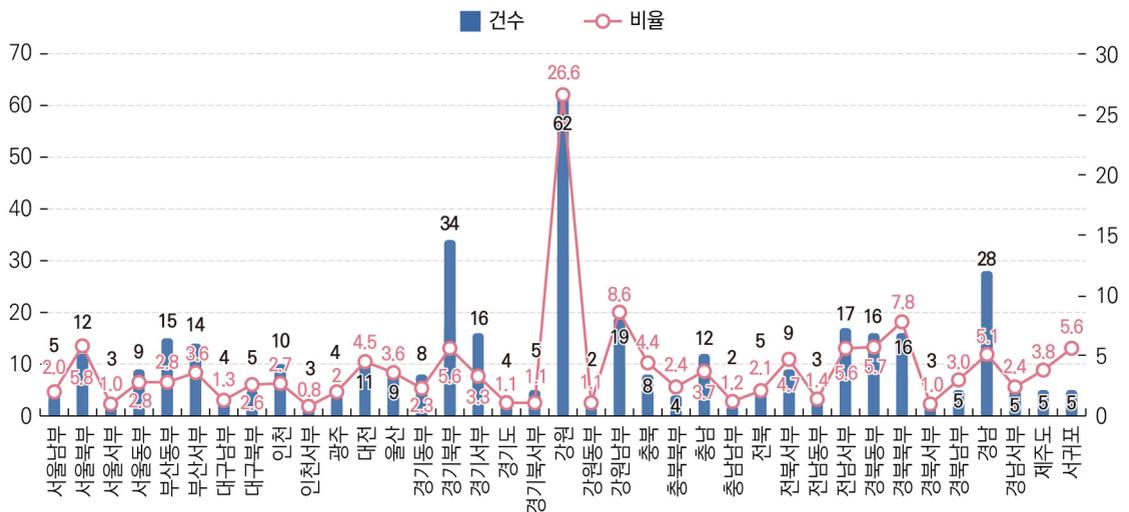


그림 9-1 지역 및 기관별 경제적 학대 현황

2)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경제적 학대를 경험한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및 연령대를 살펴보면, 남성은 126명(31.7%), 여성은 271명(68.3%)으로 나타났다. 남성, 여성 모두 80~84세가 각각 32명(25.4%), 69명(25.5%)으로 가장 많았다.

표 9-2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남성	15	22	26	32	23	7	1	-	126
	11.9	17.5	20.6	25.4	18.3	5.6	0.8	-	100
여성	29	46	52	69	49	17	9	-	271
	10.7	17.0	19.2	25.5	18.1	6.3	3.3	-	100
계	44	68	78	101	72	24	10	-	397
	11.1	17.1	19.6	25.4	18.1	6.0	2.5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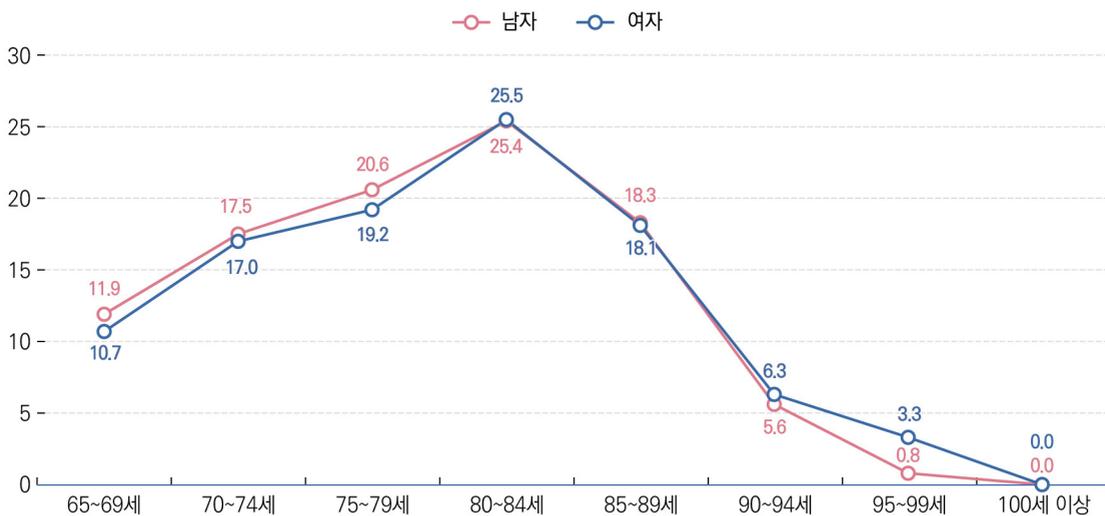


그림 9-2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3)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경제적 학대 행위자는 총 562명으로, 이 중 기관이 219명(39.0%)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아들 173명(30.8%), 딸 47명(8.4%), 타인 42명(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유형의 행위자가 “배우자-아들-기관” 순이었다는 결과와 비교해볼 때, 경제적 학대의 경우 기관을 제외하면 주로 자녀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3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명, %)

피해자 본인	친 족								타인 ²⁴⁾	기관 ²⁵⁾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3	37	173	11	47	3	18	9	298	42	219	562*
0.5	6.6	30.8	2.0	8.4	0.5	3.2	1.6	53.0	7.5	39.0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수(397명)와 학대행위자(562명)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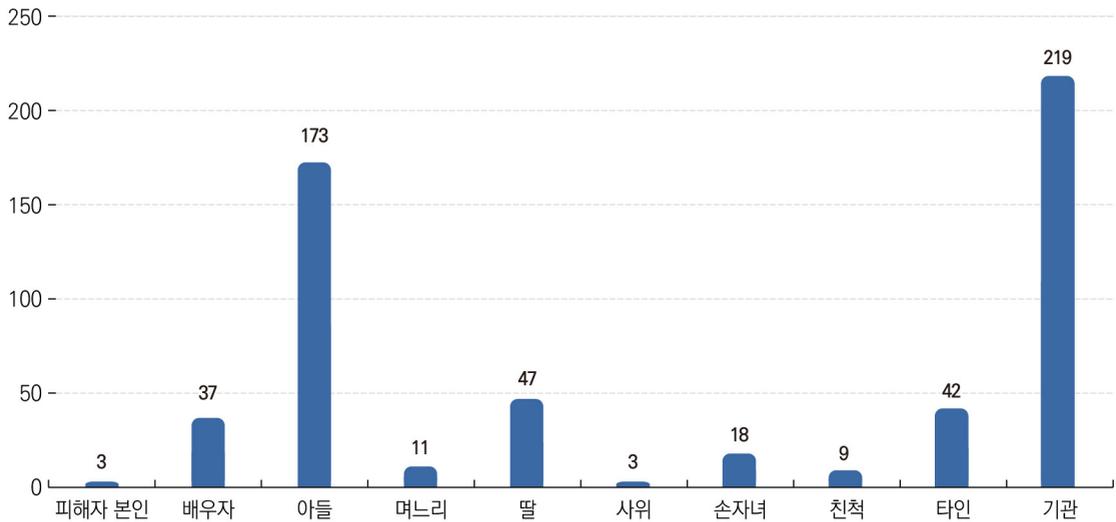


그림 9-3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24) 타인에는 동거인, 이웃, 친구 등이 해당됨.

25) 기관에는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의료인 등이 해당됨.

4)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연령대

경제적 학대 행위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가 152명(27.0%)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60대 133명(23.7%), 50대 127명(2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4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연령대

							(단위: 명, %)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4	12	75	152	127	133	59	562*
0.7	2.1	13.3	27.0	22.6	23.7	10.5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수(397명)와 학대행위자(562명)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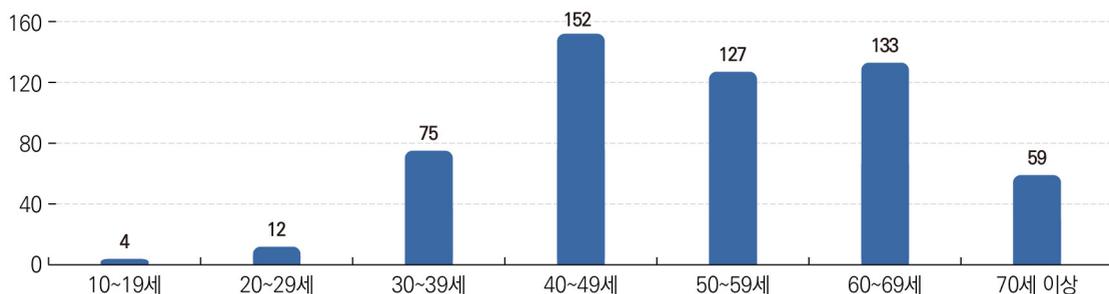


그림 9-4 경제적 학대 행위자 연령대

5)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장소

경제적 학대의 학대발생장소를 살펴보면 가정내가 312건(78.6%)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시설이 74건(18.6%)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9-5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312	74	-	-	3	8	397
78.6	18.6	-	-	0.8	2.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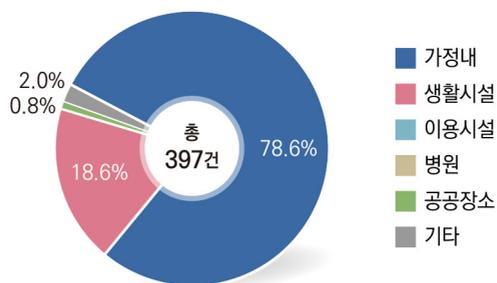


그림 9-5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장소

6)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빈도

경제적 학대 발생 빈도를 보면 1개월에 한 번 이상이 114건(28.7%)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주일에 한 번 이상이 82건(20.7%), 6개월에 한 번 이상이 75건(18.9%) 등의 순으로 경제적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학대유형의 학대발생빈도(1개월에 한 번 이상 25.5%, 1주일에 한 번 이상 21.5%)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9-6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일회성	6개월에 한 번 이상	3개월에 한 번 이상	1개월에 한 번 이상	1주일에 한 번 이상	매일	계
46	75	35	114	82	45	397
11.6	18.9	8.8	28.7	20.7	11.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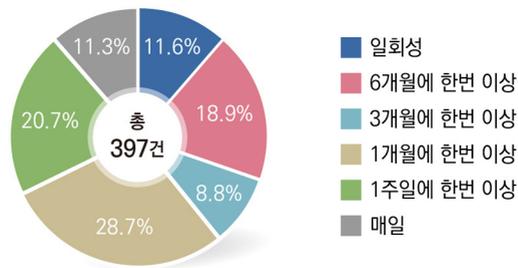


그림 9-6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빈도

7) 경제적 학대 학대지속기간

경제적 학대의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이 184건(46.3%), 5년 이상이 113건(28.5%)으로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학대가 지속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9-7 경제적 학대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일회성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계
42	3	55	184	113	397
10.6	0.8	13.9	46.3	28.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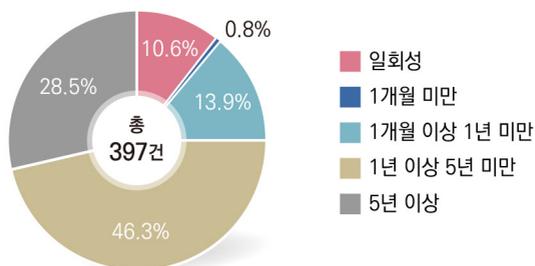


그림 9-7 경제적 학대 학대지속기간

8) 경제적 학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경제적 학대를 경험한 피해노인 397명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47명(37.0%)으로 나타났다.

표 9-8 경제적 학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경제적 학대 현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97	147
	37.0

02 |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1)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학대피해노인의 치매정도는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와 병원진단 없이 상담원이 임의로 간이정신상태검사지표나 학대피해노인의 상황에 따라 치매로 의심하는 치매의심으로 분류한다.

2022년 한 해 동안 치매노인 현황을 살펴보면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로 진단 받은 사례는 총 1,767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26.0%로 집계되었다.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별로 살펴보면, 각 기관에서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 중에서 치매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56.4%, 강원특별자치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44.9%,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42.9%로 나타났다.

반면 치매노인 비율이 낮은 기관은 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15.1%,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17.0%, 대구광역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17.8% 순으로 나타났다.

표 9-9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치매노인학대 현황				전체 학대사례 건수
		치매진단	치매의심	총합계	비율	
서울	서울남부	15	17	32	21.8	147
	서울북부	11	11	22	18.6	118
	서울서부	19	15	34	20.7	164
	서울동부	18	23	41	21.9	187
	소계	63	66	129	20.9	616
부산	부산동부	28	20	48	15.1	318
	부산서부	25	24	49	20.6	238
	소계	53	44	97	17.4	556
대구	대구남부	18	12	30	17.8	169
	대구북부	23	6	29	25.2	115
	소계	41	18	59	20.8	284
인천	인천	37	14	51	20.8	245
	인천서부	28	19	47	22.1	213
	소계	65	33	98	21.4	458
광주		18	15	33	19.8	167
대전		46	15	61	41.8	146
울산		19	19	38	23.5	162

지 역	기관명	치매노인학대 현황				전체 학대사례 건수
		치매진단	치매의심	총합계	비율	
경기	경기동부	51	17	68	28.1	242
	경기북부	104	40	144	30.6	470
	경기서부	31	36	67	22.0	304
	경기도	25	19	44	18.3	241
	경기북서부	56	14	70	22.4	312
	소계	267	126	393	25.0	1569
강원	강원	32	13	45	24.6	183
	강원동부	36	14	50	41.0	122
	강원남부	28	29	57	44.9	127
	소계	96	56	152	35.2	432
충북	충북	20	12	32	32.7	98
	충북북부	17	15	32	34.0	94
	소계	37	27	64	33.3	192
충남	충남	43	22	65	32.2	202
	충남남부	19	10	29	24.2	120
	소계	62	32	94	29.2	322
전북	전북	55	7	62	41.9	148
	전북서부	33	13	46	30.7	150
	소계	88	20	108	36.2	298
전남	전남동부	23	6	29	19.1	152
	전남서부	75	21	96	42.9	224
	소계	98	27	125	33.2	376
경북	경북동부	28	10	38	22.4	170
	경북북부	18	14	32	24.2	132
	경북서부	35	21	56	27.3	205
	경북남부	46	11	57	56.4	101
	소계	127	56	183	30.1	608
경남	경남	31	27	58	17.0	341
	경남서부	39	7	46	31.5	146
	소계	70	34	104	21.4	48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0	5	15	19.0	79
	제주도서귀포시	10	4	14	25.5	55
	소계	20	9	29	21.6	134
계		1,170	597	1,767	26.0	6,8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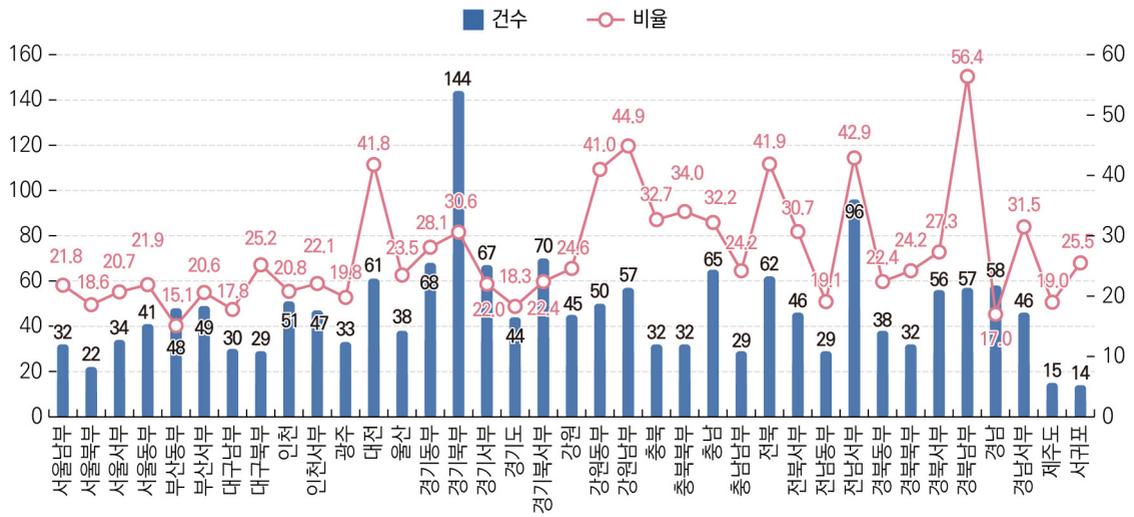


그림 9-8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2)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성별 및 연령대

2022년 전체 노인학대 6,807건 중 치매노인의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은 1,323명(74.9%), 남성은 444명(25.1%)으로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9-10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성별

전체학대사례	치매진단(치매로 진단받음)	치매의심(치매가 의심됨)	계
남성	290	154	444
	24.8	25.8	25.1
여성	880	443	1,323
	75.2	74.2	74.9
계	1,170	597	1,767
	100	100	100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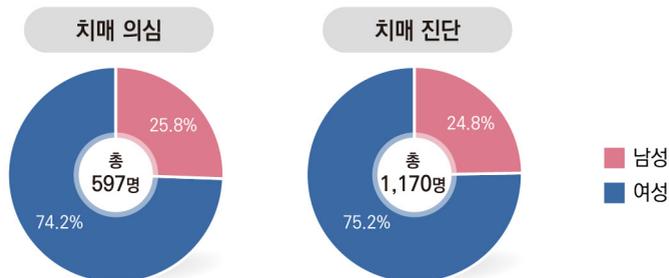


그림 9-9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성별

성별에 이어 치매노인을 연령대로 구분해 보면 80대가 880명(49.8%)로 가장 많았으며, 70대가 484명(27.4%)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9-11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연령대

(단위: 명, %)

성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47	98	180	304	307	170	56	8	1,170
	4.0	8.4	15.4	26.0	26.2	14.5	4.8	0.7	100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58	84	122	154	115	46	15	3	597
	9.7	14.1	20.4	25.8	19.3	7.7	2.5	0.5	100
계	105	182	302	458	422	216	71	11	1,767
	5.9	10.3	17.1	25.9	23.9	12.2	4.0	0.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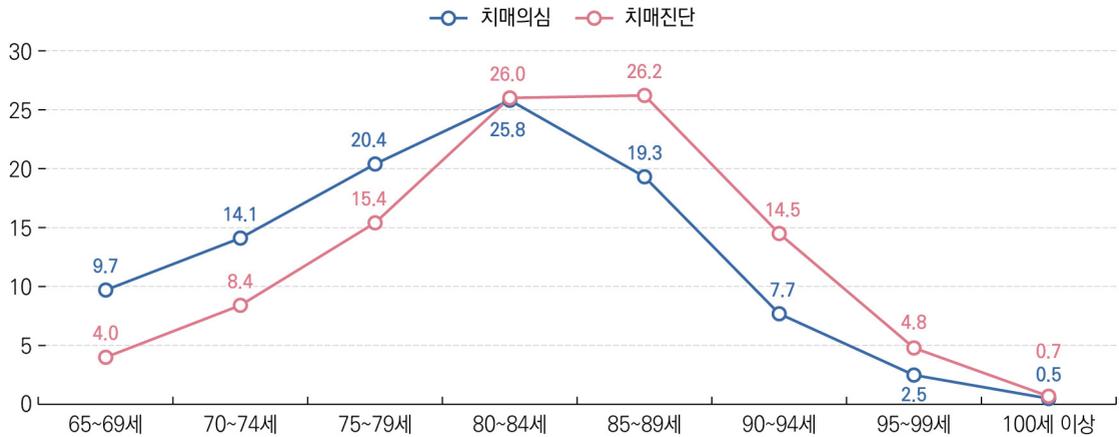


그림 9-10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연령대

3)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대상 학대행위자 유형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행위자 유형의 경우 기관이 1,069건(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친족이 999명(44.7%)으로 나타났다. 친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들이 468명(20.9%)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275명(12.3%), 딸 164명(7.3%) 순이었다.

표 9-12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과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건, 명, %)

구 분	피해자 본인	친 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37	149	251	14	79	2	20	9	524	51	948	1,560
	2.4	9.6	16.1	0.9	5.1	0.1	1.3	0.6	33.6	3.3	60.8	100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60	126	217	17	85	3	17	10	475	21	121	677
	8.9	18.6	32.1	2.5	12.6	0.4	2.5	1.5	70.2	3.1	17.9	100
계	97	275	468	31	164	5	37	19	999	72	1,069	2,237*
	4.3	12.3	20.9	1.4	7.3	0.2	1.7	0.8	44.7	3.2	47.8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수(1,767명)와 학대행위자(2,237명)는 차이가 있음



그림 9-11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과 학대행위자 유형

4)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유형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의 학대유형을 보면, 신체적 학대가 872건(34.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674건(27.0%), 방임 525건(2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학대유형에서는 정서적 학대의 비율(4,561건, 43.3%)이 높게 나타나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표 9-13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573	370	158	79	388	37	10	1,615
	35.5	22.9	9.8	4.9	24.0	2.3	0.6	100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299	304	29	42	137	60	11	882
	33.9	34.5	3.3	4.8	15.5	6.8	1.2	100
계	872	674	187	121	525	97	21	2,497*
	34.9	27.0	7.5	4.8	21.0	3.9	0.8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통계 수치(1,767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2,497건)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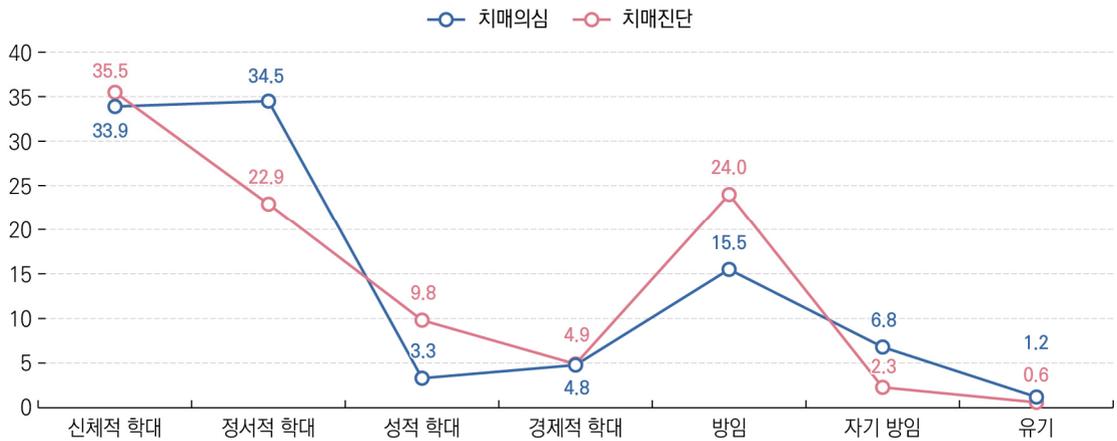


그림 9-12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유형

5)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의 학대발생장소를 보면, 가정 내가 1,066건(60.3%)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생활시설이 553건(31.3%)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정 내와 생활시설의 건수를 합하면 총 1,619건(91.6%)으로 학대발생장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치매의심과 치매진단 모두 가정 내에서 발생한 건수가 각각 506건(84.8%), 560건(47.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정에서의 학대발생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14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구 분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 원	공공장소	기 타	계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560	503	35	48	3	21	1,170
	47.9	43.0	3.0	4.1	0.3	1.8	100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506	50	6	17	4	14	597
	84.8	8.4	1.0	2.8	0.7	2.3	100
계	1,066	553	41	65	7	35	1,767
	60.3	31.3	2.3	3.7	0.4	2.0	100



그림 9-13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6)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의 학대발생빈도를 보면, 일회성인 경우가 413건(23.4%)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매일 409건(23.1%), 1주일에 한 번 이상이 399건(22.6%)으로 뒤를 이었다.

표 9-15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구분	일회성	6개월에 한 번 이상	3개월에 한 번 이상	1개월에 한 번 이상	1주일에 한 번 이상	매일	계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314	72	59	188	260	277	1,170
	26.8	6.2	5.0	16.1	22.2	23.7	100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99	55	53	119	139	132	597
	16.6	9.2	8.9	19.9	23.3	22.1	100
계	413	127	112	307	399	409	1,767
	23.4	7.2	6.3	17.4	22.6	23.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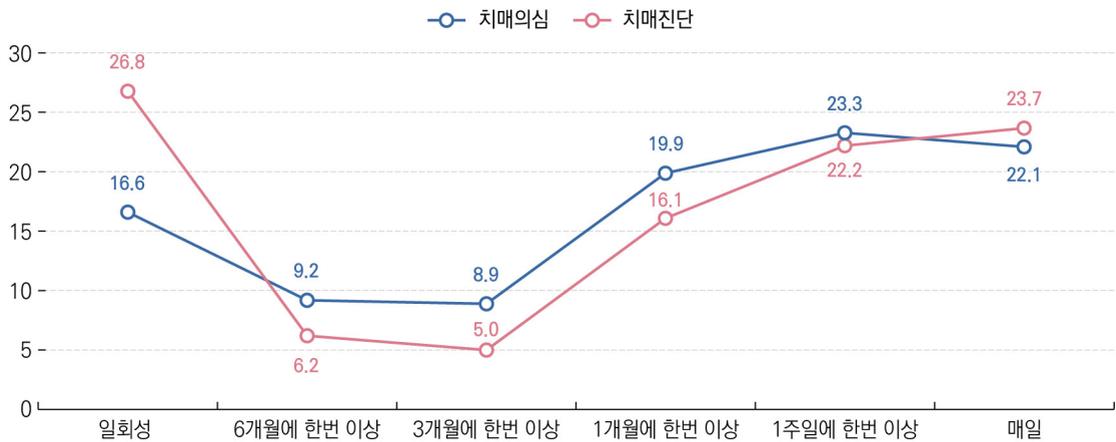


그림 9-14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7)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의 학대지속기간을 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이 572건(32.4%)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406건(23.0%), 일회성이 371건(2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16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구분	일회성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계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282	89	266	365	168	1,170
	24.1	7.6	22.7	31.2	14.4	100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89	29	140	207	132	597
	14.9	4.9	23.5	34.7	22.1	100
계	371	118	406	572	300	1,767
	21.0	6.7	23.0	32.4	17.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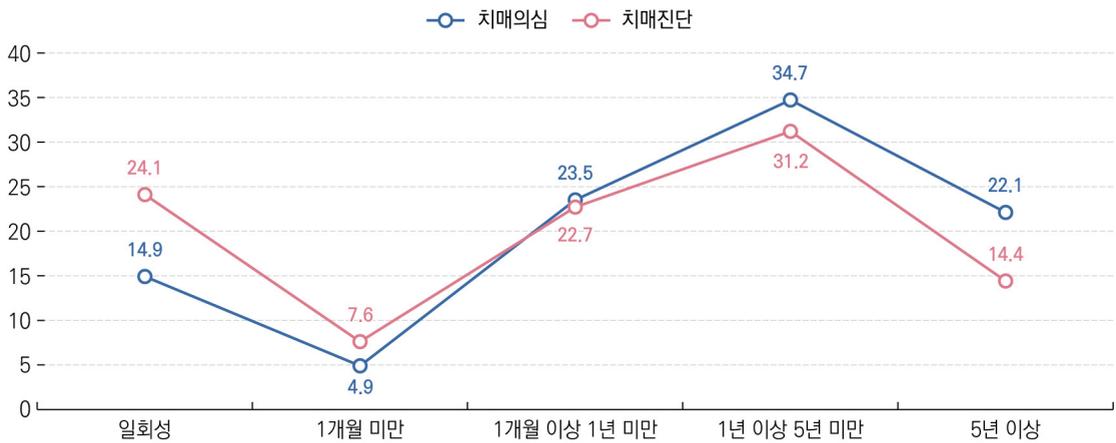


그림 9-15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8)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가구형태

학대피해를 경험한 치매노인의 가구형태는 기타인 경우가 570건(32.3%)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동거 417건(23.6%), 노인독거 413건(23.4%) 등 순이었다.

기타 항목이 가장 많은 이유는 가구 형태가 가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어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주로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표 9-17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가구형태

(단위: 건, %)

구 분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 동거	자녀·손자녀 동거	기 타	계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254	142	239	17	25	493	1,170
	21.7	12.1	20.4	1.5	2.1	42.1	100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159	132	178	17	34	77	597
	26.6	22.1	29.8	2.8	5.7	12.9	100
계	413	274	417	34	59	570	1,767
	23.4	15.5	23.6	1.9	3.3	32.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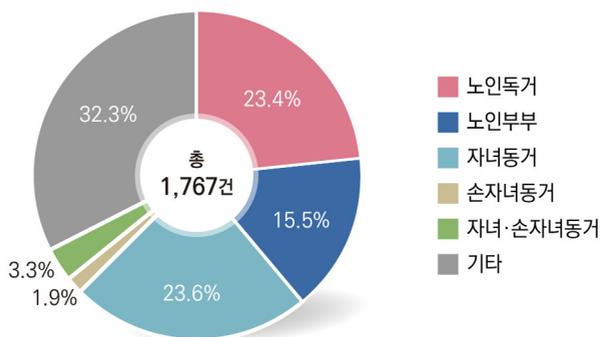


그림 9-16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가구형태

03 | 시설학대 현황

1)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와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시설학대 현황을 살펴보았다.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77건(16.4%)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70건(38.3%),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58건(25.9%)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특별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설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8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전체 학대사례 건수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서울	서울남부	147	-	3	-	1	4
			-	2.0	-	0.7	2.7
	서울북부	118	-	-	-	-	-
			-	-	-	-	-
	서울서부	164	-	7	-	1	8
			-	4.3	-	0.6	4.9
	서울동부	187	-	1	-	-	1
-			0.5	-	-	0.5	
소계	616	-	11	-	2	13	
			-	1.8	-	0.3	2.1
부산	부산동부	318	-	2	-	-	2
			-	0.6	-	-	0.6
	부산서부	238	-	3	-	2	5
			-	1.3	-	0.8	2.1
	소계	556	-	5	-	2	7
			-	0.9	-	0.4	1.3
대구	대구남부	169	1	4	-	1	6
			0.6	2.4	-	0.6	3.6
	대구북부	115	-	5	-	2	7
			-	4.3	-	1.7	6.1
	소계	284	1	9	-	3	13
			0.4	3.2	-	1.1	4.6
인천	인천	245	-	34	-	7	41
			-	13.9	-	2.9	16.7
	인천서부	213	3	17	-	2	22
			1.4	8.0	-	0.9	10.3
	소계	458	3	51	-	9	63
			0.7	11.1	-	2.0	13.8

지역	기관명	전체 학대사례 건수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광주		167	1	1	-	2	4
			0.6	0.6	-	1.2	2.4
대전		146	-	26	-	3	29
			-	17.8	-	2.1	19.9
울산		162	-	5	-	1	6
			-	3.1	-	0.6	3.7
경기	경기동부	242	-	32	-	2	34
			-	13.2	-	0.8	14.0
	경기북부	470	4	66	-	7	77
			0.9	14.0	-	1.5	16.4
	경기서부	304	1	9	-	-	10
			0.3	3.0	-	-	3.3
	경기도	241	-	6	-	-	6
			-	2.5	-	-	2.5
	경기북서부	312	-	35	-	4	39
			-	11.2	-	1.3	12.5
소계	1569	5	148	-	13	166	
		0.3	9.4	-	0.8	10.6	
강원	강원	183	54	16	-	-	70
			29.5	8.7	-	-	38.3
	강원동부	122	-	36	-	-	36
			-	29.5	-	-	29.5
	강원남부	127	9	41	-	-	50
			7.1	32.3	-	-	39.4
소계	432	63	93	-	-	156	
		14.6	21.5	-	-	36.1	
충북	충북	98	-	11	-	3	14
			-	11.2	-	3.1	14.3
	충북북부	94	2	7	-	-	9
			2.1	7.4	-	-	9.6
소계	192	2	18	-	3	23	
		1.0	9.4	-	1.6	12.0	
충남	충남	202	-	6	-	1	7
			-	3.0	-	0.5	3.5
	충남남부	120	7	3	-	-	10
			5.8	2.5	-	-	8.3
	소계	322	7	9	-	1	17
2.2			2.8	-	0.3	5.3	

지역	기관명	전체 학대사례 건수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전북	전북	148	-	30	-	3	33
			-	20.3	-	2.0	22.3
	전북서부	150	-	8	-	2	10
			-	5.3	-	1.3	6.7
	소계	298	-	38	-	5	43
-			12.8	-	1.7	14.4	
전남	전남동부	152	-	4	1	-	5
			-	2.6	0.7	-	3.3
	전남서부	224	1	55	-	2	58
			0.4	24.6	-	0.9	25.9
	소계	376	1	59	1	2	63
0.3			15.7	0.3	0.5	16.8	
경북	경북동부	170	-	5	-	-	5
			-	2.9	-	-	2.9
	경북북부	132	-	4	-	-	4
			-	3.0	-	-	3.0
	경북서부	205	-	15	-	2	17
			-	7.3	-	1.0	8.3
	경북남부	101	-	40	-	-	40
-			39.6	-	-	39.6	
소계	608	-	64	-	2	66	
		-	10.5	-	0.3	10.9	
경남	경남	341	-	11	-	1	12
			-	3.2	-	0.3	3.5
	경남서부	146	-	25	-	1	26
			-	17.1	-	0.7	17.8
	소계	487	-	36	-	2	38
-			7.4	-	0.4	7.8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79	-	1	-	1	2
			-	1.3	-	1.3	2.5
	제주도서귀포시	55	-	5	-	-	5
			-	9.1	-	-	9.1
	소계	134	-	6	-	1	7
-			4.5	-	0.7	5.2	
계	6,807	83	579	1	51	714	
		1.2	8.5	0.0	0.7	10.5	

주. 각 시설학대 건수 비율은 기관별 학대사례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2) 시설학대 신고자 유형

시설학대 총 714건을 신고자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신고의무자 직군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에 의한 신고가 170건(23.8%),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에 의한 신고가 150건(21.0%),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117건(16.4%)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고의무자 직군의 시설학대 신고건수는 467건(65.4%)이었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친족 136건(19.0%), 관련기관 81건(11.3%), 타인 25건(3.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신고의무자의 시설학대 신고건수는 247건(34.6%)으로 나타나 신고의무자에 비해 30.8%p 낮았다. 이는 「노인복지법」 개정(시행일 '22.3.2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직군이 포함되어 기존과 다른 경향으로 나타났다.

표 9-19 시설학대 신고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신고 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	2	-	-	3
		0.1	0.3	-	-	0.4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	-	1	1
		-	-	-	0.1	0.1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3	160	-	7	170
		0.4	22.4	-	1.0	23.8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	-	-	-
		-	-	-	-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	-	-	-
		-	-	-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9	-	3	12
		-	1.3	-	0.4	1.7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	-	-	-	-
		-	-	-	-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4	-	1	5
		-	0.6	-	0.1	0.7
119구급대의 대원	-	-	-	-	-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	-	-	-	
	-	-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	-	-	-	
	-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	-	1	1	
	-	-	-	0.1	0.1	

구 분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응급구조사	-	-	-	-	-
		-	-	-	-	-
	의료기사	-	-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8	-	-	8
		-	1.1	-	-	1.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	-	-	-
		-	-	-	-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57	90	-	3	150
		8.0	12.6	-	0.4	21.0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9	104	1	3	117
		1.3	14.6	0.1	0.4	16.4
	소계	70	377	1	19	467
		9.8	52.8	0.1	2.7	65.4
비신고 의무자	학대피해노인 본인	-	3	-	2	5
		-	0.4	-	0.3	0.7
	학대행위자 본인	-	-	-	-	-
		-	-	-	-	-
	친족	9	109	-	18	136
		1.3	15.3	-	2.5	19.0
	타인	-	18	-	7	25
		-	2.5	-	1.0	3.5
	관련기관 ²⁶⁾	4	72	-	5	81
		0.6	10.1	-	0.7	11.3
	소계	13	202	-	32	247
		1.8	28.3	-	4.5	34.6
	계	83	579	1	51	714
		11.6	81.1	0.1	7.1	100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경우, 「노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신고의무자로 분류되어 시행일 기준 전과 후로 구분하여 집계함(시행일: '22. 3. 22.)

26) 관련기관에는 경찰관,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됨.

3)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시설학대 714건 중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비율은 여성노인은 510명(71.4%), 남성노인은 204명(28.6%)으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약 2.5배 높게 나타났다.

시설학대 피해노인의 성별 및 연령대를 보면 남성의 경우 80대가 49.0%, 70대가 30.4%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도 80대가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남성과 달리 90대 32.1%, 70대 13.5% 순으로 나타났다.

표 9-20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남성	12	25	37	49	51	21	9	-	204
	5.9	12.3	18.1	24.0	25.0	10.3	4.4	-	100
여성	12	26	43	101	158	119	45	6	510
	2.4	5.1	8.4	19.8	31.0	23.3	8.8	1.2	100
계	24	51	80	150	209	140	54	6	714
	3.4	7.1	11.2	21.0	29.3	19.6	7.6	0.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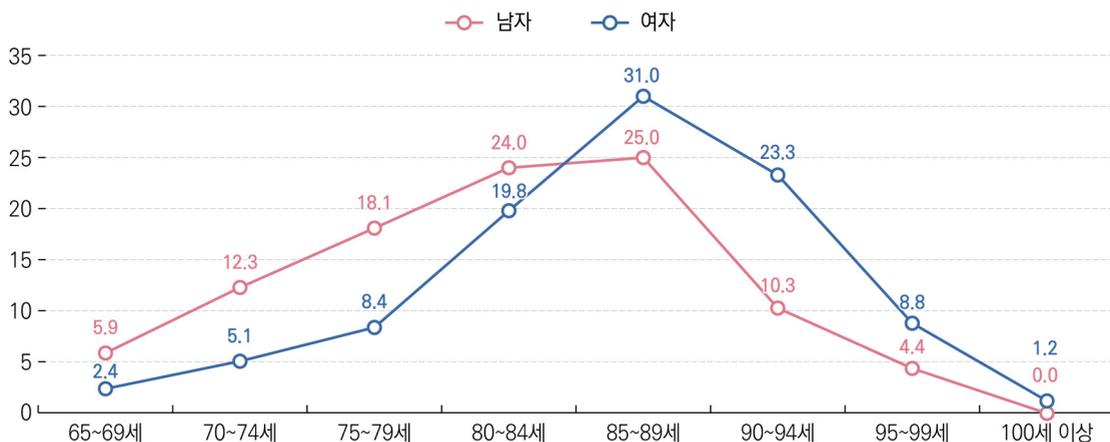


그림 9-17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4) 시설학대 학대유형

시설학대 학대유형을 보면 총 948건 중 방임이 320건(33.8%), 신체적 학대가 296건(31.2%), 성적 학대가 177건(18.7%), 정서적 학대가 81건(8.5%) 등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방임이 281건(35.4%), 신체적 학대가 269건(33.9%)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성적 학대 166건(20.9%), 정서적 학대 59건(7.4%)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경제적 학대가 56건(59.6%), 방임 14건(14.9%), 신체적 학대가 10건(10.6%), 성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7건(7.4%)순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상이한 동향을 나타냈다.

표 9-21 시설학대 학대유형

(단위: 건, %)

구 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생활 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10	7	7	56	14	-	-	94
		10.6	7.4	7.4	59.6	14.9	-	-	100
	노인의료 복지시설	269	59	166	18	281	-	-	793
		33.9	7.4	20.9	2.3	35.4	-	-	100
이용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	1	-	-	-	-	-	1
		-	100	-	-	-	-	-	100
	재가노인 복지시설	17	14	4	-	25	-	-	60
		28.3	23.3	6.7	-	41.7	-	-	100
계		296	81	177	74	320	-	-	948*
		31.2	8.5	18.7	7.8	33.8	-	-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시설학대 통계 수치(714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948건)에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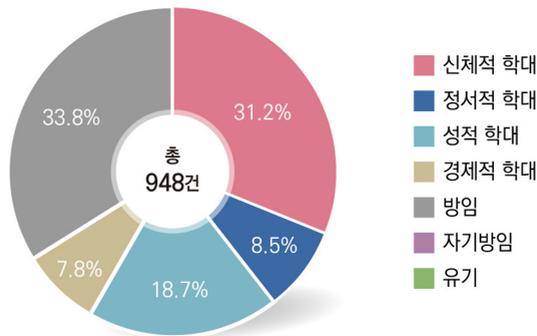


그림 9-18 시설학대 학대유형

5) 시설학대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전체 학대피해노인 6,807명의 결혼유형은 배우자 있음이 4,139건(60.8%)이며, 배우자 없음은 2,668건(39.2%)으로 나타났다.

시설학대를 중심으로 학대피해노인의 결혼유형을 살펴보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모두 배우자 없음이 각각 455건(68.7%), 38건(73.1%)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9-22 시설학대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단위: 건, %)

구 분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계	
	초혼	재혼	사실혼	소계	미혼	사별	이혼	별거	가출	소계		
생활 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62	1	-	63	1	18	1	-	-	20	83
		74.7	1.2	-	75.9	1.2	21.7	1.2	-	-	24.1	100
	노인의료 복지시설	141	2	1	144	7	420	5	2	1	435	579
		24.4	0.3	0.2	24.9	1.2	72.5	0.9	0.3	0.2	75.1	100
	소계	203	3	1	207	8	438	6	2	1	455	662
		30.7	0.5	0.2	31.3	1.2	66.2	0.9	0.3	0.2	68.7	100
이용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	-	-	-	-	-	1	-	-	1	1
		-	-	-	-	-	-	100	-	-	100	100
	재가노인 복지시설	14	-	-	14	2	35	-	-	-	37	51
		27.5	-	-	27.5	3.9	68.6	-	-	-	72.5	100
	소계	14	-	-	14	2	35	1	-	-	38	52
		26.9	-	-	26.9	3.8	67.3	1.9	-	-	73.1	100
계	217	3	1	221	10	473	7	2	1	493	714	
	30.4	0.4	0.1	31.0	1.4	66.2	1.0	0.3	0.1	69.0	100	

6)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의 학대발생빈도를 보면 전체 시설학대 중 매일인 경우가 222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일회성 220건(30.8%), 1주일에 한 번 이상이 147건(20.6%), 6개월에 한 번 이상이 76건(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21년과 비교하면, '매일'과 '일회성' 순위가 변경되었으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1년 기준 일회성 33.1%, 매일 29.9%).

표 9-23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구 분		일회성	6개월에 한 번 이상	3개월에 한 번 이상	1개월에 한 번 이상	1주일에 한 번 이상	매일	계
생활 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11	54	-	3	6	9	83
		13.3	65.1	-	3.6	7.2	10.8	100
	노인의료 복지시설	180	19	6	31	136	207	579
		31.1	3.3	1.0	5.4	23.5	35.8	100
이용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1	-	-	-	-	-	1
		100	-	-	-	-	-	100
	재가노인 복지시설	28	3	2	7	5	6	51
		54.9	5.9	3.9	13.7	9.8	11.8	100
계		220	76	8	41	147	222	714
		30.8	10.6	1.1	5.7	20.6	31.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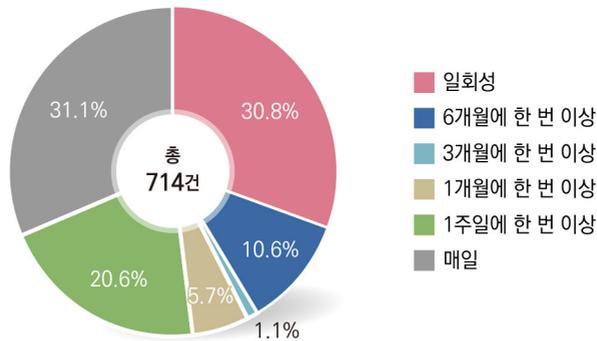


그림 9-19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7)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의 학대지속기간을 보면 전체 시설학대 중 1년 이상 5년 미만이 245건(34.3%)으로 가장 많았고, 일회성 188건(26.3%),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76건(24.6%) 순으로 나타났다. '21년과 비교해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 비율이 14.7%p 증가한 반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3.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년 기준 '1년 이상 5년 미만' 19.6%, '1개월 이상 1년 미만' 38.2%).

표 9-24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구 분		일회성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계
생활 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11	1	7	62	2	83
		13.3	1.2	8.4	74.7	2.4	100
	노인의료 복지시설	151	71	160	174	23	579
		26.1	12.3	27.6	30.1	4.0	100
이용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1	-	-	-	-	1
		100	-	-	-	-	100
	재가노인 복지시설	25	6	9	9	2	51
		49.0	11.8	17.6	17.6	3.9	100
계		188	78	176	245	27	714
		26.3	10.9	24.6	34.3	3.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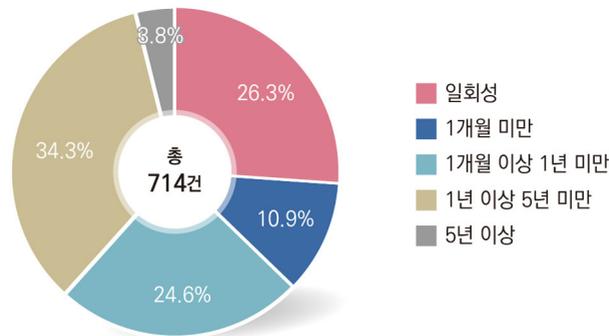


그림 9-20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다음은 시설학대의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을 보면, 발생빈도와 지속기간이 모두 일회성인 경우가 182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매일 발생한 경우가 144건으로 나타났다.

표 9-25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구 분		학대지속기간					계
		일회성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학 대 발 생 빈 도	일회성	182	29	6	2	1	220
	6개월에 한 번 이상	1	-	18	55	2	76
	3개월에 한 번 이상	-	-	5	3	-	8
	1개월에 한 번 이상	3	7	22	6	3	41
	1주일에 한 번 이상	2	22	75	35	13	147
	매일	-	20	50	144	8	222
	계	188	78	176	245	27	714

8)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시설 유형별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생활시설의 경우 학대피해 노인 662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45명(21.9%)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시설의 경우 학대 피해노인 52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2명(23.1%)으로 나타났다.

표 9-26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 분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83	63
			75.9
	노인의료 복지시설	579	82
			14.2
소계		662	145
			21.9
이용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1	1
			100
	재가노인 복지시설	51	11
			21.6
소계		52	12
			23.1
계		714	157
			22.0

9)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시설학대 714건 중 치매로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사례는 594명(83.2%)이다. 치매노인 594명을 대상으로 시설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생활시설이 553명(77.5%)으로 이용시설 41명(5.7%)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9-27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 명, %)

시설학대	구 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계
714	생활 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2	19	21
			0.3	2.7	2.9
		노인의료 복지시설	48	484	532
			6.7	67.8	74.5
	이용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	1	1
			-	0.1	0.1
		재가노인 복지시설	6	34	40
			0.8	4.8	5.6
계		56	538	594	
		7.8	75.4	83.2	

10)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시설학대 학대행위자는 총 1,236명이며, 그 중 여성이 959명(77.6%), 남성이 277명(22.4%)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연령대 비율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50대가 114명(41.2%), 389명(40.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9-28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남성	-	4	65	31	114	47	16	277
	-	1.4	23.5	11.2	41.2	17.0	5.8	100
여성	-	4	25	130	389	326	85	959
	-	0.4	2.6	13.6	40.6	34.0	8.9	100
계	-	8	90	161	503	373	101	1,236
	-	0.6	7.3	13.0	40.7	30.2	8.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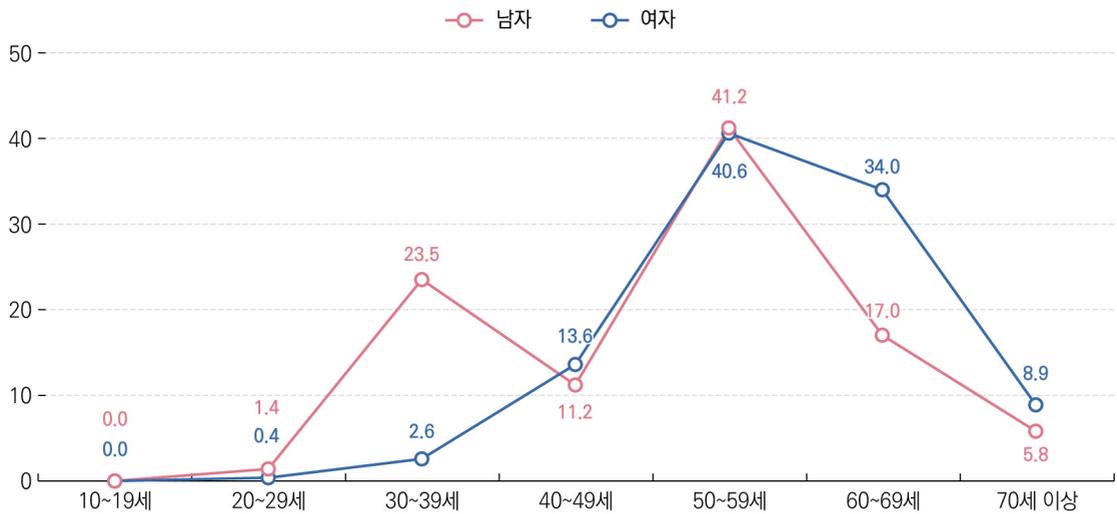


그림 9-21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04 | 재학대 현황

1) 지역 및 기관별 재학대 현황

재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사례를 의미한다.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재학대 건수는 817건으로 전체 학대사례 6,807건 중 12.0%에 해당되며,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별로 재학대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재학대가 가장 많이(학대사례 대비 재학대 비율) 신고된 기관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27.0%,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23.5%,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재학대 발생 건이 없었고, 그 다음으로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0.6%,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2.9%순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9-29 지역 및 기관별 재학대 현황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재학대		전체 학대사례 건수
		건수	비율	
서울	서울남부	12	8.2	147
	서울북부	9	7.6	118
	서울서부	13	7.9	164
	서울동부	18	9.6	187
	소계	52	8.4	616
부산	부산동부	52	16.4	318
	부산서부	11	4.6	238
	소계	63	11.3	556
대구	대구남부	22	13.0	169
	대구북부	15	13.0	115
	소계	37	13.0	284
인천	인천	42	17.1	245
	인천서부	25	11.7	213
	소계	67	14.6	458
광주		16	9.6	167
대전		14	9.6	146
울산		38	23.5	162
경기	경기동부	23	9.5	242
	경기북부	80	17.0	470
	경기서부	42	13.8	304
	경기도	65	27.0	241
	경기북서부	2	0.6	312
	소계	212	13.5	1,569

지역	기관명	재학대		전체 학대사례 건수
		건수	비율	
강원	강원	16	8.7	183
	강원동부	15	12.3	122
	강원남부	16	12.6	127
	소계	47	10.9	432
충북	충북	10	10.2	98
	충북북부	4	4.3	94
	소계	14	7.3	192
충남	충남	41	20.3	202
	충남남부	23	19.2	120
	소계	64	19.9	322
전북	전북	12	8.1	148
	전북서부	9	6.0	150
	소계	21	7.0	298
전남	전남동부	29	19.1	152
	전남서부	24	10.7	224
	소계	53	14.1	376
경북	경북동부	5	2.9	170
	경북북부	26	19.7	132
	경북서부	32	15.6	205
	경북남부	-	-	101
	소계	63	10.4	608
경남	경남	28	8.2	341
	경남서부	17	11.6	146
	소계	45	9.2	48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6	7.6	79
	제주도서귀포시	5	9.1	55
	소계	11	8.2	134
계		817	12.0	6,8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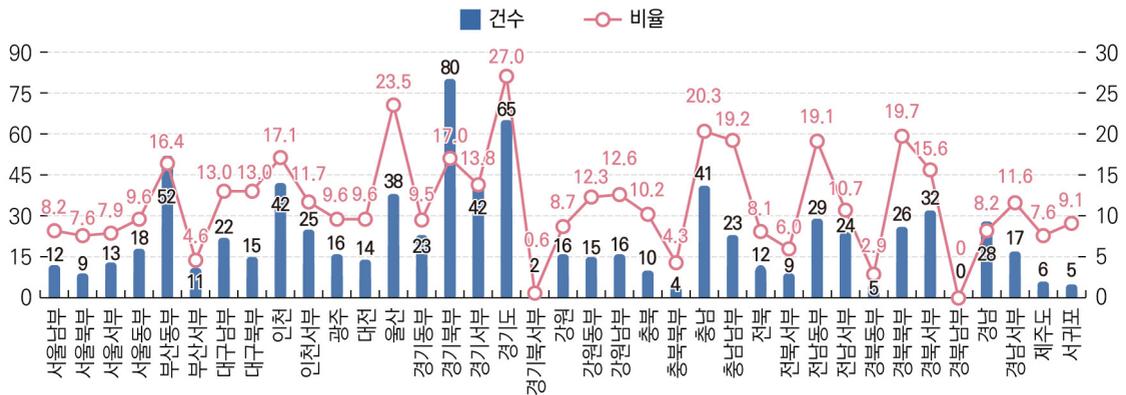


그림 9-22 기관별 재학대 접수 건수 및 비율

2) 재학대 신고자 유형

재학대 사례와 신규 사례의 신고의무자 유형을 보면 신규 사례의 경우 1,042건(17.4%), 재학대 사례의 경우 83건(10.2%)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사례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이 285건(4.8%)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재학대 사례의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25건(3.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신규와 재학대 사례 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학대 사례와 신규 사례의 비신고의무자 유형을 보면, 신규 사례의 경우 4,948건(82.6%), 재학대 사례의 경우 734건(89.8%)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기관의 경우 타 비신고의무자 직군에 비해 재학대 사례와 신규 사례 모두 신고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신고의무자 중 학대피해노인 본인의 신고비율이 신규 사례(4.6%) 보다 재학대 사례(7.5%)에서 높았으며, 관련기관 신규 사례 신고비율(68.4%)에 비해 재학대 사례 신고비율(75.8%)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재학대 사례의 경우 신규 사례 보다 학대피해노인 본인 또는 관련 기관에서 노인학대를 인지하여 신고하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9-30 신규-재학대 신고자 유형

(단위: 명, %)

구분		신규		재학대 신고	
신고 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8	0.3	-	-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17	0.3	3	0.4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285	4.8	13	1.6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0.1	1	0.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43	0.7	16	2.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93	3.2	18	2.2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8	0.1	1	0.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9	0.7	3	0.4
	119 구급대의 대원	1	0.0	-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1	0.0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5	0.1	1	0.1
	응급구조사	-	-	-	-
	의료기사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27	0.5	2	0.2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9	0.2	-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55	2.6	-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236	3.9	25	3.1
	소계	1,042	17.4	83	10.2
	비신고 의무자	학대피해노인 본인	273	4.6	61
학대행위자 본인		4	0.1	-	-
친족		461	7.7	46	5.6
타인		110	1.8	8	1.0
관련기관 ²⁷⁾		4,100	68.4	619	75.8
소계		4,948	82.6	734	89.8
계	5,990	100	817	100	

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재학대 사례의 학대피해노인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노인이 150명(18.4%), 여성 노인이 667명(81.6%)으로 여성 노인의 재학대 사례가 남성 노인에 비해 약 4.4배 많았다.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비율(남성 노인 22.9%, 여성 노인 77.1%)과 비교했을 때도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의 재학대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재학대 피해노인 중 70대가 407명(49.8%), 80대가 250명(30.6%), 60대가 127명(15.5%)으로 70대의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에 따른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80대의 경우 남성 노인이 60명(40.0%), 여성 노인이 190명(28.5%)로 나타나 남성 재학대 피해노인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9-3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성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남성	16	42	27	45	15	4	1	-	150
	10.7	28.0	18.0	30.0	10.0	2.7	0.7	-	100
여성	111	166	172	123	67	23	4	1	667
	16.6	24.9	25.8	18.4	10.0	3.4	0.6	0.1	100
계	127	208	199	168	82	27	5	1	817
	15.5	25.5	24.4	20.6	10.0	3.3	0.6	0.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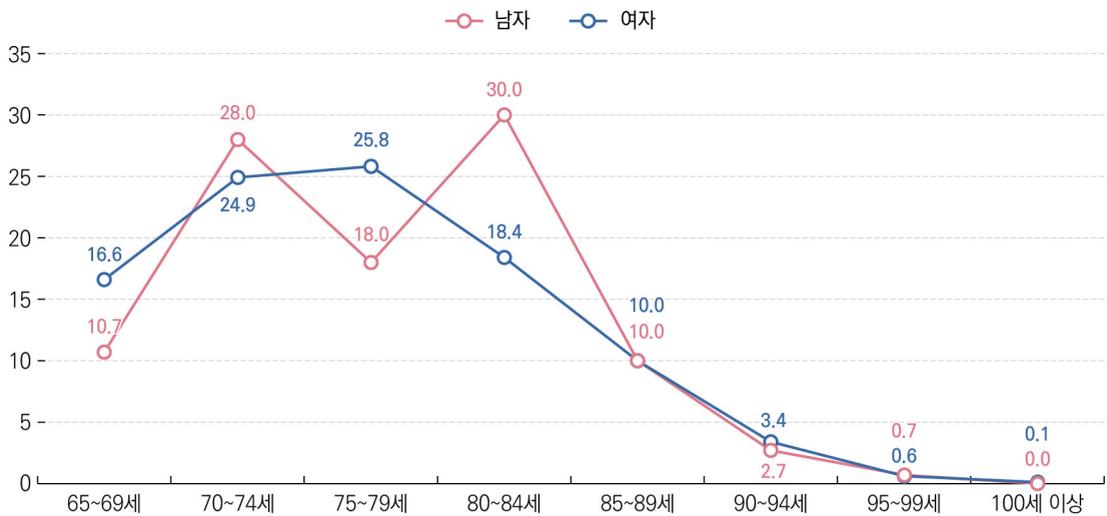


그림 9-2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27) 관련기관에는 경찰관,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됨.

4) 재학대 사례판정

재학대에 대한 사례판정 유형을 보면 비응급 사례 530건(64.9%), 잠재적 사례 259건(31.7%), 응급 사례 28건(3.4%)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례에 대한 사례판정 유형 또한 비응급 사례 3,627건(60.6%), 잠재적 사례 2,221건(37.1%), 응급 사례 142건(2.4%)의 순으로 재학대 사례판정과 동일하였다.

재학대 사례와 신규 사례의 사례판정 유형을 비교해보면 재학대 사례의 경우 신규 사례에 비해 잠재적 사례 비율은 낮았으나, 응급 사례와 비응급 사례의 비율은 재학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32 신규-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사례판정

(단위: 건, %)

구분	응급	비응급	잠재적	계
신규	142	3,627	2,221	5,990
	2.4	60.6	37.1	100
재학대	28	530	259	817
	3.4	64.9	31.7	100
계	170	4,157	2,480	6,807
	2.5	61.1	36.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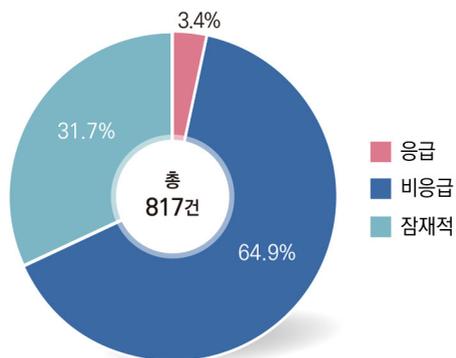


그림 9-24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사례판정 비율

5) 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학대피해노인의 학대행위자 유형을 신규 사례와 재학대 사례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신규 사례의 경우 배우자 2,279건(34.3%), 아들 1,745건(26.2%), 기관 1,346건(20.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학대 사례는 아들 347건(41.1%), 배우자 336건(39.8%), 딸 67건(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33 신규 - 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피해자 본인	친 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신규	155	2,279	1,745	101	553	36	154	46	235	1,346	6,650
	2.3	34.3	26.2	1.5	8.3	0.5	2.3	0.7	3.5	20.2	100
재학대	14	336	347	5	67	2	25	3	29	16	844
	1.7	39.8	41.1	0.6	7.9	0.2	3.0	0.4	3.4	1.9	100
계	169	2,615	2,092	106	620	38	179	49	264	1,362	7,494
	2.3	34.9	27.9	1.4	8.3	0.5	2.4	0.7	3.5	18.2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수(817명)와 학대행위자(844명)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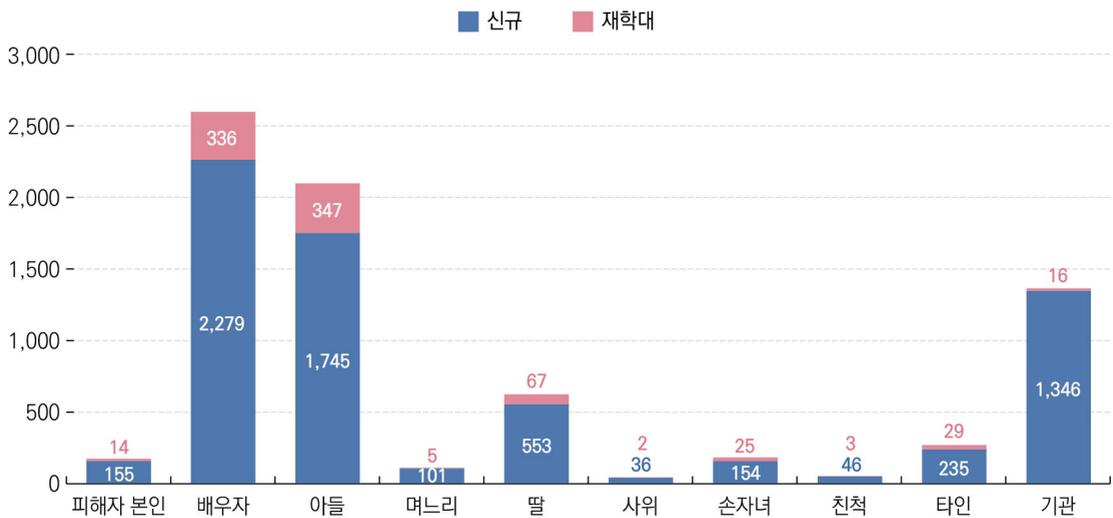


그림 9-25 신규-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6)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재학대 사례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1,290건 중 정서적 학대가 641건(49.7%)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신체적 학대가 559건(43.3%), 경제적 학대 41건(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학대의 학대유형의 경우 정서적 학대가 4,561건(43.3%) 신체적 학대가 4,431건(42.0%)이라는 점에서 재학대 사례의 경우 또한 비교적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더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34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단위: 건,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559	641	5	41	27	14	3	1,290*
43.3	49.7	0.4	3.2	2.1	1.1	0.2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재학대 통계 수치(817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290건)에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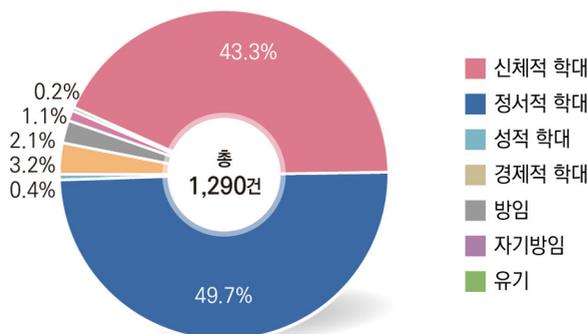


그림 9-26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7) 재학대 학대발생장소

재학대 사례 총 817건 중 가정 내 학대가 803건(98.3%)으로, 재학대로 신고된 사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례의 가정 내 학대 비율이 84.5%인 것에 비하여 재학대 사례의 가정 내 학대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9-35 신규-재학대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구분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신규	5,064	658	52	86	48	82	5,990
	84.5	11.0	0.9	1.4	0.8	1.4	100
재학대	803	4	-	-	3	7	817
	98.3	0.5	-	-	0.4	0.9	100
계	5,867	662	52	86	51	89	6,807
	86.2	9.7	0.8	1.3	0.7	1.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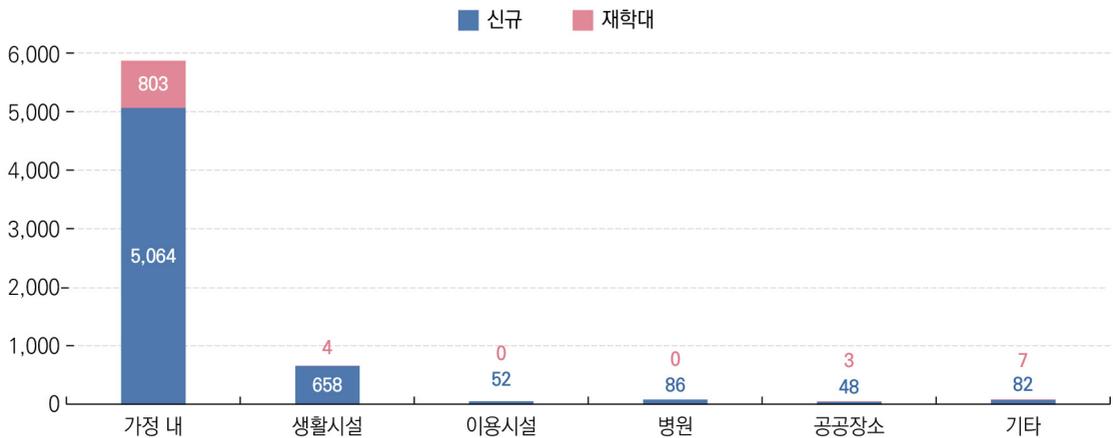


그림 9-27 신규-재학대 학대발생장소

재학대의 발생장소별로 학대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재학대 행위자 844명 중 가정 내 학대의 경우 아들이 346명(42.4%)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배우자가 334명(40.9%)으로 나타나 두 번째로 높았다. 즉 가정 내 학대로 인한 재학대의 경우 주로 아들과 배우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36 재학대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피해자 본인	친 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가정내	14	334	346	5	66	2	23	3	779	24	-	817
	1.7	40.9	42.4	0.6	8.1	0.2	2.8	0.4	95.3	2.9	-	100
생활 시설	-	-	-	-	-	-	-	-	-	-	16	16
	-	-	-	-	-	-	-	-	-	-	100	100
이용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병원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 장소	-	1	1	-	1	-	-	-	3	-	-	3
	-	33.3	33.3	-	33.3	-	-	-	100	-	-	100
기타	-	1	-	-	-	-	2	-	3	5	-	8
	-	12.5	-	-	-	-	25.0	-	37.5	62.5	-	100
계	14	336	347	5	67	2	25	3	785	29	16	844*
	1.7	39.8	41.1	0.6	7.9	0.2	3.0	0.4	93.0	3.4	1.9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수(817명)와 학대행위자(844명)는 차이가 있음

8) 재학대 학대발생빈도

재학대 사례의 학대발생빈도는 1개월에 한 번 이상이 244건(29.9%)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다음으로 1주일에 한 번 이상 183건(22.4%), 6개월에 한 번 이상 133건(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신규 사례와 비교해보면 일회성의 경우 신규 사례에 비해 12.7%p 낮은 반면, 1개월에 한 번 이상의 비율은 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37 신규-재학대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구 분	일회성	6개월에 한 번 이상	3개월에 한 번 이상	1개월에 한 번 이상	1주일에 한 번 이상	매일	계
신규	1,258	643	675	1,490	1,279	645	5,990
	21.0	10.7	11.3	24.9	21.4	10.8	100
재학대	68	133	132	244	183	57	817
	8.3	16.3	16.2	29.9	22.4	7.0	100
계	1,326	776	807	1,734	1,462	702	6,807
	19.5	11.4	11.9	25.5	21.5	10.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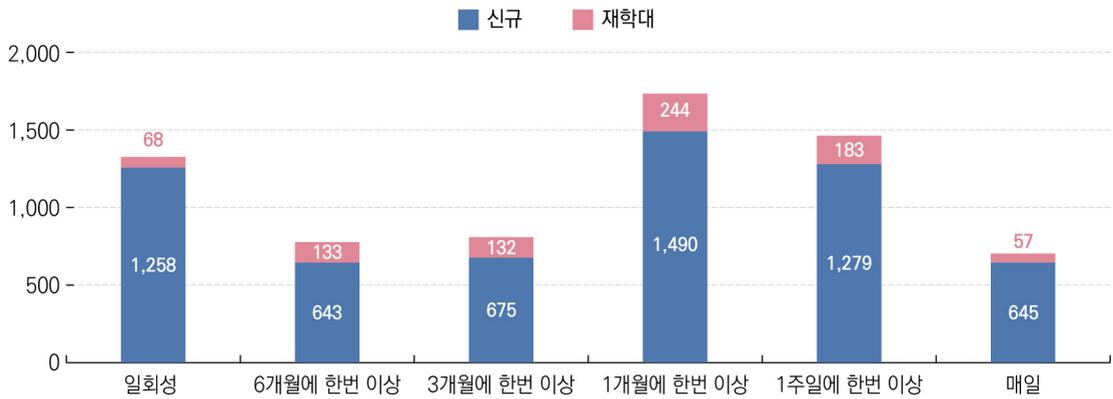


그림 9-28 재학대 학대발생빈도

9) 재학대 학대지속기간

재학대로 신고된 학대피해노인의 학대지속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 및 5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학대가 지속된 비율은 신규 사례가 3,700건(61.8%), 재학대 사례가 685건(83.8%)으로, 재학대 사례가 신규 사례보다 장기간 지속된 학대 비율이 높았다.

표 9-38 신규 - 재학대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구분	일회성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계
신규	1,185	234	871	1,816	1,884	5,990
	19.8	3.9	14.5	30.3	31.5	100
재학대	57	11	64	362	323	817
	7.0	1.3	7.8	44.3	39.5	100
계	1,242	245	935	2,178	2,207	6,807
	18.2	3.6	13.7	32.0	32.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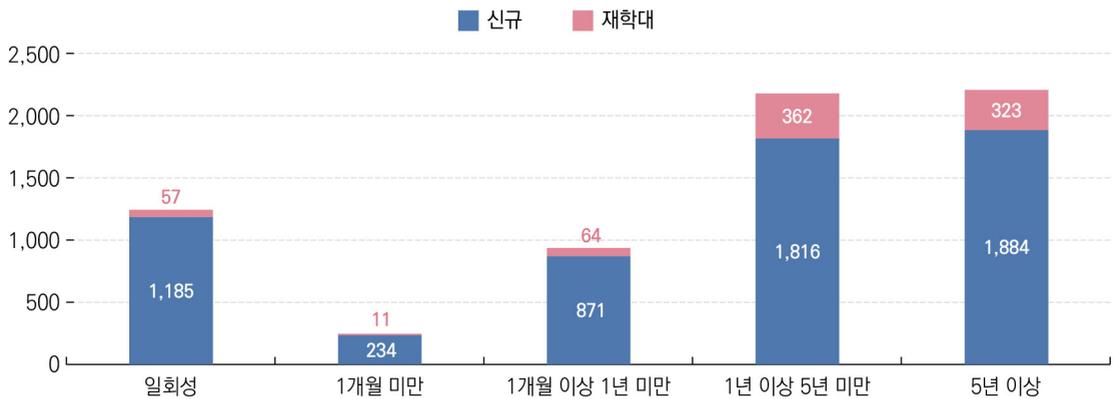


그림 9-29 신규 - 재학대 학대지속기간

10)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재학대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재학대 피해노인 817명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56명(19.1%)이다. 2022년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1,157명, 17.0%)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표 9-39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17	156
	19.1

1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재학대 사례의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를 보면 자녀동거가구가 328건(40.1%)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노인부부가구 314건(38.4%), 노인독거가구 88건(10.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례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의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로 2,153건(35.9%)이었으며, 다음으로 자녀동거가구가 1,706건(28.5%), 노인독거가구가 1,039건(17.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재학대 사례와 신규 사례를 비교해보면, 재학대 사례의 경우 신규 사례에 비해 노인부부 및 자녀동거 비율은 높으나 노인독거가구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40 신규 -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건, %)

구 분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 동거	자녀·손자녀 동거	기 타	계
신규	1,039	2,153	1,706	179	185	728	5,990
	17.3	35.9	28.5	3.0	3.1	12.2	100
재학대	88	314	328	26	43	18	817
	10.8	38.4	40.1	3.2	5.3	2.2	100
계	1,127	2,467	2,034	205	228	746	6,807
	16.6	36.2	29.9	3.0	3.3	11.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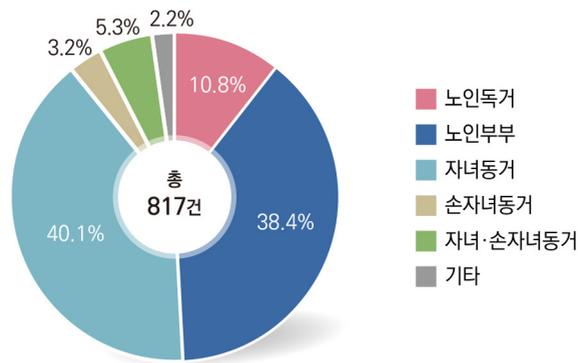


그림 9-30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재학대 사례의 학대 유형 건수는 1,290건으로 가구 형태별로 학대유형의 차이가 나타난다. 노인 독거의 경우 “정서적 학대-신체적 학대-자기방임”, 노인부부의 경우 “정서적 학대-신체적 학대-경제적 학대”, 손자녀동거의 경우 “정서적 학대-신체적 학대-경제적 학대”, 자녀·손자녀의 경우 “정서적 학대-신체적 학대-경제적 학대=방임=자기방임”, 자녀동거의 경우 “정서적 학대-신체적 학대-경제적 학대”, 기타의 경우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경제적 학대=방임”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4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 유형 건수

(단위: 건, %)

구 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 방임	유 기	계
노인독거	46	56	2	8	9	12	1	134
	34.3	41.8	1.5	6.0	6.7	9.0	0.7	100
노인부부	238	253	2	9	1	-	-	503
	47.3	50.3	0.4	1.8	0.2	-	-	100
손자녀동거	17	19	-	3	-	-	1	40
	42.5	47.5	-	7.5	-	-	2.5	100
자녀·손자녀 동거	26	36	-	1	1	1	-	65
	40.0	55.4	-	1.5	1.5	1.5	-	100
자녀동거	219	265	1	18	14	1	-	518
	42.3	51.2	0.2	3.5	2.7	0.2	-	100
기타	13	12	-	2	2	-	1	30
	43.3	40.0	-	6.7	6.7	-	3.3	100
계	559	641	5	41	27	14	3	1,290*
	43.3	49.7	0.4	3.2	2.1	1.1	0.2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학대 피해노인 통계 수치(817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290건)에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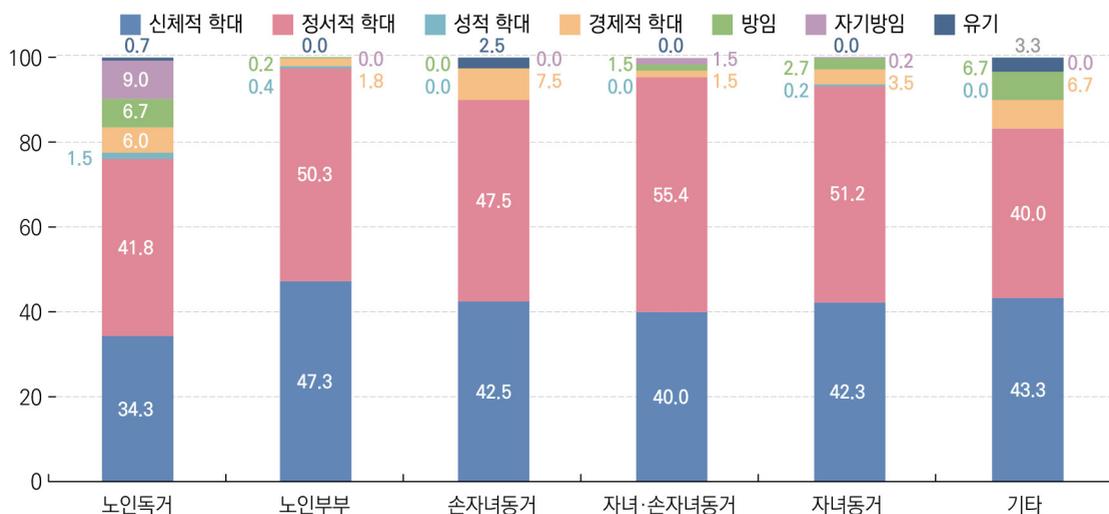


그림 9-3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 유형

12)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재학대 사례 학대피해노인의 817명 중 치매가 의심되는 치매의심노인이 70명(8.6%),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진단노인이 82명(10.0%)으로, 치매가 의심되거나 진단받은 피해노인은 총 152명(18.6%)으로 나타났다.

표 9-42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 명, %)

재학대 사례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계
817	70	82	152
	8.6	10.0	18.6

1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동거여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844명 중 학대피해노인과 동거하는 비율은 709명(84.0%)이었으며, 동거하지 않는 비율은 135명(16.0%)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행위자가 학대피해노인과 동거하는 비율은 4,833명(71.0%)임을 미루어 볼 때, 재학대 사례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학대피해노인과 동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재학대 사례 중 학대행위자와 동거하는 경우 배우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312명(44.0%)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아들이 288명(40.6%)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아들과의 동거 비율(26.4%)과 비교해보면 재학대 사례에서 아들과의 동거비율(40.6%)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9-4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동거여부

(단위: 명, %)

구분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동거	10	312	288	2	48	1	19	2	672	14	13	709
	1.4	44.0	40.6	0.3	6.8	0.1	2.7	0.3	94.8	2.0	1.8	100
비동거	4	24	59	3	19	1	6	1	113	15	3	135
	3.0	17.8	43.7	2.2	14.1	0.7	4.4	0.7	83.7	11.1	2.2	100
계	14	336	347	5	67	2	25	3	785	29	16	844
	1.7	39.8	41.1	0.6	7.9	0.2	3.0	0.4	93.0	3.4	1.9	100

14)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재학대의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를 살펴보면 총 844명 중 남성이 702명(83.2%), 여성이 142명(16.8%)으로 나타나 재학대 사례의 주된 학대행위자는 남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대행위자는 70세 이상이 306명(36.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9-44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남성	6	13	21	139	159	88	276	702
	0.9	1.9	3.0	19.8	22.6	12.5	39.3	100
여성	2	3	5	35	41	26	30	142
	1.4	2.1	3.5	24.6	28.9	18.3	21.1	100
계	8	16	26	174	200	114	306	844
	0.9	1.9	3.1	20.6	23.7	13.5	36.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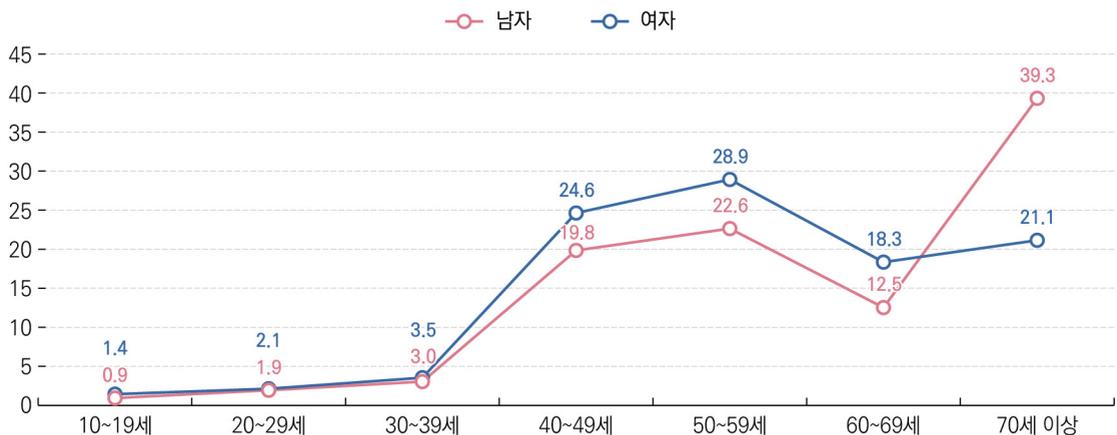


그림 9-32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5) 재학대 학대행위자 중독 유형

재학대 행위자 844명의 사례 중 중독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례는 225건으로, 전체 재학대 사례의 26.7%를 차지하였다. 이 중 알코올 사용 장애가 217명(25.7%), 도박중독이 4명(0.5%), 약물사용 장애가 4명(0.5%)으로 중독유형의 대부분은 알코올사용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45 재학대 학대행위자 중독 유형

(단위: 명, %)

재학대 행위자	도박중독	알코올사용장애	약물사용장애	계
844	4	217	4	225
	0.5	25.7	0.5	26.7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PART 10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PART
10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

01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실적

1) 보호노인 현황

표 10-1 보호노인 현황

(단위: 명, %)

구 분	남 성	여 성	계
입소자	51	439	490
	10.4	89.6	100
이용자	109	788	897
	12.2	87.8	100
계	160	1,227	1,387
	11.5	88.5	100

표 10-2 보호노인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60~ 64세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 84세	85~ 89세	90~ 94세	95~ 99세	100세 이상	계	
입소자	남성	-	8	6	10	16	9	2	-	-	51
		-	15.7	11.8	19.6	31.4	17.6	3.9	-	-	100
	여성	-	79	118	94	81	50	15	2	-	439
		-	18.0	26.9	21.4	18.5	11.4	3.4	0.5	-	100
	계	-	87	124	104	97	59	17	2	-	490
	-	17.8	25.3	21.2	19.8	12.0	3.5	0.4	-	100	
이용자*	남성	-	24	22	19	33	9	2	-	-	109
		-	22.0	20.2	17.4	30.3	8.3	1.8	-	-	100
	여성	1	160	222	200	132	46	22	4	1	788
		0.1	20.3	28.2	25.4	16.8	5.8	2.8	0.5	0.1	100
	계	1	184	244	219	165	55	24	4	1	897
	0.1	20.5	27.2	24.4	18.4	6.1	2.7	0.4	0.1	100	

* 이용자 중 60~64세 대상자가 있는 것은 기존 학대피해노인에게 사후관리적 측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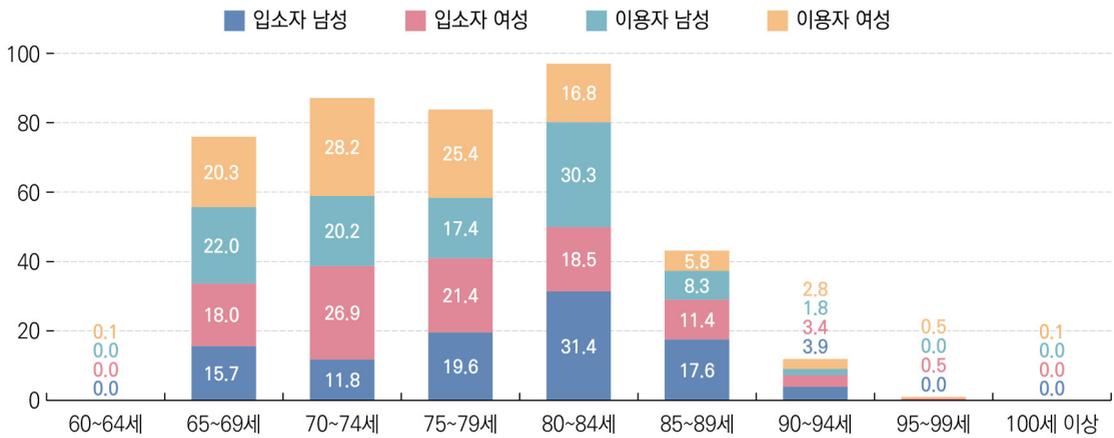


그림 10-1 보호노인 성별 및 연령대

2) 보호노인 결혼 유형

표 10-3 보호노인 결혼 유형

(단위: 명, %)

구 분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계
	초혼	재혼	사실혼	기타	소계	미혼	사별	이혼	별거	가출	기타	소계	
입소자	253	33	19	-	305	9	148	21	5	2	-	185	490
	51.6	6.7	3.9	-	62.2	1.8	30.2	4.3	1.0	0.4	-	37.8	100
이용자	456	49	54	-	559	10	264	47	13	4	-	338	897
	50.8	5.5	6.0	-	62.3	1.1	29.4	5.2	1.4	0.4	-	37.7	100
계	709	82	73	-	864	19	412	68	18	6	-	523	1,387
	51.1	5.9	5.3	-	62.3	1.4	29.7	4.9	1.3	0.4	-	37.7	100

3)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표 10-4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배우자	아 들	며느리	딸	사 위	손자녀	기타 친인척	기타 동거인	기타	계
입소자	250	153	12	40	1	35	2	17	1	511
	48.9	29.9	2.3	7.8	0.2	6.8	0.4	3.3	0.2	100
이용자	447	269	25	72	8	66	19	21	-	927
	48.2	29.0	2.7	7.8	0.9	7.1	2.0	2.3	-	100
계	697	422	37	112	9	101	21	38	1	1,438
	48.5	29.3	2.6	7.8	0.6	7.0	1.5	2.6	0.1	100

4) 보호노인 가구형태

표 10-5 보호노인 가구형태

(단위: 명, %)

구 분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자녀·손자녀 동거	손자녀동거	기 타	계
입소자	60	214	163	10	26	17	490
	12.2	43.7	33.3	2.0	5.3	3.5	100
이용자	151	366	291	30	26	33	897
	16.8	40.8	32.4	3.3	2.9	3.7	100
계	211	580	454	40	52	50	1,387
	15.2	41.8	32.7	2.9	3.7	3.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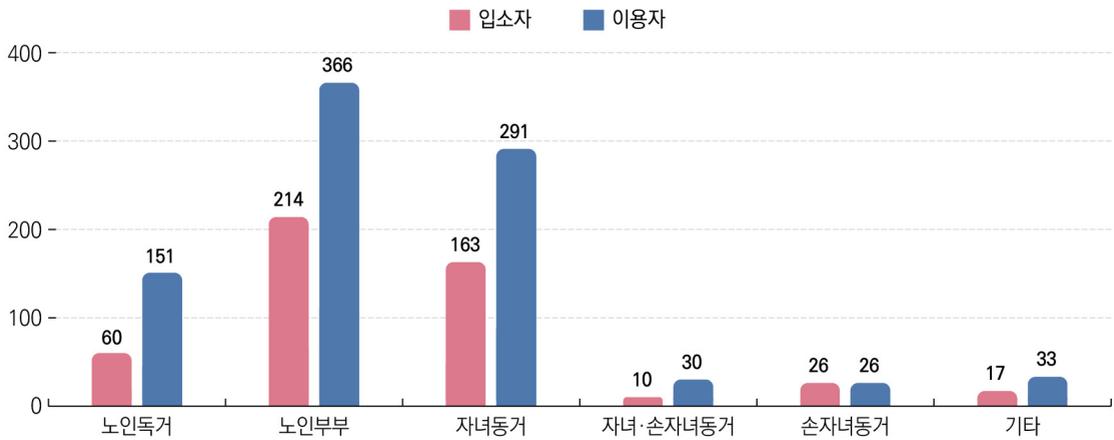


그림 10-2 보호노인 가구형태

5) 보호노인 주거형태

표 10-6 보호노인 주거형태

(단위: 명, %)

구 분	자 가	전 세	월 세	영구임대 아파트	무상	의료 시설	기타	시설	계
입소자	333	41	55	36	15	-	8	2	490
	68.0	8.4	11.2	7.3	3.1	-	1.6	0.4	100
이용자	634	77	95	50	20	-	21	-	897
	70.7	8.6	10.6	5.6	2.2	-	2.3	-	100
계	967	118	150	86	35	-	29	2	1,387
	69.7	8.5	10.8	6.2	2.5	-	2.1	0.1	100



그림 10-3 보호노인 주거형태

6) 보호노인 학대 유형

표 10-7 보호노인 학대 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입소자	357	411	12	46	15	11	8	860
	41.5	47.8	1.4	5.3	1.7	1.3	0.9	100
이용자	644	779	14	65	23	19	2	1,546
	41.7	50.4	0.9	4.2	1.5	1.2	0.1	100
계	1,001	1,190	26	111	38	30	10	2,406
	41.6	49.5	1.1	4.6	1.6	1.2	0.4	100

* 중복



그림 10-4 보호노인 학대 유형

7) 보호노인 치매여부

표 10-8 보호노인 치매여부

(단위: 명, %)

구 분	보호노인 수	치매 진단 및 의증		
		치매진단	치매의심	소계
입소자	490	36	50	86
		7.3	10.2	17.6
이용자	897	43	46	89
		4.8	5.1	9.9
계	1,387	79	96	175
		5.7	6.9	12.6

8) 보호노인의 우울증 검사

표 10-9 보호노인 우울증 검사결과*

(단위: 명, %)

구 분	증 가	감 소	계
입소자	3	451	454
	0.7	99.3	100
이용자	10	866	876
	1.1	98.9	100
계	13	1,317	1,330
	1.0	99.0	100

* 학대피해노인의 치매, 의사소통의 어려움, 거부, 병원이송, 급작스런 퇴소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우울증 검사를 실시한 수치임.

9) 퇴소 후 거주 현황

표 10-10 퇴소 후 거주 현황

(단위: 명, %)

구 분	원가정 복귀	입소 전 거주지 복귀 (원가정복귀 제외)	타부양자 가정	시설입소 (쉼터, 공동 생활가정, 요양원 등)	의료기관	별도공간 마련	기 타	소계
입소자	301	2	36	40	19	49	43	490
	61.4	0.4	7.3	8.2	3.9	10.0	8.8	100
이용자	687	-	-	4	1	6	199	897
	76.6	-	-	0.4	0.1	0.7	22.2	100
계	988	2	36	44	20	55	242	1,387
	71.2	0.1	2.6	3.2	1.4	4.0	17.4	100

10)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입소자)

표 10-11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입소자)

(단위: 명, %)

내 용		인 원		
		인원	비율	
식사제공	조식	16,332	14.7	
	중식	15,744	14.2	
	석식	16,183	14.6	
	소계	48,259	43.5	
법률서비스 연계	법률상담연결	33	0.0	
	법률소송지원	4	0.0	
	소계	37	0.0	
의료서비스 연계	연계	이송	155	0.1
		의료기관 서비스제공	313	0.3
	지원	이송 및 동행	1,089	1.0
		의료비 지급	433	0.4
	기타	2,873	2.6	
	소계	4,863	4.4	
상담서비스	쉼터 사회복지사 상담	4,568	4.1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1,882	1.7	
	전문가(강사)상담	551	0.5	
	가족상담	169	0.2	
	기타	3,423	3.1	
	소계	10,593	9.6	
프로그램	건강증진	30,344	27.4	
	문화여가	5,080	4.6	
	사회기능회복	4,273	3.9	
	심리치료	5,477	4.9	
	기타	1,990	1.8	
	소계	47,164	42.5	
계		110,916	100	

11)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

표 10-12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

(단위: 명, %)

내 용		인 원		
		인원	비율	
식사제공	조식	73	1.4	
	중식	1,378	27.2	
	석식	88	1.7	
	소계	1,539	30.4	
법률서비스 연계	법률상담연결	-	-	
	법률소송지원	-	-	
	소계	-	-	
의료서비스 연계	연계	이송	4	0.1
		의료기관 서비스제공	-	-
	지원	이송 및 동행	15	0.3
		의료비 지급	13	0.3
	기타	74	1.5	
	소계	106	2.1	
상담서비스	쉼터 사회복지사 상담	147	2.9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946	18.7	
	전문가(강사)상담	160	3.2	
	가족상담	78	1.5	
	기타	787	15.5	
	소계	2,118	41.8	
프로그램	건강증진	203	4.0	
	문화여가	279	5.5	
	사회기능회복	6	0.1	
	심리치료	305	6.0	
	기타	512	10.1	
	소계	1,305	25.7	
계		5,068	10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PART 11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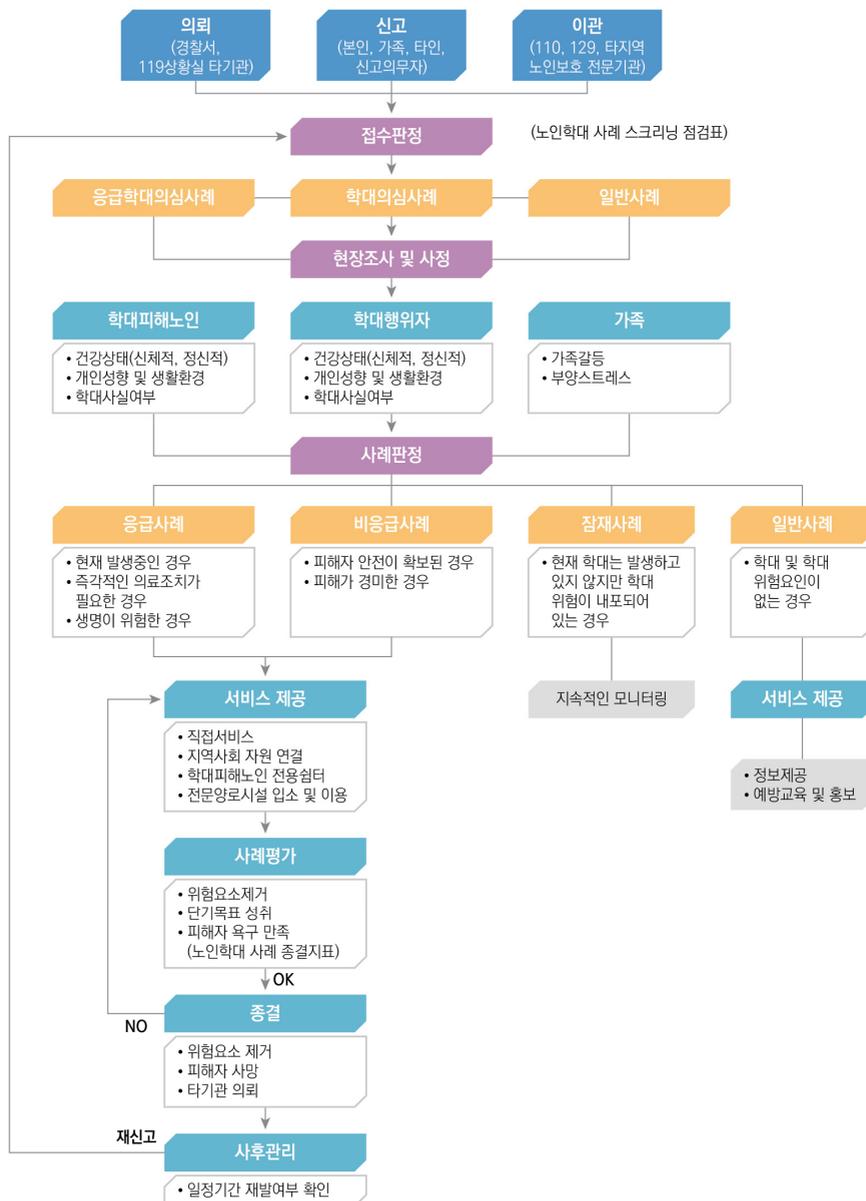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PART
11

부 록

01 |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



02 |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023. 6. 현재)

구 분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중 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4층	02)3667-1389	www.noinboho1389.or.kr
서울특별시남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02)3472-1389	www.seoul1389.or.kr
서울특별시북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	02)921-1389	www.sn1389.or.kr
서울특별시서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10길 30-1, 5층	02)3157-6389	www.sw1389.or.kr
서울특별시동부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703, 301호 (천호동, 삼화빌딩)	02)470-1389	www.se1389.or.kr
부산광역시동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8 연합뉴스빌딩 5층	051)468-8850	www.bs1389.or.kr
부산광역시서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8번길 46 제이에스빌 5층	051)867-9119	www.1389.bulgukto.or.kr
대구광역시남부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28, 3층	053)472-1389	www.dg1389.or.kr
대구광역시북부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84	053)357-1389	www.dgn1389.or.kr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시사회복지관 204호	032)426-8792~3	www.ic1389.or.kr
인천광역시서부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65번안길 12, 2층	032-569-0533	www.innoin1389.or.kr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길 7 빛고을노인건강타운체육관 1층	062)655-4155~7	www.gjw.or.kr/kj1389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70번길 103	042)472-1389	www.dj1389.or.kr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로 121, 3층	052)265-1389	www.us1389.or.kr
경기동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1 포인트타운 505호	031)736-1389	www.gg1389.or.kr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04 예찬빌딩 5층	031)821-1461	www.gg1389.or.kr
경기서부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501 양촌빌딩 4층	032)683-1389	www.gg1389.or.kr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1번길 1, 노인회관 4층	031)268-1389	www.gg1389.or.kr
경기북서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59 그랑프리프라자 406호	031)978-1389	www.gg1389.or.kr

구 분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번지 201호	033)253-1389	www.1389.or.kr
강원특별자치도 동부	강원도 강릉시 울곡로 2954, 3층	033)655-1389	www.gd1389.or.kr
강원특별자치도 남부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170 새한빌딩 2층	033-744-1389	www.gn1389.co.kr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17, 3층	043)259-8120~2	www.cb1389.or.kr
충청북도북부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76	043)846-1380~2	www.cbb1389.or.kr
충청남도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206번길 42	041)534-1389	www.cn1389.or.kr
충청남도남부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9, 2층	041)734-1389	www.cnn1389.or.kr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57-23	063)273-1389	www.jb1389.or.kr
전북서부	전북 김제시 하동1길 79 김제시노후설계종합지원센터 1층	063)542-1389	www.jbw1389.or.kr
전라남도동부	전남 순천시 저전길 84	061)753-1389	www.jn1389.or.kr
전라남도서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5길 전라남도노인회관 4층	061)281-2391	www.j1389.or.kr
경북동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기쁨의복지관 B102	054)248-1389	www.noin1389.or.kr
경북북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1	054)655-1389	www.gbnw1389.or.kr
경북서부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대로 981-8	054)436-1390	www.gbwn1389.or.kr
경북남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18, 3층	053)716-1389	snoin1389.or.kr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4길 15 금강노인복지관C동 1층	055)222-1389	www.gn1389.or.kr
경상남도서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1098, 2층	055)754-1389	www.gnw1389.co.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7길 3	064)757-3400	www.jejunoin.org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60, 2층	064)763-1999	http://sgpnoin.org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인 쇄 일 : 2023년 6월

발 행 일 : 2023년 6월

발 행 인 : 보건복지부 장관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02) 3667-1389

인 쇄 : 경성문화사 02) 786-2999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나비새김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